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 l a s s i c s o f M a r x i s 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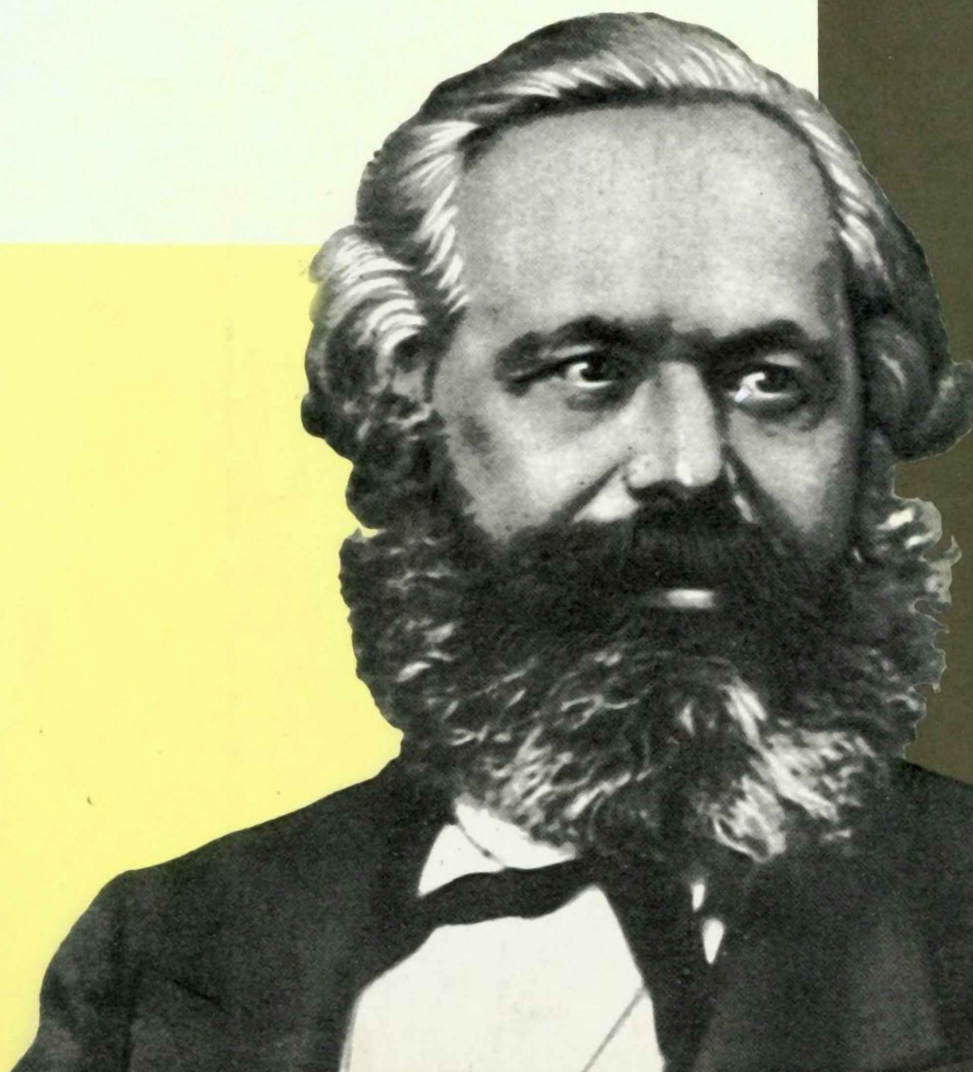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칼 맑스 자본론

제Ⅱ권 (2)

서판 白衣



K. 맑스

자 본 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 II 권 (2)

자본의 유통과정

F. 엥겔스 엮음

도서
출판

백의

차례/제Ⅱ권 (2) 자본의 유통과정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제18장 서론	387
제1절 연구 대상	387
제2절 화폐자본의 역할	390
제19장 대상에 관한 종전의 제(諸)서술	395
제1절 중농주의자	
제2절 아담 스미드	399
1) 스미드의 일반적 관점	
2) 스미드에 의한 교환가치의 $v+m$ 으로의 분해	
3) 불변자본부분	
4) A. 스미드에 있어서의 자본과 소득	
5) 결론	
제3절 그후의 경제학자들	429
제20장 단순재생산	433
제1절 문제의 설정	
제2절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	436
제3절 두 부류 사이의 교환 : I ($v+m$)과 II c 의 교환	439
제4절 II 부류 안에서의 교환 :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444
제5절 화폐유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	454
제6절 I 부류의 불변자본	466
제7절 두 부류 안에서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469
제8절 두 부류 안에서의 불변자본	473
제9절 A. 스미드, 슈토르흐 및 램제이에 대한 회고	478

제10절 자본과 소득 : 가변자본과 노임	481
제11절 고정자본의 보상	494
1) 마멸가치부분의 화폐형태로의 보상	
2) 고정자본의 현물로의 보상	
3) 결론	
제12절 화폐재료의 재생산	518
제13절 데스튀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이론	530
제21장 축적과 확대재생산	543
제1절 I 부류에서의 축적	546
1) 화폐퇴장	
2) 추가적 불변자본	
3) 추가적 가변자본	
제2절 II 부류에서의 축적	557
제3절 도식에 의한 축적의 서술	561
1) 첫째 실례	
2) 둘째 실례	
3) 축적이 이루어질 때의 IIc의 전환	
제4절 보충(補充)	579

☐참고문헌 · 585

☐인명색인 · 594

☐내용색인 · 601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j

제18장 서론

제19장 대상에 관한 종전의 제(諸)서술

제20장 단순재생산

제21장 축적과 확대재생산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제18장³⁴⁾ 서론

제1절 연구대상

자본의 직접적 생산과정은 자본의 노동과정이며 가치증식과정, 즉 그것의 결과는 상품생산물이며 그것의 규정적 동기는 잉여가치의 생산인 그러한 과정이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은 이 직접적 생산과정과 고유한 의미에서의 유통과정의 양국면을 포괄한다. 즉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부단히 새로 반복되는 과정인 주기적 과정으로서 자본의 회전을 이루는 총순환을 포괄한다.

그런데 순환을 $G \cdots G'$ 의 형태로 고찰하든 $P \cdots P$ 의 형태로 고찰하든 직접적 생산과정 P 그 자체는 언제나 이 순환의 한 개 고리에 불과하다. 전자의 형태에서는 직접적 생산과정이 유통과정의 매개자로서 나타나며, 후자의 형태에서는 유통과정이 직접적 생산과정의 매개자로서 나타난다. 직접적 생산과정의 부단한 갱신, 즉 생산자본으로서의 자본의 부단한 재현은 두 경우에 다 유통과정에서의 자본의 전화들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타방으로 부단히 갱신되는 생산과정은 자본이 유통분야에서 부단히 새로 수행하는 전화들의 조건 즉 자본이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으로서 번갈아 나타나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매개 자본은 사회적 총자본 중의 자립적인, 말하자면 개별적 생명이 부여된 한 토막에 불과한데, 이것은 매개 자본가가 자본가계급의 개별적 한 요소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의 운동은 이

34) 제2고에서

자본의 자립적인 토막들의 운동들 즉 개별적 자본들의 회전들의 전체로서 이루어진다. 개개 상품의 형태변화가 상품세계의 형태변화의 계열—상품유통—의 하나의 고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자본의 형태변화, 그것의 회전은 사회적 자본의 순환에 있어서의 하나의 고리이다.

이 총과정은 생산적 소비(직접적 생산과정)와 이것을 매개하는 형태전화들(소재적으로 보면 교환들)을 포함하며 또한 개인적 소비와 이것을 매개하는 형태전화들 즉 교환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일방으로는 가변자본의 노동력으로의 전환,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합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노동자는 자기의 상품인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등장하며 자본가는 그것의 구매자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타방으로 상품의 판매 속에는 노동계급에 의한 상품의 구매, 즉 그들의 개인적 소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구매자로서 등장하며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한 상품판매자로서 등장한다.

상품자본의 유통은 잉여가치의 유통도 포함하며 따라서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비 즉 잉여가치의 소비를 매개하는 매매도 포함한다.

따라서 개별적 자본들의 순환을, 그것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련에서 고찰하면, 즉 그 순환을 그것의 전체성에서 고찰하면 그 순환은 자본의 유통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품유통도 포괄한다. 후자는 원래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1) 고유한 의미에서의 자본순환 및 2)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상품들 즉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을 지출하고, 자본가가 자기의 잉여가치(또는 자기의 잉여가치의 일부)를 지출하는 상품들의 순환. 물론 자본의 순환은, 잉여가치가 상품자본의 일부를 이루는 한에서는 잉여가치의 유통도 포괄하며 또한 가변자본의 노동력으로의 전화 즉 노임지불도 포괄한다. 그러나 상품들의 이 잉여가치 및 노임의 지출은 자본순환의 어떠한 고리도 이루지 않는다. 비록 적어도 노임의 지출은 자본유통의 조건이지만.

제1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개별적 행정으로서와 재생산과정으로서 분석되었다.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 자본 자체의 생산이 분석되었다. 자본이 유통분야 내부에서 수행하는 형태변화와 소재변화는 거기에서는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상정되었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일방으로는 생산물을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하며, 타방으로는 과정을 새로 시작 또는 부단히 계속하기 위하여 유통분야 내부에서 물질 생산수단을 발견한다고

상정되었다. 우리가 거기에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통분야에서의 유일한 행위(行爲)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노동력의 매매였다.

이 제2부의 제1편에서는 자본이 자체의 순환에서 취하는 각이한 형태들 및 이 순환 자체의 각이한 형태들이 고찰되었다. 제1부에서 고찰된 노동기간에 이제는 유통기간이 첨가된다.

제2편에서는 순환이 주기적인 것으로서 즉 회전으로서 고찰되었다. 우리는 일방으로는 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이 각이한 기간에 또 각이한 방식으로 제형태의 순환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밝혔으며, 타방으로는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의 각이한 길이의 조건들로 되는 사정들을 연구하였다. 우리는 생산과정 자체의 규모와 잉여가치의 연율에 대하여, 순환기간과 또 그것의 구성부분의 각이한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사실상 제1편에서는 주로 자본이 자체의 순환 중에서 부단히 취하고 또 벗어던지는 계기적(繼起的)인 형태들을 고찰하였다면, 제2편에서는 소여의 크기의 자본이 형태들의 이 흐름과 계기(繼起) 중에서 동시에—비록 비율은 변경한다 하더라도—생산자본,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의 각이한 형태들로 어떻게 분할되며, 그리하여 어떻게 그 형태들이 서로 교체될 뿐만 아니라, 총자본가치의 각이한 부분들이 이 각이한 상태들에서 부단히 병존하며 기능하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화폐자본은 제1부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서술되었다. 소여의 크기의 생산자본을 부단히 기능케 하기 위하여는 회전의 조건 여하에 따라서 소여의 자본의, 각이한 크기를 가진 구성부분들이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로 전대되고 갱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일정한 법칙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1편에서나 제2편에서나 문제로 된 것은 언제나 다만 개별적 자본이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자립적 한 부분의 운동이었다.

그런데 개별적 자본의 순환들은 서로 엉키며, 서로 전제가 되고 조건으로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바로 이렇게 엉킴으로써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을 이룬다. 단순상품유통에서 한 상품의 전체 형태변화가 상품세계의 형태변화의 계열의 한 고리로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개별적 자본의 형태변화가 사회적 자본의 형태변화 계열의 한 고리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상품유통이 자본의 유통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왜냐하

면 그것은 비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사회적 총자본의 순환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개개 자본의 순환에 속하지 않는 상품유통도, 즉 자본을 형성하지 않는 유통도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개별적 자본들의 유통과정(이것은 총체로 보아 재생산과정의 형태이다)을, 즉 이 사회적 총자본의 유통과정을 고찰하여야 한다.

제2절 화폐자본의 역할

{다음 것은 이 편의 나중 부분에서 비로소 취급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화폐자본을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고찰하는 것이다}.

개별적 자본의 회전의 고찰에 있어서 화폐자본은 두 측면으로부터 밝혀졌다.

첫째로, 화폐자본은 매 개별적 자본이 무대에 등장하여 자본으로서의 자체의 과정을 개시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 과정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서 나타난다.

둘째로, 회전기간의 길이가 각이함에 따라 또 그것의 두 구성부분인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의 비율이 각이함에 따라, 전대자본가치 중 화폐형태로 부단히 전대되며 갱신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성부분은, 그것에 의하여 운동시켜지는 생산자본에 대하여 즉 부단한 생산규모에 대하여 각이한 비율을 갖는다. 그러나 이 비율이 어떠한 간에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과정 중에 있는 자본가치 중 생산자본으로서 부단히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전대자본가치 중 생산자본과 함께 화폐형태로 부단히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다만 정상적인 회전 즉 하나의 추상적 평균이다. 이 경우에 유통의 정체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적 화폐자본은 도외시되어 있다.

첫째 점에 대하여, 상품생산은 상품유통을 전제로 하며, 상품유통은 상품이 화폐로서 출현하는 것 즉 화폐유통을 전제로 한다. 상품과 화폐로의 상품의 이중화(二重化)는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출현하는 법칙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사회적으로 보나 개별적으로 보

나—새로 개시되는 매개 기업에 대한 원동력으로서와 또 부단한 동력으로서의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 즉 화폐자본을 전제로 한다. 특히 유동자본은 동력으로서의 화폐자본이 단기간을 두고 부단히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충전대자본가치 즉 상품들으로써 구성되어 있는 자본의 모든 구성부분들—노동력, 노동수단 및 생산재료—은 화폐로써 부단히 새로 구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개별적 자본에 대하여 말한 것은 오직 다수의 개별적 자본의 형태로서만 기능하는 사회적 자본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제1부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여 자본의 기능면 즉 생산규모가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차 그 절대적 한계에 있어서 기능화폐자본의 규모에 의존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자본에 합체되는 생산요소들의 신축성은 어느 한계내에서는 전대화폐자본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노동력은 그것에 대한 지불이 동등한 경우에도 외연적으로나 집약적으로 보다 강하게 착취될 수 있다. 이와같이 착취가 보다 강화됨에 따라 화폐자본도 증대된다(즉 노임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착취가 강화되는 데 비례하여 증대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만큼(pro tanto) 증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본의 가치요소를 이루지 않는 생산적으로 이용되는 자연물 즉 토지, 해양, 광석, 산림 등등은 동일한 수의 노동력의 긴장이 증대됨에 따라, 화폐자본의 전대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외연적으로나 집약적으로 보다 강하게 이용된다. 그리하여 생산자본의 현실적 요소들은 화폐자본의 추가가 필요없이 증가된다, 추가적 보조재료를 위하여 이 화폐자본의 추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화폐자본—이것으로 생산자본이 전대되는—은 생산자본의 효과의 확대에 비례하여 증대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만큼 증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동일한 노동수단 따라서 동일한 고정자본은 그것을 위한 추가적 화폐지출 없이도 그것의 그날그날의 사용시간의 연장에 의해서도 그것의 적용의 강화에 의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회전이 보다 급속할 따름이나 그것의 재생산의 요소들도 보다 급속히 제공될 것이다.

자연물은 도외시하더라도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자연력이 다소간에 작용력을 가진 요인으로서 생산과정에 합체된다. 그 작용력의 정도는 자본가에게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들과 과학적 진보들에 의존한다.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사회적 결합과 개별적 노동자의 축적된 기능(技能)에 대해서도 그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케어리의 계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결코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에다 현재의 생산능력을 주기 위하여 유사 이래 투입된 모든 자본 또는 노동에 대하여 그는 응당한 지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토지로부터 제거되는 생산능력에 관하여는 물론 언급이 없다). 이에 의하면 개개의 노동자는 미개인으로 부터 근대적 기계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전체 인류가 들인 노동에 따라 지불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와는 거꾸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지불노동—그러나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에 의하여 돈으로 전환된—을 계산하여 본다면 토지에 들어간 전체 자본은 몇 차례나, 그것도 고리가 붙어서 상환되었고 따라서 사회는 토지소유권을 훨씬 오래 전에 몇 차례나 되사고 있다고.

노동생산력의 제고는 그것이 자본가치의 추가적 지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물론 첫째번으로는 생산물의 양만을 증대시키고 그것의 가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노동생산력의 제고가 동일한 노동으로써 보다 많은 불변자본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보다 많은 불변자본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자본재료를 조성하며 따라서 자본의 축적·증대의 기초를 조성한다.

사회적 노동의 조직 자체가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제고가 대규모로 생산할 것과 따라서 개개의 자본가들이 대량의 화폐자본을 전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 이러한 것은 이미 제1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소수자의 수중으로의 자본들의 집중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기능자본가치의 규모 따라서 또 그 기능자본가치가 전대되는 화폐자본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대할 필요는 없다. 개개 자본들의 크기는 그 사회적 총액의 증가 없이도 소수자의 수중으로의 집중에 의하여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의 자본들의 분배의 변동에 불과하다.

끝으로 전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회전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보다 적은 화폐자본으로써 동일한 생산자본이 운동시켜질 수 있든가, 또는 동일한 화폐자본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자본이 운동시켜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 모든 것은 명백히 화폐자본의 본래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전대자본—소여액의

가치, 이것은 자유로운 형태, 가치형태로서는 일정한 화폐액으로써 이루어진다—은 그것이 생산자본으로 전화한 후에 생산가능성들을 내포하는데, 그 가능성들은 전대자본의 가치한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작용범위내에서 외연적 또는 집약적으로 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생산요소들인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가격이 소여의 것이라면 상품으로서 현존하는 이 생산요소들의 일정한 분량을 구매하기에 필요한 화폐자본의 크기는 일정하다. 바꾸어 말하면 전대되어야 할 자본가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러나 이 자본이 가치 및 생산물의 형성자로서 작용하는 범위는 신축성이 있으며 가변적이다.

둘째 점에 대하여, 사회적 노동과 생산수단 중 마멸된 주화(鑄貨)를 보상하기 위하여 매년 화폐[엔겔스의 인쇄용 원고에 의하면 금—편집자]의 생산 또는 구입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그만큼 사회적 생산의 범위를 삭감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는 유통수단으로서, 일부는 퇴장화폐로서 기능하는 화폐가치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이 일단 존재하자마자 즉 취득되자마자 그것은 노동력, 생산된 생산수단 및 부의 자연적 원천들과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 생산요소들로 전화되며 타인민들과 교환됨으로써 생산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화폐가 이 경우에 종전과 다름없이 세계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회전기간의 길이에 따라 생산자본을 운동시키기에 필요한 화폐자본의 분량은 증감한다. 또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으로의 회전기간의 분할은 화폐형태로 잠재하는 또는 정지하는 자본의 증가를 조건짓는다.

회전기간이 노동기간의 길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 그것은 기타의 조건들이 동등하다면 생산과정의 물질적 본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고 이 생산과정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보다 장기간의 조작(操作)들의 확대로 말미암아, 보다 장기간에 걸친 보다 다량의 화폐자본의 전대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생산은 개개의 자본가가 화폐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의존한다. 이 한계는 신용제도와 또 그것과 관련된 회사 예컨대 주식회사에 의하여 타파된다. 그렇기 때

문에 화폐시장에서의 교란(攪亂)은 그러한 기업들의 활동을 정지시키는데 이 기업들 자체는 이번에는 화폐시장에서 교란을 야기한다.

사회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유용효과로서의 생산물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끌어내는 그러한 조작들이, 연간에 부단히 또는 여러 차례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러한 생산부문에 손해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기준(基準)이 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나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로 노동기간이 비교적 짧은 생산부문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생산물을 제공하지 않고 생산물을 끌어내는 것은 단기간에 불과할 것이지만, 노동기간이 긴 생산부문들은 생산물을 제공하기 전에 장기간 계속하여 생산물을 끌어낸다. 따라서 이 사정은 해당 노동과정의 물적 제조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의 사회적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화폐자본은 사회적 생산에서는 없어진다. 사회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각이한 생산부문에 분배한다. 생산자들은 아마도 지도서(指圖書)를 받고 이것으로 사회적 소비저장 중에서 그들의 노동기간에 해당하는 분량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도서는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유통하지 않는다.

요컨대 화폐자본의 필요가 노동기간의 길이에서 발생하는 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화폐라는 것은 매 개별적 자본이(신용은 도외시하고)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자본주의적 생산,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의 본질에 유래한다. 둘째로는 필요한 전대화폐액의 크기와 그 화폐액이 전대되는 기간의 길이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부단히 사회에서 끌려나가게 되고 이 기간에 화폐로 재전화될 수 있는 생산물이 사회에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전대되어야 할 자본이 화폐형태로서 전대되지 않을 수 없다는 첫째 사정은 이 화폐 자체의 형태가 어떠한 간에 즉 그것이 금속화폐이든, 신용화폐이든, 가치기호 기타 무엇이든 간에 제거되지 않는다. 둘째 사정은, 어떠한 화폐수단에 의하여 또는 어떠한 생산형태하에서 어떠한 등가물도 유통에 도로 투입되지 않고 노동과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이 끌려나가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제19장³⁵⁾ 대상에 관한 종전의 제서술

제1절 중농주의자

계네의 『경제표 (Tableau economique)』는 가치로 보아 일정한 국민적 생산의 연생산물이 기타의 사정들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그 단순재생산 즉 종전의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통에 의하여 분배되는가 하는 것을 대강 보여주고 있다. 적절하게도 전년도의 수확이 생산기간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무수한 개별적 유통행위들은 처음부터 그것들의, 성격상 사회적인 대량운동으로서—사회의, 기능상 규정되어 있는, 큰 경제적 계급간의 유통으로서 총괄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총생산물의 일부가 소비대상으로서의 총생산물 중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난 해의 노동의 새로운 결과인데 그것이 동시에 같은 현물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구자본가치의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통하지 않고 그것의 생산자인 차지농업가계급의 수중에 남아서 거기에서 자본으로서의 자체의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계네는 연생산물의 이 불변자본부분에다가 당치 않는 요소들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농업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연간 노동의 유일한 투하분야라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투하분야라는 그의 시야의 제한성의 덕택으로 도리어 요점을 파악하고 있다. 경제적 재생산과정은 그것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은 여하간에 이 영역(농업)에서는 언제나 자연적 재생산과정과 엉켜 있다. 자연적 재생산과정의 일목요연한 제조건은 경제적 재생산과정의 제조건을 명료하게 하여 주며, 오직 유통의 요술 때문에만 발생하는 사고(思考)의 혼란을 제거한다.

학설체계의 상표(商標)가 다른 물품의 상표와 구별되는 점은 개중에도

35) 여기에서 제8고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구매자뿐만 아니라 왕왕 판매자까지도 만착(瞞着)한다는 것이다. 께네 자신과 그의 직제자들은 그들의 봉건적 간판을 믿고 있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자 선생님들도 그렇다. 그러나 사실상 중농주의적 체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초의 체계적 파악이다. 산업자본의 대표자인 차지농업가계급이 전체 경제적 운동을 지도한다. 농경은 자본주의적으로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기업으로서 대규모로 운영되며, 토지의 직접적 경작자는 고용노동자이다. 생산은 사용품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도 조성하는데, 생산의 추진적 동기는 잉여가치—이것의 발생 장소는 생산분야이지 유통분야가 아니다—의 획득이다.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사회적 재생산과정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는 세 계급 중에서 생산적 노동의 직접적 착취자이며 잉여가치의 생산자인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잉여가치의 단순한 취득자와 구별된다.

중농주의적 체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이미 그 전성기에 일방으로는 령계와 매블리의, 타방으로는 자유로운 소토지소유의 옹호자들의 반대를 환기하였다.

재생산과정의 분석에 있어서의 A 스미드의 후퇴가³⁶⁾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께네의 정당한 분석에 부질없이 가공을 하여 예컨대 께네의 시초의 전대(avances primitives)와 연년의 전대(avances annuelles)를 고정(fixes)자본과 유동(circulirendes)자본³⁷⁾으로 일반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혀 중농주의적 오류에 도로 빠지고 있는 그 때문이다. 예컨대 차지농업가가 다른 어떤 종류의 자본가보다도 큰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등한 자본으로서 차지농업가의 자본보다도 더 큰 양의 생산적 노동을 운동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의 노동비복(婢僕)뿐만 아니라 그의 역축(役畜)도 생산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노동비복에게는 기분 좋은 인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경에서는 인간과 더불어 자연도 노동한다. 그리고 자연

36) 『자본론』 제1권, 제2판, 612페이지, 주 32. [조선어 역, 제1권, 제2분책, 298 페이지].

의 노동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의 생산물은 가장 비용이 드는 노동자의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가치를 갖는다. 농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작(操作)들은 자연의 풍요성(豐饒性)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그것도 있기는 하지만—인간에 가장 유용한 식물(植物)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 같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들판이 왕왕 가장 잘 경작된 포도원이나 곡물밭보다 못하지 않게 많은 식물을 제공한다. 파종과 경운(耕耘)은 왕왕 자연의 능동적 풍요성을 복돋운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조정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농경자의 모든 노동이 다 수행된 후에도 언제나 이 자연이 해야 할 많은 일이 남는다. 그러므로 농경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역축(!)은 매뉴팩처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소비와, 또는 그들을 취업시키는 자본 및 자본가의 이윤과 동등한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재생산한다. 그들은 차지농업가의 자본과 그의 전체 이윤 이상으로 더 토지소유자의 지대를 규칙적으로 재생산한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차지농업가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한 자연 제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자연 제력의 추정(推定)되는 정도 여하에 따라,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추정되는 토지비옥도 여하에 따라 크기도 하고 또는 적기도 하다. 지대는 인간의 손에 의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제 또는 보상한 후에 남는 자연의 산물이다. 그것은 총생산물의 4분의 1보다 적은 일은 드물고 왕왕 3분의 1보다 많다. 매뉴팩처에서 총용되는 동등한 양의 생산적 노동으로서 이처럼 큰 재생산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뉴팩처에서는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재생산은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는 능동적 요인들의 힘에 비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농경에 투하되는 자본은 매뉴팩처에 총용되는 동등한 크기의 어떤 자본보다도 보다 다량의 생산적 노동을 운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사용되는 생산적 노동의 분량에 비례하여 한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생산물에

-
- 37) 이 점에서도 몇몇 중농주의자들, 그중에도 튀르고는 스미드를 위하여 길을 닦아 주었다. 튀르고는 이미 께네 기타의 중농주의자들보다도 빈번히 전대(avances)라는 말 대신에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보다도 더 매뉴팩처업자의 전대 또는 자본(capitaux)을 차지농업가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 매뉴팩처 기업가들—les entrepreneurs-manufacturiers)과 마찬가지로 그들(차지농업가들—les fermiers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들)도 자본을 상환 받는 이상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운운”(튀르고 『전집』 데르 편, 파리, 1844년, 제1권, 40페이지).

대하여, 그 주민의 현실적 부와 소득에 대하여 매뉴팩처에 총용되는 자본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첨가한다”(제2편, 제5장, 242페이지)[A. 스미드 「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307~308페이지 참조].

A. 스미드는 제2편 제1장에서 말한다.

“종자의 전체 가치도 또한 고유한 의미에서 고정자본이다”(A. 스미드 「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3페이지 참조).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본=자본가치이며, 자본가치는 고정적 형태로 존재한다.

“종자는 토지와 곡식창고 사이를 왔다갔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통하지 않는다. 차지농업가가 자기의 이윤을 얻는 것은 종자를 판매함으로써가 아니고 종자를 증식시킴으로써이다”(186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판, 233페이지).

이 경우에 편협성은 께네는 이미 불변자본가치의, 갱신된 형태로서의 재현을 재생산과정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는데 스미드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유동자본과 고정자본 사이에 그 자신이 설정한 차이에 대한 하나의, 그것도 그릇된 예증을 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점에 있다. 스미드가 시초의 전대와 연년의 전대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번역함으로써 자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농업적 총용분야에 대한 중농주의자들의 특별한 고려(顧慮)에 구애되지 않고 일반화한 점에 진보가 있으며, 고정적 및 유동적이라는 말을 결정적 구별로서 파악하고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퇴보가 있다.

제2절 아담 스미드

1) 스미드의 일반적 관점

A. 스미드는 제1편 제6장 42페이지에서 말한다.

“어떤 사회에서나 매개 상품의 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노임, 이윤, 지대) 중의 어느 하나로 또는 세 개 전체로 분해되며, 발전된 어떤 사회에서나 이 세 부분은 모두 다소간에 거의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의 구성부분으로서 들어간다”³⁸⁾ [동상서, 러시아어 판, 47페이지].

또는 63페이지에서 다시 말하기를

“노임, 이윤 및 지대는 모든 교환가치의 세 근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의 세 근원이다.”

우리는 후에 다시 상품들의 가격의 또는 모든 교환가치의 구성부분에 관한 A. 스미드의 학설을 상세히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한다.

“이것은 따로따로 본 특수한 각개 상품에 대하여 타당하므로 매개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전체 연생산물을 이루는 모든 상품들의 총체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생산물의 총가액 또는 교환가치는 그와 같은 세 부분으로 분해되며, 나라의 각이한 주민들 간에서 그들의 노동의 임금으로서 또는

38) 거의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이라는 말에 관하여 독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을 A. 스미드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다음에 인용하자. 예컨대 바닷고기의 가격에는 지대는 들어가지 않고 노임과 이윤만이 들어가며, 스코틀랜드의 자갈(Scotch pebbles) 가격에는 노임만이 들어간다. 즉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방들에서는 빈민들이 해변에서 스코틀랜드의 자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형형색색의 자갈을 수집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조석업자(彫石業者)가 그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그들의 노임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니, 왜냐하면 지대나 이윤은 어느 것이나 그 가격의 어떤 부분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본의 이윤으로서 또는 그들의 토지소유의 지대로서 분배되지 않으면 안된다”(제2편, 제2장, 190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38페이지).

A. 스미드는 그와 같이 따로따로 본 모든 상품들의 가격과 매개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생산물의……총가격 또는 교환가치를 고용노동자, 자본가 및 토지소유자를 위한 소득의 3원천인 노임, 이윤 및 지대로 분해한 다음에, 그는 실로 우회하여 제4요소 즉 자본의 요소를 밀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총소득과 순소득을 구별함으로써 수행한다.

“어떤 큰 나라의 전체 주민의 총소득은 그들의 노동의 총 연생산물을 포괄하며, 순소득은 첫째로 그들의 노동의 고정자본 둘째로 그들의 유동자본의 유지비를 공제한 후에 그들의 처분에 남는 부분,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그들의 자본을 침식하지 않고 그들의 소비저장에 넣을 수 있는 부분 즉 그들의 생계와 위안과 오락에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포괄한다. 그들의 현실적 부도 역시 그들의 총소득에가 아니라 그들의 순소득에 비례한다”.(동상서, 190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39페이지 참조]

이에 대한 지적—

1) A. 스미드는 여기에서 명백히 단순재생산만을 취급하고 있고 확대재생산 또는 축적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그는 기능자본의 유지(maintaining)를 위한 지출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 순소득은 연생산물—사회의 연생산물이든 개별적 자본가의 연생산물이든 간에—중 소비фон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동등하나 이 폰드의 규모는 기능자본을 침식(encroach upon capital)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별적 생산물 및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의 일부분은 노임으로나 이윤 또는 지대로나 분해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해된다.

2) A. 스미드는 총소득(gross revenue)과 순소득(net revenue)의 구별이라는 말공부에 의하여 자기자신의 이론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개별적 자본가나 전체 자본가계급 또는 소위 국민은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 대신에 상품생산물을 얻는데, 생산물 자체의 비례적 부분들로 표시될 수 있는 이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일방으로는 소비된 자본가치를 보상하고 따라서 소득을 더욱 글자 그대로 한다면 수입(revenue—이 말은 *revenir*의

분사(分詞)로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을, 그러나 주의하라, 자본수입 또는 자본소득을 이룬다. 타방으로 그것의 가치는 나라의 각이한 주민들 간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으로서 또는 그들의 자본의 이윤으로서 또는 그들의 토지소유의 지대로서 분배되는 가치구성부분들—일상생활에서 소득이라고 이해되고 있는—을 이룬다. 따라서 전체 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이 개별적 자본가를 위한 것이든 전체 나라를 위한 것이든 간에 그 누구를 위한 소득을, 그러나 일방으로는 자본소득을 타방으로는 이와는 다른 수입을 이룬다. 그와 같이 하여 상품가치를 그것의 구성부분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경원되었던 것이 뒷문을 통하여 즉 이중적 의미가 있는 수입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다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으로서 취득될 수 있는 것은 생산물 중에 이미 존재하는 그것의 가치구성부분들뿐이다. 자본의 수입으로서 들어와야 한다면 자본은 미리 지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A. 스미드는 또 말한다.

“보통의 최저 이윤율일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자본투하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손실들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보다 언제나 약간 많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이 초과분만이 순이윤을 표시한다. (어떠한 자본가가 이윤이란 필요한 자본투하라고 이해하겠는가?) 총이윤이라고 불리는 것은 흔히 이 초과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류되는 부분도 포함한다”(제1편, 제9장, 72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87페이지].

그러나 이것은 총이윤의 일부로서 고찰되고 있는 잉여가치의 일부는 생산을 위한 보험(保險)фон드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보험фон드를 조성하는 것은 잉여노동의 일부인데, 잉여노동은 그 한에 있어서는 직접자본을, 즉 재생산을 위하여 예정된 фон드를 생산한다. 고정자본 등등의 유지비에 관하여 말한다면(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보라) 소비된 고정자본의 새로운 고정자본에 의한 보상은 결코 새로운 자본지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자본가치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갱신에 불과하다. 그러나 A. 스미드가 역시 유지비에 넣고 있는 고정자본의 보수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비용은 전대자본의 가격의 일부이다. 자본가는 자본의 이 일부를 한꺼번에 투하할 필요는 없으며, 그

것을 자본의 기능기간 중에 다만 점차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 투하하며 또 이미 획득한 이윤 중에서 투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정은 이 이윤의 원천을 조금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이윤의 원천인 가치구성부분은 노동자가 보험фон드를 위해서도 또 보수фон드를 위해서도 잉여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다음에 A 스미드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순소득 즉 특수한 의미에서의 소득에서 전체 고정자본이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유동자본 중, 고정자본의 유지 및 보수와 함께 그것의 갱신에 필요한 부분도 전부 제외되어야 하며, 사실상 소비фон드로 예정된 현물형태로 있지 않는 전체 자본이 제외되어야 한다.

“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한 전체 지출은 명백히 사회의 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용한 기계와 공구……의 보수에 필요한 원료나, 이 원료를 소기의 모습으로 전화하기에 필요한 노동의 생산물은 이 소득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물론 이 노동의 가격은 소득의 일부를 이룰 수 있으니, 왜냐하면 그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의 전체 가치를 그들의 직접적 소비저장에 투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나(즉 이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이나) 생산물이나(이 노동이 체화되는 것이나) 이 소비저장으로 들어간다. 즉 그 가격은 노동자들의 소비저장으로, 생산물은 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덕택으로 그 생계와 위안과 오락이 증가되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저장으로 들어간다”(제2편, 제2장, 190, 191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39페이지).

A 스미드는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소비수단의 직접적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의 극히 중요한 구별에 봉착한다. 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노임 총액 즉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 부분의 가치와 동등한 한 구성부분을 포함한다. 이 가치부분은 물체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수단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그들이 노임으로서 받은 화폐는 그들에게는 소득을 이루지만 그들의 노동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소비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생산물 그 자체는 연생산물 중 오직 순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소비фон드를 제공할 사명을 가진 부분의 아무 요소도 이루지 않는다. A 스미드는 여기에서 노임에 대

하여 타당한 것은 또한 생산수단의 가치 중, 이윤과 지대라는 범주하에서 잉여가치로서 산업자본가의(제1번으로는) 소득을 이루는 구성부분에 대하여도 타당하다는 것을 부언할 것을 잊고 있다. 이 가치구성부분들도 생산수단으로서 즉 소비될 수 없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화폐화된 후에야 비로소 제2종류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소비수단 중에서 그것들의 가격에 해당하는 분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의 소유자들의 개인적 소비폰드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니만큼 더구나 A 스미드는 연년 생산되는 생산수단의 가치 중, 이 생산분야내에서 기능하는 생산수단—생산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 따라서 여기에서 충용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부분은 그 불변자본이 존재하는 현물형태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의 자본으로서의 기능 때문에도 소득을 이루는 모든 가치구성부분에서 절대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제2종류의 노동자 즉 직접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노동자에 관하여는 A 스미드의 제규정이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즉 그는 말하기를 이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격과 생산물 양자가 다같이 직접적 소비폰드로 들어간다(go to).

“가격(즉 노임으로서 받는 화폐)은 노동자들의 소비폰드로 그리고 생산물은 그 생계와 위안과 오락이 이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증가되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폰드(that of other people)로” {들어간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의 노동의 가격 즉 그의 노임으로 지불되는 화폐를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는 소비수단을 구매함으로써 이 화폐를 실현한다. 이 소비수단의 일부는 그 자신이 생산한 상품종류일 수도 있다. 타방으로는 그 자신의 생산물이 노동착취자의 소비로만 들어가는 그런 상품종류일 수도 있다.

A 스미드는 그와 같이 고정자본을 전적으로 한 나라의 순소득에서 제외한 다음에 계속하여 말한다.

“그와 같이 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한 전체 지출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유동자본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유동자본을 이루는 4부분 즉 화폐, 생활수단, 원료 및 완성생산물 중 나중 3자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유동자본으로부터 끌려나와서, 사회의 고정자본으로든가 또는 직접적 소비에 예정된 저장으로든가로 옮겨진다. 소비될 수 있는 물품 중 전자의(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남김없이 후자로(직접적 소비에 예정된 저장으로) 들어가며, 사회의 순소득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유동자본의 이 3부분의 유지는 연생산물 중 고정자본의 유지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다른 어떤 부분만큼이라도 사회의 순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제2편, 제2장, 192페이지)[동상서, 240페이지].

유동자본 중, 생산수단의 생산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 부분은 소비수단의 생산으로 들어간다. 즉 연생산물 중 사회의 소비фон드를 이를 사명을 가진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이것은 동의반복(同義反復)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유동자본은 이 점에서 한 개인의 유동자본과 다르다. 한 개인의 유동자본은 그의 순소득에서 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결코 그 일부를 이룰 수 없다. 그의 순소득은 오직 그의 이윤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매 개인의 유동자본은 그가 속하는 사회의 유동자본의 일부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결코 무조건적으로 사회의 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 비록 소매상인의 매점에 있는 전체 상품들은 결코 그 자신의 직접적 소비에 예정된 저장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즉 다른 원천들에서 얻은 소득에 의하여, 소매상인의 자본도 그들의 자본도 감소시키지 않고 소매상인에게 그 상품들의 가치와 함께 그의 이윤을 규칙적으로 보상하여 주는—의 소비фон드에는 들어갈 수 있다”(동상)[동상서, 러시아어 판, 240~241페이지].

그리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매 개별적 자본가의 고정자본이나 그것의 재생산(기능을 스미드는 잇고 있다) 및 유지에 필요한 유동자본과 마찬가지로 소비수단의 생산에서 기능하는 그의 유동자본도 전부 그의 순소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의 순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윤만이다. 따라서 그의 상품생산물 중 그의 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은 그를 위한 소득을 이루는 가치구성부분으로 분해될 수 없는 것이다.

2) 매 개별적 자본가의 유동자본은 사회의 유동자본의 일부를 이루는데 그것은 매 개별적 고정자본이 사회의 고정자본의 일부를 이루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이다.

3) 사회의 유동자본은 개별적 유동자본의 총액에 불과하지만 매 개별적 자본가의 유동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매 개별적 자본가의 유동자본은 결코 그의 소득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의 유동자본의 일부분(즉 소비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동시에 사회의 소득의 일부를 이룰 수 있으며, 또는 스미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연생산물의 일부만큼 사회의 순소득을 반드시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은 A 스미드가 여기에서 유동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에 의하여 연년 유통에 투입되는, 연년 생산되는 상품자본이다. 그들의 연년의 이 상품생산물 전체는 소비될 수 있는 물품들으로써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의 순소득(노임을 포함한)이 실현 또는 지출되는 фон드를 이룬다. A 스미드는 예로서 소매상인의 매점에 있는 상품을 선택할 대신에 산업자본가들의 상품창고에 쌓여 있는 대량의 생산물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A 스미드가 앞에서는 그가 고정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의 재생산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제는 그가 유동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의 재생산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상의 단편들을 개괄하였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I. 사회적 연생산물은 두 부류로서 이루어진다. 그 제1은 생산수단을 포괄하며, 제2는 소비수단을 포괄한다. 양자는 분리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II. 연생산물 중 생산수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한 가치부분은 이 생산수단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불과하며 따라서 갱신된 형태로 재현하는 자본가치에 불과하다. 제2부분은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 또는 이 생산분야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지불된 노임 총액과 동등하다. 끝으로 제3가치부분은 이 부류의 산업자본가들의 이윤—지대를 포함한—의 원천을 이룬다.

제1구성부분 즉 A 스미드에 의하면 이 제1부류에서 사용되는 전체 개별적 자본들 중의 재생산된 고정자본부분은 개별적 자본가의 것이든 사회의 것이든 간에 그것의 순소득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으며, 결코 그것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결코 소득

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이 점에 한해서는 매 개별적 자본가의 고정자본은 사회의 고정자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생산수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연생산물 중의 다른 가치부분들—따라서 또한 이 생산수단 총량 중의 해당하는 부분들로서 존재하는 가치부분들—은 물론 동시에 이 생산에 참가한 모든 행위자(行爲者)들을 위한 소득을, 즉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과 지대를 이룬다. 그러나 그 가치부분들은 사회를 위하여는 소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이룬다. 비록 사회의 연생산물은 이 사회에 속하는 개별적 자본가들의 생산물 총액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대개는 이미 그것들의 본성으로 보아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따름이며, 그것들 중에서 부득불 소비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새로운 생산의 원료 또는 보조재료로서 복무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그러한 것으로서 즉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그것들의 생산자들의 수중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자들의 수중에서이다. 즉

Ⅲ. 소비수단의 직접적 생산자들인 제2부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서이다. 그것들은 이 자본가들을 위하여 소비수단의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이 자본이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한, 즉 그것이 이 제2부류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임액을 이루지 않는 한)을 보상하는데 이 소비된 자본—이제는 소비수단의 형태로 그 소비수단을 생산한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자본—은 이번에는,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제1부류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실현하는 소비폰드를 이룬다.

A 스미드가 자기의 분석을 여기까지 추진하였더라면 그는 전체 문제를 거의 완전히 해결하였을 것이다. 사실 그는 그 해결의 일보 직전에 있었으니,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의 연 총생산물을 이루는 한 종류의 상품자본(생산수단)의 일정한 가치부분은 물론 그것들의 생산에 종사한 개별적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을 위한 소득을 이루지만, 사회의 소득의 어떤 구성부분도 이루지 않는데, 다른 종류(소비수단)의 가치부분은 물론 그것들의 개별적 소유자들 즉 이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치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득의 일부를 이룰 따름이라고.

그러나 상술한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로, 비록 사회적 자본은 개별적 자본들의 총액과 동등할 따름이며,

따라서 또 사회의 연상품생산물(또는 상품자본)은 이 개별적 자본들의 상품생산물의 총액과 동등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매 개별적 상품자본에 타당한 상품가치의 그 구성부분들로의 분해는 전체 사회의 상품자본에도 타당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종국적 결과에 있어서는 실제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부분들이 개별적 자본의 관점에서 취하는 현상형태는 그것들이 사회적 총재생산과정에서 취하는 현상형태와 다르다.

둘째로, 단순재생산의 토대 위에서까지도 노임(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변자본가치의 생산도 수행된다. 노동일은 비록 두 부분으로써 즉 노동자가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사실상은 그의 노동력의 구입을 위한 동가를 생산하는 제1부분과 그가 잉여가치(이윤, 지대 등등)를 생산하는 제2부분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즉 생산수단의 재생산에 지출되는 나날의 노동—이것의 가치는 노임과 잉여가치로 분할된다—은 소비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불변자본부분을 보상하는 새로운 생산수단에서 실현된다.

주요 곤란들은 이미 상술한 바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었으나 그것들은 축적의 고찰에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재생산의 고찰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연생산물의 운동과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그것의 재생산이 문제로 될 때에 A 스미드에 있어서나(제2편), 그 이전의 께네에 있어서나(『경제표』) 단순재생산이 출발점으로 되고 있는 연유이다.

2) 스미드에 의한 교환가치의 $v+m$ 으로의 분해

A 스미드의 도그마에 의하면 매 개별적 상품 따라서 사회의 연생산물을 이루는 전체로서 본 모든 상품(그는 어디서나 정당하게도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의 가격 또는 교환가치(exchangeable value)는 노임, 이윤 및 지대라는 3구성부분들(component parts)로써 구성 또는 분해된다(resolves itself into). 이 도그마는, 상품가치= $v+m$ 즉 상품가치는 전대된 가변자본의 가치에 잉여가치를 가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으로 귀착될 수 있다. 이와같이 이윤과 지대를 우리가 m 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통된 단위로 귀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다음 인용문이 보여 주는 바와 같

이, 명백히 A. 스미드의 용인하는 바이다.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우선 모든 부차적인 사항들, 따라서 특히 상품가치가 오직 우리가 $v+m$ 으로서 표시하는 요소들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그 도그마로부터의 일체의 외관적인 또는 현실적인 배리(背離)들은 무시한다.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들이 재료에 첨가하는 가치는…두 부분으로 분해되는바 그중 한 부분은 그들의 노임을 지불하고 다른 한 부분은 그들의 고용주가 재료와 노임에 전대한 전체 자본에 대한 그의 이윤을 지불한다”(제1편, 제6장, 41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46페이지]. “고용주는 매뉴팩처적 노동자에게 그의 노임을 전대하지만 사실상 고용주에게 조금도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노임의 가치는 통례로 노동자의 노동이 첨가된 대상의 증대된 가치 중에 포함되어 이윤과 함께 그의 수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제2편, 제3장, 221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78페이지]. 자본(stock) 중에서 “투하되는 부분은…그{자본가}를 위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그들{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을 이룬다”(제2편, 제3장, 223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80페이지].

A. 스미드는 바로 위에서 인용한 장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다.

“매개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전체 연생산물은…자연(naturally)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그중 한 부분—이것은 흔히 최대부분이다—은 우선 자본을 보상하고 자본으로부터 떼내어진 생활수단, 원료 및 완성생산물을 갹신할 사명을 갖는다. 다른 부분은 이 자본의 소유자를 위하여 그의 자본이윤으로서이든,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의 토지소유의 치대로서이든, 소득을 이를 사명을 갖는다”(222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79~280페이지].

앞서 A. 스미드에게서 들은 바와 같이 자본 중에서 동시에 어떤 사람을 위한 소득을 이루는 것은 다만 한 부분 즉 생산적 노동의 구입에 투하된 부분만이다. 이 부분—가변자본—은 우선 고용주의 수중에서 또 고용주를 위하여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생산적 노동자 자신을 위한 소득을 이룬다. 자본가는 자기 자본가치의 일부를 노동력으로 전화하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가변자본으로 전화한다. 이러한 전화에 의해서만 자본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총자본은 산업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노동자—노동력의 판매자—는 노임의 형태로 노동력의 가치를 받는다. 그의 수중에서는 노동력은 오직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그것의 판매에 의하여 그가 생활하는 상품, 따라서 그의 소득의 유일한 원천을 이루는 상품이다. 노동력은 가변자본으로서 오직 그것의 구매자 즉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기능하며 그 구매가격을 자본가가 전대하는 그것은 오직 외관상으로 만이니,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는 이미 앞의 노동자에 의하여 자본가에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A. 스미드는 그와 같이 매뉴팩처에서의 생산물의 가치= $v+m$ (여기에서 m =자본가의 이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말하기를, 농업에서는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소비와, 그들을 취업시키는 {가변}자본 및 자본가의 이윤과 동등한 가치의 재생산 외에, 차지농업가의 자본과 그의 전체 이윤 외에, 또한 규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지대를 재생산한다”(제2부, 제5장, 243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307페이지].

지대가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지대는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지농업가의 수중에 즉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있지 않을 수 없다. 지대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 소득을 이루기 전에 생산물의 한 가치구성부분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A. 스미드 자신에 있어서는 지대도 이윤도 생산적 노동자가 동시에 자기자신의 노임과 함께 즉 가변자본의 가치와 함께 부단히 재생산하는 잉여가치의 구성부분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대도 이윤도 잉여가치 m 의 부분들이며, 그러므로써 A. 스미드에 있어서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v+m$ 으로 분해된다.

모든 상품(따라서 또 연상품생산물)의 가격은 노임+이윤+지대로 분해된다는 도그마는 스미드의 저작 그것에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심오한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매개 상품 따라서 또 사회의 연상품생산물의 가치는 $v+m$ 즉 노동력에 투하되어 노동자들에 의하여 부단히 재생산되는 자본 가치에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첨가되는 잉여가치를 가한 것과 동등한 형태를 취한다.

A. 스미드의 이 최종 결론은 동시에—더 아래를 보라—상품가치가 분해

될 수 있는 구성부분들에 대한 그의 일면적 분석의 원천을 밝혀준다. 그러나 이 구성부분들이 동시에 생산에서 기능하는 각이한 계급들을 위한 각이한 소득원천을 이룬다는 사정은 이 매개 구성부분들의 양적 규정이나 그것들의 가치 총액의 한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A. 스미드가

“노임, 이윤 및 지대는 모든 소득과 또한 모든 교환가치의 3근원이며 기타의 모든 소득은 결국은 이 근원의 하나로부터 파생한다”(제1편, 제6장, 48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49페이지].

고 말할 때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착오가 겹쳐 있다.

1) 노동을 가지고이든 아니든 간에 재생산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모든 사회성원들은 연상품생산물에 대한 그들의 몫 즉 그들의 소비수단을 우선 생산물이 제1차적으로 귀속되는 계급들—생산적 노동자들, 산업자본가들 및 토지소유자들—의 수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그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노임(생산적 노동자의), 이윤 및 지대에서 파생한 것이며 따라서 이 근원적 소득에 대하여 파생적 소득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타방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파생적 소득의 취득자들은 왕, 승려, 교수, 매음부, 병사 등등으로서의 자기들의 사회적 기능에 의하여 이 소득을 얻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기능들을 자기들의 소득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여기에서 A. 스미드의 엉터리 없는 착오는 그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그는 상품의 가치구성 성분들과 이것들에 체화되어 있는 새로 창조된 가치 총액을 정당히 규정하고, 이어서 이 구성부분들이 어떻게 그와 동수의 각이한 소득 원천들을 이루는가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나서,³⁹⁾ 그와 같이 하여 가치로부터 소득을 끌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역행을 하여—그런데 이것이 그에 있어서는 지배적인 생각이다—소득들을 모든 교환가치의 구성부분들(component parts)로부터 모든 교

39) 이 구절은 여기에서의 관련으로 보아서는 전후의 서술과 모순되는 듯하지만 원고에 있는 글자 그대로 제시해 둔다. 이 외관상 모순은 이하 제4항 A. 스미드에 있어서의 자본과 소득에서 해결된다—F. 엥겔스

환가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속류경제학에게 문호를 널리 개방하였다(우리의 로세르를 보라).

3) 불변자본부분

그러면 우리는 A 스미드가 어떻게 요술을 부려 상품가치로부터 자본의 불변가치부분을 떼어버리려고 하는가를 보자.

예컨대 곡물의 가격에 있어서 그것의 한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지대로 지불되는 것이다. 이 가치구성부분의 기원(起源)은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어 지대의 형태로 그의 소득을 이룬다는 사정과는 관계가 없으니, 이는 다른 가치구성부분들의 기원도 그 부분들이 이윤과 노임으로서 소득 원천들을 이룬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한 부분은 곡물생산에 사용된 노동자(및 역축(!)이라고 그는 첨가한다)의 노임 즉 생계에 충당되는 것이며 제3부분은 차지농업가의 이윤으로 지불되는 것이다. 이 3부분들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종국적으로나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같이 보인다.”⁴⁰⁾ (seem, —실제 그렇게 보인다).

이 전체 가격 즉 그것의 양적 규정은 세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것의 분배에는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다.

“차지농업가의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그의 역축과 기타 농구의 마멸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4부분이 필요할 것같이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농구이든 그것의 가격은 예컨대 역마(役馬)의 가격은 그 자체가 다시 상술한 3부분—역마가 사유되는 토지의 지대, 그것을 사육하는 노동 및 이 양자 즉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을 전대하는 차지농업가의 이윤—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곡물의 가격은 말의 가격과

40) 아담은 예를 선택함에 있어서 특히 불행하였다는 것은 여기에서 전혀 도외시한다. 곡물의 가치가 노임, 이윤 및 지대로 분해되는 것은 오직 역축에 의하여 소비되는 사료가 역축의 임금으로서 표시되고, 역축이 고용노동자로서 표시되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또 고용노동자가 역축으로서 표시되기 때문이다 (제2고로부터의 추가)

그 유지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가격은 언제나 직접적으로나 또는 종국적으로 이 3부분들—지대, 노동(그가 의미하는 바는 노임) 및 이윤으로 분해된다(제1편, 제6장, 42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47페이지].

이상이 A. 스미드가 자기의 경탄할만한 교리의 논거로서 제시한 글자 그대로의 전부이다. 그의 증명은 단순히 동일한 주장의 반복에 귀착된다. 그는 예컨대 곡물의 가격은 $v+m$ 으로써 구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곡물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으로써도, 즉 차지농업가가 노동력에 투하된 것이 아닌 자본가치로써도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모든 생산수단 그 자체의 가격도 곡물가격과 마찬가지로 역시 $v+m$ 으로 나누어진다고. 다만 A. 스미드는 다음과 같이 첨가할 것을 잊고 있다. 그 외에 이 생산수단 그 자체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으로라고. 그는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또 여기에서 제3의 생산부문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상품의 전체 가격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국적으로(ultimately) $v+m$ 으로 분해된다는 주장이 공허한 둔사(遁辭)가 아니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증명되는 경우만일 것이다. 즉 그것의 가격이 직접 c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 $v+m$ 으로 분해되는 상품생산물이 결국은 그 소비된 생산수단을 전부 보상하며, 그 자체는 전자의 상품생산물과는 반대로 다만 가변자본 즉 노동력에만 지출되는 자본의 투하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그것이다. 그 경우에는 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격은 직접 $v+m$ 과 동등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격 $c+v+m$ —여기에서는 c 는 불변자본부분으로서 나타난다—도 결국 $v+m$ 으로 분해될 수 있다. A. 스미드 자신은 스코틀랜드의 자갈 채집자들에 관한 예를 들음으로써 그러한 증명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채집자들은 스미드에 의하면 1) 어떤 종류의 잉여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다만 그들 자신의 노임만을 생산하며, 2) 어떤 생산수단도 사용하지 않는다(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잔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광주리, 자루 기타의 용기의 형태로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A. 스미드는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자기자신의 학설을 뒤집어엮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순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모순들의 원천은 바로 그의 과학적 출발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으로 전환된 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큰 가치를 생산한다. 어떻게 해서나? A 스미드는 말한다. 노동자들이 생산과정 중에 그들이 가공하는 물건들에 대하여 하나의 가치를, 즉 그들 자신의 구매가격의 등가 외에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용자에게 속하는 잉여가치(이윤 및 지대)를 이루는 하나의 가치를 새겨 넣음으로써 라고,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들이 하며, 또 할 수 있는 전부이다. 1일의 산업노동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1년간에 운동시켜지는 노동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연가치의 총량은 $v+m$ 으로 즉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구매가격에 지출된 자본가치를 보상하는 등가와 그들이 그 이상으로 그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추가적 가치로 분할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상품의 이 두 가치요소는 둘 다 재생산에 참가하는 각이한 계급들을 위한 소득원천을 이룬다. 즉 전자는 노동자의 소득인 노임을, 후자는 산업자본가가 일부는 이윤의 형태로 자신을 위하여 보류하고, 다른 한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소득인 지대로서 양도하는 잉여가치를 이룬다. 따라서 새로 창조된 연가치는 $v+m$ 이외에 다른 어떤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가치구성부분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재생산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연년의 전체 노동량은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잉여가치의 창조에 필요한 노동으로 분해되므로, 노동력에 투하되지 않은 자본가치의 생산을 위한 노동은 대체 어디서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태는 다음과 같다.

1) A 스미드는 상품의 가치를 고용노동자가 노동대상에 첨가하는(adds)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한다. 그는 글자 그대로 재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는 그 자체가 이미 노동생산물을 가공하는 매뉴팩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사태는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어떤 물건에 첨가하는(이 첨가하는(adds)은 아담의 표현이다) 가치는 가치가 첨가되는 대상이 이 첨가.이전에 이미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여 노동자는 상품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 새로 창조된 가치의 일부분은 A 스미드에 의하면 그의 노임의 등가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그의 노임의 가치크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의 노임과 동등한

가치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노임이 크나 작으나에 따라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양의 노동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타방으로 노동자는 이와같이 하여 그어진 한계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그를 고용하는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이루는 노동을 첨가한다. 이 잉여가치가 전부 자본가의 수중에 남느냐 또는 일부는 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느냐 하는 것은, 고용노동자에 의하여 첨가되는 잉여가치의 질적(그것이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라는) 규정도 양적(크기의) 규정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생산물가치의 기타의 각 부분과 다른 없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다른 점은 노동자가 그것에 대하여 사전 사후를 통하여 아무 동가도 받지 않았으며, 이 가치는 도리어 자본가에 의하여 동가없이 취득된다는 점이다. 상품의 총가치는 노동자가 그것의 생산에서 지출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 총가치의 일부분은 그것이 노임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것, 즉 노임의 등가라는 것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부분 즉 잉여가치도 필연적으로 역시 규정되어 있다. 즉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노임의 등가인 가치부분을 뺀 것과 동등하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새로 창조된 가치 중,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노임의 등가와 동등한 가치부분을 넘는 초과분과 동등하다.

2) 개개의 산업기업소에서 매 개별적 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산부문 전체의 연생산물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 개별적인 생산적 노동자의 일(日)노동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생산적 노동계급에 의하여 유출되는 연노동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 이 연노동은 지출된 연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총가치를 연생산물에 고정시키며(스미드의 표현) 이 총가치는 두 부분으로, 즉 연노동 중 노동계급이 그들의 연임금의 등가—사실은 이 임금 자체—를 창조하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 부분과,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추가적 연노동에 의하여 규정되는 다른 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연생산물에 포함되는 새로 창조된 연가치는 두 요소로써, 즉 노동계급이 받는 연임금의 등가와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연잉여가치로써 구성된다. 그런데 연임금은 노동계급의 소득을 이루며 연잉여가치액은 자본가계급의 소득을 이룬다. 따라서 양자는 연소비폰드에 대한 상대적 몫들을 표시하며(그리고 이 관점은 단순재생산의 서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또 그 소비폰드에서 실현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불변

자본가치를 위한, 즉 생산수단의 형태로 기능하는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여지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A. 스미드는 그의 저술의 서문에서 상품 가치 중 소득으로서 기능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회적 소비폰드로 예정된 연노동생산물과 일치한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국민 일반의 소득이란 무엇이었던가 또는…그들의 연(年)소비를 제공한(supplied) 폰드의 본성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최초의 이 4편의 목적이다(12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5페이지].

그리고 서론의 바로 첫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매개 국민의 연(年)노동은 그 국민이 그 연간에 소비하는 모든 생활필수품과 편리품을 그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초적 폰드인바, 그것들은 언제나 이 노동의 직접적 생산물이거나 또는 이 생산물들과 교환으로 타국민들로부터 구득한 것들이다(11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4페이지].

A. 스미드의 첫째 오류는 그가 연생산물가치와 새로 창조된 연가치를 동일시하고 있는 데 있다. 후자는 다만 그 연도의 노동의 생산물이다. 전자는 그 외에 연 생산물의 생산에 소비되었으나, 전년도 그리고 일부는 그보다도 이전 연도들에 생산된 모든 가치요소들을 포함한다. 즉 전자는 생산수단들을 포함하는데 이 생산수단들의 가치는 재현될 따름이며 이것들은 그 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연도에 지출된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것도 아니며 재생산된 것도 아니다. 각이한 두 사물을 이와같이 혼동함으로써 A. 스미드는 연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을 내버리고 있다. 이 혼동 자체는 그의 근본 견해상의 다른 또 하나의 오류의 결과이다. 즉 그는 노동 자체의 이중적 성격—노동력의 지출로서 가치를 창조하는 한에서의 노동과 구체적 유용노동으로서 사용대상(사용가치)을 창조하는 한에서의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연년 생산되는 상품 총액 따라서 총 연생산물은 그 연도에 작용한 유용노동의 생산물이다. 이 모든 상품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충용된 노동이 각종 유용노동들의 다양하게 분기된 체계로 지출된 결과이다. 오직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들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그것들의 총가치 중에 새로운 현물형태로 재현

되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연생산물은 연간에 지출된 유통노동의 결과이나, 그러나 연간에 새로 창조되는 것은 연생산물가치 (Produktenwert)의 일부만이며, 이 부분은 바로 그 연간에 유출된 노동의 총액을 표시하는 연간의 새로 창조된 가치(가치생산물—Wertprodukt)이다.

따라서 위에서 인용한 개소에서 A. 스미드가

“매개 국민의 연노동은 그 국민이 그 연간에 소비하는 모든 생활필수품과 편리품을 그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초적 폰트인바……”

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일면적으로 단순한 유통노동—물론 이 모든 생활수단들에 소비될 수 있는 형태를 부여한—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그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이란 이전 연도들로부터 계승된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며, 또 따라서 가치를 형성하는 한에서의 연노동은 결코 이 노동에 의하여 완성된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창조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새로 창조되는 가치(가치생산물)는 생산물가치보다 적다는 것이다.

A. 스미드가 이 분석에 있어서 그의 후계자들이 도달하고 있는 데까지 밖에는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문제의 정당한 해결에로의 시도는 이미 중농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지만) 그는 다시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도 주로 상품가치 일반에 관한 그의 비전적(秘傳的)인 견해가, 많은 경우에 그에게서 우세한 통속적인 견해와 부단히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과학적인 본능은 때때로 심오한 관점을 다시 나타나게 하지만.

4) A. 스미드에 있어서의 자본과 소득

매개 상품(따라서 또 연생산물)의 가치 중 노임의 등가만을 이루는 부분은 자본가에 의하여 노임으로 전대된 자본과 동등하다. 즉 그의 총전대자본 중의 가변적 구성부분과 동등하다. 자본가는 전대자본가치의 이 구성부분을, 고용노동자들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 중의 새로 생산된 가치 구성부분을 통하여 회수한다. 아직 판매될 만큼 완성되어 있지 않든가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 자본가에 의하여 판매되어 있지 않은 생산물 중,

노동자들에게 속하는 몫을 화폐로 자본가가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가변자본이 전대되든가, 또는 그 몫을 자본가가 노동자들에 의하여 제공된 상품들의 판매에 의하여 자본가가 이미 받은 화폐로써 지불하든가, 또는 그가 신용에 의하여 이 화폐를 앞당겨 받았든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자본가는 화폐로서 노동자들에게 흘러가는 가변자본을 지출하는 것이며, 타방으로 그는 이 자본가치의 등가를 그의 상품가치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 부분에 의하여 노동자들은 그 상품의 총가치 중에서 자기자신들에게 속하는 몫을 새로 생산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부분에 의하여 노동자들은 자기자신들의 노임의 가치를 생산하였던 것이다. 자본가는 이 가치부분을 노동자 자신들의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그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에 있어서는 그의 전대자본가치의 가변적 구성부분이 이제는 상품형태로 존재하는데, 노동자들은 그들이 판매한 노동력에 대한 등가를 화폐형태로 받았다.

따라서 자본가에 의하여 전대된 자본 중 노동력의 구매에 의하여 가변자본으로 전환된 부분은 생산과정 자체내에서 활동하는 노동력으로서 기능하며 또한 이 힘의 지출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로서 상품형태로 새로 생산 즉 재생산—따라서 전대자본가치의 재생산 즉 새로운 생산!—되는데, 노동자들은 그들이 판매한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생활수단으로, 자기들의 노동력의 재생산수단으로 지출한다. 가변자본과 동등한 화폐액은 노동자들의 소득 따라서 그들의 수입(revenue)을 이루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고용노동자들의 상품—그들의 노동력 그 자체—은 그것이 자본가의 자본에 함체되어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만 상품으로서 기능하는데, 타방으로 화폐자본으로서 노동력의 구입에 지출된 자본가의 자본은 노동력의 판매자인 고용노동자들의 수중에서는 소득으로서 기능한다.

여기에는 각이한 유통과정과 생산과정들이 엉켜 있는데 A. 스미드는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첫째, 유통과정에 속하는 행위들. 노동자들은 그들의 상품—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자본가가 그것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화폐는 자본가에 있어서는 가치증식을 위하여 투하되는 화폐 즉 화폐자본이다. 이

것은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대된다(이것이 전대—중농주의자들의 *avance*—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것은 자본가가 화폐 그것을 어디에서 입수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자본가가 생산과정의 목적을 위하여 지불하는 모든 가치는, 이 지불이 사전에 실시되든 사후에 실시되든 간에 자본가에 있어서는 전대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생산과정 자체에 전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상품판매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 발생할 따름이다. 즉 판매자는 한 사용가치(여기에서는 노동력)를 내주고, 그것의 가치를 화폐로 받으며(그것의 가격을 실현하며), 구매자는 자기의 화폐를 내주고 그 대신에 상품 자체—여기에서는 노동력—를 받는다.

둘째, 생산과정에서는 구매된 노동력이 이제는 기능자본의 일부를 이루며, 노동자들 자신은 여기에서는 다만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이 자본의 요소들과는 구별되는, 이 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현물형태로서 기능한다.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노동력의 지출에 의하여 그들이 생산물로 전화하는 생산수단에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잉여가치는 도외시하고)와 동등한 가치를 첨가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위하여 그의 자본 중, 그가 노동자들에게 노임으로 전대한 또는 전대하여야 할 부분을 재생산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위하여 이 자본부분의 등가를 생산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위하여 자본가가 새로 노동력의 구입에 전대할 수 있는 자본을 생산한다.

셋째, 따라서 상품판매에 있어서 그 판매가격의 일부는 자본가에 의하여 전대된 가변자본을 그에게 보상하며, 그럼으로써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또 노동자들로 하여금 새로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상품매매에 있어서는—이러한 거래들 그 자체만을 고찰하는 한—판매자의 수중에서 그의 상품을 팔아 입수한 화폐가 어떻게 되는가, 또 구매자의 수중에서, 그가 구매한 사용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다만 유통과정이 문제로 되는 한에 있어서는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이 그를 위하여 자본가치를 재생산한다는 것과 타방으로 노동력의 판매에 의하여 입수한 화폐가 노동자들을 위하여 소득을 이룬다는 것도 전혀 아무래도 좋다. 노동자들의 거래품인 그들의 노동력의 가치크기는 노동력이 그들을 위하여 소득을 이룬다는 것에 의해서도, 또 구매자에 의한 노동자들의 거래품의 사용이 이 구매자를 위하여

자본가치를 재생산한다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동력의 가치—즉 이 상품의 적당한 판매가격—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노동량 그 자체는 이 경우에 노동자들의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 즉 그의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노임은 노동자들이 그것으로써 생활하여야 할 소득으로 된다.

A. 스미드가

“생산적 노동의 유지를 위하여 투하되는 자본부분은……그(자본가)를 위하여 자본으로서의 자체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그들(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을 이룬다”(223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280페이지)

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자본가가 구매하는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가 그를 위하여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화폐로써 그가 노동력을 자기의 자본의 물적 구성부분들에 합체하며,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그의 자본을 비로소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한에 있어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노동력은 노동자들의 수중에서는 상품이지 자본이 아니며,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판매를 부단히 반복할 수 있는 한에서이며, 노동력은 판매된 후에 자본가의 수중에서 생산과정 그 자체 중에서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에 두 번 복무하는 것은 노동력이다. 즉 노동력은 노동자들의 수중에서는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복무하며, 그것을 구매한 자본가의 수중에서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힘으로서 복무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받는 화폐는 그들의 노동력이 자본가에 의하여 사용된 후에, 그들의 노동력이 이미 노동생산물의 가치로 실현된 후에야 비로소 지불되는 것이다. 자본가는 이 가치를 지불하기 전에 자기의 수중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폐가 두 번 즉 처음에는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그 다음에는 노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 기능하는 것은 노동력이다. 즉 첫번째는 노동력의 판매시에 상품으로서(화폐는 지불되어야 할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관념적인 가치척도로서 작용하는데 그때에 그것이 아직은 자본가의 수중에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두번째는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은 자본으로서 즉 사용 가치와 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로서 자본가의 수준에서 기능한다. 노동력은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등가를 자본가가 그들에게 화폐형태로 지불하기 전에 이미 상품형태로 제공하였다. 그와 같이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그들에게 지불하는 지불폰드를 스스로 창조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는 자기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을 전체로서 본다면 이 화폐는 자본가만이 자본가로서 남을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그로 하여금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부단한 매매는 일방으로는 노동력을 자본의 요소로서 영원화하는데, 그것에 의하여 자본은 상품 즉 가치를 가진 사용품의 창조자로서 나타나며,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하여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부분은 노동력 자체의 생산물에 의하여 부단히 생산되며,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들이 지불을 받는 자본폰드를 스스로 부단히 창조한다. 타방으로 노동력의 부단한 판매는 노동자들의 부단히 갱신되는 생활유지의 원천으로 되며,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력은 소득—이것으로써 그들이 생활하는—을 끌어내는 재산으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한 상품(노동력)의 부단히 반복되는 판매에 의하여 생기는 가치의 취득—이 경우에 이 가치 그 자체는 판매되어야 할 상품의 부단한 재생산을 위하여 복무할 따름이다—이외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한에서는 A. 스미드는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 자신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가치 중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노임의 형태로 등가를 지불하는 부분은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의 원천이 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상품가치의 이 부분의 본성 또는 크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생산수단이 자본가치로서 기능한다고 하여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며 또는 직선(直線)이 삼각형의 저변(底邊)으로서 또는 타원형의 직경으로서 기능한다고 하여 직선의 본성과 크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그러한 생산수단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상술한 사정과는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상품의 이 가치부분은 그것을 구성하는 자립적인 요인의 하나로서의 소득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 가치부분이 소득으로 분해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에 의하여 부단히 재생산되는 이 새로운 가치는 그들을 위하여 소득의 원천을 이루지만, 그 때문에 거꾸로 그들의 소득이 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새로운 가치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 의하여 창조되는 새로운 가치 중 그들에게 지불되는 몫의 크기가 그들의 소득의 가치크기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거꾸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 중의 이 부분이 그들을 위하여 소득을 이룬다는 것은 이 부분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즉 그것의 적용의 성격을 표시할 따름이며, 그것의 형성과는 관계가 없으니 이는 기타 모든 가치의 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나에게 매주 10달러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매주 이 소득을 얻는다는 그 사정은 10달러의 가치의 본성도 가치의 크기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도 그것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노동량이 노동자들의 필요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그들의 생활조건들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동등하다는 사정은 이 상품(노동력)에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정이 노동력의 가치에 특징적인 것은 역축의 가치가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생존수단의 가치에 의하여, 따라서 이 생존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간노동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정이 역축의 가치에 특징적인 것보다 이상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A. 스미드가 빠지고 있는 전체 불행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은 수입(revenue)이라는 범주이다. 그에 있어서는 각이한 종류의 소득이 연년 생산되고 새로 창조되는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component parts)을 이루는데, 거꾸로 이 상품가치가 자본가를 위하여 분할되는 두 부분—노동의 구입에 있어서 화폐형태로 전대되는 그의 가변자본의 등가와, 역시 그에게 속하는 것이나 그에게 아무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은 다른 가치부분인 잉여가치—은 소득의 원천을 이룬다. 가변자본의 등가는 새로 노동력에 전대되며 그 한에서 노동자의 노임의 형태로 그를 위한 소득을 이룬다. 다른 부분인 잉여가치는 자본가를 위하여 어떠한 자본전대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어떤 종류의 자본가치를 이를 대신에 그에 의하여 소비수단(필수품과 사치품)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소득으로서 소비될 수 있다. 이 소득의 전제는 상품가치 자체이며, 이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이 자본가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은 다

만 그것들이 그에 의하여 전대된 가변자본가치에 대한 동가를 이루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넘는 초과부분을 이루는가 하는 그 한에 있어서만이다. 양자는 상품생산 중에 지출되어 노동으로 유출된 노동력 이외의 어떤 것으로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소득 또는 수입으로써가 아니라 지출로써, 노동지출로써 이루어진다.

상품가치가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상품가치의 원천이 된다는 이러한 착오에 따라, 이제는 상품가치가 각이한 종류의 소득들으로써 구성된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 소득들은 호상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소득들의 가치크기를 합산함으로써 상품의 총가치가 규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상품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 매개 소득의 가치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노임에 관하여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노임은 해당한 상품 즉 노동력의 가치이며, 이 가치는(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여가치 또는 A 스미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의 두 형태인 이윤과 지대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공담(空談)으로써 모면하지 않을 수 없다. A 스미드는 때로는 노임과 잉여가치(또는 노임과 이윤)를 상품가치 또는 상품가격을 구성하는 구성부분들로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리고 왕왕 거의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상품가격이 분해(resolves itself) 되는 부분들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꾸로 상품가치가 우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며, 이 주어진 가치의 각이한 부분들은 각이한 소득의 형태로 생산과정에 참가한 각이한 사람들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가 이 세 구성부분들으로써 구성된다는 것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내가 각이한 세 직선(直線)의 길이를 따로따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선을 구성부분들로 하는, 그것들의 합계의 길이와 동등한, 제4의 직선을 만들 때 이 수속은, 타방으로 내가 주어진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이것을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각이한 세 부분으로 나눌—분해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때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선의 길이는 그것의 부분들인 세 선의 길이가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선의 세 부분의 길이는 처음부터 그것들이 주어진 길이의 하나의 선의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A 스미드의 서술 중의 옳은 것 즉 사회의 연상품생산물에(매 개별적 상품에나 또는 일(日)생산물, 주(週)생산물 등등에나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으며, 연(年)노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는 가치는 전대된 가변자본의 가치(따라서 다시 노동력의 구입에 예정된 가치부분)와, 자본가가 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기타의 사정들이 동등한 경우에 자기의 개인적 소비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잉여가치를 합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는 한, 그리고 또 A 스미드는 가치를 창조하는 즉 노동력의 지출인 한에서의 노동과,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즉 유용한 합목적적 형태로 지출되는 한에서의 노동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한, A 스미드의 전체 표상(表象)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귀착된다. 매개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생산물이며 따라서 또 연노동생산물의 가치 또는 사회적 연상품생산물의 가치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은 1)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의 구입에 전대된 자본에 대한 등가만을 재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과 2) 그들이 자본가로부터 아무 등가도 지불 받지 않는 가치, 즉 잉여가치가 자본가를 위하여 제공하는 잉여노동으로 분해되므로, 모든 상품가치는 각이한 이 두 구성부분으로만 분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국 노임으로서 노동계급의 소득을, 잉여가치로서 자본가계급의 소득을 이룬다. 그러나 불변자본가치 즉 연생산물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 가치가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 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자본가가 자기의 상품 판매에 있어서 그것을 구매자에게 넘겨 씌운다는 설명 외에는) 물론 설명될 수 없으나 결국(ultimately) 이 가치부분은 생산수단 자체가 노동의 생산물이므로, 그 자체가 다시 가변자본의 등가와 잉여가치로서만,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생산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것의 총용자의 수중에서 자본가치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가치가 시초에 또 그것의 근본을 따져 볼 때 타인의 수중에서—그 이전에라도—이상의 두 가치로, 따라서 두 개의 각이한 소득원천으로 분할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에 있어서 하나의 옳은 점은, 사회적 자본 즉 개별적 자본들의 총체의 운동에 있어서 사태는, 특수하게 고찰된 매 개별적 자본에 있어서의 즉 매개 자본가의 관점에서의 사태와는 다르게 표시된다는 것이다. 후자에 있어서는 상품가치는 1) 불변적 요소(스미드가 말하는 제4요소)와 2)

노임 및 잉여가치, 또는 노임, 이윤 및 지대로 분해된다. 그런데 사회적 관점에서는 스미드의 제4요소 즉 불변자본가치는 소멸한다.

5) 결 론

세 개의 소득 즉 노임, 이윤 및 지대가 상품가치의 세 구성부분들을 이룬다는 불합리한 공식은 A 스미드에 있어서는 상품가치가 이 세 개의 구성부분들로 분해된다(resolves itself)는 보다 그럴듯한 공식으로부터 나온다. 이 후자의 공식도 비록 상품가치가 소비된 노동력의 등가와 노동력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가치로 나눌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오류도 역시 보다 심오하며 진정한 기초에 입각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적 노동자가 자기자신의 노동력을 자기의 상품으로서 자본가에게 판매하며, 그 다음에 이 노동력이 그 자본가의 수중에서 다만 그의 생산적 자본의 한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데 입각한다. 유통에 속하는 이 거래—노동력의 매매—는 생산과정으로의 도입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특수한 성격을 함축적으로 규정한다. 사용가치의 생산은, 또한 심지어는 상품의 생산도(왜냐하면 상품의 생산은 독립적인 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본가를 위한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어떻게 1) 일(日)노동과정의 길이와 2)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전체 사회적 및 기술적 모습을 규정하는가를 보았던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체의 내부에서 가치(불변자본가치)의 단순한 유지와, 전대된 가치(노동력의 등가)의 현실적 재생산과, 잉여가치 즉 자본가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등가도 사전에 전대하지도 않았으며 사후에 전대하지도 않은 가치의 생산과의 사이에 구별이 실현된다.

잉여가치—자본가에 의하여 전대된 가치의 등가를 넘는 초과분인 가치—의 취득은 노동력의 매매에 의하여 도입되는 것이지만, 생산과정 자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위이며, 생산과정의 본질적 계기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의 유통행위를 이루는 도입(導入) 행위 즉 노동력의 매매는 그 자체가 또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에 선행하는 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생산요소들의 분배에, 즉 노동자의 상품으로서의 노동력과 비노동자의 소유

물로서의 생산수단과의 분리에 입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잉여가치의 이 취득 또는 가치 생산의 전대된 가치의 재생산과, 아무런 등가도 보상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잉여가치)의 생산으로의 이 분리는 결코 가치 자체의 실체(實體)와 가치 생산의 본성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가치의 실체는 지출된 노동력—즉 노동, 그러나 이 노동의 특수한 유용적 성격과는 상관이 없는 노동—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 가치생산은 노동력의 이러한 지출의 과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농노는 6일간 노동력을 지출하며, 6일간 노동하는데, 그가 예컨대 이 노동일 중 3일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전야(田野)에서 일하며 나머지 3일간은 자기의 영주를 위하여 영주의 전야에서 일한다는 것은 노동력의 이와 같은 지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자기를 위한 자발적 노동이나 영주를 위한 강제노동이나 똑같이 노동이다. 그 노동을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 또는 유용생산물에 관련된 노동으로서 고찰하는 한, 그의 6일간의 노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차이는 오직 6일이라는 노동기간의 양 절반에 그의 노동력을 지출케 하는 각이한 관계들에 관련된다. 고용노동자의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에 관해서도 전혀 마찬가지이다.

생산과정은 상품에 있어서 소멸한다. 상품의 생산에 노동력이 지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상품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상품의 물적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이 가치의 크기는 지출된 노동의 크기에 의하여 측정된다. 상품가치는 그 이상의 것으로는 분해되지 않으며 그 이외의 어떤 것으로서도 구성되지 않는다. 내가 일정한 길이의 직선(直線)을 하나 그었다면 나는 우선 나와는 독립한 어떤 규칙들(법칙들)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법(製圖法)에 의하여 직선을 하나 생산(물론 내가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을 다만 상징적으로)한 것이다. 내가 이 선을 세 토막(이것은 또 일정하게 제기된 과업들의 조건에 일치할 수 있다)으로 분할한다면 이 세 부분의 각개는 여전히 직선인 것이며, 이것들을 부분으로 하고 있는 전체 선은 이 분할로 말미암아 직선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 예컨대 어떤 종류의 곡선(曲線)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주어진 길이의 선을 분할하되, 이 부분들의 합계가 분할되지 않은 선 자체보다도 길게 되도록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할되지 않은 선의 길이는 임의로 규정된 길이의 부분선들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

로 부분선들의 상대적 길이는 그것들을 부분으로 하고 있는 선의 한계에 의하여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다.

이 점에 한해서는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은 자립적 노동자나 노동자 공동체나 또는 노예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생산물도 그것의 전체 가치도 자본가에게 속한다. 자본가는 기타의 모든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우선 판매에 의하여 화폐로 전화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 나갈 도리가 없다. 그는 상품을 일반적 동가의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화폐로 전화되기 이전의 상품생산물을 고찰하자. 그것은 전부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것은 타방으로 유용적 노동생산물로서—사용가치로서—전적으로 지나간 노동과정의 생산물이다. 그것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 이 가치의 일부는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생산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형태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며, 이 가치는 이 상품의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은 이 가치를 이미 생산과정 이전에, 생산과정과 독립하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은 이 가치의 담당자로서 이 과정에 들어왔다. 갱신되고 변경된 것은 다만 이 가치의 현상형태이다. 상품가치의 이 부분은 자본가에 있어서, 그의 전대된 불변자본가치 중 상품생산 중에 소비된 부분에 대한 동가를 이룬다. 그것은 전에는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것은 이제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한다. 이 상품이 화폐화되자마자 이제는 화폐로 존재하는 이 가치는 다시 생산수단으로, 즉 생산과정과 여기에서의 자체 기능에 의하여 규정되는 자체의 본래 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의 가치적 성격은 이 가치의,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의하여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상품의 제2의 가치부분은 고용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노동력의 가치이다. 이것도 생산수단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들어가야 할 생산과정과는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력이 생산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동력의 매매라는 유통행위에서 확정된다. 고용노동자는 자기의 기능—자기의 노동력의 지출—에 의하여 그의 노동력의 사용에 대하여 그에게 자본가가 지불하여야 할 가치와 동등한 상품가치를 생산한다. 그는 이 가치를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주며, 자본가는 이 가치를 그에게 화폐로 지불한다. 상품가치의 이 부분이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노임으로

전대한 그의 가변자본에 대한 등가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생산과정 중에 새로 창조된 상품가치—이것을 구성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구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바로 노동력의 지나간 지출이다—라는 사실은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자본가에 의하여 임금형태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자에 있어서는 소득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에 의하여 노동력이 부단히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자계급도 그러한 계급으로서 재생산되며, 따라서 또 전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도 재생산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치부분의 합계가 전체 상품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양자를 넘는 초과분 즉 잉여가치가 있다. 이것도 노임에 전대된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가치부분과 마찬가지로 생산과정 중에 노동자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응결된 노동—이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잉여가치는 전체 생산물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마지막 사정은 사실상, 만약 자본가가 이 잉여가치의 일부를 다른 관여자에게 양도—예컨대 지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듯이, 이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그러한 제3자의 소득을 이룬다—하지 않아도 좋다면 그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전부 소득으로서 소비할 수 있게 한다. 바로 같은 이 사정이 또한 우리의 자본가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에 종사케 한 추진적 동기였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얻어내려는 그의 본래의 착한 의도도, 그와 기타 사람이 그것을 소득으로서 차후에 지출한다는 것도 잉여가치로서의 잉여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잉여가치가 응결된 부지불노동이라는 사정에 변경이 없으며 또한 잉여가치의 크기—이것은 전혀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된다—에도 변경이 없다.

그런데 일단 A, 스미드가—실제 그렇게 하고 있듯이—이미 상품가치의 고찰에 있어서 그것의 각이한 부분들이 총재생산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려 하였다면, 상품가치의 특수부분들이 소득으로서 기능할 때, 다른 부분들은 역시 부단히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따라서 또 그의 논리에 의하면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로서 또는 상품가치가 분해되는 부분들로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라는—사실은 명백하였다.

A 스미드는 상품생산 일반을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동일시한다. 생산수단은 애당초부터 자본이며, 노동은 애당초부터 고용노동이며, 따라서 또

“유용적 및 생산적 노동자의 수는 언제나……그들을 일시키기 위하여 충용된 자본에 비례한다(to the quantity of capital stock which is employed in setting them to work)” (서론, 12페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과정의 각이한 요인들—대상적 및 인적—은 애당초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시기에 특징적인 탈을 쓰고 나타난다. 따라서 또 상품가치의 분석은 일방으로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투하자본에 대한 단순한 등가를 이루는가, 타방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운, 어떠한 전대자본가치도 보상하지 않는 가치 즉 잉여가치를 이루는가 하는 고려와 직접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관점에서 서로 비교된 상품가치의 부분들은 슬그머니 그것의 자립적 구성부분들로 또 결국은 모든 가치의 원천들로 전화되고 있다. 또 하나의 결론은 상품가치는 각종 소득들로서 구성된다는 것 또는 상품가치는 각종 소득으로 분해된다는 것, 그리하여 소득이 상품가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가치가 소득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가치 또는 화폐가 자본가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품가치로서의 상품가치 또는 화폐로서의 화폐의 본성이 변경되지 않듯이, 상품가치가 나중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품가치의 본성은 변경되지 않는다. A 스미드가 문제로 삼고 있는 상품은 애당초부터 상품자본(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자본가치 외에 잉여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며,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따라서 또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증식과정 및 가치형성과정이 미리 분석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자체의 전제로 되는 것은 이번에는 상품유통이므로 이 과정의 서술은 이 과정과 독립한, 그리고 이에 선행하는 상품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A 스미드가 때로 비전적(秘傳的)으로 적중한 말을 하고 있는 한에서도 그는 언제나 가치생산에 대하여는 상품분석 즉 상품자본의 분석의 기회에 고려를 돌리고 있을 따름이다.

제3절 그 후의 경제학자들⁴¹⁾

리카아도는 거의 글자 그대로 A. 스미드의 이론을 재생산하고 있다.

“한 나라의 모든 생산물이 소비된다는 데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이 다른 가치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는가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비되는가에 따라 한량없이 큰 차이가 생긴다. 소득이 저축되어 자본에 가해진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으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소득 중 자본에 가해지는 부분은 비생산적 노동자 대신에 생산적 노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는 것이다.”(『원리』 163페이지)[동상서, 러시아어 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86페이지]

사실 리카아도는 상품가격이 노임과 잉여가치(또는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로 분해된다는 데 관한 A. 스미드의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가 스미드와 다투는 것은 1) 잉여가치의 구성부분들에 관한 것이니 그는 잉여가치의 필연적 요소로서의 지대를 배제한다. 2) 리카아도는 상품가격을 이 구성부분들로 분할한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가치의 크기가 앞선 것이다. 리카아도는 구성부분들의 총액은 소여의 크기라고 전제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며, A. 스미드가 왕왕 그와는 거꾸로 그리고 그 자신의 심오한 통찰과는 대립되게 하고 있듯이 상품가치의 크기를 사후에 구성부분들을 가산함으로써 도출하지는 않는다.

램제이는 리카아도에 반대하여 말한다.

“리카아도는 전체 생산물이 노임과 이윤으로 나뉘어질 뿐만 아니며 고정자본의 보상을 위하여 또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 174페이지).

램제이가 고정자본이란 말로써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불변자본이란 말로써 이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41) 이하, 본장 말까지는 제2고로부터의 추가

“고정자본은 그것이 물론 가공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는 기여하나 노동자의 생계에는 기여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한다”(59페이지).

A 스미드는 상품가치 따라서 또 사회적 연생산물의 가치가 노임과 잉여가치로 따라서 단순한 소득으로 분해된다는 자기의 주장의 필연적 결론에, 그렇게 되면 전체 연생산물이 소비될 수 있다는 결론에 항거하였다. 독창적 사상가들은 결코 불합리한 결론들을 끌어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일은 세이나 맥컬록 따위에 맡긴다.

세이는 사실 이 문제를 너무나 경솔하게 처리한다. 일방의 사람에게는 자본의 전대인 것이 타방의 사람에게는 소득과 순생산물이며 또는 그러했다. 총생산물과 순생산물의 구별은 순전히 주관적이며,

“그리하여 사회에서의 모든 생산물의 총가치는 소득으로서 분배되었다. (세이 『정치경제학 개론』 1817년, 제2권, 64페이지). 매개 생산물의 총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기여한 토지소유자, 자본가 및 산업노동자의 이윤으로써 구성된다. (노임이 여기에서는 산업노동자의 이윤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소득은 생산된 총가치와 동등한 것이며, 일파의 경제학자들(중농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토지의 순생산물과 동등한 것이 아니다”(63페이지).

세이의 이 발견은 개중 프루동에 의해서도 자기 것으로 되었다.

슈토르흐는 A 스미드의 교리를 원칙에 있어서 역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이에 의한 응용(應用)은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만약 한 국민의 소득이 그들의 총생산물과 동등하다는 것 즉 어떠한 자본(어떠한 불변자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도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국민은 그들의 미래의 소득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들의 연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한 국민의 {불변}자본을 이루는 생산물은 소비될 수 없는 것이다”(슈토르흐 『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파리, 1824년, 147, 150페이지).

그러나 슈토르흐는 이 불변자본부분의 존재가 그가 받아들인 스미드의 가격분석—이것에 의하면 상품가치는 노임과 잉여가치만을 포함하고 불변

자본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과 어떻게 일치하는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잊었다. 이 가격 분석이 불합리한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은 그에게는 세이를 통해서만 분명하게 되며, 이 점에 관한 그 자신의 최후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필요가격을 그것의 가장 간단한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정치경제학 강의』 페페르부르그, 1815년, 제2권, 140페이지).

시스몽디는 자본과 소득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고찰하고 또 사실상이 관계의 특별한 견해를 자기의 새로운 원리의 특징적 차이점으로 삼고 있는데 과학적인 말이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해명에는 추호도 기여한 것이 없다.

바튼, 램제이 및 셰르블리에스 스미드의 견해를 능가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있는바, 그것은 그들이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의 구별을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로부터 명백히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애당초부터 일면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J. S. 밀도 여전히 대단한 체하면서 A. 스미드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한 교리를 재생산하고 있다.

결론—스미드의 사상적 혼란은 오늘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그의 도그마는 정치경제학의 정통파적 신조(信條)로 되고 있다.

제20장 단순재생산

제1절 문제의 설정⁴²⁾

사회적 자본 즉 총자본—개별적 자본은 이 총자본에 대하여 그 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조각의 운동은 그 조각의 개별적 운동인 동시에 총자본의 운동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될 한 고리이다—이 한 해 동안 기능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즉 사회가 한 해 동안에 제공하는 상품생산물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특징으로 하여 이 재생산과정이 개별적 자본의 재생산과정과 차이냐며 또 어떠한 특징들이 두 재생산과정에 공통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한 해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 가운데서 자본을 보상하는 즉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부분을 포괄하는 동시에 소비밑천에 들어가 노동자와 자본가가 소비하는 부분도 포괄하며 따라서 한 해 생산물은 생산적 소비로도 들어가며 개인적 소비로도 들어간다. 이 소비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의 재생산(즉 유지)을 포괄하며 따라서 또 총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재생산도 포괄한다.

우리가 분석하여야 할 것은 분명히 유통의 도식

$$W' \leftarrow \begin{matrix} G-W \cdots P \cdots W' \\ g-w \end{matrix} \quad \text{인데 여기에서 소비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논다. 왜냐하면 출발점 $W' = W + w$ 즉 상품자본에는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도 들어 있고 잉여가치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자본의 운동에는 개인적 소비도 생산적 소비도 들어 있다. $G-W \cdots P \cdots W' - G'$ 와 $P \cdots W' - G' - W \cdots P$ 라는 순환들에서는 자본의 운동이 출발점이며 종점이다. 물론 이 운동에는 소비도 들어 있는데 그것은 상품

인 생산물이 팔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이 팔렸다고 전제하면 이 상품이 그후에 어떻게 되건 그것은 개별적 자본의 운동에는 아무래도 좋다. 이와 반대로 $W' \cdots W'$ 의 운동에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조건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경우에 바로 이 총생산물 W' 의 매개 가치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총재 생산과정에 자본의 재생산과정 자체가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소비과정도 들어 있다.

우리의 당면한 목적을 위해서는 재생산과정을 W' 의 개별적 구성부분들의 가치보상의 관점과 소재보상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개별적 자본의 생산물가치를 분석하는 경우와 같이 개별적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생산물을 팔아 자기 자본의 구성부분들을 먼저 화폐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들을 상품시장에서 다시 사서 생산자본으로 도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전제로는 더는 만족할 수 없다. 그 생산요소들은 그것들이 물적 성질의 것인 한에서 그것들과 교환되고 그것들에 의하여 보상되는 완성된 개별적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한편 또 사회적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을 지출하여 소비하고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지출하여 소비하는 부분의 운동은 총생산물의 운동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될 고리를 이룰 뿐 아니라 개별적 자본들의 운동과 엮이며 따라서 그 과정은 단순히 그것을 전제하는 것으로는 해명될 수 없다.

직접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은 그 가치가 어떻게 한 해 생산물에서 보상되는가, 그리고 이 보상의 과정이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소비 및 노동자에 의한 임금의 소비와 어떻게 엮이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문제로 되는 것은 단순한 규모의 재생산이다. 또한 생산물이 그 가치대로 교환될 뿐 아니라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에서 어떠한 가치혁명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가격이 가치와 어긋나는 한에서 이 사정은 물론 사회적 자본의 운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 경우에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가치의 몫은 그들이 따로따로 선대한 것과 그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생산한 잉여가치량에도 더는 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로는 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양의 생산물이 교환된다. 그런데 가치혁명으로 말하면 그것이 전반적 성격을 띠고 모든 생산부분에 다 고르

게 일어나는 한에서는 그것으로 하여 한 해 총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들 사이의 비율이 조금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와 반대로 가치혁명이 국부적 성격을 띠고 모든 생산부문에 고르게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그 가치혁명은 혼란을 나타내는데 첫째로 이 혼란 자체는 그것을 전과 같은 가치비율에서 어긋나는 것으로서 보는 한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한 해 생산물의 한 가치부분은 불변자본을 보상하고 다른 한 가치부분은 가변자본을 보상한다는 법칙이 증명된다면 불변자본에서 가치혁명이 일어나건 가변자본에서 가치혁명이 일어나건 그 혁명으로 하여 이 법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혁명으로 하여서는 이러저러한 불변자본 또는 가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하는 가치부분들의 상대적 크기가 달라질 따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의 가치 대신에 다른 가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본의 가치생산과 생산물가치를 개별적 자본의 견지에서 살펴본 동안에는 상품생산물의 현물형태는 그것이 예컨대 기계로 이루어졌건 알곡으로 이루어졌건 또는 거울로 이루어졌건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이러한 현물형태를 우리가 든 것은 하나의 예로 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임의의 어느 생산부문도 이와 똑같이 예증으로 될 수 있었다.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하였던 것은 어느 개별적 경우나 개별적 자본의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직접적 생산과정 자체였다. 자본의 재생산이 문제로 된 한에서는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자본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은 유통분야 안에서 자체의 생산요소로 다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 따라서 생산자본의 형태를 다시 뺄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고 보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그것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임금과 잉여가치를 지출하여 얻는 상품들을 그들이 시장에서 얻는다고 보는 것으로 충분하였던 것과 똑같다. 순전히 형식적인 이러한 서술방식은 사회적 총자본과 그 생산물가치를 살펴보는 데서는 더는 충분하지 못하다. 생산물가치의 한 부분은 자본으로 도로 전화되고 다른 한 부분은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것은 총자본의 기능의 열매인 생산물 가치 자체 안에서의 운동을 이룬다. 그리고 이 운동은 생산물의 가치보상일 뿐 아니라 그 소재보상이기도 하며 따라서 이 운동은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들의 호상간의 비율에 의해서도 제약되며 그 구성부분들의 사용가치, 그 구성부분들의 소재적 형태에 의해서도 제약된다.

단순재생산⁴³⁾ 즉 전과 같은 규모의 재생산은 하나의 추상으로서 나타난다. 즉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아무런 축적도 또는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치않은 가정이며 한편 또 생산이 진행되는 사정들이 여러 해에 걸쳐 절대로 전과 같은(그런데 전과 같다고 전제되어 있다) 일은 없는 만큼 그러하다.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은 상품의 형태는 재생산과정에서 달라지지만 주어진 가치의 사회적 자본은 지난 해나 올해나 똑같은 양의 상품가치를 다시 제공하며 똑같은 양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축적이 진행되더라도 단순재생산은 늘 축적의 한 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고찰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축적의 실제적 요인이다. 한 해 생산물의 가치는 사용가치의 양이 전과 같다 하더라도 줄어들 수 있다. 가치는 사용가치의 양이 줄더라도 전과 같을 수 있다. 가치량과 재생산되는 사용가치의 양이 동시에 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재생산이 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가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는 재생산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생산의 여러 요소들의 양적 측면과만 관련되는 것이지 그 요소들이 재생산되는 자본으로서나 재생산된 소득으로서 총과정에서 노는 역할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제2절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⁴⁴⁾

사회의 총생산물, 따라서 또 사회의 총생산은 두 개의 큰 부류로 갈라진다.

I. 생산수단, 즉 생산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또는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띠는 상품들.

II. 소비품, 즉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는 상품들.

이 매개 부류에서 그 부류에 속하는 여러 생산부문의 총체가 단일한

43) 여덟째 원고에서

44) 주로 둘째 원고에서. 도식은 여덟째 원고에서

하나의 큰 생산부문을 이룬다. 즉 하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을 이루며 다른 하나는 소비품 생산부문을 이룬다. 이 두 생산부문의 매개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총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큰 부류를 이룬다.

매개 부류에서 자본은 두 구성부분들로 갈라진다.

1) 가변자본, 이 자본은 가치로 보면 이 생산부문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노동력의 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이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과 같다. 소재로 보면 이 자본은 활동하는 노동력 자체로 이루어진다. 즉 이 자본가치에 의하여 가동되는 산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2) 불변자본, 즉 이 부문의 생산에 적용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가치. 생산수단은 이번에는 다시 고정자본—기계, 노동도구, 건물, 부립짐승 등등—과 유동불변자본—원료, 보조자재, 반제품 등등과 같은 생산재료—으로 갈라진다.

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도움으로 두 부류에서 각각 한 해에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에서 소비되었고 가치로 보면 생산물로 넘어갔을 따름인 불변자본 c 를 표시하는 가치부분과 한 해 노동의 총노동에 의하여 덧붙여진 가치부분으로 갈라진다. 한 해 생산물의 이 마지막 가치부분은 다시 선대된 가변자본 v 의 보상분과 이 보상분을 넘어 잉여가치 m 을 이루는 초과분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매개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매개 부류의 한 해 총생산물의 가치도 또한 $c+v+m$ 으로 갈라진다.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표시하는 가치부분 c 는 그 크기에서 생산에서 적용된 불변자본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생산재료는 여기에서 완전히 소비되며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생산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용된 고정자본은 그 한 부분만이 완전히 소비되며 따라서 그 부분의 가치만이 생산물로 넘어간다. 고정자본의 다른 부분인 기계, 건물 등등은 비록 한 해 동안의 마멸로 하여 그 가치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기능을 한다. 고정자본 가운데서 계속 기능을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산물의 가치를 살펴볼 때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자본가치 가운데서 새로 생산된 이 상품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와 나란히 존재하는 부분을 이룬다. 이 점은 이미 개별적 자본의 생산물가치를 살펴볼 때에(『자본론』 제1부, 제6장, 192페이지*)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전에 적용한 고찰방식을 잠시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개별적 자본의 생산물가치를 살펴볼 때에 말한 바와 같이 마멸로 하여 고정자본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치는 마멸기간에 생산된 상품생산물로 넘어간다. 이 고정자본의 한 부분이 이 기간에, 이 넘어간 가치에서 현물로 보상되건 그렇지 않건 매한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총생산물과 그 가치를 살펴보는 여기에서는 마멸로 하여 고정자본에서 한 해 동안에 한 해 생산물로 넘어가는 가치부분을 적어도 잠시 제쳐놓지 않을 수 없다. 이 고정자본이 한 해 동안에 다시 현물로 보상되어 있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이 장의 다음의 한 절에서 이 점을 따로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재생산을 연구하는 데서 도식을 기초로 삼으려고 한다. 이 도식에서 c 는 불변자본, v 는 가변자본, m 은 잉여가치이고 가치증식을 m/v 은 100%라고 한다. 숫자는 백만 마르크나, 프랑이나, 파운드 스텔링 등의 어느 것으로 보아도 좋다.

I. 생산수단의 생산

$$\text{자본} \cdots \cdots \cdots 4,000c + 1,000v = 5,000$$

$$\text{상품생산물} \cdots 4,000c + 1,000v + 1,000m = 6,000$$

이 상품생산물은 생산수단으로 존재한다.

II. 소비품의 생산

$$\text{자본} \cdots \cdots \cdots 2,000c + 500v = 2,500$$

$$\text{상품생산물} \cdots 2,000c + 500v + 500m = 3,000$$

이 상품생산물은 소비품으로 존재한다.

두 부류의 상품생산물을 요약하면 한 해 총상품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text{I. } 4,000c + 1,000v + 1,000m = 6,000 \text{의 생산수단}$$

$$\text{II. } 2,000c + 500v + 500m = 3,000 \text{의 소비품}$$

총생산물의 가치는 9,000인데 여기에는 현물형태로 계속 기능을 하는 고정자본의 가치는 전제에 따라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모든 잉여가치가 비생산적으로 소비되는 단순재생산의 기초 위

* 이 전집, 제23권, 제1분책, 244~24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에서 필요한 교환을 연구하면서 우선 그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유통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중요한 거점을 얻게 된다.

1) II 부류의 노동자들의 임금 $500v$ 와 자본가들의 잉여가치 $500m$ 은 소비품으로 지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가치는 II 부류 자본가들의 손에 있으면서 그들이 선대한 $500v$ 를 보상하고 그들을 위한 $500m$ 을 대표하는 1,000의 가치만큼의 소비품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II 부류의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잉여가치는 II 부류 안에서 II 부류의 생산물과 교환된다. 그리하여 총생산물에서 $(500v+500m) II = 1,000$ 이 소비품으로 없어진다.

2) I 부류의 $1,000v+1,000m$ 도 또한 소비품에, 즉 II 부류의 생산물에 지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이 II 부류의 생산물에서 아직 남아 있는 같은 금액의 불변자본부분 $2,000c$ 와 교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대신에 II 부류는 I 부류의 $1,000v+1,000m$ 의 가치가 구현되어 있는 I 부류의 생산물인 같은 금액의 생산수단을 얻는다. 이에 따라 $2,000 II c$ 와 $(1,000v+1,000m) I$ 이 계산에서 없어진다.

3) 아직 $4,000 I c$ 가 남아 있다. 이것은 생산수단인데 이 생산수단은 I 부류에서만 소비될 수 있고 I 부류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는데 쓰이며 따라서 I 부류의 개별적 자본가들 사이의 호상교환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것은 $(500v+500m) II$ 가 II 부류의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의 또는 II 부류의 개별적 자본가들 사이의 교환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아래에 서술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깐 말한 데 지나지 않는다.

제3절 두 부류 사이의 교환 : I ($v+m$)과 II c 의 교환⁴⁵⁾

두 부류 사이의 큰 교환으로부터 시작하자. $(1,000v+1,000m) I$ — 이 가치는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그 생산자들의 손에 있으면서 $2,000 II c$

45) 여기서부터는 다시 여덟째 원고에서

즉 소비품의 현물형태로 있는 가치와 교환된다. 이 교환에 의하여 II부류의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불변자본 2,000을 소비품의 형태에서 소비품의 생산수단형태로 전환시켰다. 즉 불변자본이 다시 노동과정의 요인으로서는 또 가치증식을 위한 불변자본가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켰다. 다른 편으로는 이 교환에 의하여 I부류의 노동력의 가치의 증가(1,000Iv)와 I부류의 자본가들의 잉여가치(1,000Im)는 소비품으로 실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것이 다 생산수단의 현물형태에서 소득들로서 소비될 수 있는 현물형태로 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상교환은 화폐유통에 의하여 실현되며 이 화폐유통은 이 호상교환을 매개하는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가변자본부분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화폐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즉 화폐형태에서 노동력으로 전화되는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가변자본은 사회의 전역에서 동시에 나란히 진행되는 모든 생산부문들—그 부문이 I부류에 속하건 II부류에 속하건 이에는 관계없이—에서 화폐형태로 선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것이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지만 그 댓가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되어야, 노동력이 이미 사용가치의 생산에 지출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불한다. 생산물가치의 나머지부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데 지출된 화폐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 부분 즉 생산물 가운데서 가변자본가치를 대표하는 가치부분도 자본가의 것이다. 생산물 가운데 있는 바로 이 가치부분으로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에 대한 등가를 자본가에게 이미 제공하였다. 그러나 상품이 화폐로 도로 전화되어야 즉 상품이 팔려야 자본가는 자기의 가변자본을 새로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선대할 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 다시 마련한다.

따라서 I부류에서는 총체적인 자본가로서의 자본가는 I부류의 생산물 즉 I부류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수단 가운데서 이미 v 부분으로 존재하는 가치부분에 대하여 1,000파운드 스텔링(내가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화폐형태로 있는 가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 1,000 v 를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였다. 노동자들은 이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같은 가치의 소비품을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사며 그리하여 II부류의 불변자본의 절반을 화폐로 전화시킨다. II부류의 자본가들은

이번에는 이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1,000의 가치만큼의 생산수단을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산다. 그리하여 이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산물의 한 부분으로서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있었던 가변 자본가치=1,000v가 다시 화폐로 전화되어 있으며 이제는 I 부류의 자본가들의 손에서 다시 노동력으로 즉 생산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화되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I 부류의 자본가들의 가변자본은 그들의 상품자본의 한 부분이 실현됨으로써 화폐형태로 그들에게 되 돌아온다.

그러나 I 부류 상품자본의 m부분과 II 부류 불변자본부분의 나머지 절반과의 교환에 필요한 화폐로 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대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유통은 두 부류의 개별적 자본가들의 해야될 수 없이 많은 개별적 매매를 포괄하지만 어떠한 사정 밑에서도 화폐는 이 자본가들에게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유통에 내던지는 화폐량은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II 부류의 한 자본가가 그의 생산자본과 나란히 있는 자기의 화폐자본의 일부를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와는 반대로 I 부류의 자본가가 자본으로 지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려고 한 화폐밑천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살 수도 있다. 이미 위에서 제1편과 제2편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화폐예비—그것이 자본으로서 선대하기 위해서이건 소득으로서 지출하기 위해서이건 이에 관계가 없다—는 어떠한 사정 밑에서도 생산자본과 나란히 자본가의 손에 반드시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비례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아무래도 좋지만 화폐의 절반은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그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을 사는 데 선대하고 나머지 절반은 I 부류의 자본가들이 소비를 위하여 지출한다고 하자. 그러면 II 부류는 500파운드 스텔링을 선대하여 그것으로 I 부류에서 생산수단을 사며 이에 따라(위에서 말한 I 부류의 노동자들에게서 나오는 1,000파운드 스텔링을 포함하여) 그들의 불변자본의 3/4을 현물로 보상한다. I 부류는 이렇게 얻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에서 소비품을 사며 이에 따라 I 부류의 상품자본 가운데서 m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절반은 유통 $w-g-w$ 를 거쳤고 그리하여 I 부류의 생산물의 이 부분은 소비밑천으로 실현된다. 이 둘째 과정에 의하여 500파운드 스텔링은 화폐자본으로서 II 부류 자본가들

의 손에 돌아오며 이 화폐자본을 그들은 자기들의 생산자본과 나란히 가지게 된다. 한편 또 I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상품자본 가운데서 아직 생산물로서 그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m부분의 절반을 타산하여—그것이 팔리기 전에—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사는 데 지출한다. 바로 이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부류는 I부류에서 생산수단을 사며 이렇게 하여 자체의 전체 불변자본($1,000+500+500=2,000$)을 현물로 보상하는데 I부류는 자체의 전체 잉여가치를 소비품에 실현하였다. 도합 4,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교환이 2,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유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2,000파운드 스텔링의 금액은 한 해의 총생산물이 몇 개 안되는 큰 분량으로 한꺼번에 교환된다고 봄으로써만 나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뿐이다. 즉 II부류가 소비품의 형태로 재생산된 자체의 불변자본을 다시 생산수단의 형태로 전환시켰을 뿐 아니라 그밖에 또한 II부류가 생산수단을 사는 데 유통에 선대한 500파운드 스텔링이 II부류로 되돌아온다는 사정이며 또 이와 마찬가지로 I부류가 생산수단의 형태로 재생산한 자체의 가변자본을 다시 화폐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즉 다시 직접 노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는 화폐자본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밖에 또한 I부류가 자체의 상품자본의 잉여가치부분을 팔기 전에 앞당겨 소비품을 사는 데 지출한 500파운드 스텔링이 I부류로 되돌아왔다는 사정이다. 그러나 이 화폐가 I부류로 되돌아온 것은 그 화폐를 지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I부류의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잉여가치의 절반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그후에 팔렸기 때문이다.

두 경우에 다 II부류의 불변자본은 생산물의 형태에서 그 불변자본이 오직 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다시 전화될 뿐만이 아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I부류의 가변자본부분은 화폐형태로 전화되며 그리고 I부류의 생산수단 가운데 있는 잉여가치부분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화될 뿐만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II부류로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이 되돌아오는데 이 금액은 II부류가 불변자본 가운데서 그 금액에 해당하고 그 금액을 보상하는 가치부분—그것은 소비품의 형태로 있다—을 팔기 전에 생산수단을 사들이는 데 선대한 것이다. 그리고 또 I부류로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되돌아오는데 이 금액은 I부류가 소비품을 사들이는 데 앞당겨 지출한

것이다. II부류의 상품생산물의 불변부분을 타산하고 선대한 화폐가 II부류로 되돌아오고 또 I부류의 상품생산물의 잉여가치부분을 타산하고 선대한 화폐가 I부류로 되돌아온다면 이것은 오직 II부류의 자본가들은 II부류의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불변자본 밖에도 그리고 I부류의 자본가들은 I부류의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잉여가치 밖에도 각각 더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유통에 내던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제각기 자기들의 상품등가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완전히 지불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상품가치액을 넘어 이 상품교환의 수단으로서 유통에 내던진 화폐는 그들이 제각기 유통에 내던진 몫에 비례하여 그들 각자에게로 유통에서 되돌아온다. 그들은 이것으로 한 푼도 더 번 것이 없다. II부류는 불변자본=2,000을 소비품형태로 그리고 500을 화폐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2,000을 생산수단으로 그리고 500을 화폐로 가지고 있다. 즉 전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I부류도 전과 같이 1,000의 잉여가치(상품 즉 생산수단에서 이제는 소비밀천으로 전화된)와 화폐로 500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산업자본가들이 자기 자체의 상품유통을 매개하기 위하여 유통에 내던지는 화폐는—그것이 상품의 불변가치부분을 타산하고 하는 일이건, 잉여가치가 소득으로서 지출되는 한에서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타산하고 하는 일이건, 이에는 관계없이—그들이 화폐유통에 선대한 만큼 그들 각자의 손으로 되돌아온다.

I부류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도로 전화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 가변자본은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것을 임금으로 지출한 후에 맨 처음에는 상품형태로 존재하는데 노동자들은 가변자본을 그 상품형태로 자본가들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화폐형태로 가변자본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였다. 그러한 한에서 자본가들은 그들의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화폐형태로 지출한 이 가변자본과 같은 가치구성부분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상품생산물의 이 부분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계급 가운데서 그들이 고용한 부분은 그 노동자들 자신이 생산한 생산수단의 구매자는 결코 아니다. 그 노동자들은 II부류가 생산한 소비품의 구매자이다. 따라서 I부류에서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데 화폐로 선대한 가변자본은 직접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가변자본은 노동자들

의 구매를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상품들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의 손으로 즉 II부류 자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며 이들이 그 화폐를 생산수단을 사는 데 씀으로써만, 이렇게 에돌아서만 그 화폐는 I부류 자본가들의 손으로 되 돌아온다.

단순재생산에서는 I부류의 상품자본 가운데 있는 가치액 $v+m$ (따라서 또 I부류의 총상품생산물 가운데서 이에 해당하는 비례적 부분도)은 II부류의 총상품생산물 가운데서 역시 비례적 부분으로서 갈라진 불변자본 IIc 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즉 $I(v+m) = IIc$ 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4절 II부류 안에서의 교환 :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II부류 상품생산물의 가치 가운데서 아직 더 연구하여야 할 것은 $v+m$ 이라는 구성부분들이다. 이 구성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즉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매개 상품생산물의 가치의 $c+v+m$ 으로의 분해는 그것이 비록 여러 가지 현상형태에 의하여 매개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한 해 총생산물의 가치에도 들어맞는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I(v+m)$ 과 IIc 의 교환에 의하여, 다른 편으로는 Ic 가 I부류의 한 해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서—그런데 이것은 후에 연구하게 될 것이다—해결된다. $II(v+m)$ 은 소비품의 현물형태로 존재하므로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데 선대한 가변자본은 대체로 노동자들이 소비품에 지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또 상품가치 속에 있는 m 부분은 단순재생산을 전제하는 경우에 소득으로서 소비품에 완전히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II부류의 노동자들은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받은 임금으로 자기자신의 생산물의 한 부분을 임금으로 받은 화폐가치의 크기에 따라 되산다는 것이 언뜻 보아도 명백하다. 이렇게 되어 II부류의 자본가들은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데 선대한 자기들의 화폐자본을 도로 화폐형태로 전화한다. 이것은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단순한 가치기호로 지불한 것이나 똑같다.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하였고 자본가

들에게 속하는 상품생산물의 한 부분을 삼으로써 이 가치기호를 실현하는 한에서 이 가치기호는 자본가들의 손으로 되돌아가는데 다른 점은 다만 이 경우에 기호는 가치를 표시할 뿐 아니라 금이나 은에 구현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구매자로서 나타나고 자본가계급이 판매자로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하여 화폐형태로 선대한 가변자본이 이러한 식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후에 더 자세하게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변자본이 이와같이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문제시된다.

한 해 상품생산의 II 부류는 다종다양한 산업부문들로 이루어지지만 이 부문들은 그 생산물의 성격으로 보아 두 개의 큰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a) 소비품, 이것은 노동계급의 소비로 들어가며 또 그것이. 생활필수품인 한에서는 비록 흔히 그 질과 가치로 보아 노동자들의 생활필수품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자본가계급의 소비의 한 부분도 이룬다. 우리는 이 부문 전체를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필수적 소비품이라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다. 그 경우에 예컨대 담배와 같은 생산물이 생리학적 관점에서 필수적 소비품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것이 관습상 필수적 소비품이면 그만이다.

b) 사치품,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소비에만 들어가며 따라서 노동자에게는 결코 차례지지 않는 지출되는 잉여가치와만 교환될 수 있다. 첫째 항목에서는 그 항목에 속하는 여러 가지 상품의 생산에 선대한 가변자본은 II 부류 자본가들 가운데서 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자들에게(즉 II a의 자본가들에게) 화폐형태로 직접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자본가들은 임금으로 지불한 이 가변자본의 금액만큼 생활필수품을 그들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판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은 II 부류 자본가들의 이 a 부문 전체로 보면 직접적이다. 비록 이 되돌아오는 가변자본이 이 부문에 속하는 여러 산업부문들의 자본가들 사이의 수많은 거래에 의하여 비례에 따라 분배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유통과정들에 드는 유통수단은 노동자들이 지출하는 화폐에 의하여 직접 제공된다. 그러나 II b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새로 생산된 가치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게 되는 부분 전체 II b(v+m)은 사치품의 현물형태에 즉 생산수단의 형태로 있는 상품가치 Iv와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이 살 수 없는 물건의 형태에 있다. 이 사치품이나 그 생산수단이나 다 이 노동자

들이 생산한 것이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들을 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 선대된 가변자본이 그 화폐형태로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은 직접적일 수 없고 Iv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위에서와 같이 II부류 전체로서는 $v=500$, $m=500$ 이라고 가정하지만 가변자본과 그에 상응하는 잉여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고 하자.

a부분: 생활필수품: $v=400$, $m=400$, 따라서 $400v+400m=800$ 의 가치의 필수적 소비품으로 있는 상품량 즉 IIa($400v+400m$).

b부분: $100v+100m=200$ 의 가치의 사치품 즉 IIb($100v+100m$).

IIb부분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노동력의 댓가로 100을 화폐로,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을 받았다. 그들은 그것으로 IIa부분의 자본가들에게서 100어치의 소비품을 산다. 이 자본가계급은 그것으로 IIb부분의 상품을 100어치만큼 산다. 그리하여 IIb부분의 자본가들에게로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되돌아온다.

IIa부문에서는 자본가들의 손에 그들 자신의 노동자들과의 교환에 의하여 이미 $400v$ 가 다시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그밖에 이 자본가들의 생산물 가운데서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의 4분의 1은 IIb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넘어갔으며 그 대신에 사치품으로 IIb($100v$)가 얻어졌던 것이다.

이제 IIa부분과 IIb부분의 자본가들이 소득을 같은 비례로 나누어 생활필수품과 사치품에 지출한다고 전제하면 예컨대 두 부분의 자본가들이 다 소득의 $3/5$ 씩을 생활필수품에 지출하고 $2/5$ 씩을 사치품에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IIa부분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소득인 잉여가치 $400m$ 가운데서 $3/5$ 즉 240을 자기들 자신의 생산물인 생활필수품에 지출하고 $2/5=160$ 을 사치품에 지출할 것이다. IIb부분의 자본가들도 자기들의 잉여가치= $100m$ 을 마찬가지로 나누어 $3/5=60$ 은 생활필수품에 그리고 $2/5=40$ 은 사치품에 지출할 것이다. 이 사치품은 그들 자신의 부문 안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것이다.

IIa부분의 자본가들이 (IIa)m에서 얻는 160의 사치품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로 흘러간다. 즉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IIa) $400m$ 가운데서 생활필수품으로 있는 100은 사치품으로 있는 같은 금액의 (IIb)v와 교환되며 또 생활필수품으로 있는 나머지 60은 사치품으로 있는 (IIb)60m과

교환된다. 그리하여 총계산은 다음과 같이 된다.

$$\text{II a} : 400v + 400m; \text{II b} : 100v + 100m.$$

1) 400v(a)는 IIa부문의 노동자들이 소비한다. 그것은 이 노동자들의 생산물(생활필수품)의 한 부분을 이룬다. 노동자들은 그것을 자기 부문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에게서 산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로 4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 즉 이들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400의 가변자본가치가 되돌아온다. 이 가치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새로 살 수 있다.

2) 400m(a) 가운데서 100v(b)와 같은 부분 즉 잉여가치(a)의 1/4과 같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사치품으로 실현된다. 즉 노동자들(b)은 그들 부분(b)의 자본가들에게서 임금으로 100파운드 스텔링을 받는다. 그들은 이것으로 m(a)의 1/4 즉 생활필수품인 상품들을 산다. a부문의 자본가들은 이 화폐로 같은 가치액의 사치품=100v(b) 즉 생산된 총사치품의 절반을 산다. 이에 따라 b부문의 자본가들에게로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 형태로 되돌아오며 그리하여 그들은 노동력을 새로 사들여 그들의 재산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II부류 전체의 모든 불변자본은 이미 I(v+m)과 IIc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새로 팔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 자신의 생산물 가운데서 그들의 임금에 대한 등가로서 창조된 부분이 IIa부문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그들의 소비밀천에 놓여지고 화폐화되기 때문이다(I부류의 노동력의 판매에 대하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I(v+m)과 교환되는 IIc는 사치품과 생활필수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I(v+m)과의 교환에 의하여 갱신되는 것은 사치품과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3) a 및 b 부문들 사이의 교환 이 두 부문의 자본가들 사이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 한에서 이 교환을 보기로 하자. 이상의 설명에 의하여 a부문의 가변자본(400v)와 잉여가치의 한 부분(100m) 그리고 b부문의 가변자본(100v)는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부문의 자본가들이 소득을 지출하는 평균비율은 사치품에 2/5, 생활필수품에 3/5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사치품에 지출된 100외에 a부문 전체에 아직 사치품에 지출될 60이 남아 있으며 b부문에는 같은 비율로 40이 남아 있다.

그리하여 (IIa)m은 생활수단에 240, 사치품에 160으로 나누어지며 따

라서 $240+160=400m$ (II a) 이다.

(II b)m은 생활수단에 60, 사치품에 40으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60+40=100m$ (II b) 이다. 이 부문은 이 마지막 40을 그 자체의 생산물 가운데서 소비한다(그 잉여가치의 $2/5$). 이 부문은 자체의 잉여생산물의 60을 60m (a)와 교환하여 60의 생활수단을 얻는다.

그리하여 II 부류 자본가계급 전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된다(여기에서 $v+m$ 은 a부문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 존재하고 b부문에서는 사치품으로 존재한다).

II a ($400v+400m$) + II b ($100v+100m$) = 1,000. 이것이 유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즉 $500v(a+b)$ ($400v(a)$ 와 $100m(a)$ 로 실현된다) + $500m(a+b)$ ($300m(a)$ + $100v(b)$ 로 실현된다) = 1,000.

a부문과 b부문을 따로따로 보면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a) \frac{v}{400v(a)} + \frac{m}{240m(a) + 100v(b) + 60m(b)} = 800$$

$$b) \frac{v}{100m(a)} + \frac{m}{60m(a) + 40m(b)} = \frac{200}{1,000}$$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이 위에서 가정한 대로이라고 하면(말이 난 김이니 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00v(a)$ 에는 1,600의 불변자본이 해당되고 $100v(b)$ 에는 400의 불변자본이 해당되며 그리하여 II 부류의 두 부문 a와 b는 다음과 같이 된다.

$$\text{II a) } 1,600c + 400v + 400m = 2,400$$

$$\text{II b) } 400c + 100v + 100m = 600$$

그리하여 합하면

$$2,000c + 500v + 500m = 3,000$$

이에 따라 2,000 I ($v+m$)과 교환되는 소비품인 2,000 II c 가운데서 1,600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과 교환되고 400은 사치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과 교환된다.

따라서 2,000 I ($v+m$)은 그 자체가 또한 a부문을 위한 ($800v+800m$) I =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 1,600과 그리고 b부문을 위한 ($200v+$

200m) I = 사치품을 생산하는 생산수단 400으로 갈라질 것이다.

본래의 노동수단뿐 아니라 원료, 보조자재 등등의 많은 부분도 두 부문에 다 같은 종류의 것들이다. 그러나 총생산물 I ($v+m$)의 여러 가치 부분들의 교환에 대하여 말한다면 위와 같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위에서 말한 $800I_v$ 와 $200I_v$ 가 실현되는 것은 I 부류 노동자들의 임금이 소비품 $1,000I_c$ 에 지출되며 따라서 그 임금에 선대된 화폐자본이 되돌아올 때에 I 부류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 사이에 고르게 나누어지며 그들이 선대한 가변자본에 비례하여 그 자본이 다시 화폐로 보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또 $1,000I_m$ 의 실현에 대하여 말하면 이 경우에도 I 부류의 자본가들은 고르게(그들의 m 의 크기에 비례하여) I_c 의 나머지 절반= $1,000$ 전체에서 소비품으로 $600I_a$ 와 $400I_b$ 를 끌어낼 것이다. 따라서 I_a 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여 주는 자본가들이 끌어내는 것은

$$600c(I_a) \text{에서 } 480(3/5) \text{과 } 400c(I_b) \text{에서 } 320(2/5) = 800 \text{이며}$$

I_b 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여 주는 자본가들이 끌어내는 것은

$$600c(I_a) \text{에서 } 120(3/5) \text{과 } 400c(I_b) \text{에서 } 80(2/5) = 200 \text{이며}$$

합하여 $1,000$ 이다.

여기에서 I 부류에서나 II 부류에서의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은 마음대로 정한 것이며 또 I 부류와 II 부류에서와 그리고 각기 그 부문들에서 이 비율이 똑같다고 한 것도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그 비율이 똑같다고 가정한 것은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이며 비율이 각각 다르다고 하여도 문제의 조건들과 문제의 해결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단순재생산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필연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1)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한 해 노동이 새로 창조한 가치($v+m$ 으로 갈라진다)는 한 해 노동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가치 가운데서 소비품의 형태로 재생산된 불변자본가치 c 와 같다. 이 새로운 가치가 I_c 보다 적다면 II 부류는 자체의 불변자본을 다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I_c 보다 많다면 초과부분은 이용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두 경우에 다 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는 무너질 것이다.

2) 소비품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한 해 생산물의 경우에는 화폐형태로 선대한 가변자본 v 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인 한에서 이들에 의하여 생활필수품 가운데서 맨먼저 그 자본주의적 생

산자들의 잉여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치품생산에 지출되는 v 는 생활필수품의 형태로 생산되는 m 가운데서 이 v 의 가치의 크기에 상응하는 부분과 같으며 따라서 이 m 전체 즉 $(IIa)m$ 보다 작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v 가 실현됨으로써만 즉 m 의 이 부분과 교환됨으로써만 자본주의적 사치품생산자들에게로 그들이 선대한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되 돌아온다. 이것은 $I(v+m)$ 이 IIc 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는 것과 아주 비슷한 현상이다. 다만 다른 것은 이 경우에는 $(IIb)v$ 가 $(IIa)m$ 가운데서 가치의 크기로 보아 $(IIb)v$ 와 같은 부분과 교환됨으로써 실현된다는 것뿐이다. 이 양적 비율은 한 해 총생산물이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한 해의 재생산과정에 실제로 들어가는 한에서 그 총생산이 나누어지는 모든 경우에 질적으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I(v+m)$ 은 IIc 와 교환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으며 IIc 는 또한 이 실현에 의해서만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그 기능을 새로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IIb)v$ 도 $(IIa)m$ 과 교환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래야만 $(IIb)v$ 는 화폐자본으로서의 자체의 형태로 도로 전화될 수 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재생산과정 자체의 결과인 한에서만 따라서 예컨대 IIb 부분의 자본가들이 v 를 위한 화폐자본을 신용에 의하여 다른 데서 빌려오지 않는 한에서만 두말 할 것 없이 옳다. 그런데 양적으로 놓고 볼 때 한 해 생산물의 여러 부분들이 위에서 설명한대로 균형있게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생산의 규모와 생산의 가치비율이 의연 달라지지 않는 한에서만 그리고 이 엄밀한 비율이 대외무역으로 하여 달라지지 않는 한에서만이다.

그런데 만약 그 누가 A 스미드식으로 $I(v+m)$ 은 IIc 로 분해되고 IIc 는 $I(v+m)$ 으로 분해된다고거나 또는 스미드가 더 자주 또 더욱 어리석게 말하고 있듯이 $I(v+m)$ 은 IIc 의 가격(따라서 가치, 스미드가 말하는 교환가치)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IIc 의 가치는 $I(v+m)$ 가치의 전체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IIb)v$ 는 $(IIa)m$ 으로 분해되고 또는 $(IIa)m$ 은 $(IIb)v$ 로 분해된다고거나 $(IIb)v$ 는 IIa 의 잉여가치의 유일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또 그 반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잉여가치는 임금 따라서 가변자본으로 분해되고 가변자본은 잉여가치의 유일한 구성부분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실제로 A 스미드에게서 찾아보게 되

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임금은 생활필수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 상품가치는 다시 그것에 들어 있는 임금(가변자본)과 잉여가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한 노동일에 새로 생산되는 가치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갈라질 수 있는 부분들 즉 $v+m$ 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다음과 같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 즉 단순상품교환에서는 여러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등가물들이 지불노동으로 이루어지는가 부지불노동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등가물들에는 두 경우에 다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똑같은 양의 노동이 들기 때문이다. 또 스미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A의 상품은 생산수단이고 B의 상품은 소비품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팔린 후에 한 상품은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을 놀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다른 상품은 소비필천으로 들어가며 아담에 의하면 소득으로서 소비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다. 개별적 구매자가 자기가 산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건 그것은 상품교환, 유통분야에 속한 일이 아니며 또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다. 한 해 사회적 총생산물의 유통을 분석할 때에는 그 생산물의 여러 구성부분들이 일정한 용도, 그 소비의 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이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위에서 본 (IIb)v와 가치가 같은 (IIa)m의 한 부분과의 교환에서와 더 나아가서 (IIa)m과 (IIb)m의 교환에서 자본가들이—그들이 IIa부분과 IIb부분의 개별적 자본가들이건 그 각 부분의 자본가 전체이건 이에 관계가 없다—자기들의 잉여가치를 같은 비율로 필수적 소비품과 사치품으로 나눈다는 것은 결코 전제로 되지 않는다. 한 자본가는 한 종류의 소비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고 다른 자본가는 또 다른 종류의 소비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 단순재생산의 바탕 위에서는 전체 잉여가치와 같은 가치액이 완전히 소비필천에서 실현된다는 것이 전제로 된다. 따라서 일반적 한계는 주어져 있다. 매 부문 안에서 한 자본가는 a부문의 생산물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고 다른 자본가는 b부문의 생산물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쇄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a부분과 b부분의 자본가들을 전체로서 보면 그들은 각각 같은 비율로 두 부문의 생산물을 소비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비율 즉 II부류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a부분과 b부분의 두 종류의 생산자들에게 차례지는 비례

적 몫, 따라서 또 그 생산물을 제공하는 생산부문들 사이의 일정한 양적 비율은 대개 구체적 경우에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다. 다만 예로 들고 있는 비율은 가정한 것이다. 다른 비율을 가정하더라도 질적 계기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양적 규정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여 a부문과 b부문의 생산물가치의 비례적 크기에 실제적 변동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 단순재생산의 조건들도 달라질 것이다.

(IIb)v가 (IIa)m의 등가부분에서 실현된다는 사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한 해 생산물 가운데서 사치품을 이루는 부분이 느는 데 비례하여, 따라서 노동력 가운데서 사치품생산에 흡수되는 수가 커지는 데 비례하여 그와 똑같은 비례로 (IIb)v에 선대된 가변자본이 화폐자본으로 도로 전화되며 이 화폐자본이 다시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 기능을 하며 따라서 노동계급 가운데서 IIb부문에서 일하는 부분의 존재와 재생산 즉 그들에 대한 필수적 소비품의 공급은 자본가계급의 낭비 즉 이 계급의 잉여가치의 많은 부분의 사치품으로의 전화를 조건짓는다.

개개의 공황은 사치품의 소비를 한때 줄인다. 공황은 (IIb)v가 화폐자본으로 도로 전화하는 것을 더디게 하며, 지체시키며 부분적으로 밖에는 도로 전화할 수 없게 하며, 그리하여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한 부분을 거리에 내던지는데 한편 또 필수적 소비품의 판매도 바로 그 때문에 몇게 하거나 줄어들게 한다. 이와 동시에 해고되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은 완전히 제쳐놓고 본다. 이 노동자들은 그들의 봉사의 댓가로 자본가들의 사치품에 대한 지출의 한 부분을 받으며(따라서 이 노동자들 자신이 사치품으로 된다) 특히 생활필수품 등등의 소비에서도 한 몫 단단히 한다. 번영기, 특히 투기의 최성기에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시기에는 벌써 다른 이유들로 하여, 상품으로 표현된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며(실제적인 가치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그 자체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오른다. 이 시기에는 생활필수품의 소비가 늘어날 뿐이 아니다. 노동계급(이제는 그 예비군이 모두 현역으로 들어선다)도 여느 때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사치품의 소비에 한 때나마 참가하며 그밖에도 여느 때라면 대부분 자본가계급에게 있어서만 필수적

소비품을 이루는 그러한 종류의 필수적 소비품의 소비에도 참가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또한 가격이 오른다.

공황이 지불능력 있는 소비의 부족이나 지불능력 있는 소비자의 부족으로 하여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제도는 구제를 받는 빈민의 소비나 도적놈의 소비를 빼놓으면 지불하는 소비 외에 다른 종류의 소비를 모른다.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상품에 대한 지불능력 있는 구매자, 따라서 소비자(상품을 결국 생산적 소비를 위하여 사든,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사든 간에)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은 자기들 자신의 생산물에서 너무나 적은 부분을 받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 생산물에서 더 큰 몫을 받고 그에 따라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불행은 가셔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동어반복에 보다 깊은 근거가 있는 듯이 보이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기만 하면 된다. 즉 공황은 매번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노동계급이 실지 한 해 생산물 가운데서 소비되게 되어 있는 부분의 더 큰 몫을 받는 바로 그러한 시기를 거쳐 준비된다고 말이다. 건전하고 단순한(!) 상식을 가진 이 기사들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시기는 도리어 공황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에는 선의나 악의와는 관계가 없는 조건들이 들어 있어 그것이 노동계급의 그러한 상대적 번영을 일시적으로만 허용하는, 그것도 언제나 공황의 징조로서만 허용하는 것 같다.⁴⁶⁾

이미 본 바와 같이 필수적 소비품생산과 사치품생산 사이의 비례적 관계로 하여 $II(v+m)$ 이 IIa 부문과 IIb 부문 사이에 나누어지며 따라서 또 IIc 가 $(IIa)c$ 와 $(IIb)c$ 사이에 나누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생산의 성격과 그 양적 비례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며 생산의 전모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계기이다.

단순재생산은 본질에 있어서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 비록 잉여가치를 얻는 것이 개별적 자본가들의 추동적 동기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잉여가치는 그 비례적 크기가 어떻든 간에 이 경우에 마침내는 자본가의

46) 로드베르투스의 공황이론의 신봉자가 그 사람들을 위한 참고로. — F. E.

개인적 소비에만 쓰이게 될 것이다.

단순재생산이 확대된 규모의 매개 한 해 재생산의 부분이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에서 개인적 소비라는 이 동기는 치부로서의 치부라는 동기에 따라다니는 것이며 그와 맞서는 것이다. 사태는 실지로는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획득물인 자본가의 잉여가치를 나누어 가지려는 자들(partners)이 자본가와는 관계없는 소비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5절 화폐유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하면 서로 다른 부류의 생산자들 사이의 유통은 다음과 같은 도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1) I 부류와 II 부류 사이

$$\text{I. } 4,000c + \underline{1,000v + 1,000m}$$

$$\text{II. } \dots\dots\dots 2,000c \dots + 500v + 500m$$

IIc=2,000의 유통은 끝나고 그것은 I (1,000v+1,000m)과 교환되어 있다.

우리는 4,000Ic를 잠시 제쳐놓으므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II부류 안에서의 v+m의 유통이다. 그런데 II(v+m)은 IIa와 IIb 부분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 \text{ II. } 500v + 500m = a(400v + 400m) + b(100v + 100m).$$

400v(a)는 그 자체의 부문 안에서 유통한다. 이 400v(a)를 지불받은 노동자들은 그것으로 그들 자신이 생산한 생활필수품을 자기들의 고용자인 IIa부문의 자본가들에게서 산다.

두 부문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잉여가치를 각각 3/5은 IIa부문의 생산물(생활필수품)에 지출하고 2/5는 IIb부문의 생산물(사치품)에 지출하므로 a부문의 자본가들의 잉여가치 3/5 즉 240은 IIa부문 자체 안에서 소비되며 마찬가지로 b부문의 자본가들의 잉여가치(사치품으로 생산되어 존재하는)의 2/5는 IIb부문 안에서 소비된다.

따라서 IIa부분과 IIb부분에서 아직 교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IIa부분에 $160m$ 이고 IIb부분에 $100v+60m$ 이다. 이것들은 서로 말끔히 교환된다. IIb부분의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받은 화폐 100 으로 IIa부분의 자본가들에게서 100 의 금액의 생활필수품을 산다. IIb부분의 자본가들은 또한 자기들의 잉여가치의 $3/5$ 즉 $60m$ 과 같은 금액으로 IIa부분의 자본가들에게서 생활필수품을 산다. 이 두 교환에 의하여 IIa부분의 자본가들은 위에서 가정한대로 자기들의 잉여가치의 $2/5=160m$ 을 IIb부분에서 생산된 사치품(IIb부분의 자본가들이 지불한 임금을 보상하는 생산물로서 그들의 손에 있는 $100v$ 와 그리고 $60m$)에 지출하는 데 필요한 화폐를 얻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rray}{ll} 3. \text{ II a. } & (400v) + (240m) + \underline{160m} \\ & \text{b. } 100v + 60m + (40m). \end{array}$$

여기에서 괄호 안에 든 항목들은 그 자체의 부문 안에서만 유통하고 소비되는 것들이다.

가변자본으로 선대한 화폐자본이 직접 되돌아오는 것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IIa부분의 자본가들에게서만 있는 일인데 이것은 상품유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통에 화폐를 선대하는 상품생산자에게 그 화폐가 되돌아간다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 법칙이 특수한 조건들로 하여 좀 달라진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난 김이니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자의 배후에 화폐자본가가 있고 그가 또한 산업자본가에게 화폐자본(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화폐형태를 띤 자본가치)을 선대한다면 이 화폐가 실제로 되돌아가는 곳은 이 화폐자본가의 호주머니이다. 그리하여 화폐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많건적건 유통한다 하더라도 유통하는 화폐의 많은 양은 화폐자본가에게 즉 은행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고 집중된 화폐자본의 부류에 속한다. 이 부류가 자체의 자본을 선대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이 자본이 끊임없이 화폐형태로 이 부류에로 되돌아가는 것을 제약한다. 비록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은 다시 산업자본이 화폐자본으로 도로 전화되는 것에 의하여 매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상품유통에는 언제나 두 가지 것이 필요하다. 즉 유통에 내던져지는 상품과 역시 유통에 내던져지는 화폐가 필요하다.

“...유통과정은 생산물의 직접적 교환과 같이 사용가치가 장소와 소유자를 바꾸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그것이 한 상품의 형태변화의 계열에서 결국 떨어져나간다고 하여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화폐는 이리저리한 상품이 자리를 내준 유통장소에 부단히 가라앉는다.”... (『자본론』 제1부, 제3장, 92페이지*)

예컨대 IIc와 I(v+m) 사이의 유통에서는 이 유통을 위하여 II부류가 5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선대한다고 가정하였다. 생산자들의 큰 사회적 집단들 사이의 유통을 이루는 무수한 유통과정에서 때로는 이 집단의 누구가, 때로는 저 집단의 누구가 맨먼저 구매자로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맨먼저 화폐를 유통에 내던질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사정들을 완전히 제쳐놓고 보더라도 벌써 여러 상품자본의 생산기간의 차이에 의하여 따라서 또한 그 회전율의 차이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 그리하여 II부류는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같은 가치액의 생산수단을 I부류에서 사며 I부류는 또한 II부류에서 5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소비품을 산다. 따라서 화폐는 II부류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하여 II부류가 치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II부류는 맨먼저 500파운드 스텔링분의 화폐를 유통에 내던졌고 같은 가치액의 상품을 유통에서 끌어냈으며 그 다음에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팔아 같은 가치액의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낸다. 그리하여 그 500파운드 스텔링은 되돌아온다. 따라서 사실상 II부류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와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1,000파운드 스텔링을 유통에 던져 넣었다. 또 II부류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과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낸다.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I)과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II)의 교환을 위하여 유통에 필요한 것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뿐이다. 따라서 남의 상품을 사는데서 화폐를 선대한 사람이 자기의 상품을 팔아 화폐를 다시 얻는다. 그러므로 I부류가 먼저 II부류에서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사고 그 후에 II부류에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판다면 그 500파운드 스텔링은 II부류에로가 아니라 I부류에로 되돌아올 것이다.

I부류에서는 임금으로 지출한 화폐 즉 화폐형태로 선대한 가변자본이

* 이 전집, 제23권, 제1분책, 13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이 형태로 직접 되돌아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에돌아가서 되돌아온다. 그와 반대로 II부류에서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이 직접 노동자들에게서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는데, 이것은 사고팔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그들이 번갈아 때로는 상품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상품을 팔기도 하면서 서로 맞서는 경우에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이 언제나 직접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II부류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댓가를 화폐로 지불한다. 그리하여 그는 노동력을 자기의 자본에 합치고 그에게 있어서는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에 지나지 않는 이 유통행위에 의해서만 산업자본가로서 자기의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자와 맞선다. 그러나 첫 단계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상인이었던 노동자는 둘째 단계에서는 사는 사람, 화폐소유자로서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자본가와 맞선다. 그리하여 임금으로 지출한 화폐가 이 자본가에게 되돌아온다. 이 상품을 파는 데서 사기 등과 관련이 없고 상품과 화폐로서 등가물이 서로 교환되는 한에서 이러한 판매는 자본가가 치부하는 과정으로 되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두 번 즉 먼저는 화폐로 그 다음에는 상품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의 화폐는 노동자가 그 화폐를 자본가의 상품과 바꾸자 자본가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가변자본으로 전화된 화폐자본, 따라서 임금으로 선대된 화폐는 화폐유통 자체에서 주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은 그날 벌어들인 그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산업자본가들에게 오랫동안 외상을 줄 수 없으므로—산업부문이 다름에 따라 자본의 회전기간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지역적으로 다른 사회의 무수한 지점들에서 동시에 가변자본이 화폐로 한 주(週) 등과 같은 일정한 기간마다, 비교적 빨리 되풀이되는 기간마다 선대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이 기간에 짧으면 짧을수록 이 통로를 거쳐 한꺼번에 유통에 내던져지는 화폐총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와같이 선대되는 화폐자본은 화폐의 총유통에서 결정적인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화폐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다양하기 그지없는 통로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수한 다른 거래에서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여 더욱더 그러하다.

이제는 I (v+m)과 IIc 사이의 유통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I 부류의 자본가들은 1,000파운드 스텔링을 임금을 지불하는 데 선대하며 노동자들은 이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활수단을 사며 이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다시 바로 그 화폐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산다.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가변자본이 이제는 화폐형태로 되돌아와 있는데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불변자본의 절반을 상품자본의 형태에서 생산자본으로 도로 전화하였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얻기 위하여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더 선대한다. I 부류의 자본가들은 그 화폐를 II 부류의 소비품에 지출한다. 그리하여 이 500파운드 스텔링은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온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이 화폐를 다시 선대하여 상품으로 전화된 그들의 불변자본의 나머지 4분의 1을 생산적 현물형태로 도로 전화시킨다. 이 화폐는 다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며 그들은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같은 금액의 소비품을 다시 얻어낸다. 그리하여 500파운드 스텔링은 II 부류에로 다시 되돌아온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이제는 전과 다름없이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와 2,0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불변자본은 상품자본의 형태에서 생산자본으로 새로 전화되어 있다. 1,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5,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량이 유통되었다. 즉 1) I 부류의 자본가들은 1,000파운드 스텔링을 같은 가치액의 노동력의 댓가로 노동자들에게 지불한다. 2) 노동자들은 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활수단을 산다. 3)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바로 그 화폐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사며 그리하여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이들에게 다시 회수된다. 4)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산다. 5) I 부류의 자본가들은 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산다. 6)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산다. 7) I 부류의 자본가들은 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활수단을 산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500파운드 스텔링이 되돌아와 있는데, 이것은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상품형태의 자기들 2,000파운드 스텔링외에 유통에 던져넣은 것이며 그 대신에 상품으로 아무런 등가도 유통에서 끌어내지 않은 것이다.⁴²⁾

그리하여 교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I 부류의 자본가들은 1,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노동력에 즉 1,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에 지불한다.

2) 노동자들은 1,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의 자기들의 임금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산다. 즉 1,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산다.

3)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그 노동자들에게서 얻은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같은 가치의 생산수단을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산다. 즉 1,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산다.

그리하여 1,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와 있다.

4)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수단을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산다. 즉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산다.

5) I 부류의 자본가들은 이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산다. 즉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산다.

6)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이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산다. 즉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산다.

7) I 부류의 자본가들은 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산다. 즉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산다.

교환된 상품가치의 총액은 5,000파운드 스텔링이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는 데 선대한 500파운드 스텔링은 그에게로 돌아와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 부류의 자본가들은 맨처음에 그들이 선대한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을 화폐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밖에 자기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1,000파운드 스텔링을 자기들 자신의 상품생산물의 가치부분

47) 여기에서 서술은 위에서 한 것(374페이지)[이 책 000~000페이지]과 좀 다르다. 거기에서는 I 부류의 자본가들도 따로 500이라는 별개의 금액을 유통에 던져넣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II 부류의 자본가들만이 추가적 화폐재료를 유통을 위하여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하여 마지막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 F. E.

으로 지출하였다. 즉 그들은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의 생산수단을 팔아서 얻은 화폐를 지출하였다.

한편 또 이제는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가변자본이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물형태 즉 노동력은 소비됨으로써 유지되고 재생산되었으며 노동력의 소유자들이 살아나가자면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유일한 상품으로서 다시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금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관계도 재생산되어 있다.

2) II부류의 불변자본은 현물로 보상되어 있으며 같은 II부류의 자본가들이 유통에 선대한 500파운드 스텔링은 그들에게 되돌아와 있다.

I부류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유통은 $W-G-W$ 의 단순유통이다. 즉 $\frac{1}{W}$ (노동력) $-\frac{2}{G}$ (I부류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인 1,000파운드 스텔링) $-\frac{3}{W}$ (1,000파운드 스텔링의 생활필수품)이다. 이 1,000파운드 스텔링은 같은 가치액만큼 상품형태로 즉 생활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II부류의 불변자본을 화폐화한다.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W-G$ 이다. 즉 그들의 상품생산물의 한 부분이 화폐형태로 전화되는 것인데 그 상품생산물은 이 화폐형태에서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로, 즉 그들에게 필요한 생산수단의 한 부분으로 도로 전화된다.

II부류의 자본가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생산수단의 다른 부분을 사들이기 위하여 G (500파운드 스텔링)를 선대한 경우에는 IIc 가운데서 아직 상품형태(소비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의 화폐형태로의 전화가 앞당겨져 있는 것이다. II부류의 자본가들이 G 로 사며 I부류 자본가들이 W 를 파는 $G-W$ 의 행위에서 화폐(II부류의)는 생산자본의 한 부분으로 전화되는데 W (I부류의)는 $W-G$ 의 행위를 거쳐 화폐로 전화된다. 그러나 이 화폐는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자본가치의 구성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소비품으로만 지출되는 화폐화된 잉여가치를 표시한다.

$G-W \cdots P \cdots W'-G'$ 의 유통에서 한 자본가의 첫째 행위 $G-W$ 는 다른 자본가의 마지막 행위 $W'-G'$ (또는 그 한 부분)이다. G 를 생산자본으로 전화하는 이 W 가 W 의 판매자(따라서 이 W 를 화폐로 전화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변자본구성부분을 표시하건 가변자본구성부분 또는 잉여가치를 표시하건 그것은 상품유통 자체에는 아무래도 좋다.

I 부류의 상품생산물의 구성부분인 $v+m$ 과 관련하여 이 부류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부류는 유통에 던져넣은 것보다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낸다. 첫째로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이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온다. 둘째로 그들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수단을 판다(위에서 본 4번째 교환을 보라). 이에 따라 그들의 잉여가치의 절반이 화폐화된다. 그 다음에(6번째 교환) 그들은 그 잉여가치의 나머지 절반인 5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수단을 다시 판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잉여가치가 적다 화폐형태로 유통에서 끌려나와 있다. 즉 차례로 보면 1) 가변자본이 1,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도로 전화되며 2) 잉여가치의 절반이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전화되며 3) 잉여가치의 나머지 절반 500파운드 스텔링도 화폐로 전화된다. 그리하여 합계 $1,000v+1,000m=2,000$ 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 전화된다. I 부류의 자본가들은(Ic의 재생산을 매개하는 후에 살펴보게 될 사정들을 제쳐놓고 보면) 맨처음에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 밖에는 유통에 내던지지 않았지만 유통에서 끌어낸 것은 그 곱절이나 된다. 물론 화폐화된(G로 전화된) I 부류의 자본가들의 m 은 이 화폐가 소비품에 지출됨으로써 곧 다른 사람의 손으로(II 부류의 자본가들의 손으로) 넘어간다. I 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이 상품형태로 유통에 던져넣은 가치만큼만을 화폐형태로 유통에서 끌어냈다. 이 가치가 잉여가치라는 것, 즉 자본가들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이 상품의 가치 자체를 절대로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상품유통에서 가치의 전화가 문제인 한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잉여가치가 화폐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물론 순간적이다. 그것은 선대된 자본이 그 전화과정에서 떠났다 벗었다 하는 다른 모든 형태들이 순간적인 것과 같다. 잉여가치가 화폐형태로 머물러 있는 기간은 I 부류의 상품이 화폐로 전화되고 이에 뒤따라 I 부류의 화폐가 II 부류의 상품으로 전화되는 동안만이다.

회전이 더 짧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단순상품유통의 관점에서 보아 화폐의 유통이 더 빨라졌다고 가정하면 교환되는 상품가치를 유통시키는데 더 적은 화폐로 될 것이다. 차례차례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 화폐 총액은 언제나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 총액 따라서 가치 총액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이 상품가치의 총액이 얼마만한 비례로 잉여가치와 자본가치로 이루어지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

다.

우리가 든 예에서 I부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해에 네 번 지불된다면 $250 \times 4 = 1,000$ 이다. 따라서 $Iv - 1/2 IIc$ 의 유통을 위해서와 가변자본 Iv 와 I부류의 노동력 사이의 유통을 위해서는 25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넉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Im 과 IIc 사이의 유통이 4번의 회전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을 위하여는 250파운드 스텔링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모두 5,0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 따라서 화폐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그 경우에 잉여가치는 두 번에 걸쳐 차례차례로 절반씩 화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에 걸쳐 차례차례로 1/4씩 화폐화될 것이다.

네번째 교환에서 II부류의 자본가들이 아니라 I부류의 자본가들이 구매자로서 나타난다면, 따라서 I부류의 자본가들이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같은 가치액의 소비품에 지출한다면 그때에는 다섯번째 교환에서 II부류의 자본가들은 똑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수단을 사며 여섯번째 교환에서 I부류의 자본가들은 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소비품을 사며 일곱번째 교환에서 II부류의 자본가들은 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수단을 산다. 그리하여 마침내 500파운드 스텔링은 전에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갔듯이 이제는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에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자들 자신이 그들의 개인적 소비에 지출한 화폐에 의하여 화폐화되는데 그 화폐는 예상소득 즉 앞으로 팔아야 할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예상소득을 표시한다. 잉여가치의 화폐화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되돌아옴으로써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I부류의 자본가들은 Iv 상품으로서의 1,000파운드 스텔링 외에 네번째 교환의 마감에 5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유통에 던져넣었는데 이 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팔린 상품의 대금이 아니라 추가적 화폐이기 때문이다. 이 화폐가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온다면 그들은 이에 따라 자기들의 추가적 화폐를 회수하였을 따름이지 자기들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한 것은 아니다. I부류 자본가들의 잉여가치의 화폐화는 그 잉여가치가 들어 있는 Im 의 상품이 팔려야만 진행되는 것이며 그 잉여가치가 화폐로 머물러 있는 것은 상품을 팔아 얻은 화폐가 다시 소비품에 지출되지 않고 있는 동안만이다.

I부류의 자본가들은 추가적인 화폐(500파운드 스텔링)로 II부류의 자

본가들에게서 소비품을 산다. 이 화폐는 I 부류의 자본가들이 지출한 것이며 그 대신에 그들은 II 부류의 상품으로 그 등가를 얻었다. 그 화폐는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삼으로써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그 화폐는 I 부류의 자본가들이 판 상품의 등가로서 되돌아오는 것이지만 이 상품은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잉여가치를 이룬다. 그리하여 I 부류의 자본가들 자신이 유통에 던져넣은 화폐가 그들 자신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I 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두번째 구매에 의하여(6번째 교환) II 부류의 자본가들의 상품으로 등가를 얻는다. 그런데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사지 않는다(7번째 교환)고 하면 I 부류의 자본가들은 사실상 1,000파운드 스텔링을 소비품에 지불한 것으로, 즉 자기들의 잉여가치를 모두 소득으로서 소비한 것으로 될 것이다. 즉 500은 I 부류의 자기들의 상품(생산수단)으로 그리고 500은 화폐로 지불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 대신에 그들은 또한 I 부류의 자기들의 상품(생산수단)을 500파운드 스텔링이나 창고에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5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아주 지출해버린 것으로 될 것이다.

그 반면에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불변자본의 4분의 3만을 상품자본의 형태에서 생산자본으로 도로 전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4분의 1은 화폐자본(500파운드 스텔링)의 형태로 전화되었을 것이며 사실상 늘고 있는 화폐 또는 기능을 중단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화폐로 전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가면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재생산의 규모를 4분의 1만큼 줄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I 부류의 자본가들이 걸머지고 있는 500의 생산수단은 상품형태로 있는 잉여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I 부류의 자본가들이 상품형태에 있는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와 함께 가지고 있던 선대한 500파운드 스텔링 대신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화폐로서는 언제나 실현될 수 있는 형태에 있으며 상품으로서로는 당장 팔릴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것만은 명백하다. 즉 단순재생산—여기에서는 II 부류에서나 I 부류에서나 생산자본의 매개 요소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은 이 경우에 I 부류에서 댄먼저 날려보낸 500이라는 황금의 새가 I 부류에로 되돌아올 때에만 의연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자본가가(여기에서는 아직 산업자본가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동시에 잉여가치의 다른 모든 소비자들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화폐를 소비품에 지출한다면 이 화폐는 그에게 있어서 끝장이 난 것이며 황천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화폐가 다시 그에게로 되돌아온다면 그가 상품을 주고 따라서 그의 상품자본에 의하여 화폐를 유통에서 낚아내는 한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의 한 해 총상품생산물(그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 상품생산물의 매개 요소의 가치 즉 매개 상품의 가치도 그에게 있어서는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 그리고 잉여가치로 갈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매개 상품들(그 요소들로서 총상품생산물을 이룬다)의 화폐화는 동시에 총상품생산물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일정한 분량의 화폐화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가 자신이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었으며—그것도 소비품에 화폐를 지출함으로써 던져넣었으며—그 화폐로 그의 잉여가치가 화폐화되며 또는 실현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옳다. 여기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똑같은 화폐조각인 것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유통에 던져넣은 화폐액(또는 그 한 부분)과 같은 주화형태의 일정한 화폐액인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그 해에 비로소 일을 시작하였을 따름이라면 어지간한 시일이 지나야, 적어도 몇달이 잘 지나야 자본가는 기업소득 자체에서 자기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화폐를 지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는 한순간도 자기의 소비를 멈추지는 않는다. 그는 앞으로 얻게 될 잉여가치를 예견하고 화폐를 자기자신에게 선대한다(이 경우에 제 주머니에서 선대하건, 신용에 의하여 남의 주머니에서 선대하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또 후에 가서야 실현되게 될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한 유통수단도 선대한다. 이와 반대로 기업이 이미 비교적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불과 소득은 한 해의 여러 시기에 나누어진다. 그러나 자본가의 소비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 소비는 소득을 앞당기며 그 소비의 규모는 일반적 소득이나 예상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례에 따라 타산된다. 얼마간의 상품이 매 번 팔릴 때마다 한 해에 생산될 잉여가치의 한 부분도 실현된다. 그러나 생산된 상품 가운데서 온 한 해 동안에 팔리는 것이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불변자본가치와 가변자본가치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분량만이라면 또는 가격이 떨어져서 한 해 총상품생산물이 팔려도 그에 들어

있는 선대된 자본가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소득을 앞당기는 것, 즉 앞으로 얻게 될 잉여가치를 타산하는 것이 위에서 지적된 화폐의 지출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자본가가 파산한다면 그의 채권자와 재판소는 앞으로의 소득을 타산하여, 그의 개인적 지출이 그의 기업의 규모와 마땅한 비례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의 규모에 보통 또는 정상적으로 알맞는 소득 즉 잉여가치와 마땅한 비례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따라서 자기들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유통케 하기 위하여) 화폐를 스스로 유통에 내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명제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기구의 필연적 조건으로도 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에는 두 계급 즉 자기들의 노동력 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노동계급과, 사회적 생산수단과 화폐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계급만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를 자기들의 자금에서 먼저 선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 자본가는 언제나 이 선대를 하는데 그것은 그가 구매자로서 행동하며 소비품을 사는 데 화폐를 지출하거나 또는 노동력이건 생산수단이건 이에 관계없이 자기의 생산자본의 요소들을 사는 데 화폐를 선대하는 형태로만 한다. 그는 언제나 등가물을 받고서만 화폐를 내준다. 그는 상품을 유통에 내던짐으로써 바로 자기상품을 선대하는데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화폐를 유통에 내던짐으로써 화폐를 선대한다. 그는 상품과 화폐의 어느 경우에도 다 유통의 출발점으로써 나선다.

실제적 행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으로 하여 모호하게 된다.

1) **산업자본**(이 자본의 첫 형태는 언제나 화폐이다. 왜냐하면 상인 자신은 어떠한 생산물이나 상품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과 **화폐자본**은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에서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이 취급하는 대상으로서 나타난다.

2) **잉여가치**—이것은 맨먼저 언제나 산업자본가의 손에 있지 않을 수 없다—는 여러 범주들로 갈라지며 이 범주들의 대표자는 산업자본가 외에 토지소유자(지대의 경우), 고리대금업자(이자율의 경우) 등과 정부와 그 관리들 그리고 금리생활자 등이다. 이 자(者)들은 구매자로서 산업자본가와 맞서 나타나며, 그러한 한에서 산업자본가의 상품을 화폐화하는 자들

로서 나타난다. 이들도 일정하게 화폐를 유통에 내던지며 산업자본가는 이들에게서 화폐를 얻는다. 이 경우에 늘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원천에서 그들이 원래 이 화폐를 얻었으며 또 끊임없이 서로 얻는가 하는 것이다.

제6절 I 부류의 불변자본⁴⁸⁾

더 연구해야 할 것은 I 부류의 불변자본 4,000Ic이다. 이 가치는 I 부류의 상품생산물에 다시 나타나는 가치, 즉 이 상품량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같다. 다시 나타나는 이 가치는 I 부류의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한 해 이전에 불변의 가치로서, 즉 이 부류의 생산수단의 주어진 가치로서 그 생산과정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이제 I 부류의 상품량 가운데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흡수되어 있지 않은 부분 전체로 존재한다. 그리하여 I 부류의 자본가들의 손에 남은 이 상품량의 가치는 그들의 한 해 총상품생산물가치의 2/3와 같다. 어떤 특수한 종류의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개별적 자본가의 경우에는 그는 자기의 상품생산물을 팔아 그것을 화폐로 전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화폐로 전화시킴으로써 자기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도 화폐로 도로 전화시킨다. 그는 화폐로 전화된 이 가치부분으로 다음에 다시 다른 상품판매자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사들인다. 즉 그는 자기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을 그것이 새로 생산적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현물형태로 전화시킨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전제가 불가능하다. I 부류의 자본가의 범주에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들 전체가 들어간다. 또한 그들의 손에 남은 4,000의 상품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 가운데서 다른 어떤 부분과도 교환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 해 생산물 가운데서 그렇게 교환될 수 있는 다른 부분이라고는 더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4,000을 내놓고는 한 해 생산물의 나머지는 모두 이미 처리되어 있다. 즉 한 부분은 사회적 소비밑천으로 흡수되어 있으며 다른 한 부분은 II 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II 부류는 I 부류

48) 여기에서부터는 둘째 원고에서.

와의 교환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미 교환하였다.

I 부류의 상품생산물은 모두가 그 현물형태로 보아 생산수단으로, 즉 불변자본 자체의 소재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난점은 매우 간단히 풀린다. 이 경우에도 이미 II 부류에서 본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만 그 모양이 다를 뿐이다. II 부류에서는 상품생산물이 모두 소비품이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이 상품생산물에 들어 있는 임금 더하기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생산물의 생산자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었다. 여기 I 부류에서는 상품생산물이 모두 생산수단으로 즉 건물, 기계, 용기, 원료와 보조자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한 부분 즉 생산분야에 적용되는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은 그 현물형태대로 곧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새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유통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그것이 I 부류 안에서 유통한다. II 부류에서는 상품생산물의 한 부분이 현물로 그 자체의 생산자들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I 부류에서는 생산물의 한 부분이 현물로 이 생산물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I 부류에서 소비된 불변자본가치는 이 부류의 상품생산물의 한 부분 = 4,000c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도 곧 다시 생산적 불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현물형태로 나타난다. II 부류에서는 3,000의 총상품생산물 가운데서 그 가치가 임금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은(=1,000) 부분은 II 부류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로 직접 들어가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상품생산물의 불변자본가치(=2,000)는 II 부류 자본가들의 생산적 소비로 다시 들어갈 수 없고 I 부류와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I 부류에서는 6,000의 가치를 가진 총상품생산물 가운데서 그 가치가 임금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은 부분(=2,000)은 그 생산물의 생산자들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으며 또 그 현물형태로 보아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먼저 II 부류의 생산물과 교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I 부류의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 4,000은 I 부류의 자본가계급 전체를 놓고 볼 때 I 부류의 불변자본으로서 직접 다시 기능할 수 있는 현물형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I 부류의 총생산물은 현물형태로 보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는 불변자본의 요소들로서만

쓰일 수 있는 사용가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6,000의 가치가 있는 이 생산물 가운데서 $1/3$ (2,000)은 II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며 나머지 $2/3$ 는 I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한다.

I부류의 불변자본은 제철소에 얼마, 탄광에 얼마 등으로 생산수단생산의 여러 부문들에 투하된 여러 자본집단들의 총량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본집단들 가운데의 매개 집단 또는 이 사회적인 집단적 자본들 가운데의 매개 자본들은 다시 크건작건 자립적으로 기능하는 개별적인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사회의 자본 예컨대 7,500(백만 등등을 의미할 수 있다)은 여러 자본집단들로 갈라진다. 7,500의 사회적 자본은 특수한 부분들로 갈라져 있으며 이 부분들은 각각 특수한 생산부문에 투하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가치 가운데서 매개 특수한 생산부문에 투하되어 있는 부분은 현물형태로 보아 한 부분은 매개 특수한 생산분야의 생산수단이며, 또 한 부분은 그 분야의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그 분야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노동력은 분업으로 하여 그 노동력이 매개 생산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특수한 작업종류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사회적 자본 가운데서 매개 특수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은 또한 그 부문에 투하된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는 개별적 자본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I이나 II나 할 것 없이 두 부류에 다 들어맞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런데 I부류에서 그 상품생산물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불변가치로 말하면 그 일부는 그 자체가 생산물로서 나온 바로 그 특수한 생산분야에(또는 심지어 개별적 기업소에)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간다. 예컨대 알곡이 알곡생산에, 석탄이 석탄생산에, 철이 기계의 형태로 철생산에 다시 들어간다 등등.

그러나 I부류의 불변자본가치를 이루는 생산물의 한 부분이 다시 직접 그 특수한 또는 개별적 생산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그것은 자리를 바꿀 따름이다. 그것은 현물형태로 I부류의 다른 생산분야에 들어가는데 I부류의 다른 생산분야의 생산물은 그것을 현물로 보상한다. 그것은 이 생산물들의 단순한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산물들은 모두 I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요인들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가지만 I부류의 한 기업집단 대신에 다른 기업집단에 들어갈 뿐이다. 여기서는 I부류의 개별적 자본가들 사이의 교환이 문제인 만큼 그것은 한 현물형

태의 불변자본과 다른 현물형태의 불변자본의 교환이며 한 종류의 생산수단과 다른 종류의 생산수단의 교환이다. 그것은 I 부류의 서로 다른 개별적 불변자본들 사이의 호상교환이다. 생산물이 직접 그 자체의 생산부문의 생산수단으로서 쓰이지 않는 한에서 그것들은 자체의 생산지에서 다른 생산지로 옮겨가며 그리하여 서로 보상한다. 다시 말하면(II부류에서의 잉여가치의 분배와 비슷하게) I 부류의 매개 자본가는 그가 이 4,000의 불변자본의 공동소유자라는 그 정도에 비례하여 그에게 필요한 해당하는 생산수단을 이 상품량에서 끌어낸다. 생산이 자본주의적이 아니라 사회적이려면 I 부류의 이 생산물들은 이 부류의 생산부문들 사이에서 재생산을 위하여 못지 않게 끊임없이 생산수단으로서 다시 분배될 것이며, 한 부분은 그것이 생산물로서 나온 그 생산분야에 직접 남을 것이며, 다른 한 부분은 다른 부문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리하여 이 생산물들이 이 부류의 여러 생산부문들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갔다 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제7절 두 부류 안에서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그리하여 한 해에 생산된 소비품의 총가치는 한 해 동안에 재생산된 II 부류의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II 부류의 새로 생산된 잉여가치(즉 II 부류에서 한 해 동안에 생산된 가치) 더하기 한 해 동안에 재생산된 I 부류의 가변자본가치와 새로 생산된 I 부류의 잉여가치(즉 더하기 I 부류에서 한 해 동안에 생산된 가치)와 같다.

따라서 단순재생산을 전제로 하면 한 해에 생산된 소비품의 총가치는 새로 생산된 한 해의 가치와 같다. 즉 사회적 노동에 의하여 한 해 동안에 생산된 총가치와 같으며 또 같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단순재생산에서는 이 총가치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총노동일은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즉 1) 필요노동. 이 노동은 한 해 동안에 1,500v의 가치를 창조한다. 2) 잉여노동. 이것은 1,500m의 추가적 가치 또는 잉여가치를 창조한다. 이 가치들의 합계는 3,000이며 한 해에 생산된 소비품의 가치 3,000과 같다. 따라서 한 해 동안에 생산된 소비품의 총가치는 사회적 총노동일이 한 해 동안에 생산한 총가치와

같으며 사회적 가변자본의 가치 더하기 사회적 잉여가치와 같으며 한 해의 새로운 생산물 전체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치량이 교환에서 서로 상쇄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II부류의 상품 즉 소비품의 추가치가 모두 사회적 생산의 이 부류에서 생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들이 서로 상쇄되는 것은 II부류의 생산물가치에서 다시 나타나는 불변자본가치가 I부류에서 새로 생산된 가치(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v+m)$ 은 II부류의 생산물 가운데서 그것의 생산자들(II부류의)에게 있어서 불변자본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산물의 가치는 $c+v+m$ 으로 갈라지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생산물의 가치가 어째서 $v+m$ 으로 갈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IIc가 이 경우에 $I(v+m)$ 과 같으며 사회적 생산물의 이 두 구성부분이 교환에 의하여 그것들의 현물형태를 서로 교환하며 따라서 이 교환이 진행된 다음에는 IIc의 가치는 다시 생산수단으로 존재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I(v+m)$ 의 가치는 소비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정으로 하여 A 스미드는 한 해 생산물의 가치가 $v+m$ 으로 분해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1) 한 해 생산물 가운데서 소비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맞으며 2) 이 가치가 전적으로 II부류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II부류의 생산물가치는 이 II부류에서 선대된 가변자본 더하기 II부류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와 같다는 뜻에서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은 $II(c+v+m) = II(v+m) + I(v+m)$ 이라는 뜻에서만 또는 $IIc = I(v+m)$ 이기 때문에만 들어맞는다.

이로부터 또한 다음과 같이 된다.

한 해의 사회적 노동일(즉 온 한 해 동안에 전체 노동계급이 지출하는 노동)이 매 개별적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만, 즉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만 갈라지며 따라서 이 노동일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만, 즉 가변자본가치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자기자신의 재생산수단을 사는 데 쓰는 가치부분과 자본가가 그 자신의 개인적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잉여가치로만 갈라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노동일의 한 부분은 전적으로 새로운 불변자본의 생산에 지출된

다. 즉 전적으로 노동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며 따라서 노동 과정에 동반하는 가치증식과정에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생산물의 생산에 지출된다.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사회적 총노동일은 3,000의 화폐가치로 표시되는데 그 가운데서 1/3인 1,000의 가치만이 소비품 즉 사회의 총가변자본가치와 총잉여가치가 결국 실현되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II부류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이 전제에 의하면 사회적 노동일의 2/3는 새로운 불변자본의 생산에 쓰인다. I부류의 개별적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노동일의 이 2/3는 사회적 노동일의 나머지 1/3이 II부류에서 그러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다만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의 생산에만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노동일의 이 2/3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한 I부류 생산물의 사용가치로 보면 생산적 소비과정에 있거나 그 과정에서 다 소비된 불변자본의 보상분을 생산할 따름이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노동일의 이 2/3가 생산하는 추가치는 물론 그 생산자에게 있어서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을 따름이지만 그러나 그 2/3가 생산하는 사용가치는 임금이나 잉여가치가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용가치는 결코 아니다. 그 생산물은 생산수단이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I부류에서건 II부류에서건 사회적 노동일의 어떠한 부분도 이 두 큰 생산분야에 적용되었으며 이 분야들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것은 불변자본가치 $= 4,000 I c + 2,000 II c$ 에 덧붙는 추가적 가치 $2,000 I (v+m) + 1,000 II (v+m)$ 만이다. 생산수단의 형태로 생산되는 새로운 가치는 아직 불변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장차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II부류의 총생산물 즉 소비품은 그 사용가치로 보면, 구체적으로 그 현물형태로 보면 II부류에 지출된 사회적 노동일의 3분의 1의 생산물이다. 그것은 이 부류에서 든 천 짜는 노동, 빵 굽는 노동 등으로서의 구체적 형태를 띤 노동의 생산물이며 노동과정의 주체적 요소로서 기능을 하는 한에서의 이 노동의 생산물이다. 이와 반대로 이 II부류의 총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으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사용가치, 소비품의 형태인 새로운 현물형태로 다시 나타날 따름인데 전에는 생산수단의 형태로 있었다. 이 부분의 가치는 노동과정에 의하여 이전의 현물형태에서 새로운 현물

형태로 옮겨져 있다. 그러나 한 해 생산물가치의 이 $2/3$ 의 가치 2,000은 II부류 자본의 그 해의 가치증식과정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노동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II부류의 생산물은 새로 기능을 하는 산 노동과 그리고 그 노동이 실현되는 대상적 조건으로서 그 노동의 전제로 되는 주어진 생산수단의 결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II부류의 총생산물가치 3,000은 새로 덧붙여진 사회적 노동일의 $1/3$ 에 의하여 생산된 새로운 가치($500v+500m=1,000$)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II부류의 생산과정 이전에 끝난 과거의 사회적 노동일의 $2/3$ 가 대상화되어 있는 불변가치로 이루어진다. II부류 생산물의 이 가치 부분은 그 생산물 자체의 한 부분으로 표시된다. 그것은 사회적 노동일의 $2/3$ 에 해당하는 2,000의 가치가 있는 소비품의 양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불변가치부분이 다시 나타나는 새로운 사용형태이다. 따라서 소비품의 한 부분 2,000IIc와 I부류의 생산수단 I ($1,000v+1,000m$)과의 교환은 사실상 이 해 노동의 어떠한 부분도 아니며, 이 해 이전에 끝난 총노동일의 $2/3$ 와 이 해에 새로 덧붙여진 노동일의 $2/3$ 와의 교환이다. 이 해의 사회적 노동일의 $2/3$ 는 그것이 한 해에 소비되는 소비품의 가치 가운데서 이 해 안에가 아니라 이 해 이전에 지출되고 실현된 노동일의 $2/3$ 가 들어 있는 부분과 교환되지 않는다면 불변자본의 생산에 쓰이면서도 동시에 생산자들을 위한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해의 노동일의 $2/3$ 와 이 해 이전에 지출된 노동일의 $2/3$ 와의 교환이며 이 해의 노동시간과 지난 해의 노동시간의 교환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풀어준다. 즉 사회적 총노동일의 $2/3$ 가 가변자본이나 잉여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는데 지출되지 않고, 오히려 한 해 동안에 소비된 자본을 보상하는 데 쓰이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총노동일에 새로 생산된 가치가 어째서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로 분해될 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준다. 이 수수께끼는 I부류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를 그들이 실현하는 II부류의 생산물가치의 $2/3$ (그런데 이것은 한 해의 총생산물가치의 $2/9$ 를 이룬다)가 가치로 볼 때 이 해 이전에 끝난 사회적 노동일의 $2/3$ 의 생산물이라는 것으로 하여 간단히 풀린다.

I부류와 II부류의 사회적 생산물의 합계 즉 생산수단과 소비품은 그

사용가치로 보면, 구체적으로 그 현물형태로 보면 이 해의 노동생산물이지만 그러나 이 노동 자체를 쓸모있는 구체적 노동으로서 보는 한에서만 그런 것이지 이 노동을 노동력의 지출로서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으로서 보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첫째 경우에 그러한 것도 다만 생산수단에 덧붙여지며 그것을 다루는 산 노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은 새로운 생산물로 이 해의 생산물로 전화되었다는 뜻에서만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해의 노동도 그와는 독립하여 있는 생산수단이 없이는 노동수단과 생산재료가 없이는 생산물로 전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제8절 두 부류 안에서의 불변자본

9,000의 총생산물가치와 그 가치가 갈라지는 범주들로 말하면 그 분석은 개개 자본의 생산물가치의 분석보다 더 어려울 것은 없고 오히려 그것과 같다.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한 해의 사회의 총생산물에는 한 해의 사회적 노동일 셋이 들어 있다. 이 사회적 노동일 하나하나의 가치표현은 3,000이다. 그러므로 총생산물의 가치표현은 $3,000 \times 3 = 9,000$ 이다.

그리고 또 이 총노동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생산물의 한 해 생산과정 이전에 이미 지나간 것은 I부류에서는 $4/3$ 노동일(새로 생산된 가치 4,000)이고 II부류에서는 $2/3$ 노동일(새로 생산된 가치 2,000)이다. 합하여 2사회적 노동일이며 그것은 새로운 가치 6,000을 생산하였다. 그러므로 $4,000Ic + 2,000IIc = 6,000c$ 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가치에서 다시 나타나는 생산수단의 가치 즉 불변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

또한 I부류에서 새로 덧붙여진 사회적 한 해 노동일의 $1/3$ 은 필요노동이다. 즉 가변자본의 가치 $1,000Iv$ 를 보상하며 I부류에서 적용된 노동의 가격을 지불하는 노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II부류에서는 사회적 노동일의 $1/6$ 이 500의 가치액을 가진 필요노동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노동일 절반의 가치표현인 $1,000Iv + 500IIv = 1,500v$ 는 이 해에 덧붙여진 총노동일 가운데서 필요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첫 절반의 가치표현이다.

끝으로 I부류에서는 총노동일의 $1/3$ 새로 생산된 가치 1,000은 잉여

노동이다. II부류에서는 노동일의 1/6 새로 생산된 가치 500이 잉여노동이다. 이것들은 모두 새로 덧붙여진 총노동일의 나머지 절반을 이룬다. 그러므로 생산된 총잉여가치=1,000 I m+500 II m=1,500m이다.

따라서 :

사회적 생산물가치의 불변자본부분(c) :

이 생산과정 이전에 지출된 2노동일, 가치표현=6,000.

한 해 동안에 지출된 필요노동(v) :

한 해 생산에 지출된 노동일의 절반, 가치표현=1,500.

한 해 동안에 지출된 잉여노동(m) :

한 해 생산에 지출된 노동일의 절반, 가치표현=1,500.

한 해 노동에 의하여 새로 생산된 가치(v+m)=3,000.

총생산물가치(c+v+m)=9,000.

따라서 어려운 것은 사회적 생산물 자체의 가치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들과 그 물질 구성부분들을 비교하는 경우에 생긴다.

다시 나타날 따름인 불변가치부분은 사회적 생산물 가운데서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가치와 같으며 그것은 이 사회적 생산물의 이 부분에 구현되어 있다.

한 해에 새로 생산된 가치=v+m은 이 생산물 가운데서 소비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가치와 같으며 그것은 사회적 생산물의 이 부분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를 제쳐놓는다면—여기에서 그 예외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생산수단과 소비품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고 완전히 다른 현물형태 또는 사용형태의 생산물들이며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종류의 구체적인 노동의 생산물들이다.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를 적용하는 노동은 기계를 만드는 노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치표현이 3,000인 한 해의 총노동일은 어떠한 불변가치부분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소비품 3,000의 생산에 지출된 것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3,000=1,500v+1,500m은 가변자본가치+잉여가치로만 분해되기 때문이다. 한편 또 불변자본가치 6,000은 소비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산물인 생산수단에 다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회적 노동일의 어떠한 부분도 이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에는 지출되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오히려 이 전체 노동일은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비품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노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같이 보인다. 비밀은 이미 밝혀져 있다. 한 해 노동에 의하여 새로 생산된 가치는 II부류의 생산물가치와 같으며 새로 생산된 소비품의 총가치와 같다. 그러나 이 생산물가치는 한 해 노동에서 소비품의 생산(II부류)에 지출된 부분보다 2/3만큼 더 크다. 한 해 노동의 1/3만이 소비품의 생산에 지출되어 있다. 이 한 해 노동의 2/3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I부류에서 지출되어 있다. 이 기간에 I부류에서 새로 생산된 가치 즉 I부류에서 생산된 가변자본가치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은 가치는 II부류에서 생산된 소비품으로 다시 나타나는 II부류의 불변자본가치와 같다. 따라서 그것들은 서로 교환되고 현물로 보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II부류에서 생산된 소비품의 총가치는 I부류와 II부류에서 새로 생산된 가치의 합계 즉 $II(c+v+m) = I(v+m) + II(v+m)$ 와 같으며 따라서 한 해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v+m$ 형태의 새로운 가치의 총액과 같다.

한편 또 생산수단(I)의 총가치는 생산수단(I)의 형태와 소비품(II)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불변자본가치의 합계와 같으며 따라서 사회의 총생산물에 다시 나타나는 불변자본가치의 총계와 같다. 이 총가치는 I부류에서 이 해의 생산과정 이전에 지출된 과거의 4/3노동일과 II부류에서 이 해의 생산과정 이전에 지출된 과거의 2/3노동일의 가치표현과 같으며 따라서 모두 2총노동일의 가치표현과 같다.

따라서 사회의 한 해 생산물의 분석에서 곤란이 생기는 것은 불변가치 부분이 이 가치부분에 첨가된 소비품으로 표시되는 새로운 가치 $v+m$ 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산물인 생산수단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치 소비된 생산물량의 2/3가—가치로 보아—그 생산에 어떠한 노동도 사회가 지출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형태로 다시 있고 새로운 생산물로서 다시 나타나는 것같이 보인다. 개별적 자본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다. 매개 자본가는 일정한 종류의 구체적 노동을 적용하며 이 노동이 그것에 알맞는 생산수단을 생산물로 전화시킨다. 예컨대 자본가는 기계제작업자이고 한 해 동안에 지출한 불변자본은 6,000c, 가변자본은 1,500v, 잉여가치는 1,500m이라고 하자. 생산물은 9,000이다. 그 생산물은 18대의 기계이고 그 한 대의 가치는 500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모든 생산물은 똑같은 형태, 기계의 형태로 있다(기계제작업자가 몇 개 종류의 기계를

생산한다면 매개 종류마다 계산은 따로 한다). 모든 상품생산물은 기계제작에 한 해 동안 지출된 노동의 생산물이며 똑같은 종류의 구체적 노동과 똑같은 생산수단이 결합된 열매이다. 그러므로 생산물가치의 여러 부분들이 똑같은 현물형태로 표시된다. 즉 12대의 기계에는 6,000c가 들어 있고 3대의 기계에는 1,500v, 나머지 3대의 기계에는 1,500m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12대 기계의 가치=6,000c인 것은 이 12대의 기계에 기계를 제작하기 이전에 지출된 과거노동만 구현되어 있고 이 해의 기계제작 자체에 지출된 노동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18대의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가치가 저절로 12대의 기계의 가치로 전화된 것이 아니지만 이 12대의 기계(그 자체가 4,000c+1,000v+1,000m으로 이루어지는)의 가치는 18대의 기계의 가치에 들어 있는 총불변자본가치와 같다. 그러므로 기계제작업자는 18대의 기계 가운데서 12대를 팔아 18대의 새로운 기계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가 지출한 불변자본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반대로 적용되는 노동이 기계를 제작하는 데만 쓰였는데 그 노동의 결과에 한편으로는 1,500v+1,500m과 같은 6대의 기계가 나오고 다른 편으로는 6,000c의 가치액을 가진 철, 동, 나사, 띠 등 즉 알다시피 기계를 제작하는 개별적 자본가 자신은 생산하지 않고 유통과정을 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안되는, 현물형태의 기계의 생산수단이 나온다면 사태는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핏보면 사회의 한 해 생산물의 재생산은 이와같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개별적 자본의 생산물 즉 사회적 자본 가운데서 자립적인 기능을 하며 자체의 생명을 가진 임의의 부분의 생산물은 이러저러한 현물형태를 가질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그 생산물이 실제로 사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생산물이 유통능력이 있는 상품세계의 한 성원이라는 상표가 찍힌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생산물이 자체가 생산물로서 나온 바로 그 생산과정에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가, 따라서 그 생산물가치 가운데서 불변자본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실제로 다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현물형태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으며 또 우연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산물가치의 이 부분은 매매를 통하여 다시 이 생산물의 물적 생산요소들의 형태로 전화되며 그러한 교환에 의하여 불변자본은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현물형태로 재생산된다.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은 사정이 다르다. 재생산의 모든 물적 요소들은 그 현물형태로 이 생산물 자체의 부분들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된 불변자본부분은 한 해 생산물에 다시 나타나는 불변자본부분 전체가 실제로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한에서만 총생산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재생산을 전제로 하면 생산물 가운데서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회적 자본의 불변가치부분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면 자본가는 새로 덧붙여지는 노동에 의하여 그의 생산물가치에 들어가는 그의 가변자본 더하기 잉여가치만을 생산하는데 불변가치부분은 새로 덧붙여지는 노동의 구체적 성격에 의하여 생산물에 옮겨진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분, 따라서 이 생산수단에 새로운 가치를 덧붙이며 이 생산수단의 생산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그것으로 옮겨놓는 부분은 낡은 생산수단의 형태로 소비된 불변자본을 I부류와 II부류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불변자본 밖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사회적 노동일의 이 부분이 생산하는 것은 생산적 소비에 들어갈 생산물뿐이다. 따라서 이 생산물의 총가치는 불변자본으로서만 새로 기능을 할 수 있고 불변자본만을 그 현물형태로 되살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가변자본으로도 잉여가치로도 분해되지 않는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편으로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서 소비품을 생산하는 부분은 사회적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어떠한 부분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현물형태로 I부류와 II부류의 가변자본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실현하게 되어 있는 생산물만을 생산한다.

문제를 온 사회의 견지에서 본다면,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요소도 개인적 소비요소도 다 들어 있는 사회적 총생산물을 본다면 프루동이 부르조아 경제학에서 본단 수법에 빠져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사회도 통틀어 즉 전체로서 보면 이 사회의 그 독특한 역사적, 경제적 성격이 없어지는 것같이 보아서는 안된다. 그와 반대이다. 이 경우에는 총자본가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 사회의 총자본은 개별적 자본가들 총체의 주식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이 주

식회사는 누구나 자기가 집어넣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가 끌어내는 것은 모른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주식회사들과 같다.

제9절 A. 스미드, 슈토르흐 및 램제이에 대한 회고

사회적 생산물의 총가치는 $9,000=6,000c+1,500v+1,500m$ 이다. 다시 말하면 6,000은 생산수단의 가치를 재생산하며 3,000은 소비품의 가치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득의 가치($v+m$)는 총생산물가치의 $1/3$ 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이 3 분의 1 의 가치액만큼 소비자들 전체—노동자와 자본가—가 상품인 생산물을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소비 밑천에 넣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물가치의 $2/3$ 인 6,000은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이다. 따라서 이 액만큼의 생산수단은 생산밑천에 다시 합쳐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슈토르흐는 증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한 해 생산물의 가치는 갈라져서 한 부분은 자본이 되고 또 한 부분은 이윤이 된다는 것과 한 해 생산물의 가치의 이 매개 부분은 국민이 자기 자본을 갱신하고 또 자기의 소비밑천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생산물들을 규칙적으로 산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 자본을 이루는 생산물들은 결코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슈토르흐, 『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파리, 1824년, 134~135, 150페이지)

그러나 A. 스미드는 자신의 엉터리없는 교조—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까지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를 이미 위에서 언급한 형태로만 즉 사회적 생산물의 총가치가 소득으로, 다시 말하여 임금 더하기 잉여가치로 또는 그의 표현대로 하면 임금 더하기 이윤(이자) 더하기 지대로 분해된다는 형태로만 내세운 것이 아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더 통속적인 형태로 즉 소비자들은 결국에는(ultimately) 생산물의 총가치를 생산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형태로도 내세웠다. 이 명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정치경제학의 논쟁할 여지없는 하나의 공인된 문구로 또는 심지어 영원한 진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한 제품, 예컨대 아마천으로 만든 속옷을 들어보자. 맨먼저 아마실을 뽑는 방적업자는 아마의 추가치를 아마재배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즉 아마씨앗, 거름, 부림집송먹이 등등의 가치와 건물, 농기구 등등과 같은 아마재배자의 고정자본이 이 생산물에 떼어주는 가치부분, 아마생산에서 지불한 임금, 아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이윤, 지대), 끝으로 아마생산지에서 방적공장까지의 아마수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음에 직조업자는 아마실의 방적업자에게 아마의 이 가격을 보상하여주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기계, 건물 등 간단히 말하여 고정자본 가운데서 아마로 넘어간 가치부분, 그리고 또 방적과정에 소비된 모든 보조자재, 방적업자의 임금, 잉여가치 등을 보상하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또 표백업자, 완성된 아마천의 수송비, 끝으로 속옷제조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속옷제조업자는 그에게 원자재를 대주었을 뿐인 그 전의 모든 생산자들의 전체 가격을 다 지불한다. 그런데 속옷 제조업자의 손에서도 또한 가치가 덧붙여진다. 즉 한 부분은 노동수단, 보조자재 등의 형태로 속옷제조에서 소비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또 한 부분은 그 제조에 지출된 노동에 의하여 덧붙여진다. 이 노동은 속옷을 제조하는 노동자의 임금가치와 속옷 제조업자의 잉여가치를 덧붙인다. 그러면 이 생산물 전체 즉 속옷을 생산하는 데 결국 100파운드 스텔링이 들고 이것을 한 해 생산물의 총가치 가운데서 사회가 속옷에 지출하는 몫이라고 하자. 속옷 소비자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한다. 즉 속옷에 들어 있는 모든 생산수단의 가치와 아마재배자, 방적업자, 직조업자, 표백업자, 속옷 제조업자 및 모든 수송업자들의 임금과 잉여가치를 지불한다. 이것은 완전히 옳다. 사실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즉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도 사정은 같다고 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소비품의 가치, 사회적 생산물 가운데서 소비밀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가치, 따라서 사회적 생산물가치 가운데서 소득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이다. 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 총액은 물론 그 상품들에 소비된 모든 생산수단의 가치(불변자본부분) 더하기 마지막에 덧붙여진 노동이 창조한 가치(임금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다. 따라서 모든 소비자들은 이 모든 가치액을 지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 개별적 상품의 가치는 바로 $c+v+m$ 으로 이루어지지만 소비밀천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품의 가치 총

액은 모두 해서 가장 많이 보아도 사회적 생산물가치 가운데서 $v+m$ 으로 분해되는 부분과만, 즉 한 해 동안에 지출되는 노동이 이미 있는 생산수단에, 불변자본가치에 덧붙인 가치와만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변자본가치로 말하면 이미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사회적 생산물량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상된다. 첫째로 소비품을 생산하는 II부류의 자본가들과 그것을 위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I부류의 자본가들과의 교환에 의하여 보상된다. 바로 여기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본으로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득으로 된다는 판에 박힌 말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0 IIc는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불변자본가치를 이룬다. 따라서 II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생산물이 그 현물형태로 보아 소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가치를 자신들이 소비할 수 없다. 다른 한편 2,000 I ($v+m$)은 I부류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생산한 임금과 잉여가치이다. 이 가치는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그것들 자체의 가치를 소비할 수 없는 물건들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두 4,000의 가치액이 있는데 그 절반은 교환 전이나 교환 후나 불변자본을 보상할 따름이며 절반은 소득을 이룰 따름이다. 그러나 둘째로 I부류의 불변자본은 현물로 보상되는데 한 부분은 I부류의 자본가들 사이의 교환에 의하여 또 한 부분은 매개 기업 안에서 현물로 보상됨으로써 보상된다.

한 해 생산물의 총가치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에 박힌 말은 소비자들 속에 개인적 소비자와 생산적 소비자라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소비자들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만 옳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물의 한 부분이 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소득으로서 소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

총생산물의 가치 9,000을 6,000c+1,500v+1,500m으로 나누고 3,000($v+m$)을 소득으로만 본다면, 반대로 가변자본은 사라지고 자본은 사회적으로 보면 불변자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같이 보인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맨처음에 1,500v로서 나타난 것은 이제는 사회적 소득의 한 부분으로 즉 노동계급의 소득인 임금으로 분해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은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 램제이는 실제로 이러한 결론을 끌어낸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 자본은 고정자본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가 생각하는 고정자본은 불변자본이며 생산수단에 들어 있는 가치량이다. 그런데 이 생산수단이 노동수단이건 원료, 반제품, 보조자재 등과 같은 노동재료이건 그에게는 상관없이 없다. 그는 가변자본을 유동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동자본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생산물이 완성되기에 앞서 그들에게 선대하는 생활수단과 그밖의 필수품으로만 이루어진다. …유동자본이 아니라 고정자본만이 본래의 의미에서 국민의 부의 원천이다. …유동자본은 생산에서 직접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에 본질적인 것도 전혀 아니며, 다만 민중의 가련한 가난으로 하여 필요하게 된 하나의 조건이다. …고정자본만이 국민적 견지에서 생산비의 요소를 이룬다.” (램제이, 같은 책, 23~26페이지의 이곳저곳)

램제이는 불변자본의 뜻으로 쓰고 있는 고정자본을 다음과 같이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노동(즉 한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의 생산물의 한 부분이 고정자본으로서 즉 앞날의 상품생산을 돕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을 먹여살리지는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기간의 길이…” (59페이지)

여기에서도 A. 스미드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차이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 속에 빠뜨려 놓음으로써 그가 끼친 해독을 다시 보게 된다. 램제이가 말하는 불변자본은 노동수단으로 이루어지며 그가 말하는 유동자본은 생활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자본은 다 이루어진 가치를 가진 상품들이다. 이것도 저것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제10절 자본과 소득 : 가변자본과 임금 ⁴⁹⁾

한 해의 총재생산, 이 해의 총생산물은 이 해의 쓸모있는 노동의 생산물이다. 그러나 이 총생산물의 가치는 그 가치 가운데서 한 해의 노동이

49) 여기서부터는 여덟째 원고에서.

구현되어 있는 부분보다 크다. 즉 이 해 동안에 지출된 노동력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보다 크다. 한 해의 새로운 가치 즉 이 해에 상품형태로 새로 생산된 가치는 생산물가치 즉 온 한 해 동안에 생산된 상품량의 총가치보다 작다. 한 해 생산물의 총가치 가운데서 그 해의 노동이 한 해 생산물에 덧붙인 가치를 뺄 때 나오는 차이는 실제로 재생산된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재형태로 다시 나타난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 가치는 한 해 생산물보다 앞서 존재하여온 가치에서 한 해 생산물로 넘어온 것이며 이 해의 사회적 노동과정에 참가한 불변자본구성부분들의 수명에 따라 그 생산기일이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며 지난 해나 몇 해 전에 세상에 나온 생산수단의 가치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어쨌든 그것은 지난 해들에 생산된 생산수단에서 이 해의 생산물로 넘어온 가치이다.

우리의 도식을 들면 I 부류와 II 부류 사이에서와 II 부류 안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요소들이 교환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4,000c + 1,000v + 1,000m \text{ (이 마감의 2,000은 소비품 II } c \text{로 실현된다)} \\ = 6,000$$

$$II. 2,000c \{ I (v+m) \text{ 과의 교환에 의하여 재생산된다} \} + 500v + 500m = 3,000$$

$$\text{가치총액} = 9,000$$

한 해 동안에 새로 생산된 가치는 v 와 m 에만 들어 있다. 따라서 이 해의 새로 생산된 가치의 총액은 $v+m$ 의 총액 $= 2,000 I (v+m) + 1,000 II (v+m) = 3,000$ 과 같다. 이 해의 생산물가치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 해의 생산에서 소비된 이전의 생산수단의 가치에서 넘어온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3,000의 가치 밖에는 이 해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해의 노동이 한 해에 새로 생산한 가치의 전부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2,000 I (v+m)$ 은 II 부류를 위하여 그 $2,000 II c$ 를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보상한다. 따라서 한 해 노동 가운데서 I 부류에서 지출된 3분의 2는 II 부류의 불변자본을 그 총가치도 그 현물형태도 새로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보면 한 해 동안에 지출된 노동의 3분의 2는 II 부류에 맞는 현물형태로 실현되어 있는 새로운 불변자본가치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한 해 노동의 비교적 큰 부

분이 소비품의 생산에 지출된 불변자본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불변자본(생산수단으로 존재하는 자본가치)의 생산에 지출되어 있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와 야만인의 차이는 시니어⁵⁰⁾가 생각하고 있듯이 야만인이 자기에게 소득으로 즉 소비품으로 분해될 수 있는(전화될 수 있는) 어떠한 열매도 가져오지 않는 노동을 일정한 시간 지출하는 것이 야만인의 특전이며 속성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데 있다.

ㄱ) 자본주의사회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한 해 노동의 비교적 많은 부분을 생산수단(따라서 불변자본)의 생산에 사용하는데 이 생산수단은 임금의 형태로도 소득으로도 분해될 수 없고 오직 자본으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다.

ㄴ) 야만인이 활, 화살, 돌망치, 도끼, 바구니 등을 만든다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들인 시간을 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켰을 따름이라는 것을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야만인은 시간낭비에 대하여 아주 무관심한 것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엄중한 죄를 짓는데, 예컨대 타일러가 말하고 있듯이 화살 하나를 만드는 데 온 한 달을 들이는 일이 드문하다.

51)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본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득이며 또 그 반대이기도 하다는 통용되고 있는 표상에 의하여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은 이론상의 곤란 즉 현실적 연관의 이해를 모면하여 보려고 하는데, 이 표상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내세우면 전혀 그릇된 것으로 된다(따라서 이 표상에는 한 해의 재생산과 함께 진행되는 전체

50) “야만인이 활을 만든다면 그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지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시니어, 『정치경제학의 기본원리』, 아리바베스 번역, 파리, 1836년, 342~343페이지), “사회가 전진하면 할수록 사회는 더 많은 절제를 요구한다.”(같은 책, 342페이지) — 「자본론」 제1부, 제22장, 제3절, 619페이지*를 보라.

* 이 전집, 제23권, 제2분책, 251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51) E. B. 타일러, 『인류의 원시사 연구』, H. 윌러 번역, 라이프찌히, 발행날짜 없음, 240페이지

교환과정에 대한 완전한 오해가 들어 있으며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 옳은 것의 실제적 기초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다).

그러면 이 표상이 부분적으로 옳다는 근거로 되는 실제적 관계를 개괄하여 보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곧 드러날 것이다.

1) 가변자본은 자본가의 손에서는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임금노동자의 손에서는 소득으로서 기능한다.

가변자본은 맨먼저 화폐자본으로서 자본가의 손 안에 있게 된다. 그것은 자본가가 그것으로 노동력을 삼으로써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가변자본이 자본가의 손에는 화폐형태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화폐형태로 있는 주어진 가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불변의 크기이고 가변의 크기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만 가변자본이다. 바로 그것이 노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하여 그러하다. 그것은 그 화폐형태를 벗어버린 후에야만, 그것이 노동력으로 전화되고 이 노동력이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자본주의적 과정에서 기능을 하게 된 후에라야만 실제적 가변자본으로 된다.

맨처음에는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자본가를 위하여 기능을 한 화폐는 이제는 노동자의 손에서 그의 임금의 화폐형태로서 기능을 하여 그는 그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전화시킨다. 따라서 그 화폐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팔아얻는 소득의 화폐형태로서 기능을 한다.

여기에는 구매자, 이 경우에는 자본가의 화폐가 그의 손에서 판매자, 이 경우에는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단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가변자본이 자본가를 위해서는 소득으로서 이중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화폐가 처음에 자본가의 손에서 그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따라서 잠재적 가변자본으로서 존재하며 그리고 자본가가 그 화폐를 노동력으로 전화시키자 노동자의 손에서 팔린 노동력의 등가로서 쓰인다. 그러나 똑같은 화폐가 판 사람의 손에서는 산 사람의 손에서와는 다르게 이용된다는 것은 모든 상품매매에 다 있는 현상이다.

변호론적 경제학자들은 사태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즉 구매자인 자본가의 편에서는 화폐의 노동력으로의 전화인 유통행위 $G-A (=G-W)$ 와 판매자인 노동자편에서

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인 $A-G(=W-G)$ 만을 엄두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당분간 문제시하지 않으면 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똑같은 화폐가 이 경우에는 두 자본을 실현한다. 즉 구매자인 자본가는 자기의 화폐자본을 산 노동력으로 전화하여 이 노동력을 자기의 생산자본에 합친다. 또 한편 판매자인 노동자는 자기의 상품인 노동력을 화폐로 전화하여 이 화폐를 소득으로서 지출함으로써 바로 자기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새로 다시 팔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노동력은 그 자체가 상품 형태에 있는 그의 자본이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의 소득이 그에게로 솟아나온다고 말이다. 사실은 노동력이 노동자의 재산(끊임없이 갱신되고 재생산되는)이지 그의 자본은 아니다. 노동력은 노동자가 끊임없이 팔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팔지 않으면 안되는, 그리고 구매자인 자본가의 손에서 비로소 자본(가변)으로서 작용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한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을 즉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새로 제3자에게 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하여 위에서 든 경제학자들은 그를 자본가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상품(자기자신)을 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는 노예도 자본가로 된다. 비록 노예는 제3자에 의하여 영원히 팔리기는 하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노동노예라는 이 상품의 본성으로 하여 이 상품을 산 사람은 이 상품을 매일 새로 일시킬 뿐 아니라 이 상품에 생활수단도 주며 그 덕으로 이 상품은 늘 새로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관하여는 맬더스에게 보낸 시스몽디와 세이의 편지를 참조하라).

2) 따라서 $1,000I_v + 1,000I_m$ 과 $2,000II_c$ 의 교환에서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불변자본인 것($2,000II_c$)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로 즉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되며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인 것($2,000I(v+m)$) 즉 일반적으로 소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변자본으로 된다.

맨먼저 I_v 와 II_c 의 교환을 그것도 먼저 노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I 부류의 노동자 전체는 자기의 노동력을 1,000으로 I 부류의 자본가 전체에게 판다. 그들은 이 가치를 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화폐로 받는다. 그들은 이 화폐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같은 가치액의 소비품을 산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그들에게 상품판매자로서만 맞설 뿐이지 달리

는 맞서지 않는다. 예컨대 위에서(380페이지*) 본 500Ⅱv의 교환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자본가들에게서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상품인 노동력이 거치는 유통형태는 다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즉 소비를 위한 단순한 상품유통형태 즉 $W(\text{노동력})-G-W(\text{Ⅱ부류 자본가의 상품인 소비품})$ 의 형태이다. 이 유통행위의 결과는 노동자들이 Ⅰ부류의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력으로서 자신들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것으로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 $A(W)-G-W$ 라는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임금 소비품으로 실현되고 소득으로서 지출되며 노동계급 전체로 보면 소득으로서 끊임없이 다시 지출된다.

이제는 똑같은 Ⅰv와 Ⅱc의 교환을 자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Ⅱ부류의 상품생산물은 모두 소비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 해의 소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물건들, 즉 그 누구를 위하여, 이 경우에는 Ⅰ부류의 노동자들 전체를 위하여 소득을 실현하는 데 쓰이게 되어 있는 물건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Ⅱ부류의 자본가들 전체에 있어서는 그들의 상품생산물의 한 부분 2,000은 이제는 그들의 생산자본의 불변자본가치가 상품으로 전화된 형태이며 이 생산자본은 이 상품형태에서 그것이 생산자본이 불변부분으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현물형태로 다시 도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Ⅱ부류의 자본가들이 이제까지 이룩한 것은 그들이 상품형태(소비품)로 재생산된 그들의 불변자본가치의 절반(=1,000)을 Ⅰ부류의 노동자들에게 팔아 화폐형태로 도로 전화한 것이다. 따라서 또 불변자본가치 Ⅱc의 이 첫 절반으로 전화한 것은 가변자본 Ⅰv가 아니라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화폐자본으로서 노동력과의 교환에서 기능을 높였으며 그렇게 되어 노동력의 판매자들의 소유로 된 화폐인데 이 화폐는 노동력의 판매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자본이 아니라 화폐형태의 소득을 표시한다. 즉 그것은 소비품의 구매수단으로서 지출된다. 한편 또 Ⅰ부류의 노동자들에게서 Ⅱ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흘러들어온 화폐 1,000은 Ⅱ부류의 생산자본의 불변적 요소로서 기능을 놀 수 없다. 그것은 아직 Ⅰ부류 상품자본의 화폐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불변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이나 유동적 구성부분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따라

* 이 책 ○○○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서 Ⅱ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상품구매자인 Ⅰ부류의 노동자들에게서 얻은 1,000의 화폐로 Ⅰ부류의 생산수단을 산다. 이에 따라 Ⅱ부류의 불변자본가치는 그 총액의 절반만큼 다시 Ⅱ부류의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기능을 놀 수 있는 현물형태로 갱신되어 있다. 이 경우에 유통형태는 $W-G-W$ 이다. 즉 1,000의 가치가 있는 소비품-1,000의 화폐-1,000의 가치가 있는 생산수단이다.

그러나 $W-G-W$ 는 이 경우에는 자본의 운동이다. W 는 노동자들에게 팔려 G 로 전화되고 이 G 는 생산수단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상품이 그 상품을 이루는 소재적 요소들로 도로 전화되는 것이다. 한편 또 Ⅱ부류의 자본가들이 Ⅰ부류의 자본가들에 대하여 상품을 사는 사람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Ⅰ부류의 자본가들은 Ⅱ부류의 자본가들에 대하여 이 경우에는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만 기능을 한다. Ⅰ부류는 맨처음에 가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놀게 되어 있는 1,000의 화폐로 1,000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을 샀으며 따라서 화폐형태로 내준 그의 1,000v에 대한 등가를 받았다. 그 화폐는 이제 노동자들의 것으로 되며 이 노동자들은 그 화폐를 Ⅱ부류의 자본가들한테서 소비품을 사는 데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Ⅱ부류의 금고에 흘러들어간 이 화폐를 Ⅰ부류는 같은 가치액의 상품을 팔아 그것을 도로 다시 낚아냄으로써만 도로 얻을 수 있다.

처음에 Ⅰ부류의 자본가들은 가변자본부분으로서 기능을 놀게 되어 있는 일정한 화폐액 1,000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에 그 화폐액은 같은 가치액의 노동력으로 전화됨으로써 가변자본부분으로서 기능을 논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의 결과로서 6,000의 가치를 지닌 상품량(생산수단)을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것의 1/6 즉 1,000이 그 가치로 보아 화폐로 선대한 가변자본부분의 등가이다. 가변자본가치는 전에 화폐형태로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품형태로 있으면서도 가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놀지 않는다. 그것은 산 노동력으로 전화된 후에야만 그리고 이 산 노동력이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노는 동안에만 가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놀 수 있다. 가변자본가치는 화폐로서는 잠재적으로만 가변자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 노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는 형태에 있었다. 이같은 가변자본가치는 상품으로서의 아직 잠재적 화폐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상품이 팔려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Ⅱ부류의 자본가들이 1,000여치의 상품을 Ⅰ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사야만 비로소 맨 처

음의 화폐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경우에 유통운동은 $1,000v$ (화폐) $- 1,000$ 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 $- 1,000$ 의 상품(가변자본의 증가) $- 1,000v$ (화폐)이다. 즉 $G-W \cdots W-G (=G-A \cdots W-G)$ 이다. $W \cdots W$ 사이에 있는 생산과정 자체는 유통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생산과정은 한 해 재생산의 각각 다른 요소들이 서로 교환되는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이 교환에는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들의 재생산 즉 불변적 요소와 그 가변적 요소인 노동력의 재생산도 들어가지만 말이다. 이 교환의 담당자는 모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으로서만 나타나거나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즉 노동자들은 교환에서 상품을 사는 사람으로서만 나타나며 자본가들은 번갈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며 그리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일방적으로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만 나타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 자본의 가변적 가치 부분을 다시 화폐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 화폐형태에서만 그 가치부분은 노동력으로 직접 전화될 수 있다. 즉 그들은 그 가치부분을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생산자본의 가변적 요소로서 선대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 다시 가지고 있다. 한편 또 노동자들은 상품을 사는 사람으로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사람으로서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II 부류의 가변자본($500IIv$)에 대하여 말하면 똑같은 생산부류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유통과정은—우리가 그 과정을 II 부류의 자본가들 전체와 II 부류의 노동자들 전체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한에서—아무런 중간다리도 없는 직접적 형태로 나타난다.

II 부류의 자본가들 전체는 $500v$ 를 같은 가치액의 노동력을 사들이는데 선대한다. 이 경우에 자본가들은 모두 사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은 모두 파는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력의 댓가로 얻은 화폐로 그들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한 부분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가들은 파는 사람이다.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화폐를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II 부류의 상품자본의 한 부분 즉 상품인 $500v$ 에 의하여 자본가들에게 보상하였다. 자본가들은 화폐가 노동력으로 전화되기 전에 화폐형태로 가지고 있던 똑같은 v 를 이제는 상품형태로 가지고 있다. 한편 또 노동자들은 자

기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화폐로 실현하였으며 이 화폐를 소득으로서 자기들의 소비를 위하여 즉 자기들 자신이 생산한 소비품의 한 부분을 사들이는 데 지출함으로써 이제는 이 화폐를 다시 실현한다. 이것은 화폐로서의 노동자들의 소득과 그들 자신이 상품화폐로 재생산한 자본가들의 상품구성부분인 $500v$ 와의 교환이다. 그리하여 이 화폐는 II 부류 자본가들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그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온다. 이 경우에는 화폐형태에 있는 등가의 소득가치가 상품형태에 있는 가변자본가치를 보상한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노동력을 사들이면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화폐를 등가의 상품량을 노동자들에게 팔아 노동자들에게서 다시 끌어냄으로써 치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사들이면서 처음에 500을 지불하였고 그밖에 또 노동자들을 시켜 생산한 500의 가치를 지닌 상품량을 거저 노동자들에게 주었다면 자본가들은 실제로 두 번 지불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500이라는 그들의 노동력의 가격에 대한 등가인 500의 상품밖에 아무것도 더 생산하지 않았다면 자본가들은 이 조작 후에도 조작 전과 똑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3,000여치의 가치의 생산물을 재생산하였다. 그들은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 즉 그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 2,000을 새로운 생산물로 전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이밖에도 이 주어진 가치에 $1,000(v+m)$ 의 가치를 덧붙였다(500이 화폐로 되돌아옴으로써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얻는다는 뜻에서 자본가들은 치부한다는 표상을 데스튀트 드 트라시는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 장의 1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II 부류의 노동자들이 500의 가치를 지닌 소비품을 삼으로써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아직도 상품으로 가지고 있던 $500\text{II}v$ 의 가치는 다시 화폐로 즉 그 자본가들이 그것을 맨처음에 선대한 형태로 그들에게 되돌아온다. 이 거래의 직접적 결과는 다른 모든 상품판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가치가 상품형태에서 화폐형태로 전화하는 것이다. 이 거래에 의하여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특수한 것이 아니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500의 화폐로 상품을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사고 그 다음에 자기편에서도 500의 금액의 상품을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팔았다면 또한 500이 화폐로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 500의 화폐는 다만 1,000의

상품량의 교환에 쓰였을 것이며 위에서 든 일반적 법칙에 따라 이 상품량의 교환을 위하여 맨처음에 유통에 던져넣은 사람들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온 500의 화폐는 동시에 화폐형태로 갱신된 잠재적 가변자본이다. 왜 그런가? 화폐, 따라서 또 화폐자본은 그것이 노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만 또 그 한에서만 잠재적 가변자본이다. 이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면 동시에 II 부류의 노동력도 노동시장에 되돌아온다. 화폐와 노동력이 대립되는 극들로 되돌아오는 것, 따라서 또 500의 화폐가 화폐로서뿐 아니라 화폐형태의 가변자본으로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한 과정의 진행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 500의 화폐가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은 그 자본가들이 II 부류의 노동자들에게 500의 금액의 소비품을 팔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지출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가족을 따라서 또 자기들의 노동력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앞으로 살아나가며 또 앞으로 더 상품구매자로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노동력을 새로 팔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500의 화폐가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동시에 노동력이 500의 화폐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 되돌아온다는 것 또는 머물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500의 화폐가 잠재적 가변자본으로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사치품을 생산하는 IIb부문의 자본가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의 v 즉 (IIb) v 는 사정은 Iv의 경우와 같다. IIb부문의 자본가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변자본을 화폐형태로 갱신하는 화폐는 그들에게로 에돌아서 즉 IIa부문의 자본가들의 손을 거쳐서 되돌아온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사는 자본가적 생산자들에게서 직접 자기들의 생활수단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다른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사고 이들을 거쳐서 화폐가 에돌아서만 먼저 든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는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노동계급은 그날 벌어들인 그날 살아가므로 그들은 사들일 수 있는 한에서는 사들인다. 자본가들의 경우, 예컨대 1,000 IIc와 1,000 Iv의 교환의 경우에는 다르다. 자본가들은 그날 벌어들인 그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대로 자기들의 자본의 가치를 불리는 것이 자본가들의 추진적 동기이다. 그러므로 II 부류의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불변자본

을 곧 갱신하지 않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화폐형태로 비교적 오랫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생긴다면 이 1,000Ⅱc(화폐형태의)가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은 늦어지며 따라서 또 1,000Ⅳ의 화폐형태로의 회복도 늦어진다. 그리하여 I부류의 자본가들은 예비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똑같은 규모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변자본가치가 화폐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빠르거나 더딘가에는 관계없이 중단함이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형태의 예비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의 재생산의 여러 요소들의 교환을 연구하자면 지난 해의 노동, 이미 끝난 해의 노동의 결과도 연구하여야 한다. 이 해의 생산물을 결과로 남긴 생산과정은 과거의 일로 지나갔으며 생산물을 남기고 사라졌다. 따라서 이것은 그 생산과정에 앞서 나가거나 그 생산과정과 나란히 나가는 유통과정, 잠재적 가변자본의 현실적 가변자본으로의 전화 즉 노동력의 매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노동시장은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상품시장의 한 부분을 이제는 이루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이미 자기들의 노동력을 팔았을 뿐 아니라 잉여가치 밖에도 자기들의 노동력의 가격의 등가를 상품으로 제공하였다. 그들은 한편 또 임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며 교환에서는 상품(소비품)을 사는 사람으로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해의 생산물은 재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생산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변자본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본 바와 같이 가변자본을 놓고 볼 때는 교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노동자들은 상품을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임금을 지출하고 산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기들의 노동력을 팔 수 있으며 또 팔아야 할 유일한 상품으로서 유지하고 재생산하며, 또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가들이 이 노동력을 사는 데 선대한 화폐가 이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듯이 노동력도 그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으로서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온다. 그 결과 이 경우 특히 1,000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1,000Ⅴ가 화폐로 I부류의 자본가들 편에 있고 그에 맞서 1,000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이 I부류의 노동자들 편에 있게 되며 그리하여 I부류의 전체 재생산과정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교환과정의 하나의 결과이다.

한편 또 I 부류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출하여 1,000c 만큼의 소비품을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얻어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비품을 상품 형태에서 화폐형태로 전화하였다. II 부류의 자본가들은 1,000v 만큼의 상품을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서 삼으로써 그 소비품을 이 화폐형태에서 자기들의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전화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로 그들의 가변자본가치가 다시 화폐형태로 되돌아온다.

I 부류의 가변자본은 한 해 생산물의 교환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암시적으로만 나타나는 세 가지 전화를 거친다.

1) 첫째 형태. 화폐인 1,000 Iv가 같은 가치액의 노동력으로 전화된다. 이 전화 자체는 I 부류와 II 부류 사이의 상품교환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결과는 I 부류의 노동자가 1,000의 화폐를 가지고 II 부류의 상품판매자들에게 맞서게 되는 데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II 부류의 노동자가 500의 화폐를 가지고 상품형태로 있는 500 II v의 상품판매자들에게 맞서게 되는 것과 똑같다.

2) 둘째 형태. 가변자본이 실제로 달라지고 가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놀며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 그 힘과 교환된 주어진 가치 대신에 나타나는 유일한 형태인데 이 형태는 전적으로 이미 끝난 생산과정에 속한다.

3) 세째 형태. 가변자본이 생산과정의 결과에 가변자본으로서의 자체를 실증하는 형태인데 이것은 한 해에 새로 생산되는 가치, 따라서 I 부류에서는 $1,000v + 1,000m = 2,000 I (v+m)$ 이다. 가변자본의 맨처음의 가치, 화폐인 1,000 대신에 그 두 곱이나 되는 가치 2,000이 상품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상품형태의 가변자본가치 1,000은 생산자본의 요소로서의 가변자본에 의하여 새로 생산된 가치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상품인 1,000 Iv는 총자본 가운데서 그 사명으로 보아 I 부류의 자본가들이 맨처음에 선대한 가변적 부분의 정확한 등가 즉 화폐인 1,000v의 정확한 등가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형태에서는 다만 잠재력인 화폐이며(그것이 팔려야 비로소 실제로 화폐로 된다), 따라서 더구나 직접 가변적인 화폐자본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침내 1,000 Iv의 상품이 II c에게 팔림으로써 그러한 가변적인 화폐자본으로 되며 그리고 노동력이 곧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 1,000v의 화폐가 전화될 수 있는 재료로서 다시 나타남으로써 또한 그러한 자본으로 된다.

이 모든 전화가 진행되는 동안 I 부류의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가변자

본을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다. 즉 1) 처음에는 화폐자본으로, 2)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생산자본의 요소로, 3) 또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상품자본의 가치부분으로, 따라서 상품가치로, 4) 마지막에는 다시 화폐로 쥐고 있는데 이 화폐에는 노동력이 즉 그 화폐가 전화될 수 있는 노동력이 다시 맞선다. 노동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본가들은 가변자본을, 활동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력으로서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어진 크기의 가치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힘이 길건 짧건 일정한 기간 이미 작용한 다음에야 비로소 노동자들에게 늘 지불하므로 자본가들은 그들이 지불하기 전에 벌써 노동자들의 힘이 창조하였으며 그 자체를 보상하는 가치 더하기 잉여가치를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있다.

가변자본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늘 자본가의 손에 남아 있으므로 그것이 그 누구를 위한 소득으로 전화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상품형태의 $1,000I_v$ 는 II 부류에 팔림으로써 화폐로 전화되며 II 부류의 불변자본의 절반은 현물로 보상된다.

소득으로 전화되는 것은 I 부류의 가변자본인 화폐형태의 $1,000v$ 가 아니다. 이 화폐는 그것이 노동력으로 전화되자 I 부류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을 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상품구매자의 화폐가 그 어떤 판매자의 상품으로 전화하자 그 화폐가 자기의 것으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으로서 얻은 화폐가 노동계급의 손에서 거치는 전화는 결코 가변자본의 전화가 아니라 화폐로 전화된 그들의 노동력의 가치의 전화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새로 생산한 가치 $\{2,000I(v+m)\}$ 의 전화가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본가들에게 속하는 상품의 전화에 지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나 자본가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의 이론적 대변자인 정치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화폐가 여전히 그들의 즉 자본가들의 화폐라는 망상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자본가가 금생산자라면 가변가치부분 즉 노동의 구매가격을 그에게 보상하는 상품화폐의 등가 그 자체가 직접 화폐형태로 나타나며 따라서 에돌아 돌아오지 않고도 새로 가변적 화폐자본으로서 기능을 놀 수 있다. 그러나 II 부류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제쳐놓고 보면— $500v$ 자체는 노동자들이 소비하게 되어 있는 상품으로 존재하며 이 상품을 전체로서 본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노동력을 산 똑같은

은 자본가들 전체에게서 직접 다시 산다. Ⅱ부류의 자본의 가변적 가치 부분은 그 현물형태로 보아 대부분 노동계급이 소비하게 되어 있는 소비품이다. 그러나 이 형태로 노동자들이 지출하는 것은 가변자본이 아니라 임금 즉 노동자들의 화폐인데 이 화폐가 바로 이 소비품으로 실현됨으로써 $500Ⅱv$ 의 가변자본을 자본가들을 위하여 화폐형태로 보상한다. 가변자본 $Ⅱv$ 는 불변자본 $2,000Ⅱc$ 와 마찬가지로 소비품으로 재생산되어 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같이 Ⅱ부류의 자본가의 소득으로 될 수 없다. 두 경우에 소득으로 전화되는 것은 임금뿐이다.

그러나 임금이 소득으로서 지출됨으로써 한 경우에는 $1,000Ⅱc$ 와 또한 에돌아서 $1,000Ⅰv$ 가,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500Ⅱv$ 가, 따라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가변자본의 경우에 일부는 직접, 또 한 부분은 간접적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다시 화폐자본으로서 회복된다는 것은 한 해 생산물의 교환에서는 중요한 사실이다.

제11절 고정자본의 보상

한 해의 재생산에서 진행되는 교환을 서술하는 데서 큰 곤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태가 표시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Ⅰ) 4,000c + 1,000v + 1,000m +$$

$$(Ⅱ) 2,000c + 500v + 500m = 9,000$$

이것은 결국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4,000Ⅰc + 2,000Ⅱc + 1,000Ⅰv + 500Ⅱv + 1,000Ⅰm + 500Ⅱm = 6,000c + 1,500v + 1,500m = 9,000$. 불변자본의 한 가치부분은 즉 불변자본이 본래의 노동수단(생산수단의 유다른 부류로서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는 노동수단에서 노동생산물(상품)로 넘어가 있다. 이 노동수단은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그것도 종래의 현물형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계속한다. 노동수단의 마멸분 즉 노동수단이 일정한 기간 계속 기능을 노는 동안에 점차 잃어버리는 가치는 바로 그 노동수단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요소로서 다시 나타나며 노동도구에서 노동생산물로 넘어간다. 따라서 한 해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고정자본 가운데서 그 수명이 한 해보다 긴 구성부분들만이다. 노동수단이 한 해 안에 아주 수명을 다 사는 것들이라면 그러한 노동수단들은 한 해의 재생산에 의하여 아주 다 보상되고 갱신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들은 여기에서 살펴보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기계와 그밖에 비교적 오래가는 형태의 고정자본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거나 기계 전체는 수명이 길더라도 그것들의 어떤 개별적 부분들은 몽땅 한 해 안에 보상되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또 흔히 자주 생긴다. 이러한 개별적 부분들은 고정자본 가운데서 한 해 안에 보상되어야 할 요소들과 똑같은 범주에 속한다.

상품의 이러한 가치요소를 결코 보수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상품이 팔리면 이 가치요소는 다른 가치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화폐로 전화된다. 그러나 이 가치요소가 화폐로 전화된 다음에는 다른 가치요소들과의 그 차이가 나타난다. 상품의 재생산이 시작되려면(일반적으로 상품의 생산과정이 계속적인 것이 되려면) 이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원료와 보조자재는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에 지출된 노동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동력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상품에서 얻은 화폐는 끊임없이 생산자본의 이 요소들로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화폐형태에서 상품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원료와 보조자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비교적 대량적으로 구입되어 생산적 예비를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일정한 기간, 이 생산수단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하여 또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 동안에는 상품이 팔려서 들어오는 화폐가—이 화폐는 예비를 사들이는 데 쓰이는 만큼—쌍일 수 있으며 따라서 또 불변자본의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그 능동적인 기능을 멈춘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자본은 소득이 아니다. 그것은 화폐형태로 맺어 있는 생산자본이다. 생산수단의 갱신은 이 갱신의 형태가 유통과 관련하여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수단을 갱신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구입 즉 유통분야에서의 조작은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많은 화폐가 한꺼번에 지출되며 그에 따르는 생산적 예비는 생긴다. 또는 이러한 조작은 짧은 기간을 두고 연이어 진행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화폐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연이어 지출되며 생산적 예비는 적다. 이렇다고 하여 사태 자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력도 마찬가지다. 생산이 일년 내내 같은 규모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비된 노동력은 새로운 노동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상된다. 농업에서와 같이 노동이 계절적 성격을 띠거나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의 양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들이는 노동력의 양도 적어졌다 많아졌다 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을 팔아서 얻은 화폐는 그것이 상품가치 가운데서 고정자본의 마멸분과 같은 부분을 표시하는 한에서는 그 화폐에 의하여 잃어버린 가치가 보상되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 다시 도로 전화되지 않는다. 그 화폐는 생산자본의 곁에 가라앉으며 화폐형태 그대로 머무른다. 이러한 화폐의 침전은 많건적건 일정한 햇수(年數)로 이루어지는 재생산기간이 끝날 때까지 되풀이되는데 이 동안에 불변자본의 고정적 요소는 종래의 그 현물형태대로 계속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논다. 건물, 기계 등 불변자본의 고정적 요소가 수명을 다 살고 생산과정에서 더는 기능을 놀 수 없게 되자 그 가치는 화폐로 완전히 보상되어 그 고정적 요소의 곁에 존재하는데 이 화폐는 가라앉은 화폐의 총액 즉 고정자본에서 그 도움으로 생산된 상품으로 점차 넘어갔으며 상품이 팔려서 화폐형태로 넘어간 가치의 총액이다. 그 다음에 이 화폐는 고정자본(또는 고정자본의 요소들, 왜냐하면 고정자본의 요소들은 그 수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을 현물로 보상하고 그리하여 생산자본의 이 구성부분을 실제로 갱신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이 화폐는 불변자본가치의 한 부분 즉 그것의 고정적 부분의 화폐형태이다. 따라서 이 화폐 퇴장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의 한 요소이다. 즉 고정자본이 수명을 다 살고 따라서 그 가치를 모두 생산된 상품에 떼어주고 이제는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고정자본 또는 그 개별적 요소들의 가치가 재생산되고 화폐형태로 쌓여가는 것이다. 이 화폐는 그것이 고정자본의 세 요소들로 도로 전화되어 수명을 다 산 고정자본의 요소들을 보상할 때에 비로소 그 퇴장화폐형태를 잃고 따라서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능동적으로 다시 들어선다.

단순한 상품유통이 단순한 생산물교환과 같지 않은 것처럼 한 해 생산물의 유통도 그 상품생산물을 이루는 여러 부분들의 단순한 직접적인 호상교환으로 분해될 수 없다. 화폐는 그 교환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특히 고정자본가치의 재생산방식에서도 표현된다(생산이 공동적이며 상품생산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리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은 후에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기본도식으로 돌아가면 II부류에서는 $2,000c+500v+500m$ 이었다. 한 해 동안에 생산된 소비품의 총액은 이 경우에 3,000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상품 총액을 이루는 여러 상품요소들의 하나 하나는 그 가치로 보아 $2/3c+1/6v+1/6m$ 으로 또는 백분율로는 $66\frac{2}{3}\%c+16\frac{2}{3}\%v+16\frac{2}{3}\%m$ 으로 갈라진다. II부류의 여러 상품종류에 들어 있는 불변자본의 가치비율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그 상품들에서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의 가치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고정자본부분들의 수명도, 따라서 또 한 해의 마멸분 또는 이 고정자본부분이 참가하여 생산되는 상품들도 비율에 따라 넘어가는 가치부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경우에 아무런 의의도 없다. 사회적 재생산과정과 관련해서는 II부류와 I부류 사이의 교환만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II부류와 I부류는 여기에서는 그 부류들의 사회적인 양적 비율에 있어서만 맞선다. 그러므로 II부류 상품 생산물의 가치부분 c 의 비례적 크기(이 부분만이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이다)는 II부류에 들어가는 모든 생산부문들을 통틀어 볼 때의 평균비율이다.

그리하여 총가치가 $2,000c+500v+500m$ 으로 되는 상품종류들(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똑같은 상품종류들이다)은 각각 다같이 가치로 보아 $66\frac{2}{3}\%c+16\frac{2}{3}\%v+16\frac{2}{3}\%m$ 과 같다. 이것은 c 나 v 나 m 으로 나타나는 상품들의 임의의 100단위에 들어맞는다.

$2,000c$ 가 구현되어 있는 상품들은 가치로 보아 다시 다음과 같이 갈라질 수 있다.

$$1) 1,333\frac{1}{3}c+333\frac{1}{3}v+333\frac{1}{3}m=2,000c$$

이와 마찬가지로 $500v$ 는

$$2) 333\frac{1}{3}c+83\frac{1}{3}v+83\frac{1}{3}m=500m$$

로 갈라질 수 있으며 끝으로 $500m$ 도

$$3) 333\frac{1}{3}c+83\frac{1}{3}v+83\frac{1}{3}m=500m$$

으로 갈라질 수 있다.

이제 1), 2), 3)의 c 를 모두 합하면 $1,333\frac{1}{3}c+333\frac{1}{3}c+333\frac{1}{3}c=2,000c$ 이

된다. 마찬가지로 v 를 모두 합하면 $333\frac{1}{3}v + 83\frac{1}{3}v + 83\frac{1}{3}v = 500v$ 이 되며 m 도 모두 합하면 이와같이 된다. 모두 합하면 위에서 든 것처럼 3,000의 총가치로 된다.

따라서 3,000의 가치가 있는 II부류의 상품량에 들어 있는 불변자본가치는 모두 2,000c에 들어 있으며 500v나 500m에는 눈꼽만치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v 와 m 에도 또한 들어맞는다.

다시 말하면 II부류의 상품량 가운데서 불변자본가치를 표시하며 따라서 현물형태로건 화폐형태로건 불변자본으로 다시 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2,000c에 존재한다. 따라서 II부류 상품의 불변가치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 것은 2,000IIc의 가치의 운동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환은 오직 I ($1,000v + 1,000m$)의 가치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I부류에서도 이 부류의 불변자본가치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 것은 4,000Ic를 살펴보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1) 마멸가치부분의 화폐형태로의 보상

그러면 맨 먼저

$$I) \quad 4,000c + \underbrace{1,000v + 1,000m}$$

$$II) \quad 2,000c + 500v + 500m$$

을 들면 상품 2,000IIc와 같은 가치의 상품 I ($1,000v + 1,000m$)과의 교환은 2,000IIc가 I부류에서 생산된 II부류의 불변자본의 현물구성부분으로 모두 현물로 다시 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II부류의 불변자본이 존재하는 2,000의 상품가치에는 고정자본의 가치의 손실을 보상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요소는 큰 현물로 보상되지 않아도 되며 화폐로 전화되어야 하는데 이 화폐는 고정자본이 그 현물형태로 갱신되어야 할 기한이 다 될 때까지 점차 쌓여 총액을 이룬다. 해마다 고정자본은 사경에 이르며 따라서 이러저러한 개별적 기업이나 또 이러저러한 산업부문에서 그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같은 개별적 자본에서도 고정자본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보상되어야 한다(왜냐하면 고정자본의 부분들은 그 수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해의 재생산을 살펴본다면—단순한 규모에서 즉 축적은 모두 제쳐놓고 보더라도—우

리는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해는 여러 해의 흐름 속의 한 해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이 시작된 첫 해가 아니다. 따라서 II부류의 다양한 생산부문들에 투하되는 여러 자본들은 그 연령이 서로 다르며 이 생산부문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가듯이 해마다 많은 고정자본들이 사멸에 이르며 축적된 화폐밑천에서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한에서 2,000 IIc와 2,000 I (v+m)의 교환에는 상품형태(소비품으로서의)로부터 현물요소들로의 2,000 IIc의 전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현물요소들은 원료와 보조자재뿐 아니라 고정자본의 현물요소들인 기계, 도구, 건물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2,000 IIc의 가치 가운데서 화폐로 보상되는 마멸분은 결코 기능을 하는 고정자본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고정자본의 한 부분이 해마다 현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교환에 필요한 화폐가 이전의 여러 해 동안 II부류 자본가들의 손에 쌓여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제는 이전의 여러 해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해에도 들어맞는다.

I (1,000v+1,000m)과 2,000 IIc의 교환에서 댄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I (v+m)의 가치액에는 불변가치의 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또 마멸분을 보상하는 데 드는 가치요소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 즉 불변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부터 v+m이 존재하는 현물형태인 상품으로 넘어간 가치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요소는 반대로 IIc의 가치속에서 존재하며 그리고 고정자본 때문에 생긴 바로 이 가치요소의 한 부분이 직접 화폐형태에서 현물형태로 전화되지 않고 우선 화폐형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므로 I (1,000v+1,000m)과 2,000 IIc의 교환에서는 곧 다음과 같은 곤란에 부딪친다. 즉 2,000(v+m)이 존재하는 현물형태인 I부류의 생산수단은 2,000의 가치 총액만큼 II부류의 소비품으로 있는 등가와 교환되어야 하는데 한편 2,000 IIc의 소비품은 그 가치 총액만큼 I (1,000v+1,000m)의 생산수단과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비품가치의 일부—보상되어야 할 마멸분과 같은 또는 고정자본에서 잃어버린 가치와 같은—은 우선 화폐로서 가라앉지 않으면 안되며 이 화폐는 우리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 해의 재생산기간 안에는 다시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 IIc의 상품가치 속에 들어 있는 마멸분을 화폐화하는 화폐, 이 화폐는 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II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자신들에게 지불할 수는 없고 바로 자기들의 상품을 팔아 지불받기 때문이다. 또 전제에 의하면 I ($v+m$)은 2,000IIc의 상품 총액을 사기 때문이다. 따라서 I부류는 이렇게 삼으로써 위에서 이야기한 II부류의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화폐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법칙에 따라 유통에 선대한 화폐는 후에 같은 분량의 가치를 상품으로 유통에 던져넣는 자본주의적 생산자에게로 되돌아간다. I부류는 IIc를 사들이는 데서 2,000여치의 상품과 그밖에 또 추가적 화폐액을 아주(이 화폐액이 교환이라는 조작을 통하여 I부류어로 되돌아오지 않게) II부류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게 된다면 IIc의 상품량을 그 가치 이상으로 사는 것으로 될 것이다. II부류가 자체의 2,000c와 교환하여 실제로 I ($1,000v+1,000m$)을 얻는다면 II부류가 I부류에 더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교환이 진행되는 동안 유통하는 화폐는 두 부류 가운데서 어느 부류가 그것을 유통에 던져넣었는가, 즉 두 부류 가운데서 어느 부류가 먼저 구매자로서 나섰는가에 따라 I부류나 II부류의 자본가들한테 되돌아온다. 동시에 이 경우에 II부류는 자체의 상품자본을 그 가치 총액만큼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 전화시켰을 것인데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 상품자본의 일부가 이 해의 재생산기간에 팔려도 그것은 화폐로부터 II부류 불변자본의 고정적 요소의 현물형태로 다시 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에서의 차액이 II부류어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II부류가 I부류에 2,000여치만큼 팔았지만 I부류에서 2,000여치보다 적게, 예컨대 1,800여치 밖에는 사지 않는 경우만일 것이다. 그 경우에 I부류는 그 차액을 200의 화폐로 메워야 할 것인데 이 화폐는 I부류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I부류는 유통에 선대한 이 화폐를 2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유통에 던져넣음으로써 유통에서 다시 끌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II부류에서는 고정자본의 마멸게시에 화폐밀천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즉 I부류에서는 200여치만큼 생산수단의 과잉생산이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식의 기초가 몽땅 무너질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생산부류들 사이의 완전한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과 같은 규모의 재생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의 곤란은 훨씬 더 불쾌한 다른 곤란에 의해서만 제거될 것이다.

이 문제에는 독특한 곤란들이 있고 또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가능한(적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해결책을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자체를 제기하고 그것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방금 전에 II부류는 I부류에 2,000어치의 상품을 팔지만 I부류에서는 1,800어치의 상품 밖에는 사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0IIc의 상품가치 속에는 화폐로 퇴장되어야 할 마멸보상분의 200의 가치가 들어 있다. 그리하여 2,000IIc의 가치는 I부류의 생산수단과 교환되어야 할 1,800과 화폐로(2,000c를 I부류에 판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멸보상분인 200으로 갈라질 것이다. 또는 가치로 보면 $2,000IIc = 1,800c + 200c(d)$ 로 될 것인데 여기에서 d는 déchet(마멸분)이다.

그 경우에 다음과 같은 교환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 \quad 1,000v + \underbrace{1,000m}_{1,800c + 200c(d)}$$

$$II. \quad 1,800c + 200c(d)$$

I부류는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노동력의 댓가로 임금으로 지불받은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1,000IIc의 가치를 지닌 소비품을 산다. II부류는 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으로 1,000Iv의 가치를 지닌 생산수단을 산다. 그리하여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가변자본이 화폐형태로 되돌아오며 그들은 이것으로 다음해에 같은 가치액의 노동력을 살 수 있다. 즉 자기들의 생산자본의 가변부분을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II부류는 선대된 400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수단 Im을 사며 Im은 똑같은 400파운드 스텔링으로 소비품 IIc를 산다. 그리하여 II부류가 유통에 선대한 400파운드 스텔링은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되돌아오지만 판 상품의 등가로서만 되돌아온다. I부류는 선대된 400파운드 스텔링어치만큼 소비품을 사며 II부류는 I부류에서 400파운드 스텔링어치만큼 생산수단을 산다. 이에 따라 이 400파운드 스텔링은 I부류의 자본가들한테 돌아온다. 즉 여기까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I부류는 유통에 $1,000v + 800m$ 을 상품으로 던져넣는다. 그리고 또 화폐로는 임금으로 1,000파운드 스텔링과 II부류의 교환을 위한 400파운드 스텔링을 유통에 던져넣는다. 교환이 끝나면 I부류는 화폐로 1,000v와 800IIc(소비품)로 전화된 800m, 그리고 4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가지

게 된다.

Ⅱ 부류는 1,800c를 상품(소비품)으로 그리고 4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유통에 던져넣는다. 교환이 끝나면 Ⅱ 부류는 1,800을 I 부류의 상품(생산수단)으로 그리고 4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가지게 된다.

이제는 I 부류편에 아직 200m(생산수단으로), Ⅱ 부류편에 200c(d)(소비품으로)가 있다.

전제에 의하면 I 부류는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200의 가치액의 소비품c(d)를 산다. 그러나 이 200파운드 스텔링을 Ⅱ 부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200c(d)는 마멸분을 대표하며 따라서 곧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Im은 팔릴 수 없다. 보상되어야 할 I 부류의 잉여가치의 1/5*은 실현될 수 없으며 생산수단의 그 현물형태에서 소비품의 현물형태로 전화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규모의 재생산이라는 전제와 모순될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200c(d)의 화폐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화폐화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c(d)가 어떻게 화폐화되는가를 논증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즉 I 부류는 친절하게도 그것은 화폐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I 부류는 그 자체의 나머지 200m을 화폐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교환의 짜임새의 정상적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200c(d)를 규칙적으로 화폐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200파운드 스텔링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정이 어리석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곧 눈에 띄이지 않는다. 즉 Im이 여기에서와 같이 그 원래의 존재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즉 생산수단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이 팔아서 화폐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나지 않고—자본가들과 잉여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의 손에서, 예컨대 토지소유자의 손에서 지대로서 나타나거나 화폐대부업자의 손에서 이자로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 가운데서 산업자본가가 지대나 이자로서 잉여가치의 다른 공동소유자들에게 떼어주어야 하는 부분이 오랫동안 상품 자체를 팔아 실현될 수 없다면 지

* 제1판과 제2판에서는 1/10로 되어 있다. 편집부

대나 이자의 지불도 끝장이 나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이자를 얻는 사람이 지대나 이자를 지출함으로써 한 해 재생산의 일정한 부분을 마음대로 화폐화하는 데 구원의 신(*dei ex machina*)*으로서 복무할 수는 없다. 이른바 비생산적 일꾼들인 관리, 의사, 변호사 등등과 또 그밖에도 경제학자들이 자기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민중의 명목으로 이 경제학자들에게 복무하는 사람들, 무릇 이 모든 사람들의 지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I 부류와 II 부류 사이 즉 자본주의적 생산자들 자신의 두 큰 부류들 사이의 직접적 교환 대신에 상인을 매개자로서 끌어들여 그의 화폐로 모든 곤란을 면하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소용이 없다. 예컨대 이 경우에 200Im은 결국 마침내는 II 부류의 산업자본가들에게 팔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일련의 상인들의 손을 거칠지 모르지만 역시 마지막 상인은 가정에 의하면 II 부류 자본가들과의 관계에서 I 부류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이 처음에 처하여 있던 경우와 똑같은 경우에 있게 된다. 즉 그 상인들은 200Im을 II 부류의 자본가들에게 팔 수 없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200Im을 사는 데 지출한 금액은 I 부류를 위하여 똑같은 과정을 새로 밟을 수 없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재생산과정을 그 근본형태—사태를 애매하게 하는 모든 부차적 사정들이 제거되는—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즉 이것은 사회적 재생산과정을 처음부터 그 착잡한 구체적 형태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과학적 설명을 주는 것같이 보이는 거짓 잔피를 발가놓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재생산(단순한 규모이건 확대된 규모이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이 유통에 선대한 화폐는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이 경우에 그 화폐가 그들 자신의 것이건 꾸어온 것이건 아무래도 좋다)는 법칙은 200IIc(d)가 I 부류에 의하여

* 직역하면 기계로 만든 신이다. 고대의 연극에서 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특별한 장치의 도움으로 무대에 나타나 극의 갈등을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은 뜻밖에 나타나서 곤란한 사태를 수습하여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편집부

선대된 화폐에 의하여 화폐화된다는 가정을 영원히 배제한다.

2) 고정자본의 현물로의 보상

방금 살펴본 가정의 불합리성을 설명한 이상 이제는 고정자본의 마멸분이 화폐로 보상되는 것 밖에도 아주 못쓰게 된 고정자본이 현물로 보상되는 것도 포함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1) I부류에서 임금으로 지불된 1,000파운드 스텔링은 노동자들에 의하여 같은 가치액의 IIc에 지출된다. 즉 노동자들은 그것으로 소비품을 산다.

이 경우에 1,000파운드 스텔링을 I부류가 화폐로 선대한다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적 생산자들은 각각 임금을 화폐로 지불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이 화폐를 생활수단에 지출하며 그리고 그 화폐는 생활수단의 판매자들 편에서는 그들의 불변자본을 상품자본에서 생산자본으로 전화시킬 때에 다시 유통수단으로서 쓰인다. 사실 이 화폐는 많은 통로(소매상인, 집주인, 세금징수자, 노동자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 등등과 같은 비생산적 일꾼들)를 거치며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I부류의 노동자들의 손에서 직접 II부류의 자본가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화폐의 흐름은 많건적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밋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들로서는 새로운 화폐예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재생산과정의 근본형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때로는 I부류가 II부류에서 사들이기 위하여 4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추가하여 선대하고 이 화폐가 I부류에로 되돌아오며 또 때로는 II부류가 I부류에서 사들이기 위하여 역시 400파운드 스텔링을 선대하고 이 화폐가 II부류에로 되돌아온다고 전제하였다. 이렇게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렇지 않고 I부류의 자본가나 II부류의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상품교환에 필요한 화폐를 유통에 선대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항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I부류가 200IIc(d)를 화폐화하기 위하여 추가적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다는 가정은 어리석은 것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므로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으로

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만이 남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즉 II부류 자체가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으며 이 화폐로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여야 할 구성부분이 화폐화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X씨의 방적기계가 생산에서 잃는 가치부분은 실의 가치부분으로서 다시 나타난다. 그의 방적기계가 한편 가치에서 잃어버리는 것 즉 마멸분은 다른 편에서 화폐로 그에게서 쌓여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 X는 예컨대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목화를 자본가 Y에게서 사며 그리하여 유통에 2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선대한다. 자본가 Y는 자본가 X에게서 똑같은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실을 사며 이 200파운드 스텔링이 이제는 자본가 X에게서 방적기계의 마멸분을 보상하기 위한 밑천으로 된다. 그리하여 결국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자본가 X는 자기의 생산, 그 생산물 그리고 그 생산물의 판매와는 관계없이 200파운드 스텔링을 방적기계가 잃어버린 가치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자기자신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즉 그는 그의 방적기계가 잃어버린 가치 200파운드 스텔링 밖에도 또 다른 200파운드 스텔링을 마침내 새로운 방적기계를 살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화폐로 해마다 자기의 주머니에서 더 지출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같이 보일 따름이다. II부류를 이루고 있는 자본가들의 고정자본은 그 재생산 기한이 전혀 서로 다르다. 한 자본가의 고정자본은 그것을 몽땅 현물로 보상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는가 하면 또 한 자본가의 고정자본은 그러한 단계에 이르자면 아직 일정한 시간이 있다. 뒤에 든 부류의 모든 자본가들에게 공통한 것은 그들의 고정자본이 실제로는 재생산되지 않으나 즉 현물로 갱신되지 않고 똑같은 종류의 새 것으로 보상되지 않으나 고정자본의 가치는 연이어 화폐로 쌓인다는 것이다. 먼저 든 자본가들은 그들이 기업을 새로 시작할 때 화폐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서 이 화폐자본을 한편으로는 불변자본(고정적 및 유동적)으로 전화하고 다른 편으로는 노동력으로, 가변자본으로 전화하던 것과 완전히(또는 부분적으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다) 같은 처지에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본가들은 다시 이 화폐자본을 유통에 선대하여야 한다. 즉 유동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적 고정자본의 가치를 유통에 선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II부류의 자본가들이 I부류와의 교환을 위하여 유통에 던져넣

는 400파운드 스텔링 가운데서 그 절반은 II부류의 자본가들 중 상품을 팔아서 유동자본에 속하는 생산수단을 보상할 뿐 아니라 화폐를 선대하여 고정자본을 현물로 갱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자본가들에게서 나오는데, 한편 II부류 자본가들의 나머지 절반은 자기들의 화폐로 자기들의 불변자본의 유동적 부분만을 현물로 보상하고 자기들의 고정자본은 현물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전제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되돌아오는 400파운드 스텔링(I부류의 자본가들이 그것으로 소비품을 사자 되돌아오는)이 이제는 II부류의 이 두 자본가부류 사이에 서로 다르게 나누어진다는 데는 전혀 아무런 모순도 없다. 이 400파운드 스텔링은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되돌아오지만 똑같은 사람들의 손에 되돌아오지 않고 이 부류 안에서 서로 다르게 나누어져 한 부분의 자본가들에게서 다른 부분의 자본가들에게로 넘어간다.

II부류의 일부 자본가들은 생산수단 가운데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아 지불된 부분 밖에도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현물의 새로운 고정자본 요소들로 전화시켰다. 이렇게 지출된 그들의 화폐는 기업을 시작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고정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가치구성부분인 마멸분으로서 몇 해에 걸쳐 점차적으로만 그들에게로 되돌아온다.

이와는 반대로 II부류의 다른 부분의 자본가들은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I부류의 자본가들한테서 아무런 상품도 받지 않았지만 I부류의 자본가들이 II부류의 자본가들의 상품에 대하여 지불하는 화폐는 II부류의 먼저 든 자본가들이 고정자본의 요소를 사는 데 쓴 그 화폐인 것이다. II부류의 한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고정자본가치를 갱신된 현물형태로 다시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고정자본을 현물로 후에 보상하기 위하여 '고정자본가치를 화폐형태로 쌓아가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이제까지 교환이 진행된 다음에 아직도 교환되어야 할 상품으로 쌍방에 남아 있는 것은 I부류에 400m, II부류에 400c⁵²⁾이다. 800어치의 이 상품들을 교환하

52) 이 숫자들은 앞에서 가정한 것들과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만 비율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 위하여 II부류가 400을 화폐로 선대한다고 하자. 그 400의 절반(=200)은 어떤 사정에서도 IIc 가운데서 마멸분의 가치로서 200을 화폐로 쌓아두었으며 이제는 이것을 그 고정자본의 현물형태로 다시 전화시켜야 할 부분에 의하여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불변자본가치, 가변자본가치, 잉여가치—II부류와 I부류의 상품자본가치는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를 각각 II부류 또는 I부류의 상품 자체의 특수한 비례적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불변자본가치 자체 안에서도 고정자본의 현물형태로는 아직 전화되지 않고 퇴장화폐로서 당분간 점차 화폐형태로 축적하여 나가야 할 가치부분도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II부류 상품의 일정한 분량(따라서 우리가 든 예에서는 나머지 부분의 절반=200)은 앞으로 교환에 의하여 화폐로 가라앉아야 할 이 마멸분의 가치를 지닌 것에 지나지 않는다. (II부류의 자본가들 가운데서 고정자본을 현물로 갱신하는 첫째 부분은 이 경우에 다만 나머지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품량에 들어 있는 마멸분의 가치와 함께 고정자본의 마멸분의 가치의 한 부분을 이미 그렇게 실현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실현하여야 할 200의 화폐가 남아 있다.)

또한 II부류가 이 마지막 조작에서 유통에 던져넣은 400파운드 스텔링의 나머지 절반(=200)에 대하여 말하면 II부류는 그것으로 I부류에서 불변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을 산다. 이 200파운드 스텔링의 한 부분은 II부류 자본가들의 두 부분이 다 유통에 던져 넣을 수도 있으며 또는 고정적 가치구성부분을 현물로 갱신하지 않는 부분의 자본가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400파운드 스텔링으로 I부류에서 끌어내는 것은 1) 고정자본의 요소들로만 이루어지는 2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과 2) II부류 불변자본의 유동적 부분의 요소들만을 현물형태로 보상하는 2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이다. I부류는 이제는 자체의 한 해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II부류에 팔아야 할 것은 다 팔았다. 그러나 그 상품생산물의 5분의 1의 가치인 400파운드 스텔링은 이제는 화폐형태로 I부류 자본가들의 손에 있다. 그런데 이 화폐는 소득으로서 소비품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화된 잉여가치이다. 그리하여 I부류는 그 400으로 II부류의 상품가치 400을 산다. 따라서 이 화폐는 II부류의 상품을 끌어냄으로써 다시

II 부류로 되돌아온다.

이제는 세 가지 경우를 들어보자.

여기에서 II 부류의 자본가들 가운데서 고정자본을 현물로 보상하는 부분을 첫째 부분이라고 부르고 고정자본의 마멸분의 가치를 화폐형태로 축적하는 부분을 둘째 부분이라고 부른다. 세 가지 경우란 다음과 같다.

ㄱ) II 부류의 상품으로서 아직 남아 있는 400 중의 한 부분이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을 위하여(가령 1/2씩) 불변자본의 유동적 부분의 일정한 부분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ㄴ) 첫째 부분은 이미 자기들의 상품을 다 팔았으며 따라서 둘째 부분이 아직 400을 팔아야 하는 경우, ㄷ) 둘째 부분이 마멸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200을 내놓고는 다 판 경우.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ㄱ) II 부류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400c의 상품가치 가운데서 첫째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0이며 둘째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0이다. 이 300 가운데서 200은 마멸분을 대표한다. 이 경우에 I 부류가 이제 II 부류의 상품을 끌어내기 위하여 돌려보내는 400파운드 스텔링 가운데서 300은 첫째 부분이 맨처음에 지출한 것이다. 즉 200은 고정자본요소들을 현물로 I 부류에서 끌어낸 화폐이고 100은 I 부류와의 상품교환을 매개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폐이다. 그와는 반대로 둘째 부분은 400 가운데서 1/4 즉 100만을 역시 I 부류와의 상품교환을 매개하기 위하여 선대하였다.

따라서 400의 화폐 가운데서 첫째 부분은 300을 선대하였고 둘째 부분은 100을 선대하였다.

그러나 이 400은 다음과 같이 되돌아온다.

첫째 부분으로는 100 즉 이 부분이 선대한 화폐의 1/3만이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 첫째 부분은 나머지 2/3 대신에 200의 가치가 있는 갱신된 고정자본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분은 200의 가치를 지닌 이 고정자본요소에 대하여 I 부류에 화폐를 주었으나 뒤따라 상품을 주지 않았다. 첫째 부분은 이 200의 화폐와 관련하여 I 부류에 대하여 구매자로서만 나타나고 뒤따라 다시 판매자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화폐는 첫째 부분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되돌아온다면 첫째 부분은 고정자본요소를 I 부류에서 선물로 받은 셈이 될 것이다. 첫째 부분이 선대한 화폐의 나머지 3분의 1에 관하여 말한다면 첫째 부분은 처음에 자기들의 불변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구매자로서 나타났다. 똑같은 화폐로 I 부류

는 첫째 부분에서 그들의 상품 가운데서 100의 가치가 있는 나머지를 산다. 그리하여 그 화폐는 그들에게로(Ⅱ부류의 첫째 부분)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첫째 부분은 먼저 구매자로서 나타난 다음에 곧 상품판매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화폐가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Ⅱ부류(첫째 부분)는 Ⅰ부류에 100여치의 상품에 대하여 처음에 100을 화폐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100을 상품으로 준 셈이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들의 상품을 Ⅰ부류에 선물로 준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100을 화폐로 지출한 둘째 부분에서의 300이 화폐로 되돌아온다. 즉 100이 되돌아오는 것은 둘째 부분이 처음에 구매자로서 100의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었고 다음에 이것을 판매자로서 되받기 때문이며 200이 되돌아오는 것은 둘째 부분이 200의 가치가 있는 상품의 판매자로서만 기능을 놓고 구매자로서는 기능을 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화폐는 Ⅰ부류에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하여 고정자본의 마멸분은 Ⅱ부류(첫째 부분)가 고정자본요소를 사들이면서 유통에 던져넣은 화폐에 의하여 보상되어 있다. 그러나 그 화폐는 첫째 부분의 화폐로서가 아니라 Ⅰ부류에 속하는 화폐로서 둘째 부분의 손에 들어온다.

ㄴ) 이 전제 밑에서 Ⅱc의 나머지는 첫째 부분은 200을 화폐로, 둘째 부분은 400을 상품으로 가지도록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자기들의 상품을 다 팔았으나 화폐로 있는 200은 그들의 불변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이 전화된 형태이며 그 고정적 구성부분을 그들은 현물로 갱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 경우에 구매자로서만 나타나며 자기들의 화폐 대신에 같은 가치액만큼 고정자본의 현물요소인 Ⅰ부류의 상품을 얻는다. 둘째 부분은 최대한(Ⅰ부류와 Ⅱ부류 사이의 상품교환을 위하여 Ⅰ부류의 자본가들이 전혀 화폐를 선대하지 않는다면) 200파운드 스텔링만을 유통에 던져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가치의 절반에 대하여 Ⅰ부류에 대한 판매자일 따름이고 Ⅰ부류에게서의 구매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에 400파운드 스텔링이 유통에서 되돌아온다. 200이 되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구매자로서 그것을 선대하였고 그것을 2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의 판매자로서 되받기 때문이며 나머지 200이 되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2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Ⅰ부류에 팔고도 그 대신 상품으로서의 등가를 Ⅰ부류에서 다시 끌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ㄷ) 첫째 부분은 200을 화폐로 그리고 200c를 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둘째 부분은 200c(d)를 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이 전제 밑에서는 둘째 부분은 전혀 화폐를 선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I부류에 대하여 더는 결코 구매자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만 판매자로서만 기능을 하며 따라서 I부류가 그들에게서 사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분은 4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선대한다. 즉 200은 I부류와의 호상 상품교환을 위하여, 나머지 200은 I부류에게서의 단순한 구매자로서 선대한다. 첫째 부분은 이 뒤에 든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고정자본요소를 산다.

I부류는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첫째 부분에서 200어치의 상품을 사며 이에 따라 첫째 부분이 이 상품교환을 위하여 선대한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그들에게로 되돌아간다. 또 I부류는 나머지 200파운드 스텔링—이것도 또한 첫째 부분에서 받은 것이다—으로 200어치의 상품을 둘째 부분에서 사며 이에 따라 둘째 부분의 고정자본의 마멸분이 그들에게서 화폐로 가라앉는다.

ㄷ)의 경우에 II부류(첫째 부분)가 아니라 I부류가 200의 화폐를 이미 생산한 상품과 교환으로 선대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사태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에 I부류가 2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II부류의 둘째 부분에서 산다면—이 둘째 부분은 이 나머지 상품만을 팔면 된다—그 200파운드 스텔링은 I부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II부류의 둘째 부분은 다시 구매자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I부류의 첫째 부분은 그 경우에 200파운드 스텔링만큼 상품을 사야 하며 또한 200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따라서 모두 400어치의 상품을 교환에 의하여 I부류에서 받아야 한다. 그 경우에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는 II부류의 첫째 부분에서 I부류로 되돌아간다. I부류가 200의 상품을 II부류의 첫째 부분에서 사기 위하여 그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다시 지출한다면 이 화폐는 II부류의 첫째 부분이 I부류에서 400의 상품의 나머지 절반을 사자 I부류에로 되돌아간다. 첫째 부분(II부류)은 고정자본요소의 단순한 구매자로서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그 화폐는 그들에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II부류의 둘째 부분의 나머지 상품 200c를 화폐화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I부류에로는

상품교환을 위하여 지출한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II부류의 둘째 부분을 거쳐서가 아니라 II부류의 첫째 부분을 거쳐서 되돌아간다. 400의 상품 대신에 400이라는 상품등가가 I부류에로 되돌아와 있다. I부류가 800의 상품의 교환을 위하여 선대한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도 역시 I부류에로 되돌아와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

$$I. \quad 1,000v + \underbrace{1,000m}_{2,000c}$$

$$II. \quad 2,000c$$

의 교환에서 생긴 곤란은 결국 다음과 같은 나머지의 교환에서의 곤란이었다.

$$I. \quad \cdots 400m$$

II. (1) 화폐 200 + 상품 200c + (2) 상품 200c 또는 사태를 더 똑똑히 밝히면

$$I. \quad 200m + 200m$$

$$II. \quad (1) \text{ 화폐 } 200 + \text{상품 } 200c + (2) \text{ 상품 } 200c.$$

I부류의 첫째 부분에서는 상품 200c가 200Im(상품)과 교환되므로 그리고 I부류와 II부류 사이의 400의 상품의 이 교환에서 유통하는 모든 화폐는 그것을 선대한 I부류나 II부류로 되돌아가므로 I부류와 II부류 사이의 교환요소로서의 이 화폐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 요소는 아니다. 또는 달리 말하면 200Im(상품)과 200IIc(II부류의 첫째 부분의 상품)의 교환에서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놓고 구매수단으로서, 따라서 또 가장 엄밀한 뜻에서의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상품 200Im과 200IIc(첫째부분)는 가치액이 같으므로 200의 가치가 있는 생산수단이 200의 가치가 있는 소비품과 교환된다는 것. 화폐는 여기에서 관념적으로만 기능을 놀며 차액 결제를 위하여 이 편이나 저 편에서 실제로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상품 200Im과 그와 등가인 상품 200IIc(첫째부분)를 I부류와 II부류의 두 편에서 지워버릴 때에 비로소 문제는 순수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로 상쇄되는 가치가 같은 이 두 상품액들(I부류와 II부류의)

을 제쳐놓은 다음에 아직 교환의 나머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순수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I. 상품 200m

II. (1) 화폐 200c + (2) 상품 200c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하다. 즉 II부류의 첫째 부분은 200의 화폐로 그들의 고정자본의 구성부분 200Im을 산다. 이에 따라 II부류 첫째 부분의 고정자본은 현물로 갱신되어 있고 200의 가치가 있는 I부류의 잉여가치는 상품형태(생산수단, 즉 고정자본의 요소)에서 화폐형태로 전화되어 있다. 이 화폐로 I부류는 II부류 둘째 부분의 소비품을 사며 그 결과 II부류의 첫째 부분에서는 그들의 불변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이 현물로 갱신되어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불변자본의 다른 구성부분(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는)이 화폐로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이 구성부분도 현물로 갱신될 때까지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가라앉는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즉 II부류의 불변자본 가운데서 가치가 모두 화폐로 도로 전화되고 따라서 해마다 현물로 갱신되어야 하는 고정적 구성부분(첫째 부분)은 II부류의 불변자본의 다른 고정적 구성부분—아직 원래의 현물형태로 계속 기능을 하며 그 마멸분 즉 고정적 구성부분의 기능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에 옮겨가는 가치상실분이 맨먼저 화폐로 보상되어야 하는—의 한 해의 마멸분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균형은 규모가 종전과 같은 재생산의 법칙으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I부류에서는 이 부류가 한편으로는 II부류의 불변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을 제공하고 다른 편으로는 그 고정적 구성부분을 제공하는 한에서 균형이 잡힌 분업이 변함없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상세히 연구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은 IIc(첫째 부분)의 나머지 액이 IIc(둘째 부분)의 나머지와 같지 않을 때에는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든 나머지 액은 뒤에 든 나머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차례로 그 두 경우를 보자.

첫째 경우

I. 200m

II. (1) 220c(화폐로) + (2) 200c(상품으로)

이 경우에 IIc(첫째 부분)는 2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상품 200Im을 사며 I부류는 똑같은 화폐로 상품 200IIc(둘째 부분)를, 따라서 화폐로 가라앉아 있는 고정자본의 구성부분을 산다. 그리하여 이 부분은 화폐화되어 있다. 그러나 화폐로 있는 20IIc(첫째 부분)는 현물의 고정자본으로 도로 전화될 수 없다.

이 불행은 우리가 Im의 나머지를 200이 아니라 220이라고 보며 그리하여 2,000I 가운데서 1,800이 아니라 1,780만이 이전에 교환되었다고 보면 될 수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220m

II. (1) 220c(화폐로) + (2) 200c(상품으로)

IIc(첫째 부분)는 22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220Im을 사며 I부류는 그 다음에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상품으로 있는 200IIc(2)를 산다. 그러나 그 경우에 I부류에는 2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 남는데 이것은 잉여가치의 한 부분으로서 I부류는 이것을 소비품에 지출할 수 없고 화폐로만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곤란이 IIc(첫째 부분)에서 Im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이제는 반대로 IIc(첫째 부분)가 IIc(둘째 부분)보다 작다고 하자.

둘째 경우

I. 200m(상품으로)

II. (1) 180c(화폐로) + (2) 200c(상품으로)

II부류(첫째 부분)는 18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180Im을 산다. I부류는 이 화폐로 같은 가치가 있는 II부류(둘째 부분)의 상품을 즉 180IIc(2)를 산다. 한편에는 20Im이 팔리지 않고 남으며 다른 편에는 또한 20IIc(2)가 남는다. 40의 가치를 지닌 상품들은 화폐로 전화될 수 없다.

I부류 상품의 나머지가 180이라고 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물론 I부류에 아무런 여분도 남지 않을 것이지만 IIc(둘째 부분) 중에서 20이란 상품의 여분은 역시 팔리지 않고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 남을 것이다.

II (1)의 가치가 II (2)보다 큰 첫째 경우에는 II (1)에 화폐의 여분이 고정자본으로 전화되지 않고 남으며 또는 Im의 나머지가 IIc(1)과 같다고 치면 화폐의 똑같은 여분이 소비품으로 전화되지 않고 Im에 남는다.

IIc(1)이 IIc(2)보다 작은 둘째 경우에는 200Im과 IIc(2)에 화폐의 부족이 생기면 쌍방에 크기가 같은 상품의 여분이 남으며 또는 Im의 나머지가 IIc(1)과 같다고 치면 IIc(2)에 화폐의 부족과 상품의 여분이 생긴다.

Im의 나머지가 두 경우에 언제나 IIc(1)과 같다고 치면—생산의 규모는 주문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그리고 II부류와 I부류의 불변자본 가운데서 올해에는 더 많은 고정적 구성부분이 생산되고 다음해에는 더 많은 유동적 구성부분이 생산되더라도 재생산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므로—첫째 경우에 Im이 완전히 소비품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은 I부류가 여분의 화폐로 II부류의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사며 따라서 이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II부류가 소비하지 않고 화폐로서 쌓아두는 경우만이다. 둘째 경우에 불행을 없앨 수 있는 것은 I부류 자체가 이 화폐를 지출하는 경우일 것인데 이것은 곧 우리가 배척한 가정이다.

IIc(1)이 IIc(2)보다 크다면 Im이 화폐 여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IIc(1)이 IIc(2)보다 작다면 반대로 IIc의 마멸분을 생산수단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II부류의 상품(소비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경우에 다 대외무역이 필요하다.

규모가 의연 같은 재생산을 살펴보는 데서 모든 생산부분들의 생산성이 의연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또 그 부분들의 상품생산물들의 비례적 가치관계가 의연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IIc(1)이 IIc(2)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마지막에 든 두 경우는 그러한 두 경우가 무조건 나타날 수 있는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을 살펴보는 데서는 언제나 역시 흥미가 있을 것이다.

3) 결 론

고정자본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정들, 따라서 생산규모뿐 아니라 특히 노동의 생산성도 의연 같다고 전제하고 IIc의 고정적 요소 가운데서 지난 해에 수명을 다 산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올해에 수명을 다 산다면 따라서 또 더 많은 부분이 현물로 갱신되어야 한다면 고정자본 가운데서 아직 수명을 살고 있으며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당분간 화폐로 보상되어야 하는 부분은 똑같은 비례로 줄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제에 의하면 II부류에서 기능을 노는 고정자본부분의 총액(또 가치 총액)은 의연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뒤따른다.

첫째로, I부류의 상품자본의 비교적 많은 부분이 IIc의 고정자본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더 적은 부분이 IIc의 유동적 구성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IIc를 위한 I부류의 총생산은 의연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 부분의 생산이 늘면 다른 부분의 생산은 줄며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그러나 한편 또 II부류의 총생산도 그 크기가 의연 똑같다. 그러나 II부류의 원료, 반제품, 보조자재(즉 II부류의 불변자본의 유동적 요소들)가 줄어드는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둘째로 화폐형태로 회복된 고정자본 IIc의 비교적 많은 부분이 화폐형태에서 현물형태로 도로 전화되기 위하여 I부류로 흘러간다. 따라서 I부류에서는 I부류와 II부류 사이에서 단순한 상품교환을 위하여 유통하는 화폐 밖에도 더 많은 화폐가 흘러간다. 즉 서로의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방적으로 구매수단의 기능을 노는 더 많은 화폐가 흘러간다. 그러나 동시에 IIc 가운데서 고정자본의 마멸분의 가치를 보상하는 상품량, 따라서 I부류의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I부류의 화폐와만 교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II부류의 상품량은 그에 비례하여 줄었을 것이다. 더 많은 화폐가 II부류에서 I부류로 단순한 구매수단으로서 흘러갈 것이며 II부류의 상품 가운데서 I부류가 그것에 대하여 단순한 구매자로서 기능을 놀게 될 그러한 상품은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Iv는 이미 II부류의 상품으로 전화되어 있으므로 Im의 비교적 많은 부분은 II부류의 상품으로 전화될 수 없고 화폐형태대로 있

을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어떤 해에는 Ⅱ부류에서 수명을 다 산 고정자본의 재생산이 더 적어지고 반대로 마멸분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규모가 의연 같은 재생산인데도 불구하고 공황, 과잉생산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제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 즉 특히 노동의 생산력과 노동의 총량, 강도가 의연 같은 경우에 수명을 다 산(갱신되어야 할) 고정자본과 종래의 현물형태로 계속 작용하는(마멸분을 보상하는 가치만을 생산물에 덧붙이는) 고정자본 사이에 변함없는 비례관계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재생산되어야 할 유동적 구성부분의 양은 의연 똑같지만 재생산되어야 할 고정적 구성부분의 양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Ⅰ부류의 총생산이 늘지 않을 수 없거나 화폐관계를 제쳐놓고 보더라도 고정자본의 이 부분의 재생산에서 부족이 생길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현물로 재생산해야 할 Ⅱ부류의 고정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줄어들고 따라서 Ⅱ부류의 고정자본 가운데서 아직은 화폐로만 보상되면 되는 구성부분은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면 Ⅰ부류가 재생산하는 Ⅱ부류 불변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양은 의연 달라지지 않는데 재생산되어야 할 고정적 구성부분의 양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Ⅰ부류의 총생산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고정자본의 여분(먼저 경우에는 부족이 생겼듯이)이, 그것도 화폐화될 수 없는 여분이 생길 것이다.

사실 첫째 경우에는 똑같은 노동도 생산성이나 노동시간이나 강도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첫째 경우의 그 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동은 노동과 자본이 Ⅰ부류의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있을 때마다 곧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둘째로(노동시간이 늘고 노동이 강화된 한에서) Ⅰ부류는 더 많은 가치를 Ⅱ부류의 더 적은 가치와 교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Ⅰ부류의 생산물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둘째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되며 이 경우에 Ⅰ부류는 그 생산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에게는 공

황을 의미한다. 또는 I 부류는 과잉분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공황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잉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이로울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해로운 것이다.

대외무역은 두 경우에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경우에는 화폐형태로 있는 I 부류의 상품을 소비품으로 전화하는 데서, 둘째 경우에는 상품으로 있는 과잉분을 팔아치우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무역은 그것이 자본의 요소들을(가치로 보아서도) 단순히 보상하지 않는 한에서는 모순들을 더 넓어진 분야로 옮겨놓을 따름이며 그 모순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게 한다.

자본주의적 재생산형태가 일단 제거되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고정자본 가운데서(이 경우에는 소비품을 생산하는 데서 기능을 노는 고정자본 가운데서) 수명을 다 사는, 따라서 현물로 보상되어야 할 부분의 크기는 해가 바뀔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해에 그 부분이 아주 크다면(사람의 사망율의 경우와 같이 평균사망율을 초과하여) 그 다음해에는 틀림없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그밖의 사정들이 전과 같다고 하면 한 해 동안의 소비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반제품, 보조자재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총생산은 한 경우에는 늘어나고 다른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오직 끊임없는 상대적 과잉생산에 의해서만 면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고정자본이 직접 필요한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한 해 동안의 직접적 수요를 넘는 원료 등등의 예비에 의하여(이것은 특히 생활수단에 해당된다)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과잉생산은 사회가 그 자체의 재생산의 대상적 수단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과잉생산은 하나의 부정적 요소이다.

고정자본에 관한 이 예는 재생산의 규모가 의연 같은 경우에 들어맞는 것이다.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생산에서의 불일치는 경제학자들이 공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즐겨 드는 논리의 하나이다. 고정자본이 그저 유지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불일치는 생길 수 있으며 또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러한 불일치는 이상적인 정상적 생산을 전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능을 놓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며 또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다.

제12절 화폐재료의 재생산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기에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 해의 금과 은의 재생산이다. 금과 은이 사치품, 도금 등등의 단순한 재료로서는 다른 모든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금과 은이 화폐재료로서는, 따라서 잠재적 화폐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논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화폐재료로서 금만을 든다.

좀 낡은 재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의 금 총생산량은 80만 내지 90만 파운드 즉 가치로 보면 11억 내지 12억 5,000만 마르크에 이르렀다. 그런데 죄트베르⁵³⁾에 의하면 1871~1875년의 평균은 170,675킬로그램, 가치로 보아 약 4억 7,600만 마르크에 지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약 1억 6,700만 마르크, 미국은 1억 6,600만 마르크, 러시아는 9,300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나머지는 매개 나라에서 제공되었는데 그 액은 각각 1,000만 마르크 미만이다. 똑같은 기간에 평균 한 해 은생산은 3억 5,450만 마르크의 가치가 있는 200만 킬로그램보다 좀 적었는데 그 가운데서 멕시코가 약 1억 800만 마르크, 미국이 1억 200만 마르크, 남아메리카는 6,700만 마르크, 독일이 2,600만 마르크 등등을 제공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나라들 가운데서 미국만이 금과 은을 생산하는 나라이다. 구라파의 자본주의 나라들은 그들의 금의 거의 모두와 그들의 은의 대부분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멕시코, 남아메리카, 러시아에서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한 해 재생산을 분석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나라로 금광을 옮겨놓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적인 한 해 재생산이 주어진 규모에서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은 다만 국내생산물을 다른 사용형태 또는 현물형태의 생산물로 바꿔놓을 따름이고 가치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생산수단과 소비품이

53) Ad. 죄트베르, 『귀금속의 생산』, 고타, 1879년.

라는 두 부류가 서로 교환되는 가치비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매개 부류 생산물의 가치가 갈라지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잉여가치의 비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에 재생산되는 생산물가치를 분석하는 데서 대외무역을 끌어들이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따름이고 문제 자체이전 문제의 해결이전 그에 어떠한 새로운 계기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완전히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금을 한 해 재생산의 직접적 요소로서 취급해야지 교환에 의하여 밖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요소로서 취급해서는 안된다.

금의 생산은 금속생산 일반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생산을 포괄하는 부류인 I 부류에 속한다. 한 해의 금생산물의 가치를 30(편리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도식의 숫자들에 비하면 너무 높다)이라고 보고 이 가치는 $20c+5v+5m$ 으로 갈라진다고 하자. $20c$ 는 Ic의 다른 요소들과 교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후에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5v+5m(I)$ 은 IIc의 요소들 즉 소비품과 교환되어야 한다.

$5v$ 에 대하여 말한다면 금을 생산하는 매개 기업은 맨먼저 노동력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기업 자체가 생산한 금으로가 아니라 국내에 예비로 있는 화폐의 한 부분으로 산다. 노동자들은 이 $5v$ 로 소비품을 II부류에서 끌어내며 II부류는 이 화폐로 생산수단을 I부류에서 산다. 가령 II부류가 I부류에서 그만큼 금을 상품재료 동등(II부류의 불변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산다면 $2v$ 는 이미 이전부터 유통분야에 있던 화폐로 I부류의 금생산자들에게로 되돌아온다. II부류가 I부류에서 재료로서 금을 더 사지 않는다면 I부류는 자체의 금을 화폐로서 유통에 던져넣음으로써 II부류에서 상품을 산다. 왜냐하면 금으로는 어떤 상품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우와 다른 점은 다만 이 경우에는 I부류가 판매자로서 나타나지 않고 구매자로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I부류의 금 채굴업자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늘 팔 수 있으며 그들의 상품은 늘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형태에 있다.

한 방적업자가 $5v$ 를 자기의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고 그 대신 이 노동자들이 그에게 생산물로 5의 실을—잉여가치는 제쳐놓고 본다—제공한다고 하자. 노동자들은 5로 IIc의 상품을 사며 II부류는 5의 화폐로 I부류의

* 이 책 522 페이지에 있는 F. 엥겔스의 난외 주를 보라. 편집부

실을 산다. 그리하여 5v는 화폐로 방적업자에게 되 돌아온다. 이와 반대로 위에서 가정한 경우에는 자본가 Ig(금생산자를 이렇게 표시하려고 한다)가 5v를 자기의 노동자들에게 이미 이전부터 유통분야에 있던 화폐로 선 대한다. 이 노동자들은 그 화폐를 생활수단에 지출한다. 그러나 5 가운데서 2만이 II부류에서 자본가 Ig에게 되 돌아온다. 그러나 자본가 Ig는 방적업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재생산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노동자들은 그에게 금으로 5를 제공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2는 그가 팔았고 3은 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으로 주화⁵⁴⁾를 만들거나 이것을 은행권으로 바꾸기만 하면 직접 즉 그 이상 II부류의 매개없이 자기의 가변자본이 모두 다시 화폐형태로 그의 손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해 재생산의 이 첫 과정에는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유통 분야에 있는 화폐량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가정한 데 의하면 II부류는 IIc의 한 부분으로 2v(Ig)를 재료로서 샀으며 3은 Ig에 의하여 II부류 안에서 다시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지출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금생산*에 의하여 제공된 화폐량에서 3은 II부류 안에 남아 있으며 I부류로 되 돌아오지 않았다. 전제에 의하면 II부류는 재료로서의 금에 대한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이 3은 퇴장된 금으로서 II부류의 손에 남아 있다. 이 3은 II부류의 불변자본의 어떠한 요소도 이룰 수 없으므로, 그리고 또 II부류는 이미 전부터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넉넉한 화폐자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또 IIc의 한 부분과 교환된 이 추가적 3g는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는 것을 빼놓으면 IIc 안에서는 아무런 기능도 놀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이 3g는 우연한 경우지만 IIc(1)이 IIc(2)보다 작은 경우에 마멸분을 그만큼 메우는 데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또 바로 그 마멸분을 보상하는 것을 빼놓으면 IIc의 상품생산물은 모두 I(v+m)의 생산수단과 교환되어야 하므로 이 화폐는 모두 IIc에서 IIm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되며—이 IIm이

54) “매우 많은 양의 덩어리금(gold bullion)을… 금 채굴업자들이 직접 샌프란시스코의, 조폐국에 가지고 온다.”(『대사관과 공사관, 서기관들의 보고』, 1879년 제3부, 337페이지)

* 제1판과 제2판에는 화폐생산으로 되어 있다. 엥겔스의 인쇄원고에 의하여 고쳤다. 편집부

생활필수품으로 존재하건 사치품으로 존재하건 상관없이 없다—이와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상품가치는 II_m 에서 II_c 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결과 II 부류의 잉여가치의 한 부분이 퇴장화폐로서 쌓이게 된다.

재생산의 둘째 해에도 한 해에 생산된 금 가운데서 똑같은 비율이 재료로서 계속 이용된다면 그는 다시 Ig 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3은 현물로 보상될 것이다. 즉 다시 II 부류 안에서 퇴장화폐로서 풀려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변자본 일반에 대하여 말하면 자본가 Ig 는 다른 모든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본을 끊임없이 노동을 사는 데 화폐로 선대하여야 한다. 이 v 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으로 II 부류에서 상품을 사는 것은 그 자본가가 아니라 그의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그 자본가가 구매자로서 나서며 그리하여 금을 II 부류가 주동이 되지 않고 그 자신이 II 부류에 던져넣는 경우는 결코 생길 수 없다. 그러나 II 부류가 그 자본가에게서 재료를 사고 자체의 불변자본 II_c 를 금재료로 전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한에서 $(Ig)v$ 의 한 부분은 II 부류에서 자본가 Ig 에게 되돌아오는데 그것은 가변자본이 I 부류의 다른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은 한에서 그 자본가는 자체의 v 를 직접 자체의 생산물에서 금으로 보상한다. 그러나 화폐로서 선대한 v 가 II 부류에서 그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비율로 II 부류 안에서 유통하고 있는 화폐의 한 부분(I 부류에서 II 부류로 흘러왔고 I 부류로 되돌아가지 않은 화폐)이 퇴장화폐로 전화되고 따라서 그만큼 II 부류의 잉여가치의 한 부분은 소비품에 지출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새로운 금광들이 개발되거나 낡은 금광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므로 자본가 Ig 가 v 에 지출하여야 할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늘 새로 금을 생산하기 전에 있는 화폐량의 한 부분을 이루는데 자본가 Ig 의 노동자들은 이 화폐를 II 부류에 던져넣는다. 그리고 이 화폐가 II 부류에서 자본가 Ig 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한에서 이 화폐는 II 부류에서 화폐퇴장의 요소를 이룬다.

그런데 $(Ig)m$ 에 대하여 말하면 자본가 Ig 는 이 경우에 늘 구매자로서 나설 수 있다. 그는 자기의 m 을 금으로서 유통에 던져넣으며 그 대신 소비품 II_c 를 끌어낸다. II 부류에서 그 금은 일부는 재료로서 이용되며 따라서 II 부류 생산자본의 불변적 구성부분 c 의 실제적 요소로서 기능을 논다. 그렇지 않은 한에서 그것은 다시 II_m 가운데서 화폐로 머물

러 있는 한 부분으로서 화폐퇴장의 요소로 된다. 후에 살펴보게 될 $Ic^{55)}$ 는 제쳐놓고 보더라도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도—여기서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축적, 다시 말하면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이 배제되고 있지만—역시 화폐축적 또는 화폐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폐축적이 해마다 새로 되풀이 되므로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점으로 삼은 전제 즉 재생산이 시작될 때 상품교환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화폐자금이 I 부류와 II 부류의 자본가들의 손에 있다는 전제가 해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폐축적은 유통하는 화폐의 마멸로 하여 잃어버리는 금을 뺀 다음에도 진행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모든 자본가들이 축적한 화폐량은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해마다 새로 금이 생산되어 이 화폐량에 덧붙여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물론 이 추가분은 절대적 양에서는 많아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적어진다. 투크에 대한 반대론*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자. 그것은 결국 바로 자본가계급 자체를 일반적으로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 원천으로 보지 않으면 안되는데 어느 자본가나 다 한 해 생산물에서 잉여가치를 화폐로 끌어낸다는 것, 즉 그가 유통에 던져넣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제17장에서) 설명한 것을 개괄하여 지적하려고 한다.

1) 여기에서 필요한 유일한 전제 즉 일반적으로 한 해에 재생산되는 생산물량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교환하기 위하여 화폐가 넉넉히 있다는 전제는 상품가치의 한 부분이 잉여가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하여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산이 모두 노동자들 자신의 것이며 그들의 잉여노동이 자본가를 위한 잉여노동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잉여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유통하는 상품가치의 양은 똑같은 것이며 그리고 그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다면 그 유통에 똑같은 화폐량이 필요할 것이다.

55) I 부류의 불변자본 안에서 진행되는 새로 생산된 금의 교환에 관한 연구는 맑스의 원고에는 없었다. — F. E.

* 이 책 361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따라서 문제는 두 경우에 다 오직 이 총상품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화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지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한 화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지만 매개 상품은 $c+v+m$ 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총상품량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자본 $c+v$ 의 유통에 일정한 화폐액이 필요하고 한편 또 자본가들의 소득 즉 잉여가치 m 의 유통에 다른 화폐액이 필요하게 된다.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 전체에 있어서도 그들이 자본으로서 선대하는 화폐는 그들이 소득으로서 지출하는 화폐와 다르다. 이 뒤에 든 화폐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그저 자본가계급의 손 안에 있는 화폐에서 나올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 안에 있는 총화폐량 가운데서 한 부분이 자본가들의 소득의 유통에 쓰인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매개 자본가는 처음에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품에 화폐를 지출하며 그 다음에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의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쓰이는 화폐로서 다시 도로 뉘아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곤란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근원에서 생긴다.

첫째로, 우리가 다만 자본의 유통과 회전만을 살펴본다면, 따라서 또 자본가를 자본의 인격화로서만 보고 자본주의적 소비자와 방탕꾼(Lebemann)으로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 자본가가 끊임없이 잉여가치를 자기 상품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유통에 던져넣는 것은 보지만 그의 손에 있는 소득의 형태로서의 화폐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소비를 위하여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자본가계급이 얼마간의 화폐액을 소득의 형태로 유통에 던져넣는다면 그들이 한 해 총생산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잉여가치를 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잉여생산물은 자본가계급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 자본가계급은 계급으로서 잉여생산물을 공짜로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며 이 사실이 화폐유통으로 하여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화폐유통으로 하여 달라지는 것은 다만 매개 자본가가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현물로 소비하지 않고—현물로 소비하는 일은 거의 없다—그가 차지한 잉여가치액만큼 온갖 상품들을 한 해의 사회적 잉여생산물

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분석이 보여준 바와 같이 자본가계급이 소득을 지출하기 위하여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다면 그들은 같은 화폐를 다시 또 유통에서 끌어내며 따라서 똑같은 과정을 늘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으로서의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필요한 이 화폐액의 소유자로 된다. 따라서 자본가가 자기의 소비필천을 위하여 잉여가치를 상품형태로 상품시장에서 끌어낼 뿐 아니라 그가 이 상품을 산 화폐도 동시에 다시 손에 넣는다면 그는 명백히 그로서는 등가를 치루지 않고 상품을 유통에서 끌어낸 것으로 된다. 자본가는 그 상품의 댓가를 화폐로 지불하였지만 그 상품은 그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한 파운드 스텔링으로 상품을 사고 그 상품을 판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은 잉여생산물의 댓가로 한 파운드 스텔링을 나에게 도로 준다면 나는 명백히 그 상품을 거저 얻는 것으로 된다. 이런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상품을 끌어내면서 끊임없이 그 한 파운드 스텔링의 소유자라는 사실은—비록 내가 상품을 얻기 위하여 한 때 그 한 파운드 스텔링을 내준다 하더라도—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가는 이 화폐를 그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은 화폐화된 잉여가치로서 끊임없이 도로 얻는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A 스미드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가치를 소득으로, $v+m$ 으로 분해하고 따라서 불변자본가치는 영이라고 치고 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즉 한 해 소득의 유통에 드는 화폐면 한 해 총생산물의 유통에도 넉넉하며 따라서 우리가 든 예에서 3,000의 가치가 있는 소비품의 유통에 드는 화폐면 9,000의 가치가 있는 한 해 총생산물의 유통에도 넉넉한 것으로 된다. 이것이 사실 A 스미드의 견해이며 이 견해를 T. 투크는 되짚고 있다. 사회적 총생산물을 유통시키는 데 드는 화폐량과 소득의 화폐화에 드는 화폐량과의 관계에 대한 이 그릇된 견해는 한 해 총생산물의 서로 다른 소재적 요소들과 가치요소들이 재생산되고 해마다 보상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생각한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이미 논박되었다.

스미드와 투크 자신들의 말을 들어보자.

스미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유통은 두 부분으로 즉 상인들 호상간의 유통과 상인들과 소

비자들 사이의 유통으로 가를 수 있다. 지폐이건 금속화폐이건 똑같은 화폐가 때로는 이 유통에서 쓰이고 때로는 저 유통에서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두 유통과정은 계속 동시에 나란히 진행되며 따라서 그 매개 유통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종류의 일정한 화폐량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하는 상품들의 가치는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통하는 상품들의 가치를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무엇을 사든 그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상인들 사이의 유통은 도매로 진행되므로 그 유통에는 일반적으로 매개 거래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유통은 대체로 소매로 진행되며 그 유통에 드는 금액은 흔히 보잘 것 없는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한 실링이나 반 페니로도 넉넉하다. 그러나 적은 금액은 큰 금액보다 훨씬 더 빨리 유통한다. …그러므로 모든 소비자들이 한 해에 사는 것은 모든 상인들이 한 해에 사는 것과 가치에 있어서 적어도(이 적어도는 괜찮다!) 같다 하더라도 먼저 든 것은 보통 훨씬 적은 양의 화폐로 처리될 수 있다.” 등등 (제2부, 제2장)

아담의 이 개소에 대하여 T. 투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구별이 본질에 있어서 옳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교환은 소비자들의 주되는 소득(the principal means)을 이루는 임금의 지불도 포함한다. …상인들 사이의 모든 거래 즉 생산자들과나 수입업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제조업 등등 중간과정의 모든 관계를 거쳐 소매상인이나 수출업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판매는 자본이 옮겨가는 운동들로 분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 옮겨간다는 것은 많은 양의 거래에서 옮겨갈 때에 은행권이나 주화를 실제로 내주는 것—실질적으로 내주는 것이 허구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다—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 사실상 실제로 동반하는 것도 아니다. …상인들과 상인들 사이의 거래 총액은 결국에는 상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거래액에 의하여 규정되며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T. 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런던, 1844년 34~36페이지의 이곳저곳)

마지막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상인들 호상간의 교환과 상인과 소비자와의 교환 사이에는, 다시 말하면 한 해 총소득의 가치와 이 소득을 생산하는 자본의 가치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것을 투크가

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A 스미드의 견해를 명백히 시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크의 유통이론을 특별히 비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2) 어느 산업자본이나 다 일을 시작할 때 자체의 고정적 구성부분 전체를 사들이기 위하여 화폐를 한꺼번에 유통에 던져넣으며 다음에 그 고정적 구성부분의 가치를 몇 해에 걸쳐서 자체의 한 해 생산물을 팔아 점차적으로만 유통에서 끌어낸다. 따라서 매개 산업자본은 맨처음에는 유통에서 끌어내는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다. 이것은 전체 자본을 현물로 갹신할 때마다 되풀이 된다. 이것은 고정자본을 보수할 때마다 즉 고정자본을 부분적으로만 갹신할 때마다 조금씩 되풀이 된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유통에 던져넣는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낸다면 다른 편에서는 그 반대로 유통에서 끌어내는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다.

생산기간(노동기간과 다른 것으로서의)이 비교적 오랜 모든 산업부문에서는 이 기간에 자본주의적 생산자는 일부는 적용되는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고 일부는 소비하여야 할 생산수단을 사들이는 데 끊임없이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는다. 그리하여 생산수단은 직접 상품시장에서 끌려나오며 소비품은 일부는 자기들의 임금을 지출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일부는 자기들의 소비를 결코 멈추지 않는 자본가들 자신에 의하여 직접 상품시장에서 끌려나오는데, 이 경우에 이 자본가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동가도 상품으로 유통에 던져넣지 않는다. 자본가들이 유통에 던져넣는 화폐는 이 기간에 잉여가치도 포함한 상품가치의 화폐화에 쓰인다. 이 사정은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주식회사 등등이 운영하는 장기적인 기업의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철도, 운하, 도크(dock), 도시의 큰 건축물의 건설, 무쇠배 건조, 큰 규모의 물빼기 공사 등등에서 중요하다.

3) 다른 자본가들은 고정자본에 대한 지출을 재쳐놓고 보면 노동력과 유동적 요소들을 사면서 유통에 던져넣은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내는데 금과 은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원료로서 쓰이는 귀금속을 재쳐놓고 보면 화폐만을 유통에 던져놓고 상품만을 유통에서 끌어낸다.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하는 부분을 내놓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대부분 그리고 그들 자신의 손에 쌓이는 퇴장화폐를 내놓는 전체 잉

여가치가 화폐로서 유통에 내던져진다.

4) 한편으로는 땅빼기, 집 등등과 같은 한 해 안에 생산된 것이 아닌 갖가지 물건들, 그리고 또 집집승, 목재, 포도주 등등과 같은 그 생산기간이 한 해가 넘는 생산물들이 상품으로서 유통한다. 유통분야의 이러저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직접적 유통에 드는 화폐액 밖에도 늘 얼마만큼의 화폐가 잠재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기능을 놀지 않으나 자극을 받으면 기능을 놀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생산물들의 가치는 흔히 조금씩 그리고 점차로 유통한다. 예컨대 집의 가치는 몇 해 동안의 집세로 유통한다.

한편 또 재생산과정의 모든 운동이 다 화폐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생산과정은 그 요소들이 일단 마련되자 화폐유통에서 떨어져 있다. 그리고 또 생산자 자신이 개인적으로건 생산적으로건 직접 다시 소비하는 모든 생산물은 모두가 그리한데 농촌노동자들이 현물로 받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해 생산물이 유통하는 데 드는 화폐량은 이미 사회에 있으며 점차 축적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마멸된 주화를 보상하는 금을 내놓고는 이 해에 새로 생산된 가치에 속하지 않는다. 비록 단순한 금속유통의 기초 위에서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도 기능을 놀 수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놀았으며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신용제도와 그 기구의 일정한 측면들이 발전하였지만 우리의 서술에서는 귀금속 화폐만이 유통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 유통에서도 가장 단순한 현금매매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다만 방법론적 고려에서만은 아니다. 방법론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은 벌써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투크와 그 학파, 그리고 그들의 반대파는 은행권의 유통을 설명하는 논쟁에서는 언제나 순수한 금속유통을 가정하는 데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경우에도 매우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였으며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 출발점이 그들의 분석에서 부차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원래의 형태로 표시된 화폐유통—그런데 이 화폐유통은 여기에서 한 해 재생산과정의 내재적 계기이다—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다

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7)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면, 따라서 임금노동제도의 지배를 전제로 한다면 화폐자본은 그것이 가변자본을 선대하는 형태인 한에서 주되는 역할을 논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임금노동제도가 발전하는 데 따라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 전화되고 따라서 또 몇 개의 중요한 예외는 있지만 그 운동의 한 단계로서 화폐로 전화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유통화폐량은 상품의 이 화폐화에 넉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유통화폐량의 가장 큰 부분은 임금의 형태로, 즉 산업자본가들이 노동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데서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선대하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손에서는 그 많은 것이 오직 유통수단(구매수단)으로서만 기능을 노는 화폐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것은 자연경제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인데 자연경제는 모든 예농제도(농노제도를 포함하여)의 기초 위에서 우세한 것이며 더욱이 어느 정도 원시적인 공동체의 기초 위에서 우세하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예농제 관계나 노예제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관계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노예제도에서는 노동력을 사는 데 지출되는 화폐자본은 고정자본의 화폐형태의 역할을 놀며 이 고정자본은 노예의 활동적인 생존기간에 점차적으로만 보상된다. 그러므로 아테네 사람들은 노예소유자가 자기의 노예를 산업에 이용하여 직접 얻는 이득이나 또는 노예를 산업에 이용하는(예컨대 광산노동에) 다른 사람에게 세놓아 간접으로 얻는 이득을 선대한 화폐자본의 이자(및 상각금)로서만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산업자본가가 잉여가치의 한 부분과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자기의 고정자본의 이자와 보상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고정자본(집, 기계 등등)을 세놓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규칙으로 되고 있다. 단순한 가정노예는 필요한 봉사를 하는 데 쓰이건 다만 사치를 자랑하는 데 쓰이건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날의 심부름계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예제도도 그것이 희랍의 발전된 국가들과 로마에서와 같이 농업과 제조업, 선박운수업 등등에서 생산적 노동의 지배적 형태인 한에서는 자연경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노예시장 자체는 전쟁, 해상약탈 등등에 의한 상품인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데 이 약탈도 유통과정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육체적 강제에 의하여 남의 노동력을 현물로 차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까지도

임금노동제가 실시되고 있는 북부의 주들과 노예제가 실시되고 있는 남부의 주들 사이의 중간지대가 남부를 위하여 노예를 기르는 지대로 변한 다음에도, 따라서 남부에서는 노예시장에 내던지는 노예 자체가 한 해 재생산의 하나의 요소로 된 다음에도 시간이 오래 감에 따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시장을 채우기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와의 노예무역이 더 계속되었다.

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한 해 생산물의 교환에서 화폐가 자연발생적으로 흘러나가고 되돌아온다는 것, 고정자본은 그 가치가 뭉땅 한꺼번에 선대되며 몇 해 동안에 걸쳐 그 가치가 유통에서 점차적으로 끌려나오며 따라서 고정자본은 해마다 화폐가 퇴장되어 화폐형태로 점차 복구되는데 이 화폐퇴장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와 나란히 진행되며 해마다 새로운 금생산에 기초하는 화폐퇴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생산기간의 길이가 서로 다름에 따라 화폐를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따라서 또 상품이 팔려 화폐를 유통에서 회수할 수 있기에 앞서 늘 새로 퇴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 생산지와 판매시장의 거리가 서로 다른 것만으로써도 벌써 화폐를 선대하는 기간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기업들에서와 똑같은 생산부문의 서로 다른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생산적 예비의 상태 또는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 화폐가 되돌아오는 크기와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요소들을 사들이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해의 재생산기간에 일어나는 것들이다. 자연발생적 운동의 다양한 이 모든 계기들은 다만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되고 주목되기만 하면 그것은 신용제도의 기구적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데도 또 이미 있는 대부할 수 있는 자본을 실제로 끌어내는 데도 계획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또한 대체로 정상적인 조건에서 생산이 계속 똑같은 규모로 진행되는 기업들과 농촌경리와 같이 계절이 다름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이 서로 다른 부문들의 차이가 여기에 더 첨가된다.

제13절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이론⁵⁶⁾

사회적 재생산을 살펴보는 데서 정치경제학자들의 혼란과 동시에 흰소리로 가득찬 무사상성의 실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위대한 논리학자 데스튜트 드 트라시인데(제1부, 146페이지, 주 30을 참조하라*) 리카아도까지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고 아주 탁월한 저술가라고 부르고 있다. (『원리』, 333페이지)

이 탁월한 저술가는 사회적 총재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 산업기업가들은 그렇게 많은 이윤을 어떻게 얻으며 또 그것을 누구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그 생산에 들인 것보다 비싸게 팔아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것을 판다고 말이다.

1) 그들은 자기들의 이윤의 한 부분으로 댓가를 지불하면서 자기들이 소비하고 자기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서로 판다.

2) 그들 자신이 고용하는 임금노동자에게도 팔고 놓고먹는 자본가들이 고용하는 임금노동자에게도 판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임금노동자들에게서 얼마 안되는 저축을 빼놓고는 그들의 전체 임금을 도로 받아낸다.

3) 놓고먹는 자본가들에게 파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소득 가운데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임금노동자들에게 아직 내주지 않은 부분으로 산업자본가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산업자본가들이 해마다 지불하는 셋돈은 이러한 방식의 어느 하나를 거쳐,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데스튜트 드 트라시, 『의지와 그 작용에 관한 논술』, 파리 1826년, 239페이지)

따라서 자본가들은 첫째로 그들이 잉여가치 가운데서 자기들의 개인적 소비에 바치거나 소득으로서 소비하는 부분의 교환에서 모두 다 서로 속여넘김으로써 치부한다. 다시 말하여 그들의 잉여가치 또는 그들의 이윤의 이 부분이 400파운드 스텔링과 같다면 이 400파운드 스텔링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25%만큼씩 더 비싸게

56) 둘째 원고에서.

* 이 전집 제23권, 제1분책, 197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써 이 400파운드 스텔링은 예컨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모두 다 똑같은 것을 하므로 그 결과는 그들이 서로 정당한 가치대로 판 것이나 똑같다. 다만 그들은 4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를 유통시키는 데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량을 필요로 할 뿐이다. 이것은 치부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가난해지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총재산의 큰 부분을 유통수단이라는 쓸모없는 형태로 비생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될 따름이다. 즉 자본가계급은 모두 다 자기들의 상품의 가격을 명목상으로 올리지만 자기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서로 나누어야 할 상품자본은 400파운드 스텔링분뿐이며 그리고 400파운드 스텔링분의 상품가치를 500파운드 스텔링분의 상품가치를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으로 유통시키는 데 서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이윤의 한 부분,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윤을 표시하는 상품예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제쳐놓고 본다. 그러나 데스튜트는 우리에게 바로 이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윤을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량은 전혀 부차적 문제이다. 그 이윤을 표시하는 상품량은 자본가들이 이 상품량을 서로 팔 뿐 아니라—이 생각만 해도 벌써 아주 훌륭하고 심오한 것이지만—모두 다 서로 더 비싸게 파는 데서 나온다고 데스튜트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본가들의 치부의 한 원천을 알게 되었다. 이 원천은 결국 큰 가난이 큰 가난에서 나온다는 감독관 브레지히의 비밀에 귀착된다.

2) 그리고 또 똑같은 자본가들은

“그들 자신이 고용하는 임금노동자에게도 팔고 놓고먹는 자본가들이 고용하는 임금노동자에게도 판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임금노동자들에게서 얼마 안되는 저축을 빼놓고는 그들의 전체 임금을 도로 받아낸다.”

자본가들이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선대한 형태인 화폐자본이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그 자본가들이 치부하는 둘째 원천이라고 데스튜트 씨는 보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이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을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노동자들이 똑같은 자본가계급에게서

같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사며 따라서 자본가들이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선대한 100파운드 스텔링의 금액이 1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을 자기 노동자들에게 팔아 그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 온다면 이렇게 됨으로써 자본가들은 치부한다. 상식적으로 보아 자본가들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100파운드 스텔링을 이러한 일들의 진행을 거쳐 다시 가지게 되는 것같이 보인다.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때 자본가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노동력을 샀다. 사들인 노동은 이 100파운드 스텔링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데스튜트에게서 알고 있는 한에서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 자본가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을 노동자들에게 팔아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도로 얻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다시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가지지만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이 생산한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가지지만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이 생산한 1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을 가진다. 이런즉 자본가들이 어떻게 치부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첫째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노동의 댓가로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지불하였을 것이고 둘째로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의 생산물인 1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소비품을 거저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화폐가 되돌아온다는 것은 기껏해야 왜 자본가들이 그 조작에 의하여 가난해지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왜 그들이 그 조작에 의하여 치부하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자본가들은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가지게 되며 왜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계산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동력을 이 100파운드 스텔링과 교환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데스튜트와 같은 사상가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데스튜트 자신도 이러한 해결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이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을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치부한다고는,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되돌아옴으로써 치부한다고는 우리에게

게 말하지 않았다. 그 화폐가 되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왜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잃어지지 않았는가를 보여줄 따름이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그 생산에 들인 것보다 비싸게 팔아”

치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과의 거래에서도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 치부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훌륭하다!

“그들은 임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이 모든 사람들의 지출로 하여 그들에게 되돌아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임금으로 하여 그들(자본가들)이 들인 것보다 더 비싸게 그(생산물) 댓가를 지불한다.”(같은 책 240페이지)

따라서 자본가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 자신이 생산한 것을 120파운드 스텔링에 팔며 그리하여 자본가들에게로 그 100파운드 스텔링이 되돌아올 뿐 아니라 자본가들은 20파운드 스텔링을 더 얻는다는 것인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임금의 형태로 받은 화폐를 지불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1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을 자본가들에게서 받는다면 그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어치만큼 살 수 있을 뿐이고 120파운드 스텔링어치를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이 잘 안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도가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서 1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을 사지만 사실은 8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무조건 20파운드 스텔링만큼 속은 셈이다. 그런데 자본가로서는 무조건 20파운드 스텔링만큼 더 벌었는데 왜냐하면 자본가는 노동력의 댓가를 실지 노동력의 가치보다 20% 낮게 지불하였기 때문이거나 예돌아서 명목임금에서 20%만큼 떼어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처음부터 노동자들에게 8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만을 지불하고 후에 이 8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와 교환으로 실제로 8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더라도 똑같은 목적을 이룩할 것이

다. 이것은 자본가계급 전체를 놓고 보면 정상적인 방식인 것 같다. 왜냐하면 데스튜트 씨에 의하여 노동계급 자체도 “충분한 임금”(같은 책, 219페이지)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이 임금은 적어도 그들의 생존과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가장 절실한 생존수단을 대줄”(180페이지) 만큼 넉넉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이 넉넉한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그 데스튜트에 의하면 “산업의 죽음”(208페이지)이며 따라서 이것은 자본가들을 위한 치부수단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높이가 어떻든 간에 그 임금은 예컨대 8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이 80파운드 스텔링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한다면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에게 8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를 이 80파운드 스텔링과 교환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80파운드 스텔링이 되돌아와도 자본가계급은 치부하지 못한다.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에게 화폐로 10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고 이 100파운드 스텔링과 교환으로 그들에게 8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가치를 판다면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에게 화폐로는 그들의 정상적 임금보다 25% 더 많이 지불하고 그대신 상품으로는 25% 더 적게 제공한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계급 일반이 그들의 이윤을 끌어내는 밀천은 정상적 임금에서 떼어냄으로써 노동력의 댓가를 그 가치 이하로 즉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의 정상적 재생산에 드는 생활수단의 가치 이하로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 임금이 지불된다면—데스튜트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산업자본가를 위해서도 놓고먹는 자본가들을 위해서도 이윤의 어떠한 밀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데스튜트 씨는 자본가계급이 치부하는 전체 비밀을 결국 임금에서 떼어내는 데 귀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1)과 3)에서 말하는 잉여가치의 다른 밀천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화폐임금이 계급으로서의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소비품의 가치에 귀결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자본가들을 위한 어떠한 소비밀천도, 어떠한 축적밀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또 자본가계급이 존재하기 위한 밀천도 즉 어떠한 자본가계급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데스튜트에 의하면 오랜 문명을 가진 부유한 발전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들에서는 임금을 떼우는 밀천은…거의 불변의 크기이기”(같은 책, 202페이지) 때문이다.

임금을 떼어내는 경우에도 자본가들이 치부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노동자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지불하며 후에 이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와 교환으로 80파운드 스텔링을 상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서 실제로 8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25%만큼 더 큰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으로 유통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가 노동자의 생산물 가운데서 잉여가치 즉 생산물 가운데서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생산물 가운데서 임금의 형태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의 25%를 더 차지하기 때문이다. 데스튜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방식으로는 자본가계급은 절대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할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을 임금으로 지불하며 이 100파운드 스텔링과 교환으로 노동자에게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에서 8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를 되돌려준다. 그러나 그 다음 조작에서 그들은 다시 똑같은 짓을 하기 위하여 100파운드 스텔링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들은 8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선대하며 그 화폐와 교환으로 8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제공할 대신,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선대하며 그 화폐와 교환으로 8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제공하는 쓸데없는 장난을 할 따름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가변자본의 유통을 위하여 25%만큼 더 많은 화폐자본을 늘 쓸데없이 선대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아주 독특한 치부방법이다.

3) 끝으로 자본가계급은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 파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소득 가운데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임금노동자들에게 아직 내주지 않은 부분으로 산업자본가들에게 지불한다. 그리하여 이들에게(놀고먹는 자들에게) 산업자본가들이 해마다 지불하는 셋돈은 이러한 방식의 하나를 거쳐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이윤이 한 부분으로 자기들이 소비하고 자기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지불한다.

그러면 그들의 이윤이 200파운드 스텔링과 같다고 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을 쓴다고 하자. 그러나 나머지 절반인 100파운드 스텔링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높고먹는 자본가들 즉 지대를 받는 자들과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는 자본가들에게 속한다. 따라서 산업자본가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이 동료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화폐 가운데서 80파운드 스텔링은 이 동료들이 그들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쓰고 20파운드 스텔링은 부려먹을 중 등등을 사는 데 쓴다고 하자. 그리하여 이들은 그 80파운드 스텔링으로 소비품을 산업자본가들에게서 산다. 이에 따라 8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생산물이 산업자본가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지만 동시에 이 8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 즉 산업자본가들이 지대, 이자 등등의 이름으로 높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4/5가 산업자본가들에게로 되 돌아온다. 그리고 또 높고먹는 자본가들이 직접 고용하는 임금노동자들인 심부름계급은 그 주인들에게서 20파운드 스텔링을 받았다. 이들도 또한 이것으로 산업자본가들에게서 2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소비품을 산다. 그리하여 2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생산물이 산업자본들에게서 떨어져나가는 동안에 2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 즉 산업자본가들이 지대, 이자 등등으로 높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의 마지막 5분의 1이 산업자본가들에게로 되 돌아온다.

거래가 끝나자 산업자본가들한테 그들이 지대, 이자 등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높고먹는 자본가들에게 떼어준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되 돌아와 있는데 산업자본가들의 잉여생산물의 절반인 100파운드 스텔링어치는 이들의 손에서 높고먹는 자본가들의 소비밑천으로 넘어가 있다.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이 높고먹는 자본가들과 그들이 직접 고용하는 임금노동자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것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해결에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사태는 간단하다. 즉 높고먹는 자본가들의 지대, 이자 간단히 말하여 2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 가운데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산업자본가들이 이들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로 지불한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높고먹는 자본가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품을 산업자본가들에게서 산다. 따라서 그들은 산업자본가들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도로 지불하며 산업자본가들에게서 100파운드

스털링어치의 소비품을 끌어낸다.

그리하여 산업자본가들이 놓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는 산업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왔다. 이와같이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이 데스튜트가 몽상하듯이 산업자본가의 치부수단으로 되겠는가? 거래에 앞서 산업자본가들은 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액을 100파운드 스텔링은 화폐로, 100파운드 스텔링은 소비품으로 가지고 있었다. 거래가 끝난 다음 그들은 맨처음 가치액의 절반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시 10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 가지고 있지만 소비품으로 있는 100파운드 스텔링을 잃었는데 그것은 놓고먹는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100파운드 스텔링만큼 부유해진 것이 아니다. 100파운드 스텔링만큼 가난해졌다. 그들이 에둘아서 처음에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100파운드 스텔링을 100파운드 스텔링의 소비품의 댓가로 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대, 이자 등을 그들의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지불하였다면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는 유통에서 그들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태가 간단하게 되어 산업자본가들이 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잉여생산물 가운데서 절반은 자기들이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등가를 받지 않고 놓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주어버리게 될 것이다. 데스튜트로서도 이것은 치부수단이라고 선포할 유혹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산업자본가들이 놓고먹는 자본가들에게서 빌려 그 댓가로 이들에게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지대, 이자 등등의 형태로 지불해야 하는 토지와 자본은 물론, 산업자본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토지나 자본은 생산물 일반과 생산물 가운데서 잉여생산물을 이루는 또는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의 생산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이윤은 빌린 토지나 자본을 이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 이용의 댓가로 지불하는 가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가격은 오히려 이윤에서 떼어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자본가들은 그들이 잉여가치의 나머지 절반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유통현상들을 그러한 유통현상에 의하여 매개될 따름인 생산물의 분배와 혼동한다면 그러한 혼란에 빠

진다.

그렇지만 바로 그 테스트루트는 교활하기 그지없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놀고먹는 사람들의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이들의 자본을 돌려쓰는 사람들 즉 이들의 밑천으로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노동을 고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가들이 자기들의 이윤에서 이 놀고먹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셋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모든 부의 원천을 찾으려면 언제나 이 산업가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가들이야말로 놀고먹는 사람들이 고용하는 임금노동자들을 실제로 먹여살리는 사람들이다. (같은 책, 246페이지)

따라서 지대 등등의 지불은 이제 산업가들의 이윤에서 떼낸 것이다. 앞에서는 그것은 산업가들의 치부수단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테스트루트에게는 그래도 하나의 위안이 남아 있다. 이 훌륭한 산업가들은 자기들 호상간에 대하는 또 노동자들에게 대하는 방식 그대로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도 대한다. 산업자본가들은 이들에게 모든 상품을 예컨대 20%만큼 비싸게 판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놀고먹는 자본가들이 산업가들에게서 해마다 받는 100파운드 스텔링 밖에도 또 다른 화폐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첫째 경우에 산업가들은 그들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가령 120파운드 스텔링의 가격으로 판다. 따라서 산업가들의 상품이 팔리면 그들에게로 그들이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 스텔링이 되돌아올 뿐 아니라 그밖에 또 그들에게서는 실제로 새로운 가치를 이루는 20파운드 스텔링이 돌아온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1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상품을 거저 주어버린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불된 것의 한 부분인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는 그들 자신의 화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상품의 댓가가 그들 자신의 화폐로 그들에게 지불된 것이다. 즉 100파운드 스텔링의 손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밖에 가치를 넘는 가격의 초과분으로 20파운드 스텔링을 받았다. 즉 20파운드 스텔링의 이득이다. 이 이득을 100파운드 스텔링의 손실에서 빼면 결국 80파운드 스텔링의 손실로 되며 따라서 언제나 더하기가 아니라 덜기이다.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쓴 속임수는 산업가들의 손실을 덜어주었지만 그 때문에 산업가들의 부의 손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치부수단으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오래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놀고먹는 자본가들이 해마다 받는 것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 밖에 되지 않는데 해마다 12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산업가들이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 지불한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와 교환으로 8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산업가들은 전과 다름없이 80파운드 스텔링을 지대, 이자 등등의 형태로 거저 주어버리는 것으로 된다. 이 속임수에 의하면 산업가들은 놀고먹는 자본가들에게 바치는 공물을 덜었지만 공물은 전과 다름없이 존재하며 그리고 놀고먹는 자본가들은 가격이란 파는 사람의 선의에 달려 있다는 바로 그 이론에 따라 자기들의 토지와 자본에 대한 지대, 이자 등등으로 어제까지와 같이 100파운드 스텔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0파운드 스텔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빛나는 연구는 전적으로 심오한 사상가에게 알맞는 것인데 이 사상가는 한편으로는 A. 스미드에게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다.”(같은 책, 242페이지)

그리고 산업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적용하는 것은 이윤을 붙여 자본을 재생산하는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이다.”(같은 책, 246페이지)

라는 것을 베껴쓰면서 다른 편으로는 이 산업자본가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먹여살리며 그들만이 사회적 제(諸)부를 늘이며 모든 향락수단을 창조한다.”(같은 책, 242페이지)

라고 결론하며 또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먹여살린다고 결론하고 있으며 그것도 다음과 같은

훌륭한 근거로 하여 즉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화폐는 노동자들의 손에 남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의 댓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본가들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근거로 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만 한 손으로는 받고 다른 손으로는 되돌려줄 따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비는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같은 책, 235페이지)

사회적 재생산과 소비가 화폐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방식을 이렇게 남김없이 서술하고 나서 데스튀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의 영원한 운동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 운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mal connu—확실히 그러하다!) 있기는 하지만 정당하게도 유통이라고 불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사실상 하나의 순환이며 언제나 자체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출발점이란 생산이 완성되는 점이다.”(같은 책, 239~240페이지)

프랑스 과학원과 필라델피아 철학협회 회원이며 사실상 어느 정도 속류경제학자들 사이의 거물인 이 매우 탁월한 저술가 데스튀트는 끝으로 그가 사회적 과정의 진행을 서술하는 데서 보여준 경탄할 명료성과 그가 대상에 던진 광명에 탄복할 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겸손하게도 이 모든 광명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부의 소비를 살펴보는 이 방식이 부의 생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우리가 말한 모든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와 그리고 동시에 그 방식이 사회를 전체 운동에 얼마나 밝은 광명을 비추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라고 본다. 이러한 일치와 이러한 광명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찾아낸 진리에서 온다. 그것은 우리들한테 거울의 작용을 상기시킨다. 거울 앞에 적당한 위치에 서면 모든 것이 똑똑하게 균형이 잡혀 보이지만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서면 부엌고 이그러지게 나타난다.”(같은 책, 242, 243페이지)

이것이야말로 부르쵸아적 암둔성의 극치다 !

제21장⁵⁷⁾ 축적과 확대재생산

축적이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제1부에서 보여주었다. 상품자본이 화폐화됨으로써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잉여생산물도 화폐화된다. 이렇게 화폐로 전화된 이 잉여가치를 자본가는 자기 생산자본의 추가적 현물요소들로 도로 전화한다. 그 다음 생산의 순환에서는 늘어난 자본이 늘어난 생산물을 제공한다. 그런데 개별적 자본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한 해의 총생산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재생산을 살펴볼 때 본 바와 같이 개별적 자본의 재생산에서 소비된 그 고정적 구성부분이 퇴장되는 화폐로 차례차례 가라앉는 것이 한 해의 사회적 재생산에서도 표현되는 것과 똑같다.

개별적 자본이 $400c+100v$ 이고 한 해의 잉여가치가 100이라면 상품생산물은 $400c+100v+100m$ 이다. 이 600은 화폐로 전화된다. 이 화폐 가운데서 $400c$ 는 다시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전화되고 $100v$ 는 노동력으로 전화되며, 그리고 잉여가치가 모두 축적되는 경우에는 그밖에 $100m$ 은 생산자본의 현물요소들과 교환됨으로써 추가적 불변자본으로 전화된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즉 1) 주어진 기술적 조건에서는 기능을 높고 있는 불변자본을 늘이기 위해서건, 새로운 산업기업을 창설하기 위해서건 이 금액이면 넉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즉 실제적 축적, 생산의 확대가 일어나기 전에 훨씬 오랜 기간 잉여가치가 화폐로 전화되고 이 화폐가 퇴장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사실상 이미 전부터 확대된 규모의 생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폐(화폐로 축적된 잉여가치)가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될 수 있게 되자면 이 요소들이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이 요소들을 완성된 상품으로 사지 않고

57) 여기서부터 이 책 마지막까지는 여덟째 원고에서.

주문을 받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요소들은 그것들이 존재하게 된 다음에야, 그리고 어쨌든 그것들과 관련하여 실제로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 이제까지의 정상적 생산의 확장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댓가가 지불된다. 그것들은 잠재적으로 즉 그것들의 요소들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생산되자면 주문 즉 상품의 존재에 앞서며 상품의 판매를 앞당기는 상품의 구매라는 충동이 있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한편에 있는 화폐가 다른 편에서의 확대재생산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화폐없이도 확대재생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폐 그 자체는 실제적 재생산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A라는 자본가가 한 해 동안이나 몇 해 동안에 자기가 차례차례로 생산한 상품생산물을 판다면 이에 따라 그는 상품생산물 가운데서 잉여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분인 잉여생산물도 화폐로 집화시키며 따라서 그가 상품형태로 생산한 잉여가치 자체도 차례차례 화폐로 전화하고 이 화폐를 점차 쌓아가며 그렇게 되어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이 이루어진다. 잠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화폐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가 실제로 축적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 재생산의 요소가 아닌 단순한 퇴장화폐일 따름이다. 이 경우에 그의 활동은 우선 유통하고 있는 화폐를 유통에서 차례차례 끌어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그가 그와 같이 붙잡아두는 이 화폐 그 자체가 유통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의 퇴장화폐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 A의 이 퇴장화폐는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이지만 그것이 추가적인 사회적 재부가 아닌 것은 그 퇴장화폐가 소비품에 지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유통에서 끌려나왔으며 따라서 이전에는 유통 중에 있었던 화폐는 전에 이미 퇴장화폐의 구성부분으로서 쌓여 있거나 임금의 화폐형태일 수도 있었으며 생산수단이나 그밖의 상품들을 화폐화하고 어떤 자본가의 불변자본부분이나 소득을 유통시켰을 수도 있다. 그 화폐는 새로운 재부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상품유통의 관점에서 볼 때 화폐가 하루에 열 번 회전하여 각각 다른 열 개의 상품가치를 실현하였다고 하여 그 화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그 열 곱 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상품은 화폐없이도 존재하며 화폐는 한 번 회전하든 열 번

회전하든 원래 있는 그대로이다(또는 마멸로 하여 적어지기도 한다). 다만 금생산에서만은 잉여가치를 지닌 잉여생산물이 금생산물에 들어 있는 한에서 새로운 재부(잠재적 화폐)가 창조되어 있으며 새로운 금생산물 전체가 유통에 들어서는 한에서만 그것은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의 화폐재료를 늘인다.

화폐형태로 축적된 잉여가치는 비록 추가적인 새로운 사회적 재부를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쌓아두는 기능으로 하여 새로운 잠재적 화폐자본을 표시한다(우리는 새로운 화폐자본이 잉여가치를 전차 화폐화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거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후에 보게 될 것이다).

화폐는 상품을 팔기만 하고 뒤따라 사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유통에서 끌려나와 퇴장화폐로서 쌓여진다. 이러한 일이 전반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사는 사람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는—그런데 이 과정은 매개 자본이 축적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누구나 퇴장하기 위하여 팔려고 하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해 재생산의 여러 부분들 사이의 유통과정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유통과정은 몇 개의 예외는 있지만 언제나 서로 반대되는 운동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는 금(또는 은)생산자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판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경우에는 한 해의 총사회적 잉여생산물(총잉여가치를 지니고 있는)은 그에게로 넘어갈 것이며 다른 모든 자본가들은 원래 화폐로 존재하는 그의 잉여생산물을 즉 그의 잉여가치의 자연적 화폐화를 자기들 사이에서 비례에 따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금생산자의 생산물 가운데서 기능을 놓고 있는 그의 자본을 보상하여야 할 부분은 이미 얼마에 있으며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금으로 생산된 금생산자의 잉여가치는 나머지 모든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한 해 잉여생산물을 화폐화하기 위한 재료를 끌어내는 유일한 밑천일 것이다. 따라서 금생산자의 잉여가치는 그 가치의 크기로 보아 맨먼저 퇴장화폐라는 번데기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한 해의 총사회적 잉여가치와 같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은 엉터리없고 무의한 것으로서 전반적이며 동

시적인 화폐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밖에는 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재생산 자체는 금생산자측의 재생산을 내놓고는 한걸음도 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점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I 부류(생산수단의 생산)에서의 축적과 II 부류(소비품의 생산)에서의 축적을 구별하여야 한다. I 부류로부터 시작하자.

제1절 I 부류에서의 축적

1) 화폐퇴장

I 부류를 이루는 수많은 산업부문들에서의 투자나 이 산업부문의 매개 부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개별적 투자나 그 규모와 기술적 조건들, 시장 관계 등등을 아주 제쳐놓고 보면 그 나이 즉 그것들이 이미 기능을 논 기간에 따라 잉여가치가 잠재적 화폐자본으로 차례차례 전화되는 과정의 여러 단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화폐자본이 이제 생산확대의 두 형태 가운데서 기능하는 자본을 늘이기 위하여 쓰이건 새로운 산업기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쓰이건 이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일부 자본가들은 해당한 크기에까지 자라난 자기들의 잠재적 화폐자본을 끊임없이 생산자본으로 전화한다. 즉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의하여 축적된 화폐로 불변자본의 추가적 요소들인 생산수단을 산다. 그런데 다른 일부 자본가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화폐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자본가들은 한 자본가들은 구매자로서, 다른 자본가들은 판매자로서 서로 맞서며 이 두 부류의 자본가들은 각각 전적으로 어느 한편의 역할만을 한다.

예컨대 자본가 A가 $600 (= 400c + 100v + 100m)$ 을 자본가 B(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구매자도 대표할 수 있다)에게 판다고 하자. 그는 600여치의 상품을 팔아 600을 화폐로 얻었는데 그 가운데서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100을 유통에서 끌어내어 그것을 화폐로서 축적한다. 그러나 이 100의 화폐는 100의 가치를 지녔던 잉여생산물의 화폐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퇴장은 결코 생산이 아니며 따라서 처음부터 생산의 증가분도 아니

다. 이 경우에 자본가의 행동은 다만 100의 잉여생산물을 팔아얻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내어 그대로 가지고 억눌러 두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자본가 A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면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이러한 종류의 화폐퇴장에 모두 다 똑같이 열성을 내고 있는 자본가들인 A', A'', A'''도 한다. 화폐가 유통에서 끌려나와 수많은 개별적 퇴장화폐로 또는 잠재적 화폐자본으로 쌓이는 이 수많은 지점들은 유통에 그만큼 많은 지장을 주는 것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지점들은 화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화폐에서 그 유통능력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하여 볼 것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기초하기 훨씬 전에 단순상품유통의 경우에도 화폐퇴장은 진행된다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화폐량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부분보다 많다. 비록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 불었다 줄었다 하지만 말이다. 이 똑같은 퇴장화폐와 똑같은 화폐퇴장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내재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보게 된다.

신용제도 안에서 이 모든 잠재적 자본들이 은행 등등의 손에 집중됨으로써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본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본으로, 화폐자본으로 될 때, 그것도 더는 피동적인 그리고 미래의 음악과 같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고리대적인(여기에서 고리대란 붙어난다는 뜻이다) 자본으로 될 때 그 만족은 알만하다.

그러나 자본가 A는 자기의 잉여생산물과 관련하여 파는 사람으로서만 나타나고 그후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만 이 퇴장화폐를 이룬다. 따라서 화폐화해야 할 그의 잉여가치를 지닌 잉여생산물을 그가 연달아 생산하는 것이 그의 퇴장화폐를 형성하는 전제이다. I부류 안에서만의 유통을 살펴보고 있는 이 경우에 잉여생산물의 현물형태는 그 잉여생산물을 한 부분으로 하는 총생산물의 현물형태와 마찬가지로 I부류 불변자본의 한 요소의 현물형태이다. 즉 잉여생산물은 생산수단의 생산수단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구매자들인 B, B', B''의 손에서 이 잉여생산물이 어떻게 되는지 즉 그것이 무슨 기능을 놀게 되는가 하는 것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즉 자본가 A는 자기의 잉여가치만큼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내어

그것을 퇴장화폐로 축적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상품을 유통에 던져넣고 그 대신에 다른 상품을 유통에서 끌어내지 않는데 그 때문에 자본가들인 B, B', B''편에서는 화폐를 유통에 던져넣고 그 대신에 상품만을 유통에서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이 상품은 그 현물형태로 보나 그 사명으로 보나 고정적 요소나 유동적 요소로서 자본가 B, B' 등등의 불변자본으로 들어간다. 이에 대하여는 그 잉여생산물의 구매자들인 자본가들 B, B' 등등을 문제로 하게 될 때에 더 자세히 말하려 한다.

말이 난 김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 둔다. 전에 단순재 생산을 살펴본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한 해 생산물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의 교환 즉 그 구성부분들의 유통(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재생산을, 그것도 불변자본, 가변자본, 고정자본, 유동자본, 화폐자본, 상품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의 복구를 포괄하지 않으면 안된다)은 뒤따르는 판매에 의하여 보충되는 단순한 구매나 또는 뒤따르는 구매에 의하여 보충되는 단순한 판매를 결코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정치경제학 특히 중농주의자들과 아담 스미드 이래의 자유무역학파가 가정하듯이 사실상 상품과 상품의 교환만이 일어난다는 것을 결코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정자본은 그에 대한 지출이 한 번 있는 다음에는 그것이 기능을 노는 전기간에 갱신되지 않고 종래의 형태로 계속 작용하는데 그 가치는 점차 화폐로 가라앉는다. 그런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본 IIc의 고정적 구성부분(IIc의 총자본가치는 $I(v+m)$ 의 가치를 지닌 요소와 교환된다)의 주기적 갱신은 한편으로는 IIc의 자본가치 가운데서 고정자본을 표시하며 화폐형태에서 현물형태로 도로 전화되는 부분의 단순한 구매—이 구매에는 I_m 의 단순한 판매가 대응한다—를 전제로 하며 다른 편으로는 IIc편에서의 단순한 판매, 즉 고정자본의 가치(고정자본의 마멸분의 가치) 가운데서 화폐로 가라앉는 부분의 판매—이 판매에는 I_m 의 단순한 구매가 대응한다—를 전제한다. 이 경우에 교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IIc편의 단순한 구매는 그 가치량으로 보아 IIc편의 단순한 판매와 같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IIc의 첫째 부문에 대한 I_m 의 단순한 판매는 IIc의 둘째 부문의 단순한 구매와 같다는 것(440페이지)*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재생산은 혼란된다. 한편에서의 단순한 구매는 다른 편에서의 단순한 판매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자본가들인 A, A', A''에게 있어서 퇴장화폐를 이루는 I_m 의 부분의 단순한 판매는 자기들의 퇴장화폐를 추가적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하는 자본가 B, B', B''편에서의 I_m 부분의 단순한 구매와 균형이 잡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후에 같은 가치액의 판매자로 나타남으로써 그리고 반대로 판매자가 후에 같은 가치액의 구매자로 나타남으로써 균형이 잡히는 한에서 화폐는 사면서 그것을 선대하였고 다시 사기 전에 먼저 판 편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상품교환 자체, 한 해 생산물의 여러 부분들의 교환에서의 실제적 균형은 서로 교환되는 상품들의 가치액이 같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일방적인 교환이 진행되는, 즉 한편에서는 단순한 구매가 많고 다른 편에서는 단순한 판매가 많은 한에서는—그런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한 해 생산물의 정상적 교환은 이 일방적인 형태변화를 조건으로 한다—균형은 일방적인 구매의 가치액과 일방적인 판매의 가치액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가정 밑에서만 잡히게 된다.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형태라는 사실에는 벌써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뿐 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 노는 역할도 들어 있으며 또 그 사실은 이 생산방식에 독특한, 정상적 교환의 일정한 조건을, 따라서 단순한 규모이전 확대된 규모이전 재생산의 정상적 진행의 일정한 조건을 낳지만 이 조건은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정상적 재생산의 진행조건으로, 공황의 가능성으로 전변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발생적 형태에서는 균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연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I_v 의 가치액과 그에 상응하는 II_c 의 가치액의 교환에서는 바로 II_c 에 있어서는 결국 II 부류의 상품이 같은 가치액의 I 부류 상품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II 부류의 전체 자본가는 그들 자신의 상품을 판 것을 같은 가치액의 I 부류 전체 자본가의 상품을 사는 것으로써 후에 보충한다. 이러한 보상은 진행된다. 그러나 I 부류와 II 부류 자본가들의 상품의 이 전화에서는 두 부류 자본가들

* 이 책 511~512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자신 사이에서 교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IIc의 소유자들인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I부류의 노동자들에게 팔며 이 I부류의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매자로서 그들에게 맞서며 그들은 일방적으로 상품의 판매자로서 I부류 노동자들에게 맞선다. 이렇게 되어 얻은 화폐로 IIc의 소유자들은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매자로서 후자는 전자에게 Iv의 가치액만큼 일방적으로 상품의 판매자로서 맞선다. 이렇게 상품을 파는 것으로써만 I부류는 마침내 자체의 가변자본을 다시 화폐자본의 형태로 재생산한다. I부류의 자본이 II부류의 자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Iv의 가치액만큼 상품의 판매자로서 맞선다면 I부류의 자본은 I부류의 노동자들에게는 이들의 상품 즉 이들의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맞선다. 그리고 I부류의 노동자들이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매자로서(즉 생활수단의 구매자로서) 맞선다면 그들은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상품의 판매자로서, 즉 자기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맞선다.

I부류의 노동자들 측에서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는 것, I부류 상품자본의 한 부분이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 도로 전화되는 것, II부류 상품자본의 한 부분이 불변자본 IIc의 현물형태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 재생산의 이 모든 필연적 전제들은 서로 제약되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에 의하여 매개되는데 이 과정에는 서로 독립하여 진행되지만 서로 엉켜 있는 세 개의 유통과정들이 들어 있다. 그 과정 자체의 복잡성은 비정상적 진행의 그만큼 많은 원인으로 된다.

2) 추가적 불변자본

잉여가치를 지닌 잉여생산물은 바로 그것을 차지하는 자들인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화폐나 상품을 어떠한 형태로도 선대할 필요가 없다. 선대(avance)란 이미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실현된 가치의 일반적 형태이다. 따라서 I부류의 자본가들이 선대하는 것은 그들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자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노동으로 그들의 불변자본을 유지하여 줄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는 그들을 위하여 가변자본가치를 새로 생산된 해당한 가치부분에 의하여

상품형태로 보상하여 줄 뿐만이 아니다. 그밖에도 노동자는 자기의 잉여노동으로 그들을 위하여 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잉여가치를 제공한다. 그들은 이 잉여가치를 연달아 파는 것으로써 퇴장화폐를,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잉여생산물은 처음부터 생산수단의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잉여생산물은 자본가들인 B, B', B'' (I 부류)의 손에서 비로소 추가적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늘지만 그것은 팔리기 전에 벌써 화폐를 퇴장하는 자들인 A, A', A'' (I 부류)의 손에서 잠재적으로 추가적 불변자본으로 된다. 우리가 다만 I 부류의 재생산의 가치량을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단순재생산의 테두리 안에 있다. 왜냐하면 이 잠재적인 추가적 불변자본(잉여생산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자본도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단순재생산의 기초 위에서 지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잉여노동도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차이는 다만 적용된 잉여노동의 형태에 잉여노동이 어떻게 특수하게 쓰이게 되는가 하는 구체적 성질에 있다. 잉여노동은 II_c 를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I_c 를 위한 생산수단에, 즉 소비품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위한 생산수단에 지출되어 있다.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는 I 부류의 잉여가치가 모두 소득으로서 지출된다고, 따라서 몽땅 II 부류의 상품에 지출된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그 잉여가치는 불변자본 II_c 를 그 현물형태로 다시 보상해야 할 그러한 생산수단으로만 이루어졌었다. 그리하여 단순재생산에서 확대재생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I 부류에서의 생산은 II 부류를 위한 불변자본의 요소들은 비교적 적게, 그러나 I 부류를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행은 언제나 곤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I 부류의 일부 생산물들이 두 부류에서 다 생산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로 하여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치량으로만 보면 단순재생산의 내부에서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기초는 다만 생산수단을 생산하는데, 즉 I 부류의 잠재적 추가자본을 만들어내는 데 직접 지출되는 I 부류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으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가들인 A, A', A'' (I 부류)편에서 자본주의적 화폐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기들의 잉여생산물을 연달아 파는 것으로써 이룩한 잠재적인 추가적 화폐자본은 추가적으로 생산된 I 부류 생산수단의 단순한 화폐형태

이다.

따라서 잠재적 추가자본의 생산은 우리의 경우에는(왜냐하면 후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잠재적 추가자본은 전혀 달리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 자체의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일정한 형태의 생산, 생산자본의 요소의 생산이다.

따라서 유통면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이 큰 규모로 생산되는 것은 잠재적인 추가적 생산자본의 다방면적 생산의 결과와 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잠재적인 추가적 생산자본의 성립 자체는 산업자본가들의 어떠한 추가적 화폐지출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인 A, A', A''(I 부류) 등의 편에서 이 잠재적인 추가적 생산자본이 잠재적 화폐자본(퇴장화폐)으로 연달아 전화되는 것은 그들의 잉여생산물을 연달아 파는 것을, 따라서 보충하는 구매없이 일방적인 상품 판매를 되풀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화는 화폐를 유통에서 되풀이하여 끌어내며 그에 따라 화폐를 퇴장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 화폐퇴장은 금생산자가 구매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귀금속 형태의 추가적 재부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유통한 화폐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놀았지만 이제는 화폐가 퇴장화폐로서 형성되는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으로서 기능을 논다. 따라서 추가적 화폐자본의 형성과 한 나라에 있는 귀금속의 양은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 다음과 같이 된다. 한 나라에서 이미 기능을 놓고 있는 생산자본(이에 합쳐진 노동력, 잉여생산물을 낳은 어머니를 포함한)이 크면 클수록 노동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즉 생산수단의 생산을 빨리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따라서 또 잉여생산물의 양이—그 가치로 보나 그 가치가 표시되는 사용가치로 보나—크면 클수록

1) 자본가들인 A, A', A'' 등등의 손에서 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있는 잠재적인 추가적 생산자본도 더 커지며

2) 자본가들인 A, A', A''의 손에 있는, 화폐로 전화된 이 잉여생산물의 양, 따라서 잠재적인 추가적 화폐자본의 양도 더 커진다. 그리하여 예컨대 플라톤이 보통의 뜻에서의 과잉생산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자본 즉 화폐자본의 과잉생산은 인정한다면 이것

은 다시 한번 가장 우수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까지도 자기네 제도의 기구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한다.

자본가들인 A, A', A'' (I 부류)가 직접 생산하고 차지하는 잉여생산물이 자본축적 즉 확대재생산의 실재적-기초라면—비록 그것이 자본가들인 B, B', B'' 등등 (I 부류)의 손에서 비로소 그러한 자격으로 적극적인 기능을 할 것이지만—그와 반대로 그 잉여생산물은 번데기가 된 화폐로서는, 퇴장화폐로서는, 그리고 다만 점차 형성되는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비생산적인 것이며 이 형태로 생산과정과 나란히 나가지만 그러나 생산과정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죽은 짐 (dead weight)이다. 퇴장화폐로,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쌓이는 이 잉여가치를 이윤으로서도 소득으로서도 쓸 수 있게 하려는 욕망은 신용제도와 유가증권에서 성취된다. 그리하여 화폐자본은 다른 형태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진행과 강력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잠재적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생산물은 그 양으로 보아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그 기능에 의하여 이 생산물이 나온다—의 총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클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재생산되는 잠재적 화폐자본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화폐자본이 가지치는 것도 더 쉬우며 그리하여 그 화폐자본은 다른 기업에 더 빨리 투하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기업이 똑같은 자본가의 손에 있건 다른 사람 (예컨대 유산분배의 경우에 가족성원)의 손에 있건 아무래도 좋다. 여기에서 화폐자본이 가지친다는 것은 화폐자본이 원래의 자본에서 완전히 떨어져나와 새로운 화폐자본으로서 새로운 자립적 기업에 투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들인 자본가들 A, A', A'' (I 부류) 등등은 이 잉여생산물을 생산과정의 직접적 결과로 얻었으며 이 생산과정은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도 필요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의 선대 밖에는 아무런 유통행위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한 이렇게 하여 그들은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의 실제적 기초를 제공하고 사실상 잠재적 추가자본을 만들어내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들 B, B', B'' (I 부류) 등등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1) 이들의 손에서 비로소 A, A', A'' 등등의 잉여생산물은 실제로 추가적 불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늘 것이다 (생산자본의 다른 요소인 추가적 노동력, 따라서 추가적 가변자본은 잠시 제쳐놓고 본다). 2) 그 잉여생산물이 이들의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통행위가 필요하며 이들

은 그 잉여생산물을 사야 한다.

1)에 대하여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자본가들 A, A', A"(I부류)가 생산하는 잉여생산물(잠재적인 추가적 불변자본)의 큰 부분은 물론 이 해에 생산되지만 그러나 다음해나 더 그후에 가서야 비로소 자본가들 B, B', B"(I부류)의 손에서 실제로 산업자본으로서 기능을 놀 수 있다는 것이다. 2)에 대하여는 이 유통과정에 드는 화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본가들인 B, B', B"(I부류) 등등이 생산하는 생산물들 자체가 다시 현물로 똑같은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그만큼 이들 자신의 잉여생산물의 한 부분이 직접(유통의 매개없이) 이들의 생산자본으로 넘어가며 불변자본의 추가적 요소로서 그 생산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그만큼 자본가들 A, A'(I부류) 등의 잉여생산물을 화폐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제쳐놓고 그 화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제각기 잉여생산물을 파는 것으로써 자본가 A, A' 등등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퇴장화폐를 형성하였고 이제는 퇴장화폐로서 쌓였고 다만 잠세적인 이들의 화폐자본이 추가적 화폐자본으로서 실지로 기능을 놀아야 할 목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는 아직 그 주위를 헤매고 있을 따름이다. B집단의 자본가들(I부류)이 전에 유통에서 끌어내어 쌓아둔 화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재생산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I부류와 II부류 자본가들의 손에는 그들의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화폐가 있어야 한다. 단순재생산에서는 소득으로서 소비품의 지출에만 쓰인 화폐는 자본가들이 각자의 상품을 교환하기 위하여 화폐를 선대한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로 되돌아갔다. 이 경우에도 똑같은 화폐가 다시 나타나지만 그 기능은 달라진다. A집단과 B집단의 자본가들(I부류)은 잉여생산물을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으로 전화하기 위하여 번갈아가면서 화폐를 제공하며 새로 형성된 화폐자본을 구매수단으로 번갈아가면서 유통에 도로 던져넣는다.

여기에서 유일한 전제는 국내에 있는 화폐량이(회전속도 등등은 같다고 보고) 능동적 유통을 위해서도 예비퇴장화폐를 위하여도 넉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단순상품유통의 경우

에도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는 똑같은 전제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퇴장화폐의 기능이 다를 뿐이다. 또한 이미 있는 화폐량이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1)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모든 생산물(새로 생산되는 귀금속과 생산자들 자신이 소비하는 얼마 안되는 생산물은 내놓고)이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따라서 화폐라는 번데기로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2)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상품자본의 양과 그 가치량이 절대적으로 더 클 뿐 아니라 비할 수 없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며 3) 더욱더 늘어나는 가변자본이 늘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며 4) 생산이 확대되는 데 따라 새로운 화폐자본도 보조를 맞추어 형성되며 따라서 또 그 퇴장화폐형태의 재료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첫 단계 즉 신용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금속의 유통이 주로 동반되고 있는 단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면 신용제도가 아주 발전된 단계에서도 금속의 유통이 의연 그 기초로 되고 있는 한에서는 들어맞는다. 이 경우에 한편으로는 귀금속의 추가적 생산은 그것이 번갈아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한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뿐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도 상품가격에 혼란을 일으키는 영향을 준다. 한편 또 전체 신용기구가 갖가지 조작들과 방법들, 기술적 시설들에 의하여 실제적 금속유통을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줄어드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체 기구의 기교도 늘어나고 그 기구의 정상적 진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기회도 늘어난다.

서로 다른 자본가들인 B, B', B'' 등등(I부류)의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이 실제적인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하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자기들의 잉여생산물의 한 부분들)을 서로 사고 서로 팔아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잉여생산물의 유통에 선대한 화폐는 유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B집단의 매개 자본가가 해당한 자기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이 화폐를 선대한 것과 똑같은 비율로 그 자본가들에게 되돌아온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한다면 이 경우에는 호상 사고파는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그 차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여기에서처럼 무엇보다 먼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시초적인 형태의 금속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야 화폐가 흘러가고 되돌아오는 것, 차액의 결제, 간단히 말하여 신용제도에서는 의식적으로 규제된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모든 계기들이 신용

제도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표시되고 모든 사태가 후에 반영된 형태로가 아니라 원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추가적 가변자본

이제까지는 추가적 불변자본만을 취급하였으므로 이제는 추가적 가변자본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제1부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언제나 예비가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취업노동자수나 노동력의 양을 늘이지 않고도 더 많은 노동을 가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더 언급할 필요는 당분간 없으며 오히려 새로 형성된 화폐자본 가운데서 가변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 부분은 그 가변자본이 전화되어야 할 노동력을 언제나 찾아낸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제1부에서 역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자본은 축적없이도 어느 한계 안에서는 자체의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특수한 뜻에서 말하는 자본축적이며 그리하여 생산의 확대는 잉여가치가 추가자본으로 전화되는 것, 따라서 또 생산의 기초인 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금생산자는 금의 형태로 있는 자기의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축적할 수 있다. 그 잠재적 화폐자본이 필요한 크기에 이르자 그는 그것을 직접 새로운 가변자본으로 전화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미리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팔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 잠재적 화폐자본을 불변자본의 요소들로 전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는 자기의 불변자본의 이 물적 요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이제까지의 서술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매개 생산자가 예비를 만들어 놓고 즉 상품을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완성된 상품을 시장에 내가진 그가 주문을 받고 작업을 하건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에 다 실제적인 생산의 확대 즉 잉여생산물이 전제로 되어 있다. 즉 먼저 든 경우에는 잉여생산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뒤에 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제2절 II부류에서의 축적

우리는 이제까지 자본가들인 A, A', A''(I부류)가 자기들의 잉여생산물을 똑같은 I부류에 속하는 자본가들인 B, B', B'' 등등에게 판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자본가 A(I부류)가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II부류의 자본가 B에게 팔아 화폐화한다고 하자. 자본가 A(I부류)가 자본가 B(II부류)에게 생산수단을 팔고 뒤따라 소비품을 사지 말아야, 따라서 자기편에게 일방적으로 팔기만 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IIc 는 Iv 뿐 아니라 적어도 Im 의 한 부분이 소비품의 형태로 있는 IIc 의 한 부분과 교환되어야만 상품자본의 형태에서 생산적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가 A는 이 교환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자본가 A가 오히려 자기의 Im 을 팔아 II부류에서 얻은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내고 그 화폐를 소비품 IIc 를 사는 데 쓰지 말아야 자기의 Im 을 화폐화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자본가 A(I부류)편에서는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이 형성된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자본가 B(II부류)의 불변자본 가운데서 가치량으로 보아 같은 부분이 생산적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전화될 수 없게 되어 상품자본의 형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 B(II부류)의 상품의 한 부분은 팔리지 않게 되며 게다가 얼핏 보아서도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자본가 B(II부류)는 그의 불변자본을 모두 생산적 형태로 도로 전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과잉생산이 일어나는데 이 과잉생산은 규모가 의연 같은 재생산의 경우에도 이 부분의 재생산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가 A(I부류)편에서의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은 다른아닌 화폐의 형태를 띤 잉여생산물(잉여가치)이다. 그러나 잉여생산물(잉여가치)을 그 자체로서 보면 이 경우에는 단순재생산의 현상이지 결코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의 현상은 아니다. IIc 의 재생산이 의연 같은 규모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I(v+m)$ 의 상품은 결국에는 IIc 와 교환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은 어쨌든 m 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자본가 A(I부류)는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자본가 B(II부류)에게 팔아 B(II부류)에게 불변자본의 해당한 가치부분을 현물형태로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화

폐를 유통에서 끌어내고 뒤따른 구매에 의하여 자기의 판매를 보충하지 않음으로써 자본가 B(Ⅱ부류)의 상품 가운데서 가치로 보아 같은 한 부분을 팔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I부류와 Ⅱ부류 자본가들을 다같이 포괄하는 사회의 총재생산을 놓고 보면 자본가 A(I부류)의 잉여생산물이 잠재적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은 자본가 B(Ⅱ부류)의, 가치량으로 보아 같은 상품자본이 생산적 (불변)자본으로 도로 전화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며 따라서 확대된 규모의 생산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재생산의 방해, 따라서 단순재생산에서 부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자본가 A(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형성과 판매 그 자체는 단순재생산의 정상적 현상들이므로 이 경우에 벌써 단순재생산의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서로 제약하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 즉 I부류에서의 잠재적인 추가적 화폐자본의 형성(따라서 Ⅱ부류에서 보면 소비부족), Ⅱ부류에서 생산자본으로 도로 전화될 수 없는 상품예비의 체화(따라서 Ⅱ부류에서의 상대적 과잉생산), I부류에서의 남아 돌아가는 화폐자본과 Ⅱ부류의 재생산에서의 부족을 보게 된다.

이 점에 더 오래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것만을 지적하여 둔다. 단순재생산의 서술에서 전제로 한 것은 I부류와 Ⅱ부류의 총잉여가치가 소득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잉여가치의 한 부분은 소득으로서 지출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자본으로 전화된다. 실제적 축적은 이 전제에서만 진행된다. 축적이 소비를 희생으로 하여 진행된다는 주장은—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면—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과 모순되는 환상이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추동적 동기가 소비이고 잉여가치를 얻고 그것을 자본화 즉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Ⅱ부류에서의 축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Ⅱc와 관련하여 즉 Ⅱ부류 상품자본의 한 구성부분에서 Ⅱ부류 불변자본의 현물형태로 Ⅱc가 도로 전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생기는 첫째 곤란은 단순재생산에 해당된다. 이전의 도식을 들어보자.

(1, 000v+1, 000m)은

2,000c와 교환된다.

그런데 예컨대 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절반 즉 $1,000/2m$ 또는 $500Im$ 은 불변자본으로서 다시 I부류에 합쳐진다면 그 잉여생산물 가운데서 I부류에 그대로 남는 이 부분은 IIc의 어느 한 부분도 보상할 수 없다. Im의 이 부분은 소비품으로 전화되지 않고(여기에서 즉 I부류와 II부류 사이의 유통의 이 부분에서는—I부류 노동자들에 의하여 매개되는 $1,000Iv$ 에 의한 $1,000IIc$ 의 보상과 달리—실제로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며 따라서 상품들이 두 편에서 자리를 바꾼다) I부류 자체에서 추가적 생산수단으로서 쓰여야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이 기능을 I부류와 II부류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자본가는 자기 잉여생산물의 가치를 소비품에 지출하는 동시에 그 잉여생산물 자체를 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없다. 즉 자기의 생산자본에 합칠 수 없다. 따라서 $2,000I(v+m)$ 이 아니라 $1,500$ 즉 $(1,000v+500m)$ 만이 $2,000IIc$ 로 전화될 수 있다. 따라서 $500IIc$ 는 상품형태에서 II부류의 생산(불변)자본으로 도로 전화될 수 없다. 그리하여 II부류에서는 과잉생산이 일어날 것이며 그 과잉생산의 규모는 I부류에서 진행된 생산확대의 규모에 정확히 상응한다. II부류의 과잉생산은 아마 I부류에 크게 반작용하여 I부류의 노동자들이 II부류의 소비품에 지출한 $1,000$ 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 $1,000$ 은 가변적 화폐자본의 형태로 I부류 자본가들의 손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I부류의 자본가들에게는 종전과 같은 규모의 재생산까지도—그것을 확대하려는 단순한 시도에 의해서—곤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I부류에서는 사실상 다만 단순재생산이 진행되었을 따름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요소들이 앞으로 예컨대 다음해에 확대하기 위하여 다르게 편성되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본가들의 창고에 쌓여 있고 직접 생산자본으로 전화할 수 없는 $500IIc$ 는 결코 과잉생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여온 재생산의 필요한 요소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예비는 많은 지점들에 쌓이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화폐는 일부는 I부류 안에서 새로운 화폐자본이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일부는 점차

소비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를 당분간 화폐형태로 그대로 두기 위하여 유통에서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도식의 표시에서는 모든 화폐와 모든 상품이 처음부터 오직 I부류와 II부류 자본가들의 손에만 있고 여기에는 상인도 화폐거래자도, 은행업자도, 그리고 소비만 하고 직접 상품생산에는 참가하지 않는 계급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생산의 기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제각기 상품예비를 끊임없이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II부류 자본가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500Ⅱc는 소비품인 상품예비를 표시하며 이 상품예비는 재생산을 전제로 하는 소비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한 해에서 다른 해로 넘어가는 것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 아직도 판매자이면서도 생산자인 사람의 손에 있는 소비밀천은 올해에 영으로까지 떨어져 다음해에 영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품예비는 비록 그 크기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II부류의 우리의 자본가적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생산자본의 한 부분이 잠시 상품형태로 그대로 있지만 자기들의 생산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화폐예비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에 의하면 그들은 상업업무와 생산업무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재생산과정의 개별적 기능이 여러 부류의 자본가들의 기능으로서 갈라져 있는 경우 상인들의 손에 있게 될 추가적 화폐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여야 한다. 1) 그러한 예비의 형성과 그 필요성은 I부류나 II부류나 모든 자본가들에게 해당된다. 단순한 상품판매자들로써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을 판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II부류의 상품예비는 I부류의 상품예비가 이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에서의 이 예비를 무시한다면 다른 편에서의 예비도 무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예비를 쌍방에서 다 고려한다면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2) II부류에서 다음해를 위한 상품예비를 가지고 올해를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II부류에서 지난해에서 물려받은 상품예비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게 하여 한 해의 재생산을 분석하는 경우에 우리는 두 경우에 다 상품예비를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의 총생산을

따라서 올해 생산물 가운데서 상품예비로서 다음해에 넘겨주는 부분도 올해의 것으로 치고 한편 이 상품예비에서 지난 해에서 넘겨받은 상품예비를 뺀다면 사실상 분석 대상으로서 평균년도의 총생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3) 단순재생산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곤란에 부딪치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여 준다. 즉 오직 I 부류의 생산물 요소들의 다른 편성(재생산과 관련한)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완전히 특수한 현상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 다른 편성이란 그것 없이는 그 어떤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도 결코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제3절 도식에 의한 축적의 서술

이제는 다음과 같은 도식에 따라 재생산을 살펴보자.

도식 7)

$$\left. \begin{array}{l} \text{I. } 4,000c + 1,000v + 1,000m = 6,000 \\ \text{II. } 1,500c + 376v + 376m = 2,252 \end{array} \right\} \text{합계} = 8,252$$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한 해 사회적 생산물의 총액 8,252는 그 총액이 9,000이었던 맨처음 도식에서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액수, 예컨대 열 곱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맨처음 도식에서보다 적은 액수를 고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즉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이것은 여기에서는 다만 더 큰 자본으로 운영되는 생산으로 본다)은 생산물의 절대적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 그 재생산은 주어진 상품량에서 주어진 생산물의 여러 요소들의 배열이 다르거나 또는 기능에서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따름이라는 것. 따라서 가치량으로 보면 우선 단순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단순재생산의 주어진 요소들의 양이 아니라 그 질적 사명이 달라지며 이 변화가 그 다음의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의 물질적 전제이다.⁵⁸⁾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도식을 달리, 예컨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식 ㄴ)

$$\left. \begin{array}{l} \text{I. } 4000c + 875v + 875m = 5,750 \\ \text{II. } 1,750c + 376v + 376m = 2,502 \end{array} \right\} \text{합계} = 8,252$$

이렇게 되면 도식은 단순재생산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될 것이며 그리하여 잉여가치는 모두 소득으로서 지출되고 축적되지 않을 것이다. ㄱ)의 경우나 ㄴ)의 경우나 두 경우에 다 한 해의 생산물은 그 가치량이 같으며 다만 ㄴ)의 경우에는 그 요소들의 기능편성이 종전의 규모대로 재생산이 다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ㄱ)의 경우에는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ㄴ)의 경우에는 $(875v + 875m) \text{ I} = 1,750 \text{ I} (v+m)$ 이 나머지 없이 $1,750 \text{ II} c$ 와 교환되는데 ㄱ)의 경우에는 $(1,000v + 1,000m) \text{ I} = 2,000 \text{ I} (v+m)$ 이 $1,500 \text{ II} c$ 와의 교환에서 $500 \text{ I} m$ 의 초과분이 I부류의 축적을 위하여 남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도식 ㄱ)을 더 자세히 분석하여 보자. I부류에서나 II부류에서나 다 잉여가치의 절반은 소득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축적되며 즉 추가자본이 요소로 전화된다고 치자. $1,000 \text{ I} m$ 의 절반인 500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축적되고 추가적 화폐자본으로서 투하되어야 즉 추가적 생산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1,000v + 500m) \text{ I}$ 만이 소득으로서 지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text{II} c$ 의 정상적인 크기로서 나타나는 것은 역시 1,500뿐이다. $1,500 \text{ I} (v+m)$ 과 $1,500 \text{ II} c$ 의 교환은 단순재생산과정으로서 이미 서술되었으므로 더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000 \text{ I} c$ 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되는 재생산(이번에는 확대된 규모에서 진행되는)을 위한 $4,000 \text{ I} c$ 의 새로운 배열은 역시 단순재생산과정으로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500 \text{ I} m$ 과 $(376v + 376m) \text{ II}$ 인데, 한편으로는 I부류나 II부류나 다같이 그

58) 이것은 제임스 밀과 S. 베일리 사이에서 벌어진 자본축적에 관한 논쟁 — 제1부(제2장, 5, 634페이지, 주 65*)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논한 — 즉 산업자본의 크기가 의연 같은 경우에 산업자본의 작용을 늘일 가능성에 관한 논쟁에 단연 끝장을 내게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후에 되돌아오기로 한다.

* 이 전집, 제23권, 제2분책, 26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내부관계가 문제로 되며 다른 편으로는 두 부류 사이의 운동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II부류에서도 역시 잉여가치의 절반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은 188이며 그 가운데서 $1/4$ 인 47, 대략적 숫자로 말하면 48이 가변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나머지 140이 불변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견해로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 보통의 견해에 의하면 한 종류의 상품이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고 또는, 같은 것이지만 상품이 화폐와 교환되며 또 바로 그 화폐가 다시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는 것이 예사라는 것이다. 그 140II m 은 그것이 상품 I m 가운데서 가치액이 같은 한 부분에 의하여 바로 보상되기 때문에 생산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다. I m 가운데서 II m 과 교환되는 부분이 I부류의 생산에도 II부류의 생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건, 오직 II부류의 생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건, 어쨌든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보상은 II부류의 일방적인 구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잉여생산물 500I m 은 모두 I부류 안에서의 축적에 쓰여야 하며 따라서 II부류의 상품과 교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I부류의 자본가들은 이 잉여생산물을 동시에 축적도 하고 먹여치우기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I부류는 140I m 을 현금으로 사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화폐는 II부류가 자체의 상품을 후에 I부류에 파는 것으로써 II부류에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이 과정은 매 해의 새로운 생산에서 그 생산이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인 한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를 위한 화폐원천이 II부류의 어디에 있는가?

도리어 II부류는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 즉 실제적 축적을 동반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 축적의 조건으로 되며 그리고 실제로는 우선 단순한 화폐퇴장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불모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376II v 가 우리 앞에 있다. 노동력에 선대한 376의 화폐자본은 노동자들이 II부류의 상품을 삼으로써 끊임없이 화폐형태의 가변자본으로서 II부류의 자본가들에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출발점인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져나와 다시 그에게 되돌아오

는 것으로는 이 순환에서 돌아다니는 화폐가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화폐축적의 원천이 아니다. 이 화폐는 퇴장화폐로 축적되는 잠재적인 새로운 화폐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유통에서 끌려나올 수조차 없다.

그러나 잠깐만! 여기에 그 무슨 돈벌이구멍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Ⅱ부류는 이 부류에서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같은 Ⅱ부류에서 다시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I부류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Ⅱ부류는 노동력의 구매자인 동시에 이 부류에서 적용되는 노동력의 소유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자이다. 따라서 Ⅱ부류의 자본가들은

1) — I부류의 자본가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임금을 그 정상적인 평균수준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을 노는 화폐의 한 부분은 풀려나오며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경우에 화폐퇴장의 정상적인 원천으로 따라서 또 Ⅱ부류에서 잠재적인 추가적 화폐자본형성의 원천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자본형성을 취급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물론 우연한 사기적 이윤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되는 정상적인 임금(이것은 그밖의 조건들이 같다면 가변자본의 크기를 규정한다)은 결코 자본가들의 선의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정 밑에서는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러한 설명방식은 제쳐놓는다. 376v를 Ⅱ부류가 지출하여야 할 가변자본으로서 전제한 만큼 새로 부딪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Ⅱ부류가 선대하는 것은 367v가 아니고 350v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설을 갑자기 끌어들일 수는 없다.

2) 그러나 한편 또 Ⅱ부류는 전체로서 볼 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부류가 노동력의 구매자인 동시에 자체의 상품을 자기 부류의 노동자들에게 파는 판매자라는 I부류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리한 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즉 명목상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지만 사실은 임금의 한 부분을 상품으로 해당한 등가를 주지 않고 다시 차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도로 훔쳐낼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일부는 물품지급제도에 의하여, 일부는 유통하고 있는 화폐의 위조(비록 법적으로는 아마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에 의하여 기록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모든 공업국에 아주 명백한 자료들이

있다. 예컨대 영국과 미국에 있다(이 점에 대하여 뚜렷한 실례를 몇 개 들 것). 이것은 1)에서와 똑같은 조작인데 다만 위장되고 애돌아서 실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조작도 먼저 든 조작과 마찬가지로 물리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명목상으론가 아니라 실지로 지불되는 임금이다.

아다시피 자본주의적 기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서는 이 기구에 예외적으로 붙어 있는 어떤 오점을 이론적 곤란을 제거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에 대한 부르조아 비판가들의 대다수는 마치 내가 예컨대 「자본론」 제1부에서 자본가는 노동력의 실제적 가치를 지불한다고—자본가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가정함으로써 바로 그 자본가에게 옳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떠든다! (여기에서 내가 너그럽게 보아 세플레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376Ⅱv로써는 위에서 말한 목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376Ⅱm으로써는 더 곤란한 것 같다. 이 경우에는 똑같은 부류의 자본가들만이 맞서 자기들이 생산한 소비품을 서로 팔고사고 한다. 이 교환에 필요한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만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들에게로 그들이 유통에 선대한 정도에 따라 되돌아와서 늘 새로 똑같은 궤도를 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 화폐를 잠재적인 추가적 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유통에서 끌어내는 것은 두 가지 길로만 가능한 것 같다. 즉 한 가지 길은 Ⅱ부류 자본가들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속여 화폐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화폐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유통하고 있는 화폐의 양을 미리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한편이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내어 퇴장화폐로서 쌓아두는 것밖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화폐를 도적질할 수 있고 따라서 Ⅱ부류 자본가들의 한 부분에서 추가적 화폐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 실제로 화폐를 잃는 것과 결부될 수 있더라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Ⅱ부류의 자본가들 가운데서 속은 부분은 좀 방탕한 생활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지만 그뿐일 것이다.

또 하나의 길은 Ⅱm 가운데서 생활필수품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직접 Ⅱ부류 안에서 새로운 가변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와같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장의 마감(제4절에서)에서 연구될 것이다.

1) 첫째 실례

7) 단순재생산의 도식

$$\left. \begin{array}{l} \text{I. } 4,000c + 1,000v + 1,000m = 6,000 \\ \text{II. } 2,000c + 500v + 500m = 3,000 \end{array} \right\} \text{합계} = 900$$

L)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을 위한 출발도식

$$\left. \begin{array}{l} \text{I. } 4,000c + 1,000v + 1,000m = 6,000 \\ \text{II. } 1,500c + 750v + 750m = 3,000 \end{array} \right\} \text{합계} = 9,000$$

도식 L)에서 I부류의 잉여가치의 절반 즉 500이 축적된다고 가정하였다면 우선 $(1,000v + 500m)$ I 또는 $1,500 I (v+m)$ 은 $1,500 II c$ 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면 I부류에서 남은 것은 $4,000c + 500m$ 이며 이 가운데서 뒤에 든 것이 축적된다. $(1,000v + 500m)$ I이 $1,500 II c$ 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은 단순재생산의 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연구하는 데서 이미 설명하였다.

$500 I m$ 가운데서 400은 불변자본으로, 100은 가변자본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자. I부류 안에서 그와 같이 자본화되어야 할 400m의 교환은 이미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 400m은 더 말할 것 없이 Ic에 합쳐질 수 있으며 그러면 I부류에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4,400c + 1,000v + 100m (100m은 100v와 교환되어야 한다.)$$

II부류에서는 축적을 위하여 I부류에서 $100 I m$ (생산수단으로 존재하는)을 사며 이 $100 I m$ 은 이제는 II부류의 추가적 불변자본을 이룬다. 그런데 II부류가 이 생산수단에 대하여 지불하는 100의 화폐는 I부류의 추가적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 전환된다. 그러면 I부류에서 자본은 $4,400c + 1,100v$ (이 뒤에 든 것은 화폐로) = 5,500이 된다.

II부류는 이제 불변자본이 1,600c로 된다. II부류는 생산과정에 이 불변자본을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50v를 화폐로 더 내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II부류의 가변자본은 750에서 800으로 늘어난다. II부류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이렇게 모두 150만큼 늘어나는 것은 자체의 잉여가치에서 메운다. 따라서 750 II m 가운데서 600m만이 II부류의 자본가들의 소비밑천으로서 남는데 그들의 한 해 생산물은

이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text{II. } 1,600c + 800v + 600m (\text{소비밀천}) = 3,000$$

소비품으로 생산되어 이 경우에 $(100c + 50v)$ II로 전화되는 150m은 그 현물형태로 모두 노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간다. 즉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00은 I부류의 노동자들(100 I v)이 소비하며 50은 II부류의 노동자들(50 II v)이 소비한다. 전체 생산물이 축적에 필요한 형태로 마련되는 II부류에서는 사실상 잉여가치 가운데서 100만큼 더 늘어난 부분이 필요한 소비품의 형태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이 시작되면 I부류의 100의 가변적 화폐자본은 이 부류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II부류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II부류는 상품예비로 있는 100m을 I부류에 넘겨주며 동시에 상품예비로 있는 50을 II부류 자체의 노동자들에게 넘겨준다.

축적을 위하여 달라진 전체 생산물의 배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

$$\text{I. } 4,400c + 1,100v + 500 \text{ 소비밀천} = 6,000$$

$$\text{II. } 1,600c + 800v + 600 \text{ 소비밀천} = 3,000$$

$$\text{합계} = \text{위에서와 같이 } 9,000$$

여기에서 자본은 다음과 같다.

$$\left. \begin{array}{l} \text{I. } 4,400c + 1,100v (\text{화폐}) = 5,500 \\ \text{II. } 1,600c + 800v (\text{화폐}) = 2,400 \end{array} \right\} = 7,900$$

그런데 생산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았다.

$$\left. \begin{array}{l} \text{I. } 4,000c + 1,000v = 5,000 \\ \text{II. } 1,500c + 750v = 2,250 \end{array} \right\} = 7,250$$

이제 실제로 축적이 이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면 즉 이렇게 늘어난 자본으로 생산이 실제 진행된다면 다음해 말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rray}{l} \text{I. } 4,400c + 1,100v + 1,100m = 6,600 \\ \text{II. } 1,600c + 800v + 800m = 3,200 \end{array} \right\} = 9,800$$

이제 I부류에서 똑같은 비례로 축적이 계속되고 즉 550m은 소득으로

서 지출되고 나머지 550m은 축적된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 1,100v는 1,100Ⅱc에 의하여 보상되며 그리고 또 550Ⅰm이 같은 금액의 Ⅱ부류 상품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두 1,650Ⅰ(v+m)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상되어야 할 Ⅱ부류의 불변자본은 1,60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50은 800Ⅱm 가운데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시 화폐를 제쳐놓고 보면 이 거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4,400c+550m$ (자본화되어야 할 것). 이밖에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소비필천으로 $1,650(v+m)$ 이 있으며 그것은 상품 Ⅱc에 실현되어 있다.

Ⅱ. $1,650c$ (그 중 50은 위에서 말한대로 Ⅱm에서 덧붙은 것) + $800v$ + $750m$ (자본가들의 소비필천)

그러나 Ⅱ부류에서 c와 v의 비율이 종전대로라면 50c에 대하여 25v가 더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750m에서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Ⅱ. $1,650c+825v+725m$

I부류에서는 550m이 자본화되어야 한다. v와 c의 비율이 이전과 같다면 그 가운데서 440은 불변자본을 이루며 110은 가변자본을 이룬다. 이 110은 725Ⅱm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즉 110의 가치가 있는 소비품을 Ⅱ부류의 자본가들 대신에 I부류의 노동자들이 소비한다. 따라서 Ⅱ부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소비할 수 없는 이 110m을 하는 수 없이 자본화한다. 이렇게 되면 725Ⅱm 가운데서 615Ⅱm이 남는다. 그런데 Ⅱ부류가 이 110을 추가적 불변자본으로 전화하면 Ⅱ부류에서 55의 추가적 가변자본이 더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자체의 잉여가치 가운데서 가져와야 한다. 이 55를 615Ⅱm에서 빼면 560이 Ⅱ부류 자본가들의 소비를 위하여 남는다. 그러면 실제적인 이전과 잠재적인 이전이 끝난 다음에 자본가치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4,400c+440c) + (1,100v+110v) = 4,840c+1,210v=6,050$

Ⅱ. $(1,600c+50c+110c) + (800v+25v+55v) = 1,760c+88v=2,640$

8,690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II부류의 축적이 I부류보다 더 빨리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I(v+m) 가운데서 상품 IIc와 교환되어야 할 부분이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IIc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리고 그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 재생산이 계속되면 다음해의 마감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rray}{l} \text{I. } 4,840c + 1,210v + 1,210m = 7,260 \\ \text{II. } 1,760c + 880v + 880m = 3,520 \end{array} \right\} = 10,780$$

잉여가치가 나누어지는 율이 의연 같은 경우에는 I부류가 소득으로서 지출해야 하는 것은 1,210v와 m의 절반인 605, 모두 1,815이다. 이 소비 밑천은 역시 IIc보다 55만큼 더 크다. 이 55를 880m에서 빼면 825가 남는다. 55IIc가 IIc로 전화되면 그것은 IIc에서 해당한 가변자본 27½을 위하여 더 뺄 것을 전제로 한다. 소비할 것으로 797½IIc가 남는다.

이제는 I부류에서 자본화되어야 할 것은 605m이다. 그 가운데서 484는 불변자본으로 121은 가변자본으로 된다. 이 121은 이제 아직 797½인 IIc에서 빼야 하며 그러면 676½IIc가 남는다. 따라서 II부류는 불변자본으로 121을 더 전화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가변자본 60½이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676½에서 나오며 그리하여 616이 소비를 위하여 남는다. 그러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된다.

$$\begin{array}{ll} \text{I. 불변자본 } 4,840 + 484 = 5,324 \\ \text{가변자본 } 1,210 + 121 = 1,331 \\ \text{II. 불변자본 } 1,760 + 55 + 121 = 1,936 \\ \text{가변자본 } 880 + 27\frac{1}{2} + 60\frac{1}{2} = 968 \end{array}$$

$$\text{도합 } \left. \begin{array}{l} \text{I. } 5,324c + 1,331v + 6,655 \\ \text{II. } 1,936c + 968v = 2,904 \end{array} \right\} = 9,559$$

그리고 이 해 말에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rray}{l} \text{I. } 5,324c + 1,331v + 1,331m = 7,986 \\ \text{II. } 1,936c + 968v + 968m = 3,872 \end{array} \right\} = 11,858$$

똑같은 계산을 되풀이하고 분수를 버리면 다음해 말에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rray}{l} \text{I. } 5,856c + 1,464v + 1,464m = 8,784 \\ \text{II. } 2,129c + 1,065v + 1,065m = 4,259 \end{array} \right\} = 13,043$$

그리고 또 그 다음해 말에는

$$\left. \begin{array}{l} \text{I. } 6,442c + 1,610v + 1,610m = 9,662 \\ \text{II. } 2,342c + 1,172v + 1,172m = 4,686 \end{array} \right\} = 14,348$$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이 다섯 해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I부류와 II부류의 총자본은 $5,500c + 1,750v = 7,250$ 에서 $8,784c + 2,782v = 11,566$ 으로, 따라서 비율로는 100 : 160으로 늘었다. 총잉여가치는 맨처음에 1,750이었는데 이제는 2,782이다. 소비된 잉여가치는 처음에 I부류에서 500, II부류에서 600, 도합 1,100이었다. 그것은 마지막 해에는 I부류에서 732, II부류에서 745, 도합 1,477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100 : 134의 비율로 늘어났다.

2) 둘째 실례

이제는 한 해 생산물을 9,000으로 하고 그것이 모두 상품자본으로서 산업자본가계급의 손에 있으며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일반적 평균비율이 1 : 5인 형태로 있다고 하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이미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 생산규모가 이미 전부터 확대되어 있다는 것, 끝으로 노동계급 속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는 모든 사정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이러한 비율에서 한 해 생산물은 분수를 버리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left. \begin{array}{l} \text{I. } 5,000c + 1,000v + 1,000m = 7,000 \\ \text{II. } 1,430c + 285v + 285m = 2,000 \end{array} \right\} = 9,000$$

이제 I부류의 자본가계급이 잉여가치의 절반인 500을 소비하고 나머지 절반을 축적한다고 하자. 그러면 $(1,000v + 500m)$ I = 1,500이 1,500 II c와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IIc 는 1,430에 지나지 않으므로 잉여가치 가운데서 70이 덧붙여져야 한다. 이것을 $285II m$ 에서 빼면 $215II m$ 이 남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I. $5,000c+500m$ (자본화되어야 할) + $1,500(v+m)$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소비필천

II. $1,430c+70m$ (자본화되어야 할) + $285v+215m$

이 경우에 $70II m$ 이 직접 IIc 에 합쳐지므로 이 추가적 불변자본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70/5=14$ 의 가변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14를 다시 $215II m$ 에서 빼게 되면 $201II m$ 이 남는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II. $(1,430c+70c) + (285v+14v) + 201m$

$1,500I(v+m)$ 과 $1,500IIc$ 의 교환은 단순재생산의 한 과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를 돌려야 할 몇 개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은 축적과 관련된 재생산의 경우에 $I(v+1/2m)$ 이 IIc 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IIc 에 $II m$ 의 한 부분을 보탠 것에 의하여 보상되는 데서 나온다.

축적을 전제로 하면 $I(v+m)$ 은 IIc 보다 더 크며 단순재생산에서처럼 IIc 와 같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1) I 부류는 자체의 잉여생산물의 한 부분을 자체의 생산자본에 합치고 이 부분의 $5/6$ 를 불변자본으로 전화하며 따라서 이 $5/6$ 를 동시에 II 부류의 소비품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I 부류는 자체의 잉여생산물에서 II 부류 안에서의 축적에 필요한 불변자본을 위하여 소재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I 부류 자체가 그 잉여생산물 가운데서 추가적 불변자본으로서 적용하는 부분을 가동시켜야 할 가변자본을 위하여 소재를 II 부류가 I 부류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 똑같다. 아다시피 실제적 가변자본은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추가적 가변자본도 마찬가지로. I 부류의 자본가는 노예소유자가 한 것처럼 자기가 써야 할 추가적 노동력을 위하여 II 부류에서 생활필수품을 예비로 사거나 쌓아두지는 않을 것이다. II 부류와 거래하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 노동력을 위한 소비품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노

동력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가변자본의 현물형태로 되는 데 지장으로 되지는 않는다. 당면하여 자본가 자신이 할 일, 이 경우에는 I 부류가 할 일은 다만 추가적 노동력을 사는데 필요한 새로운 화폐자본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가 이 추가적 노동력을 자기 자본에 합치게 되자 화폐는 이 노동력을 위한 II 부류 상품의 구매수단으로 되며 따라서 노동자는 이 노동력을 위한 소비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 난 김이니 말이지 자본가 나리와 그의 출판물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화폐를 지출하는 방식과 그들이 그 화폐를 실현하는 II 부류의 상품에 대하여 흔히 불만을 느끼곤 한다. 그는 이에 대하여 철학을 논하고 문화를 지껄이며 박애를 설교하는데, 예컨대 워싱턴에 가 있는 영국대사관의 서기관 드롬먼트 씨가 그러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국민보』(신문)는 1879년 10월 말에 흥미있는 기사를 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노동자들은 문화면에서 발명의 진보에 뒤떨어져 있다. 많은 물건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쓸 줄 모르며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물론 자본가는 누구나 다 자기의 상품을 노동자가 살 것을 바란다). 노동자가 그와 똑같은 금액을 버는 목사나 변호사나 의사와 똑같은 안락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할 하등의 근거는 없다(사실 이러한 부류의 변호사, 목사, 의사들은 염원에 의하며 많은 안락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전히 어떤 합리적이며 건전한 조치로 소비자로서의 그의 수준을 높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험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야심은 기껏해야 자기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며 또 선동가는 노동자의 정신도덕적 능력을 개선하여 그의 지위를 높이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그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대사관과 공사관 서기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공업 등등에 관한 그들의 보고』, 런던, 1879년, 404페이지)

노동시간이 긴 것이 노동자의 정신도덕적 능력을 개선하여 그의 지위를 높이며 그를 합리적인 소비자로 되게 하는 그 합리적이며 건전한 조치의 비결인 것 같다. 자본가의 상품의 합리적인 소비자로 되기 위해서

는 노동자는 무엇보다 먼저—선동가는 이것을 방해하지만—자기자신의 노동력을 자기자신의 자본가가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건강에 해롭게 소비하도록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가 이해하고 있는 합리적인 소비란 자본가가 자기 노동자들의 소비거래에 직접 기여할 정도까지 친절하기 그지없는 물품지급제도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주택의 공급 따라서 자본가가 동시에 그 노동자들의 셋집 주인으로도 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이모저모의 하나인 것이다.

노동계급의 수준을 높이려는 자본가적 시도에 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바로 그 드름먼트는 똑같은 보고에서 특히 로웰 시와 로렌스 시에 있는 모범 방적공장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여직공들을 위한 식당과 숙사는 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의 것이다. 이 숙사의 사감들은 바로 이 회사의 이익에 복무하며 회사는 여직공들의 행동준칙을 만든다.

예컨대 여직공들은 누구도 밤 10시 후에 숙사에 돌아와서는 안된다. 그런데 알짜는 그 다음에 있다. 즉 회사의 특별순시가 이 숙사규칙의 위반을 막기 위하여 부근을 순찰한다. 밤 10시 후에는 여직공들은 누구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한다. 여직공들은 누구도 회사의 소유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하숙할 수 없다. 회사의 소유지 안에 있는 어느 집이나 다 회사에 매주 약 10달러의 세를 바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영광에 찬 합리적인 소비자를 보는 것이다.

“여직공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많은 하숙집들에는 어디에나 피아노가 있으므로 적어도 직기에 매달려 10시간이나 단조롭게 줄곧 일하고 나면 실지 휴식보다 기분전환이 더 필요한 여직공들에게 있어서는 음악과 노래와 춤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같은 보고, 412페이지)

노동자가 합리적인 소비자로 되게 하는 주되는 비결은 이제부터 나온다. 드름먼트 씨는 티너즈 폴즈(코네티컷 강)의 식칼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주식회사의 회계주임인 오크먼 씨는 특히 미국제 식탁칼이 영국제보다 질이 좋다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값에서도 영국을 타승할 것이다. 우리가 질에 있어서 지금 벌써 영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값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강철을 더 값죽게 얻고 우리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낮추면 그렇게 된다!”(같은 곳, 427페이지)

임금인하와 긴 노동시간, 바로 이것이 노동자를 합리적인 소비자의 당당한 자리에 끌어올려 문화와 발명의 진보로 하여 노동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많은 물건들을 위한 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건전한 조치의 알맹이다.

따라서 I 부류가 자체의 잉여생산물에서 II 부류의 추가적 불변자본을 제공하여야 하듯이 II 부류는 이러한 뜻에서 I 부류를 위한 추가적 가변자본을 제공한다. II 부류는 가변자본이 문제인 한에서 자체의 총생산물, 따라서 또 특히 자체의 잉여생산물의 더 큰 부분을 필수적 소비품의 형태로 재생산함으로써 I 부류와 자기 자체를 위하여 축적한다.

$I(v+m)$ 은 늘어나는 자본의 기초 위에서 생산이 진행되는 경우에 IIc 더하기 잉여생산물 가운데서 자본에 다시 합쳐지는 부분 더하기 II 부류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데 드는 불변자본의 추가부분과 같다. 그리고 이 생산확대의 최소한은 그것이 없이는 I 부류 자체에서 실제로 축적할 수 없는 즉 실제로 생산을 확대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경우로 되돌아간다면 그 경우는 IIc 가 $I(v+1/2m)$ 보다 즉 I 부류의 생산물 가운데서 소득으로서 소비품에 지출되는 부분보다 작으며 그리하여 1,500 $I(v+m)$ 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II 부류의 잉여생산물의 한 부분인 70도 곧 그것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IIc=1,430$ 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II 부류에서 단순재생산이 진행될 수 있기 위하여 그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 같은 가치액만큼 $I(v+m)$ 에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한에서 여기에서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보충적인 70 IIm 은 이와 다르다. I 부류에 있어서 소비품에 의한 소득의 단순한 보상으로, 단순히 소비를 위한 상품교환으로 되는 것이 II 부류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단순재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불변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에서 그 현물형태로 단순히 도로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축적과정으로 되며 II 부류의 잉여생산물의 한 부분이 소비품의 형태에서 불변자본의 형태로 전화

되는 것이다. I부류가 7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잉여가치의 전화를 위한 화폐예비)로 70Im을 사고 II부류는 그 다음에 70Im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7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자본으로서 축적한다면 이 7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은 물론 생산에 다시 들어가는 생산물의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적 생산물(바로 그것을 한 부분으로 하는 II부류의 잉여생산물)의 표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 II부류에서의 이 화폐축적은 동시에 생산수단으로 있는 70Im이 팔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할 것이다. 따라서 II부류에서 이와같이 동시에 재생산이 확대되지 않는 데 상응하여 I부류에서 상대적 과잉생산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제쳐놓고 보자. I부류에서 나온 70의 화폐가 II부류 편에서 70Im의 약간의 몫을 삼으로써 I부류로 부분적으로 밖에는 돌아오지 않았거나 또는 전혀 돌아오지 않은 동안에는 이 70의 화폐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II부류의 손에서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두 편의 상품이 서로 보상되어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전에는 I부류와 II부류 사이의 모든 교환에 다 들어맞는다. 그러나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화폐가 여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노는 것은 다만 일시적이다. 그런데 일시적이거나 추가적으로 풀려나온 화폐가 곧 능동적으로 추가적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해야 할 신용제도에서는 이렇듯 일시적으로만 풀려나오는 화폐자본이 실지로 매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 화폐자본이 I부류의 다른 기업들에 체화된 추가적 생산물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지만 I부류의 새로운 기업에 쓰일 수 있다.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은 70Im이 II부류의 불변자본에 합쳐지자면 동시에 II부류의 가변자본이 14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I부류에서 잉여생산물 Im이 직접 자본 Ic에 합쳐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즉 II부류의 재생산이 벌써 더욱더 자본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재생산은 잉여생산물 가운데서 생활필수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확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아다시피 둘째 실례에서 500Im이 자본화되어야 한다면 9,000의 생산

물은 재생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 상품만을 고찰하고 화폐유통은 무시하기로 한다.

$$\text{I. } 5,000c + 500m(\text{자본화되어야 할}) + 1,500(v+m) \text{ 소비밀천} = 7,000 \text{ 상품}$$

$$\text{II. } 1,500c + 299v + 201m = 2,000 \text{ 상품}$$

$$\text{총액} = 9,000 \text{ 상품생산물}$$

그리하여 자본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 부류에서 자본화되어야 할 $500m$ 은 $5/6 = 417c + 1/6 = 83v$ 로 나누어진다. 이 $83v$ 는 똑같은 금액을 II m 에서 끌어내며 II 부류는 그것으로 불변자본의 요소들을 사서 II c 에 넣는다. II c 가 83만큼 늘면 II v 가 83의 $1/5 = 17$ 만큼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text{I. } (5,000c + 417m)c + (1,000v + 83m)v = 5,417c + 1,083v = 6,500$$

$$\text{II. } (1,500c + 83m)c + (299v + 17m)v = 1,583c + 316v = 1,899$$

$$\text{도합 } 8,399$$

I 부류의 자본은 6,000에서 6,500으로 즉 $1/12$ 만큼 늘어났다. II 부류에서는 1,715에서 1,899로 즉 거의 $1/9$ 만큼 늘어났다.

이 기초 위에서 재생산은 두번째 해 연말에 자본이 다음과 같이 된다.

$$\text{I. } (5,417c + 452m)c + (1,083v + 90m)v = 5,869c + 1,173v = 7,042$$

$$\text{II. } (1,583c + 42m + 90m)c + (316v + 8m + 18m)v = 1,715c + 342v = 2,057$$

그리고 세번째 해 연말에 생산물은 다음과 같이 된다.

$$\text{I. } 5,869c + 1,173v + 1,173m$$

$$\text{II. } 1,715c + 3,420v + 342m$$

여기에서 I 부류가 전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의 절반을 축적하면 I ($v + 1/2m$)은 $1,173v + 587(1/2m) = 1,760$ 으로 되며 따라서 1,715 II c 전체 보다 큰데 45만큼 더 크다. 따라서 이 차는 같은 액만큼 생산수단을 II c 에 옮겨 놓음으로써 메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II c 는 45만큼 늘어나며 그 결과에 II v 는 $1/5 = 9$ 만큼 늘어난다. 다음으로 자본화된 587 I m 은 $5/6$

와 $1/6$ 로 즉 $489c$ 와 $98v$ 로 나뉜다. 이 98 은 II부류에서 불변자본에 98 을 새로 덧붙이게 하며 이것은 또한 II부류의 가변자본을 $1/5=20$ 만큼 늘이게 한다.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I. (5, 869c + 489m)c + (1, 173v + 98m)v = 6, 358c + 1, 271v = 7, 629$$

$$II. (1, 715c + 45m + 98m)c + (342v + 9m + 20m)v = 1, 858c + 371v = 2, 229$$

$$\text{총자본} = 9, 858$$

따라서 세 해 동안에 늘어난 재생산에서는 I부류의 총자본이 $6,000$ 에서 $7,629$ 로 II부류의 총자본은 $1,715$ 에서 $2,229$ 로, 사회적 총자본은 $7,715$ 에서 $9,858$ 로 늘어났다.

3) 축적이 이루어질 때의 IIc의 교환

따라서 I ($v+m$)과 IIc의 교환에서는 여러 경우가 있게 된다.

단순재생산에서는 이 두 크기가 같아야 하며 서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재생산은 혼란됨이 없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축적율이 문제로 된다. 이제까지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축적율이 I부류에서 $1/2$ 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해가 달라져도 의연 같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이 축적된 자본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나누어지는 비례만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생겼다.

1) I ($v+1/2m$) = IIc인 경우. 따라서 IIc는 I ($v+m$)보다 작다. 언제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I부류에서는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 I ($v+1/2m$)이 IIc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IIc에 IIm의 해당한 부분이 덧붙여져서 이 총액이 I ($v+1/2m$)과 같아야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II부류에서의 교환은 그 불변자본의 단순재생산이 아니라 벌써 축적이며 그 불변자본이 잉여생산물 가운데서 I부류의 생산수단과 교환되는 부분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불변자본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즉 II부류가 또한 이에 따라 자체의 가변자본을 늘이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원천은 그 자체의 잉여생산

물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I(v+1/2m)$ 이 IIc 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 II 부류는 교환에 의하여 자체의 불변자본을 완전히 재생산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부족되는 것은 I 부류에서 사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II 부류의 가변자본을 더 축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II 부류의 불변자본은 크기로 보아 이 조작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히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한편 또 I 부류의 자본가들 가운데서 다만 추가적 화폐자본을 쌓아두는 부분은 이 교환에 의하여 벌써 이러한 종류의 축적을 부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I(v+m) = IIc$ 라는 단순재생산의 전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양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10~11년의 산업순환에서는 어떤 해에 총생산이 흔히 전 해보다 적으며 그리하여 전 해에 비하여 단순재생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해마다 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경우에 그만큼 더 많은 수의 비생산적 심부름꾼들이 총잉여가치를 표시하는 1,500을 함께 소비하는 한에서만 단순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의 축적 따라서 실제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사실은 $IIc = I(v+m)$ 이라는 것을 배제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축적의 경우에도 이전의 일련의 생산기간에 진행된 축적과정에 의하여 IIc 가 $I(v+m)$ 과 같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크기까지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II 부류에서의 과잉생산일 것이며 오직 커다란 파국에 의해서만 제거될 것이다. 이 파국의 결과 자본은 II 부류에서 I 부류로 자리를 바꿀 것이다. 예컨대 농업에서 자체가 생산한 씨앗을 자체가 쓰듯이 II 부류의 불변자본의 한 부분이 그 자체에 의하여 재생산되더라도 $I(v+m)$ 과 IIc 의 관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I 부류와 II 부류들의 교환에서 IIc 의 이 부분은 문제로 되지 않는데 그것은 Ic 가 그 경우에 문제로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II 부류 생산물의 한 부분이 이번에는 생산수단으로서 I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II 부류의 생산물은 I 부류가 제공한 생산수단의 한 부분에 의하여 메워지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생산의 두 큰 부류들, 생산수단의 생산자들과 소비품의 생산자들 사이의 교환을 순수하고 환하게 연구하려면 처음부터 두 편에서 빼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I(v+m)$ 은 IIc 와 같을 수 없으며 또 이 두 가지 것은 교환에서 서로 매워질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Im/x 이 Im 가운데서 I 부류의 자본가들이 소득으로서 지출하는 부분이라면 $I(v+m/x)$ 은 IIc 와 같거나 그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그러나 $I(v+m/x)$ 은 언제나 $II(c+m)$ 보다는 작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도 IIm 가운데서 II 부류의 자본가계급이 어쨌든 자신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만큼 작지 않을 수 없다.

지적해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축적의 서술에서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그 불변자본이 참가하여 생산한 상품자본의 가치의 한 부분인 한에서 불변자본의 가치는 정확히는 서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 축적된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은 고정자본의 이 요소들의 성질이 각각 다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만 상품자본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원료와 반제품 등등이 대량적으로 상품생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품자본은 그 대부분이 유동적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성부분의 보상분으로 이루어진다(그렇지만 이와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유동적 구성부분의 회전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동적 부분은 이 부분에 떼어준 고정자본의 가치부분과 함께 생산된 상품가치의 총액이 그 해의 생산에 들어가는 자본 전체의 가치와 같게 한 해 동안에 회전한다고 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를 쓰는 생산에 원료는 들어가지 않고 보조자재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노동요소인 v 는 더 큰 구성부분으로서 상품자본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윤율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자본의 구성부분이 주기적으로 생산물에 떼어주는 가치가 많건적건 이에는 관계없이 잉여가치는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지만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매개 상품자본의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은 그 부분이 소모되어 가치를 생산물 자체에 평균적으로 떼어주는 정도에 따라서만 계산되어야 한다.

제4절 보충

II 부류를 위한 맨처음의 화폐원천은 IIc 의 한 부분과 교환되는 I 부류 금생산자의 $v+m$ 이다. 다만 금생산자가 잉여가치를 쌓아두거나 그것을

I 부류의 생산수단으로 전화하며 따라서 자기의 생산을 확대하는 한에서는 그의 $v+m$ 은 II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또 금생산자 자신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결국 확대재생산에 귀착되는 한에서 금생산자의 잉여가치 가운데서 소득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금생산자의 추가적 가변자본으로서 지출되는 부분은 II 부류에 들어가며 여기에서 새로운 화폐퇴장을 다그치거나 직접 다시 I 부류에 팔지 않고 I 부류에서 사는 새로운 수단을 준다. 금생산의 이 $I(v+m)$ 에서 나오는 화폐 가운데서 금의 한 부분이 II 부류 생산의 일정한 부문에 떨어져 나가는데 이 부문은 금을 원료 등등으로서, 간단히 말하여 II 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요소로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미리 하게 되는 화폐퇴장을 위한 요소는 I 부류와 II 부류 사이의 교환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생긴다. 즉 I 부류에서는 사는 법은 없이 Im 의 한 부분이 II 부류에 일방적으로 팔리기만 하며 II 부류에서 추가적 불변자본으로서 쓰이는 경우만이다. II 부류에서는 I 부류가 Im 의 한 부분을 추가적 가변자본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똑같이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또 I 부류가 소득으로서 지출하는 잉여가치의 한 부분이 IIc에 의하여 메워지지 않고 따라서 그것으로 Im 의 한 부분을 사며 그렇게 되어 그것이 화폐로 전화되는 경우이다. $I(v+m/x)$ 이 IIc보다 크면 IIc는 단순재생산을 위해서는 I 부류가 Im 에서 떼어내어 소비한 것을 I 부류의 상품에 의하여 보상할 필요는 없다. II 부류의 자본가들끼리 하는 교환의 테두리 안에서 Im 의 호상교환으로만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환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로 화폐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아다시피 II 부류 안에서는 Im 의 한 부분이 직접 가변자본으로 전화되어야(바로 I 부류에서 Im 의 한 부분이 직접 불변자본으로 전화하듯이) 직접적인 축적이 이루어진다. II 부류의 여러 생산부문 안에서 그리고 개별적 자본가의 매개 생산부문 안에서 축적하여온 햇수(年數)는 서로 다르지만 사태는 필요한 대로 고치기만 하면 I 부류의 경우와 똑같이 설명된다. 어떤 자본가들은 아직 화폐퇴장의 단계에 있어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며 다른 자본가들은 실제로 재생산을 확대하는 시점에 이르러 팔지는 않고 사기만 한다. 처음에는 추가적인 가변적 화폐자본이 추가적 노동력에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 노동자들은 아직 화폐를 퇴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비에 들어가는 추가적 소비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생

활수단을 산다. 이들이 화폐를 퇴장한 정도에 따라 화폐는 이들에게서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들은 화폐를 쌓아간다.

부 록

- ☐참고문헌
- ☐인명색인
- ☐내용색인

문 헌 색 인*

- 굳, W. W. 「정치, 농업, 상업에 관한 착오 또는 20년간의 자유무역후의 민족의 전망」, 런던 (1866년) (Good, W. W. Political, agricultural and commercial fallacies; or, 'the prospect of the nation after twenty years' "Free-trade". London(1866)) - 260, 261.
- 「국민적 곤란의 원인과 타개책, 정치경제학의 원리로부터의 연역, 존 러셀 경에게 보내는 편지」, 런던, 1821년(The Source and remedy of the national difficulties, deduced from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in a letter to Lord John Russell, London, 1821) - 19~20.
- 깨네, F. 「상업과 수공업자의 노동에 관한 대화」, 서적 「중농주의자, E. 데르의 권두논문과 주석첨부」, 제1부 (파리, 1846년) 에 수록(Quesnay, F. Dialogues sur le commerce et sur les travaux des artisans.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artie 1. Paris, 1846) - 145~146, 375.
- 「경제표의 분석」, 서적 「중농주의자, E. 데르의 권두논문과 주석첨부」, 제1부 (파리, 1846년) 에 수록(Analyse du Tableau economique.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artie 1. Paris, 1846) - 145~146, 212.
- 꾸르셀-스내이, J. G. 「공업, 상업, 농업 기업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술, 또는 실무편람」, 제2판, 파리, 1857년(Courcelle-Seneuil, J. G.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s entreprises industrielles, commerciales et agricoles ou manuel des affaires. Deuxieme edition, Paris, 1857) - 266.
- 뉴만, S. Ph. 「정치경제학원리」, 앤도버와 뉴욕, 1835년(Newman, S. Ph.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Andover and New York, 1835) - 173.
- 데스튜트 드 트라시, A. L. C. 「이데올로기의 제요소」, 제4 및 제5부, 「의지와 그 작용에 관한 논술」, 파리, 1826년(Destutt de Tracy, A. L. C.

* 익명으로 출판된 책의 저자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그것을 괄호 []에 넣었다.

Elémens d'idéologie, 4e et 5e parties, Traité de la volonté et de ses effets, Paris, 1826) - 530~541.

듀퐁 드 느무르, P. S. 「쾨네 박사의 명제들, 또는 그의 사회경제학 기본원리의 개요」, 서적 「중농주의자, E. 데르의 권두논문과 주석첨부」, 제1부(파리, 1846년)에 수록(Dupont de Nemours, P. S. Maximes du docteur Quesnay, ou résumé de ses principes d'économie sociale,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artie 1, Paris, 1846) - 212.

라드너, D. 「철도경제, 수송의 새 방법, 그 관리, 그 장래성 및 그 상업, 금융, 사회적 체관계에 관한 논술」, 런던, 1850년(Lardner, D., "Railway economy: a treatise on the new art of transport, its management, prospects, and relations, commercial, financial, and social, London, 1850) - 188, 198, 199.

라베르뉴, L. de.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농촌경리」, 프랑스어에서 번역, 에딘버러와 런던, 1855년(Lavergne, L. de, The rural economy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Translated from the French, Edinburgh and London, 1855) - 262.

라블레, E. de. 「벨기에의 농촌경제론」, 제2판, 파리-브뤼셀-라이프찌히, 1863년(Laveleye, E. de, Essai sur l'économie rurale de la Belgique, Deuxieme edition, Paris-Bruxelles-Leipzig, 1863) - 270.

램제이, G.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Ramsay, G. An essa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Edinburgh, 1836) - 252, 429, 481.

레이븐스톤, P. 「국채제도와 그 효과에 관한 고찰」, 런던, 1824년(Ravenstone, P. Thoughts on the funding system, and its effects, London, 1824) - 22.

레이러, 제이. 「돈과 도덕, 우리 시대를 위한 책」, 런던, 1852년(Lalor, J. Money and morals: a book for the times, London, 1852) - 154, 157, 158.

로드베르투스-아게조브, J. K. 「자본, 폰 키르히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네번째 편지」, Th. 코자크의 편집 및 해설, 베를린, 1884년

- (Rodbertus-Jagetzow, J. K. Das Kapital. Vierter, socialer Brief an von Kirchmann, Herausgegeben und eingeleitet von Th. Kozak, Berlin, 1884) - 13.
- 「우리의 경제제도의 인식을 위하여」, 노이브란덴부르크와 프리들랜드, 1842년 (Zur Erkenntniß unsrer staatswirthschaftlichen Zustände, 1. Heft : Fünf Theoreme, Neubrandenburg, Friedland 1842) - 13, 19, 28.
- 「폰 키르히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제3신 : 리카아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과 새로운 지대론의 논거」, 베를린, 1851년 (Sociale Briefe an von Kirchmann, Dritter Brief : Widerlegung der Ricardo'schen Lehre von der Grundrente und Begründung einer neuen Rententheorie, Berlin, 1851) - 16.
- 「편지와 사회정치론설」, 마이어 박사 편찬, 제1권, 베를린(1881년) (Briefe und Socialpolitische Aufsätze, Herausgegeben von Dr. R. Meyer, Band 1, Berlin (1881)) - 13, 14, 23.
- 로스코, H. E. 와 쇼를렘머, C. 「상세한 화학교과서」, 제1권 : 「비금속」, 브라운슈바이그, 1877년 (Roscoe, H. E. und Schorlemmer, C. Ausführliches Lehrbuch der Chemie, Band 1. : Nichtmetalle, Braunschweig, 1877) - 23.
- 로셰르, W. 「인민경제체제」, 제1권 : 「국민경제학기본」, 정정보충판, 제3판, 슈투트가르트와 아우그스부르크, 1858년 (Roscher, W. System der Volkswirtschaft, Band 1,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Dritte, vermehrte und verbesserte Auflage, Stuttgart und Augsburg, 1858) - 411.
- 르 트로느, G. F. 「가치, 유통, 공업, 대내외상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익에 관하여」, 서적 「중농주의자, E. 데르의 권두논문과 주해첨부」, 제2부 (파리, 1846년) 에 수록 (Le Trosne, G. F. De l'intérêt social par rapport à la valeur, à la circulation, à l'industrie et au commerce intérieur et extérieur,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artie 2, Paris, 1846) - 212.
- 리카아도, D.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Third edition, London, 1821) - 166, 239, 247, 250, 251, 429, 530.
- 마나바-다르마-사스트라, 또는 쿨루카의 주석에 의한 마누의 법전, 인도의

종교적 및 세속적 의무의 체계를 포함. 제3판. 마드라스, 1863년 (Manava Dharma Sastra, or the institutes of Manu according to the gloss of Kulluka, comprising the Indian system of duties religious and civil, Third edition, Madras, 1863) - 262.

마이어, R. 「제4신분의 해방투쟁」, 베를린, 1874년 (Meyer, R. Der Emancipationskampf des vierten Standes Berlin, 1874) - 14, 15.

마르크스, K. 「정치경제학비판」, 제1분책, 베를린, 1859년 (Marx, K.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s Heft, Berlin, 1859) - 10, 379.

- 「철학의 빈곤. 프루동 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파리-브뤼셀, 1847년 (Misère de la Philosophie, Réponse à la philosophie de la misère de Proudhon Paris-Bruxelles, 1847) - 15, 22~23.

- 「임금노동과 자본」, 「신라인신문」에 게재, 1949년 4월 (Lohnarbeit und Kapital, In: 「Neue Rheinische Zeitung」, April, 1849) - 15, 22~23.

-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제1권, 제1부, 개정된 제2판, 함부르크, 1872년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Band 1, Buch 1, Zweite verbesserte Auflage, Hamburg, 1872) - 10, 13, 14, 19, 22, 37, 60, 74, 87, 113, 126, 139, 148, 156, 172, 182, 200, 208, 240, 340, 352, 374, 375, 396, 437, 456, 483, 530, 562.

-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E. 베른슈타인과 K. 카우츠키가 번역한 독일어 판, F. 엥겔스의 서문과 주해첨부, 슈투트가르트, 1885년 (Das Elend der Philosophie, Antwort auf Proudhons 「Philosophie des Elends」, Deutsch von E. Bernstein und K. Kautsky, Mit Vorwort und Noten von Friedrich Engels, Stuttgart, 1885) - 14.

맥클러드, H. D. 「정치경제학의 기초」, 런던, 1858년 (Macleod, H. D.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58) - 252.

뮐러, A. H. 「국가관리술의 기본」, 제3부, 베를린, 1809년 (Müller A. H. Die Elemente der Staatskunst, Theil 3, Berlin, 1809) - 206.

밀, J. S. 「정치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문제에 관한 논술」, 런던, 1844년 (Mill, J. St.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4) - 251.

바튼, J. 「사회의 노동계급의 형편에 영향을 주는 제사정의 고찰」, 런던, 181

- 7년 (Barton, J. 「Observations on the circumstances which influence the condition of the labouring classes of society」. London, 1817) - 250.
- [베일리, S] 「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 논술, 주로 리카아도 씨 및 그 추종자들의 저작에 관하여」, 「전해의 형성과 발표에 관한 논술」의 저자의 저서, 런던, 1825년 ((Bailey, S.) 「A critical dissertation on the nature, measures, and causes of value: chiefly in reference to the writings of Mr. Ricardo and his followers. By the author of essays on the formation and publication of opinions」. London, 1825) - 119.
- 세이, J. B. 「정치경제학의 각이한 문제, 특히 상업의 전반적 침체의 원인에 관하여 맬더스 씨에게 보내는 편지」, 파리, 1820년 (Say, J. B. Lettres à M. Malthus, sur differens sujets d'économie politique, notamment sur les causes de la stagnation générale du commerce, Paris, 1820) - 485.
- 「정치경제학개론, 또는 부의 형성, 분배, 소비 방식의 간단한 서술」, 제3판, 제2권, 파리, 1817년 (Traite d'économie politique, ou simple exposition de la manière dont se forment, se distribuent et se consomment les richesses, Troisième édition, Tome 2, Paris, 1817) - 165, 430.
- 슈토르흐, H. 「정치경제학독본, 또는 국민의 번영을 규정하는 원칙의 설명」, 제2권, 베첸부르크 가, 1815년 (Storch, H. Cours d'économie politique, ou exposition des principes qui déterminent la prospérité des nations, Tome 2, St.-Petersbourg, 1815) - 430.
- 「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파리, 1824년 (Considerations sur la nature du revenu national, Paris, 1824) - 430, 478.
- 스미스, A. 「제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I. G. 웨이크필드 편찬, 4권으로 된 신판, 1권과 2권, 런던, 1843년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 E. G. Wakefield, A new edition, in four volumes, vol. 1 and 2, London, 1843) - 17, 18, 155, 212~216, 220~221, 223~224, 226~228, 232~233, 238, 398, 399~404, 408~412, 415~416, 419, 524~525.
- 스크로프, G. 「정치경제학원리」(Scrope, G.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포터, 「정치경제학」 (Potter, Political economy)을 보라.

시니어, N. W. 「정치경제학의 기본원리」, 시니어 씨의 출판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은 강의록 중에서 J. 아리바베네 백작이 편집한 것, 파리, 1836년 (Senior, N. W. Principes fondamentaux de l'économie politique, tirés de leçons éditées et inédites de Mr. Senior par Jean Arrivabene, paris, 1836) - 483.

시스몽디, J. C. L. 시몽드 드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또는 부와 인구의 관계에 관하여」, 제1권, 파리, 1819년 (Sismondi, J. C. L. Simonde de,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Tome 1, Paris, 1819) - 26, 124,
- 「정치경제학연구」, 제1권, 브뤼셀, 1837년 (Études sur l'économie politique, Tome 1, Bruxelles, 1837) - 155.

아담스, W. B. 「도로와 레일, 그 물리적 마멸과 도덕적 마멸」, 런던, 1862년 (Adams, W. B. Roads and rails and their sequences, physical and moral, London, 1862) - 188, 190.

웨일랜드, F. 「정치경제학원리」, 보스턴, 1843년 (Wayland, Fr.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Boston, 1843) - 249.

윌리엄스, R. P. 「철길로반의 보수에 대하여」, 토목기사협회에서 한 보고, 1867년 (Williams, R. P. On the maintenance and renewal of permanent way) - 188, 198.

조트베르, A. 「아메리카의 발견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귀금속의 생산 및 금과 은의 가치비례」, 고타, 1879년 (Soetbeer, A. Edelmetall-Produktion und Werthverhältniss zwischen Gold und Silber seit der Entdeckung Amerika's bis zur Gegenwart], Gotha, 1879) - 518.

첼머즈, T. 「사회의 도덕적 상태 및 도덕적 전망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제2판, 글라스고, 1832년 (Chalmers, Th. 「On political economy in connexion with the moral state and moral prospects of society」, Second edition, Glasgow, 1832) - 173, 267, 270~275.

쉴프로브, A. 「철도경제」, 제1권 「그 경제적 특성과 나라의 이익의 그 관계」, 모스크바, 1875년, - 61.

키르흐호프 F. 「농업경영학편람, 농지의 합리적 정비와 그 관리를 위한 실

천적 농업경영자의 참고서』. 데사우-드레스덴, 1852년 (Kirchhof, F. Handbuch der landwirthschaftlichen Betriebslehre. Ein Leitfaden für praktische Landwirthe zur zweckmäßigen Einrichtung und Verwaltung der Landgüter. Dessau-Dresden, 1852) - 197.

타일러, E. B. 「인류의 원시사와 문명의 발생에 관한 연구」. H. 뮐러에 의한 영문번역. 라이프찌히 (Tylor, E. B. Forschungen über die Urgeschichte der Menschheit und die Entwicklung der Civilisation. Aus dem Englischen von H. Müller, Leipzig) - 483.

톰슨, W. 「인류의 행복을 무엇보다 촉진하는 부의 분배원리의 연구」. 신판. 런던, 1850년 (Thompson, W.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most conducive to human happiness. A new edition. London, 1850) - 22, 354~356.

투크, T. 「통화원리의 연구. 통화와 가격의 연관, 은행업무에서 은행발행의 분리의 합리성」. 제2판. 런던, 1844년 (Tooke, Th. An inquiry into the currency principle; the connection of the currency with prices; and the expediency of a separation of issue from banking. Second edition, 1844) - 525

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서적 「튀르고저작집」. E. 데르의 신판. 제1권. 파리, 1844년 (Turgot, 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 In: Oeuvres de Turgot. Nouvelle édition par E. Daire, Tome 1. Paris, 1844) - 213, 375, 397.

패터슨, R. H. 「재정학. 실무독본」. 에딘버러, 런던, 1868년 (Patterson, R. H. The science of finance. A practical treatise. Edinburgh, London, 1868) - 252.

포터, A. 「정치경제학. 미국인민의 생활조건에 맞추어 고찰한 정치경제학의 대상, 사명 및 원리」. 뉴욕, 1841년 (Potter, A. Political economy: its objects, uses, and principles: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the condition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1841) - 207.

호지스킨, T. 「국민정치경제학. 런던직공학교에서 한 4개의 강의」. 런던, 1827년 (Hodgskin, Th. Popular political economy. Four lectures delivered at the London Mechanics' Institution. London, 1827) - 22, 269.

홀즈워스, W. A. 「지주와 차지인에 관한 법, 유용한 형식의 사본첨부」. 런던, 1857년 (Holdsworth, W. A. The law of landlord and tenant, with a copious collection of useful forms. London, 1857) — 197, 195.

의회보고와 기타 공식문헌

「동인도(벵갈과 오리사사의 기근), 벵하르의 기근에 관한 문헌 F. A. 코커렐의 보고 포함. 제3부, 1867년 5월 31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East India (Bengal and Orissa famine). Papers relating to the famine in Behar, including Mr. F. R. Cockerell's report, Part 3.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31. May. 1867) — 155.

「동인도(벵갈과 오리사사의 기근), 벵갈과 오리사사의 기근에 관한 문헌과 통신, 기근조사위원회의 보고와 벵갈 부총독 및 인도총독의 의사록 포함. 1867년 5월 31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East India (Bengal and Orissa famine). Papers and correspondence relative to the famine in Bengal and Orissa, including the report of the Famine Commission and the minutes of the Lieutenant Governor of Bengal and the Governor General of India.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31. May. 1867) — 155~156.

「동인도(마드라스와 오리사사의 기근), 1867년 7월 4일 하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 1867년 7월 30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East India (Madras and Orissa famine). Return to an address of the Honourable the House of Commons, dated 4. July. 1867.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30. July. 1867) — 262.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위원회의사록, 증언록, 부록, 색인, 제1부, 보고와 증언」. 1857년 7월 30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bank acts, together with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minutes of evidence, appendix and index, Part I. Report and evidence.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30. July. 1857) — 259.

「영국의 대사관과 공사관의 서기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공업 등등에 관한 그들의 보고」, 제8호, 런던, 1865년 (Reports by Her Majesty's secretaries of embassy and legation, on the manufactures, commerce, & c.,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reside No. 8, London, 1865) - 268.

「영국의 대사관과 공사관의 서기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공업 등등에 관한 그들의 보고」, 제3부, 런던, 1879년 (Reports by Her Majesty's secretaries of embassy and legation, on the manufactures, commerce, & c.,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reside, Part III, London, 1879) - 520, 572, 573~574.

「칙명철도위원회. 1865년 3월부터 1866년 5월까지의 기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어진 증언록. 여왕폐하의 명령에 의하여 의회 양원에 제출됨」, 런던, 1867년 (Royal commission on railways, Minutes of evidence taken before the commissioners, March, 1865 to May, 1866, Presented of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er Majesty, London, 1867) - 153, 167, 188, 192, 197.

정기간행물

「신라인신문. 민주파기관지」 (Neue Rheinische Zeitung: Organ der Demokratie) 쾰른, 제24호, 1848년 6월 24일; 제34호, 1848년 7월 4일; 제56호, 1848년 7월 26일; 제99호, 1848년 9월 10일; 제100호, 1848년 9월 12일; 제138호, 1848년 11월 9일 - 15.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런던, 제4권, 제1부, 1847년 5월 8일 - 151, - 제24권, 1866년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 283~284.

「종합국가학잡지」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튀빙겐, 제35권, 1879년 - 14.

「화폐시장평론」 (Money Market Review), 런던, 1867년 12월 2일 - 186~187, - 1868년 1월 25일 - 197.

인명색인

ㄱ

구치 Gooch, T. — 영국의 철도회사
인 대서부 철도회사 사장 — 197.

굳 Good, William Walter — 영국의
차지농업가, 경제학자, 자유무역주의
의 반대자, 농업경제와 관련된 많은
책을 씀 — 260, 261.

께네 Quesnay, François(1694~1774)
— 프랑스의 대경제학자, 중농주의학
파의 창시자, 직업은 의사 — 145~146,
211, 212, 221, 375, 395~398, 416.

꾸르셀-스내이 Courcelle-Seneuil, J
ean-Gustave(1813~1892) —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공업기업소의 경
제와 신용 및 은행문제와 관련한 많
은 책을 씀 — 266.

ㄴ

뉴만 Newman, Samuel Philips
(1797~1842) — 미국의 부르조아 철
학자이며 경제학자 — 173.

ㄷ

달랑베르 D'Alembert, Jean(1717~
1783) —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
18세기 부르조아 계몽기의 저명한 대
표자의 한 사람 — 86.

데르 Daire, Louis-François-Eugen-

e(1798~1847) —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정치경제학 서적들을 출판함
— 145~146, 212, 375, 139.

데스튀트 드 트라시 Destutt de
Tracy, Antoine-Louis-Claude,
comte de(1754~1836) — 프랑스의
속류 경제학자, 감각론적 철학자, 입
헌군주제의 지지자 — 489, 530~541.
듀퐁 드 네무르 Dupont de
Nemours, Pierre-Samuel(1739~
1817) — 프랑스의 정치활동가이며 중
농주의 경제학자 — 212.

드럼먼드 Drummond, Victor
Arthur Wellington(1833~1907) — 영
국의 외교관 — 572, 573.

ㄹ

라드너 Lardner, Dionysius(1793~
1859) — 영국의 학자, 자연과학, 철
학, 정치경제학 분야의 많은 통속서
적들을 씀 — 188, 196, 198~199.

라베르뉴 Lavergne, Louis-Gabriele
-Leonce-Guilhaud de(1809~1880)
— 프랑스의 부르조아 정치활동가이며
경제학자, 농업경제와 관련된 많은
책을 씀 — 262.

라브와지에 Lavoisier, Antoine-Lau-
rent(1743~1794) — 걸출한 프랑스의
화학자, 연소의 존재에 관한 가설을

반박함, 또한 정치경제학과 통계학의 문제도 연구함 - 24, 25, 26.

라블레 Laveleye, Emile-Louis-Victor de (1822~1892) - 벨기엘의 부르조아 역사가이며 경제학자 - 270.
 라살레 Lassalle, Ferdinand (1825~1864) - 독일의 소부르조아 정론가, 변호사, 1848~1849년에 라인주의 민주주의운동에 참가, 60년대초에 노동운동에 가담하여 전독일노동자동맹의 창건자의 한 사람으로 됨 (1863년), 프로이센의 영도 밑에 '위로부터의' 독일통일정책을 지지함, 독일노동운동에서 기회주의적 조류의 시초를 닦음 - 15.

라우 Rau, Karl Heinrich (1792~1870) - 독일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일부 문제들에서 스미드와 리카아도의 견해에 찬동함 - 15.

램제이 Ramsay, Sir George (1800~1871)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마지막 대표자의 한 사람 - 177, 252, 429, 431, 478, 481.

레이븐스톤 Ravenstone, Piercy (1830년 사망) - 영국의 리카아도파 경제학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옹호함, 멜터스주의를 반대함 - 22.

레일러 Lalor, John (1814~1856) - 영국의 부르조아 정론가이며 경제학자 - 154, 157, 158.

렝게 Linguet, Siman-Nicolas-Henry (1736~1794) - 프랑스의 변호사, 정론가, 역사가이며 경제학자, 봉건

절대주의적 입장에서 중농주의자들과 부르조아 자유주의를 비판함, 부르조아적 자유와 소유에 대하여 일련의 심각한 비판을 가함. - 396.

로드베르투스-야게쯔브 Rodbertus-Jagetzow, Johann Karl (1805~1875) - 독일의 속류경제학자이며 정치활동가, 부르조아화한 프로이센 음커의 사상가, 프로이센 '국가사회주의'의 반동적 사상을 설교함 - 13~16, 18~21, 23, 25~28, 453.

로스코 Roscoe, Sir Henry Enfield (1833~1915) - 영국의 화학자, 많은 화학교과서를 씀 - 23.

로셔 Roscher, Wilhelm Georg Friedrich (1817~1894) - 독일의 속류경제학자, 정치경제학의 이른바 역사학파의 창건자 - 411.

르 트로느 Le Trosne, Guillaume-Francois (1728~1780) -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 - 212.

리스트 List, Friedrich (1789~1864) - 독일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극단한 보호관세제의 설교자 - 15.

리카아도 Ricardo, David (1772~1823)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걸출한 대표자 - 18~22, 23, 25, 27, 28, 165~166, 239, 240, 241, 243, 247, 248, 250, 251, 252, 329, 429, 530.



마블리 Mably, Gabriel-Bonnot de

(1709~1785) — 걸출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공상적인 평등공산주의의 대표자 — 396.

마이어 Meyer, Rudolf Hermann (1839~1899) —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정론가, 로드베르투스의 전기를 씀 — 14, 15, 21.

맑스 아벨링 Marx-Aveling, Eleanor (1855~1898) — 영국 및 국제 노동운동의 뛰어난 활동가, 맑스의 막내딸, 1884년 이후 아벨링의 아내 — 13, 15.

맑스 예니 Marx-Jenny (1814~1881) — 칼 맑스의 아내, 그의 충실한 벗이며 내조자 — 28.

매클러드 Macleod, Henry Dunning (1821~1902) — 영국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이른바 신용의 자본창조설을 발전시킴 — 252.

맥컬록 MacCulloch, John Ramsay (1789~1864)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리카아도의 경제학설을 비속화함, 자본주의의 적극적인 변호자 — 20, 274, 430.

맬더스 Malthus, Thomas Robert (1766~1834) — 영국의 목사, 경제학자, 부르조아화한 토지소유자적 귀족의 사상가, 자본주의의 변호자, 인간중오의 인구론 제창자 — 485.

뮐러 Müller, Adam Heinrich, Ritter von Nitterdorf (1779~1829) — 독일의 정론가이며 경제학자, 봉건귀족의 이익을 표현한 이른바 낭만학파의 대표자, A. 스미드의 경제학설

을 반대함 — 206, 483.

밀 Mill, James (1773~1836)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리카아도의 이론을 비속화함 — 274, 562.

밀 Mill, John Stuart (1806~1873)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실증주의 철학자, 정치경제학 고전학파의 아류 — 251, 431.

◆

ㄴ

바그너 Wagner, Adolf (1835~1917) — 독일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정치경제학에서 이른바 사회법학파의 대표자, 강단사회주의자 — 23.

바톤 Barton, John (18C말~19C초)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대표자 — 250, 252, 430.

베른슈타인 Bernstein, Eduard (1850~1932) — 독일사회민주주의자, 당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편집자 (1881~1890); 90년대 후반기 엥겔스의 서거후에는 개량주의적 입장에서 맑스주의를 공개적으로 수정해 나섬,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편의 한 지도자 — 14.

베쎄머 Bessemer, Henry (1813~1898) — 영국의 기사이며 화학자, 선철을 강철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적인 방법을 발명함 — 266.

베이크웰 Bakewell, Robert (1725~1795) — 영국의 차지농업가, 집짐승의 종자를 고르는 사람 — 262.

베일리 Bailey, Samuel (1791~1870)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속류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리카아도의 노동가치설을 반대해 나섬. 한편 리카아도의 경제적 견해의 이러저러한 모순을 옳게 밝힘 — 119, 562.

人

세이 Say, Jean-Baptiste (1767~1832) — 프랑스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처음으로 변호론적 '생산의 세요소'설을 체계적으로 서술함 — 165~166, 430, 431, 485.

쇼를렘머 Schorlemmer, Carl (1834~1892) — 독일의 저명한 유기화학자. 맨체스터의 교수, 변증법적 유물론자. 독일사회민주당원. 맑스와 엥겔스의 벗 — 23.

슈타인 Stein, Lovenz von (1815~1890) — 독일의 법률가, 국가학자, 속류경제학자 — 180.

슈토르흐 Storch, Heinrich Friedrich von (Andrej Karlowitsch) (1766~1835)
— 러시아의 경제학자, 통계학자이며 역사가. 뉘른베르크 과학원 원사.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아류 — 164, 430, 478.

쉐르블리에 Cherbuliez, Antoine-Elisie (1797~1869) — 스위스의 경제학자. 시스몽디의 후계자. 시스몽디의 이론을 리카아도의 이론의 원리와 결합시킴 — 430.

쉐엘레 Scheele, Karl Wilhelm (1742

~1786) — 스웨덴의 화학자 — 23, 24.

쉐플레 Schäffle, Albert Eberhard, Friedrich (1831~1903) — 독일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 K. 맑스의 「자본론」 제1권이 나오자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적 평화와 '협조'를 설교해 나섬 — 14, 565.

스미드 Smith, Adam (1723~1790)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가장 걸출한 대표자의 한 사람 — 11, 13, 17~19, 21, 23, 154, 155, 185, 211~238, 239~240, 243, 251, 378, 396~424, 427~431, 450~451, 478, 481, 524, 525, 539.
스크로프 Scrope, George Julius Poulett (1797~1876)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맬더스주의를 반대함. 지질학자. 의회의원 — 207, 209.

스터록 Sturrock, Archbald — 영국의 철도회사인 대북부 철도회사의 기관차부장 — 198.

스튜어트 Steuart, Sir James (1712~1780)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상주의의 마지막 대표자의 한 사람. 화폐수량설을 반대함 — 16.

시니어 Senior, Nassau William (1790~1864) — 영국의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자본주의의 변호자. 노동시간의 단축을 반대함 — 483.

시스몽디 Sismonodi, Jean-Charles — Léonard Sismonde de (1773~1842) — 스위스의 경제학자. 소부르조아

적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함, 경제적 낭만주의의 저명한 대표자 - 26, 124, 155, 431, 485.

○

아담스 Adams, William Bridges (1797~1872) - 영국의 기사, 철길건설 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책을 씀 - 188, 190.

에드몬즈 Edmonds, Thomas Rowe (1803~1889) - 영국의 경제학자, 공상적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적 결론을 얻으려고 리카아도의 이론을 이용함 - 22.

엔겔스 Engels, Friedrich (1820~1895) (전기) - 9, 10, 13~15, 86, 135, 275, 314, 393, 410, 453, 459, 506, 519.

오웬 Owen, Robert (1771~1858) - 영국의 위대한 공상적 사회주의자 - 22.

오크맨 Oakman - 터너스 폴레(미국)에 있는 한 주식회사의 재무주임 - 573.

웨일랜드 Wayland, Francis (1796~1865) - 윤리학, 정치경제학 및 그 밖의 과학분야의 일반교과서들을 씀, 미국의 도시 프로비덴스에 있는 종합대학의 총장, 목사 - 249.

윌리엄스 Williams, Richard Price - 영국의 기사, 철도수송경제의 전문가 - 188, 198.

ㄸ

젤러 Zeller, J. - 독일의 경제학자 - 14.

죄트베르 Soetbeer, Georg Adolf (1814~1892) - 독일의 부르쥔아 경제학자이며 통계학자 - 518.

ㄷ

첼머스 Chalmers, Thomas (1780~1847) - 영국의 신교 신학자이며 부르쥔아 경제학자, 멜더스의 후계자 - 173.
추프로브 Tschuprow, Alexander Iwanowitsch (1842~1908) - 러시아의 부르쥔아 경제학자이며 통계학자, 철도운수경제의 전문가, 자유주의적인 사회활동가이며 정론가 - 61.

ㄱ

카우츠키 Kautsky, Karl (1854~1938) - 독일사회민주주의자, 정론가, 잡지 『신시대』의 편집자(1883~1917);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의 지도자의 한 사람, 초기에는 맑스주의자이나 후에는 맑스주의의 배반자, 기회주의의 가장 위험하고 해독적인 변종인 중앙주의(카우츠키사상)의 대변자; 제1차세계대전 시기에는 사회배외주의자;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 이후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소비에트정권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나섬 - 14.
케어리 Carey, Henry Charles (1793~1879) - 미국의 부르쥔아 속

류경제학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반동적인 조화설을 제창함 - 392.

코베트 Corbet, Thomas - 19세기의 영국 부르조아 경제학자 - 153.

코자크 Kozak, Theophil - 로드베르투스의 유고를 출판함 - 14.

키르흐호프 Kirchhof, Friedrich - 19세기의 독일 부르조아 경제학자 - 197, 267, 270~275.

E

타일러 Tylor, Edward Burnett (1832~1917) - 저명한 영국의 인류학자, 문화사와 인류학에서 진화파의 창건자 - 483.

툼슨 Thompson, William (1785~1833년 경) - 아일랜드의 경제학자, 공상적 사회주의자. A. 오웬의 후계자. 사회주의적 결론을 얻으려고 리카아도의 이론을 이용함 - 22, 354~356.

투크 Tooke, Thomas (1774~1858)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고전 정치경제학파에 가담, 리카아도의 화폐설을 비판함 - 125, 361, 522, 524, 525, 527.

튀르고 Turgot, Anne-Robert - Jacques, baron de l'Aulne (1727~1781) -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국가 활동가, 중농주의학파의 걸출한 대표자, 재무총감 (1774~1776) - 212, 375, 397.

II

패터슨 Patterson, Robert Hogard (1821~1886) - 영국의 정론가이며 부르조아 속류경제학자 - 252.

포터 Potter, Alonzo (1800~1865) - 미국의 목사, 여러 학교들에서 신학을 교수함 - 207.

풀라톤 Fullarton, John (1780~1849)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화폐유통과 신용에 관한 저작들을 씀, 화폐수량설을 반대함 - 552.

프루동 Proudhon, Pierre-Joseph (1809~1865) - 프랑스의 정론가,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 소부르조아지의 사상가, 무정부주의의 시조의 한 사람 - 14, 22, 430, 477.

프리스틀리 Priestley, Joseph (1733~1804) - 유명한 영국의 화학자, 유물론 철학자이며 진보적 사회활동가, 산업혁명시기 영국부르조아지의 급진파의 사상가, 1774년에 산소를 발견함 - 23, 24, 26.

III

호지스킨 Hodgskin, Thomas (1787~1869) -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정론가, 공상적 사회주의의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옹호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함, 사회주의적 결론을 얻으려고 리카아도의 이론을 이용함 - 22, 269.

홀즈워드 Holdsworth, W. A. — 영
국의 변호사 — 191, 195.

내 용 색 인

7

가격 Preis

- 과 노임 371~373.
- 시장가격 322.
- 가격변동이 자본회전에 미치는 영향 309~323, 348, 349.
- 가격변동 및 가치변동 321, 322.

가격상승 Preissteigerung 347, 371~374.

가내공업 Hausindustrie 267, 268.

가치 Wert 25, 47, 118, 119, 154.
— 상품가치 Warenwert를 보라.

가치기호 Wertzeichen 125, 353.

가치량 Wertgröße 48, 49, 425, 429.

가치법칙 Wertgesetz 27, 28, 164, 248.

가치변동 Wertwechsel 81, 118~123, 314.

가치생산 Wertproduktion 151, 152, 424, 425.

가치생산물 Wertprodukt 412~415, 450, 469, 472~474, 482, 483.

가치실체 Wertsubstanz 25, 425.

가치론 Werttheorie 19, 25.

가치형태 Wertform 64, 119, 171.

감가상각기금 Amortisationsfonds 119, 120.

강제 Zwang 528.

강제노동 Zwangsarbeit 258, 425.

건축 Bauwesen

- 가옥건축 258, 259.

경쟁 Konkurrenz 188, 286, 315.

경제적 사회구성체 Ökonomische Gesellschaftsformation, 45.

경제표(게네의) Tableau

économique 111, 212, 247, 375, 395, 407.

경제학 — 정치경제학을 보라.

계급 Klassen.

- 심부름계급 528.

— 계급에 관한 중농주의자들(의 견해) 395, 396.

— 또한 노동자계급, 농민경리, 자본가계급, 소작인을 보라.

계급대립(— 관계)

Klassengegensatz(— verhältnis)

— 자본가와 임노동자간의 계급대립 39, 63, 129.

— 자본은 계급관계를 포괄한다. 118.

계절노동 Saisonarbeit 118, 248, 495, 529.

고리대업자 Wucherer 465.

고리대자본 Wuchererkapital 548.

고정자본의 감가상각 Amortisation des fixen Kapitals 132, 180, 181, 185, 186, 188, 189, 204, 495, 496, 498~501, 504~507, 525, 548.

공급과 수요 Angebot und Nachfrage 83, 84, 130~133, 311, 312, 347, 373.

공동체 Gemeinde

- 노동자공동체 426.
- 인동의 공동체 148.
- 러시아의 공동체 42.

공동체 Gemeinwesen 113.

- 원시공동체 528.

공산주의 Kommunismus

- 공동체(Gemeinschaft)적 생산에 의한 부가 149.
- 미리 따져본 공산주의 346, 347.
- 공산주의의 재생산 469, 516, 517.

공상적 사회주의 Utopischer Sozialismus 21, 24.

공장 Fabrik 116, 118, 194.

공황 Krisen 182, 255, 312, 348~350.

- 과 화폐시장 349, 350.
- 과 소비 83, 84, 451, 452, 453.
- 과 신투자 188, 206.
- 의 주기성 205, 206, 451~454, 577.
- 과 재생산 515~517, 550, 577, 578.
- 의 가능성 54.
- 1847년의 공황 280.
- 의 물질적 기초 205, 206.
- 에 대한 부르조아적 견해 26, 27, 82, 83, 452, 453, 517.
- 또한 불균형을 보라.

과잉생산 Überproduktion 348, 350.

-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501, 516,

517, 557, 558, 559, 578.

- 필연적 과잉생산 196.
- 상대적 과잉생산 517.
- 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82, 83.

교역방식 Verkehrsweise 129.

- 과 생산양식 130.

교통업 Kommunikationsindustrie 61.

- 또한 운수업을 보라.

교통수단 Kommunikationsmittel은 운수수단을 보라.

교환 Austausch 164, 165, 456, 496.

교환가치 Tauschwert 62, 119, 141, 161.

구매기간 Kaufszeit 139~149, 280~284.

국가사회주의 Staatssozialismus 18.

국가자본 Staatskapital 109.

국가증권 Staatspapiere 382.

국영생산 Staatsproduktion 123.

국제수지 Zahlungsbilanz 80, 555.

귀금속 Edelmetalle 46, 349, 350, 353, 357, 377.

그리스 Griechenland 528.

금(과 은) Gold(und Silber)

- 화폐로서의 금(과 은) 150, 518.
- 국가차원의 금·은 퇴장 87.

금생산 Goldproduktion 58.

- 357~360, 368~370, 379, 517~522, 527, 529, 544, 545.

- 금생산에 의한 자본순환공식 58, 62, 358.

- 사회적 생산의 I 부류에 속하는 금생산 519.

- 여러나라에서의 금생산 518, 519.
- 추가적 금생산 379.
- 금생산의 잉여가치 358, 368~370, 544, 545, 580.
- 금속생산 Metalproduktion 224, 225, 519.
- 금욕설 Abstinenztheorie 483.

L

낭비 Verschwendung

- 자본주의의 생산력 낭비 190.
- 자본가계급의 낭비 452.

노동 Arbeit

- 가치실체로서의 노동 25, 26, 425.
- 노동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 27, 38.
- 의 이중성 191, 414, 415, 423.
- 추상적(가치창조적) 노동 151, 416, 428, 473.
- 구체적(유용한) 노동 415, 416, 423, 471, 472, 474, 475.
- 필요노동 146, 423, 425, 469, 470, 473.
- 잉여노동 17, 20, 35, 38, 46, 62, 146, 423, 425, 469, 470, 551.
- 산(lebendige)노동 27, 151, 191, 245, 473.
- 대상화되는 노동 27, 151, 245, 246.
- 생산적 노동 136, 146.
- 이에 대한 중농주의자들(의 견해) 236, 395, 396.
- 비생산적 노동 144, 146, 150,

151.

- 또한 임노동을 보라.

노동강도(一 強度) Arbeitsintensität 286, 352, 391.

노동과정 Arbeitsprozeß 62, 63, 220~222, 246.

- 분할될 수 있는 (diskreter) 노동과정과 연속적 노동과정 253~256, 282, 285.

- 에서의 생산수단의 역할 252~263, 285, 348, 349, 393, 394.

노동기간 Arbeitsperiode

- 과 노동일 255.
- 과 유통기간 293~310.
- 의 단축방법 259~263.
- 의 전대자본크기에 대한 영향 260~310.
- 또한 노동시간(Arbeitszeit)을 보라.

노동기금 Arbeitsfonds 238.

노동대상 Arbeitsgegenstand 136, 137, 165, 179, 218, 224, 225, 241.

노동력 Arbeitskraft

-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25, 27, 34, 38, 39, 43, 45, 119, 127, 130, 183, 230, 348, 388, 409, 417~425, 456, 457, 485, 486, 491, 492.
- 의 매매조건 27, 37~40, 182, 183, 231, 297, 419~421, 423, 493.
- 또한 노동시장을 보라.
- 의 가치 27, 34, 35, 37, 182~184, 242, 249, 409, 412, 413, 417~423, 426, 533, 534.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그 가치 이하로의 지불 533, 534, 564.
보다 더 강한 착취로서의 지불 391.

- 의 착취도 328, 329, 335, 336.
- 생산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의 노동력 39, 40, 45, 46, 182~184, 217~219, 230, 236, 237, 245, 246, 419, 424, 440, 457.
- 과 가변자본 45, 183, 230, 231, 245, 246, 408, 409, 416~419, 421, 437, 440, 484~494.
- 과 잉여가치 45, 46, 182, 184, 242, 412, 413.
- 과 생산수단 34, 35, 39~42, 45, 46, 425.
- 생산수단에서 노동력의 분리 38~42.
- 에 대한 수요 131.
- 의 사회적 결합 392.

노동력의 착취 Ausbeutung der Arbeitskraft 45.

- 그의 외연적 및 집약적 증대 352, 391.

노동분업 Arbeitsteilung 149, 259.

-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노동분업 44.

노동생산성 Arbeitsproduktivität 81, 110, 155~158, 310 352, 392, 552.

노동수단 Arbeitsmittel 240, 241.

- 생산의 맥관계통(Gefäßsystem) 136.
- 고정자본으로서의 노동수단 177~180.
- 불변자본의 구성요소로서의 노동

수단 178, 494.

-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에서 노동수단의 역할 135, 175~180, 224~227, 244, 245.
- 생산물로 교부(Abgabe)되는 노동수단의 가치 60, 136, 137, 175~178, 180, 181, 242, 494.
- 의 물리적 마멸 176, 177, 180, 181, 186, 244, 494.
- 의 도덕적 마멸 187, 189.

노동시간 Arbeitszeit

- 과 생산기간 135~138, 265~273, 285, 291.
- 의 제한과 연장 286.

노동시장 Arbeitsmarkt 33, 34, 50, 131, 347, 348, 491, 492.

노동일 Arbeitstag

- 노동력의 기능에 대한 자연적 측정단위 174.
- 사회적 노동일 469~474, 476, 477.
- 의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분리 469, 470.
- 과 노동강도 352.
- 과 노동시간 255.

노동자 Arbeiter

- 금생산에 있어서의 노동자 371.
- 상업(Handel)에 있어서의 노동자 144~147.
- 농촌노동자 42, 129, 268, 396.
- 사치품 생산노동자 447, 449, 451, 452.
- 자립적 노동자 127, 426.
- 생산적 노동자 409, 410, 414, 424.

- 비생산적 노동자 453.
-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자 41, 45.
-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571~574.
- 노동자계급 Arbeiterklasse
 -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조건 44.
 - 의 현존조건 (Existenzbedingungen) 38~44, 156.
 - 의 재생산 42, 43, 231, 419, 420, 427, 451, 453, 457, 460, 491.
 - 과 (경제) 공황 451~461, 515, 516.
- 노동재료 Arbeitsmaterial 156, 233, 240, 241.
- 노동조합 Trade-Unions 373.
- 노예시장 Sklavenmarkt 529.
- 노예제도 Sklaverei 41, 123, 429, 528, 529.
- 노임(임금) Arbeitslohn
 - 노동력의 가치형태로서의 노임 34, 38, 80, 183, 249, 409, 414, 422, 427.
 - 노동자의 수입형태로서의 노임 402, 406, 407~410, 412, 415, 418~423, 427, 483~486, 493, 494.
 - 의 지불형태 및 기일 68, 183, 207, 241, 244, 249.
 - 과 가변자본 68, 231, 242, 243, 258, 358, 380, 381, 409, 415~420, 422, 427, 439, 440, 456, 457, 481~494.
 - 과 잉여가치 412~415.
 - 과 화폐유통 456, 457.
 -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564.
 - 에 대한 스미드(의 견해) 399~402, 410, 411, 450.
- 에 대한 테스류트 드 트라시(의 견해) 530~540.
- 농노제 Leibeigenschaft 42, 123, 425, 528.
- 농민 Bauernschaft 148~150.
 - 소농민 128, 261.
- 농민경리 Bauernwirtschaft 147~150.
 - 옛날의 농민경리 155.
- 농민해방 Bauernemanzipation 42.
- 농업 Agrikultur
 - 에 있어서의 부기 148, 149.
 - 에 있어서의 자본 211, 212, 243, 244.
 - 과 매뉴팩처 268.
 - 에 있어서 생산기간과 노동시간 265, 267~269.
 - 과 부업(Nebenindustrie) 267, 268.
 - 에 있어서의 재생산 191, 395.
 - 에 있어서의 회전기간 259~263, 269.
 - 에 있어서의 저장 271, 272.
 - 독일의 농업 267.
 - 영국의 농업 260~263.
 - 인도의 농업 148, 261, 262.
 - 러시아의 농업 42, 267, 268.
 - 또한 축산(Viehzucht)을 보라.
- 농촌노동자 Landarbeiter 42, 129, 268, 396.

ㄷ

대립 Gegensatz

- 자본가와 임노동자간의 계급대립 39, 63, 130.
- 상품과 화폐의 대립 25.
-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대립 222, 243, 248.
- 생산적 자본에 대립하는 유통자본 184, 185, 214, 222, 227.

대부자본 Leihkapital 547.

대산업 Große Industrie 200, 205, 310.

독일 Deutschland 267.

독점 Monopol

- 거대화폐자본가의 독점 120.
- 생산수단과 화폐에 대한 독점 465.

ㄹ

러시아 Rußland 42, 123, 267.

로마 Rom 528.

ㄱ

마다가스카르 Madagaskar 156.

매뉴팩처 Manufaktur 268.

모순 Widersprüche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 347, 348, 451, 453, 516.
-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 83, 84, 348, 451, 453, 454.

무역차액 Handelsbilanz 349, 350.

미국 Amerika 528.

미국의 남북전쟁 Amerikanischer Bürgerkrieg 142.

ㄴ

반제품 Halbfabrikat 237.

배당금 Dividenden 198, 199.

번영기(호경기) Prosperität 286, 452, 453.

범주 Kategorie

- 일반적 범주로서의 잉여가치 16~19.
- 범주로 표현되는 기능 250.

벨기에 Belgien 189, 270.

보수기금 Reparaturfonds 401.

보수비 Reparaturkosten 132, 194~200, 401, 495, 525.

보수와 정비 Reparatur and Instandhaltung 132, 190~200.

보조재료 Hilfsstoffe 156, 176, 177, 181, 182, 218, 219, 224, 256.

보험 Versicherung 152, 195.

보험펀드(기금 : 생산을 위한) Versicherungs-fonds für die Produktion 401.

부 Reichtum

- 사회적 부를 보라

부권 Patriarchat 225.

부기 Buchführung 67, 171, 194, 195, 352.

- 의 기능 147~150.

- 의 사적 전개 148, 149.

- 사회의 필연적 산물인 부기 150.

- 에서 비용의 특성 147~150, 154.

부업 Nebenindustrie 268.

분배 Distribution

- 생산요소의 분배 41, 425.

- 또한 분배 (Verteilang) 를 보라.
- 분배 Verteilung
 - 생산요소의 분배 41, 425, 468, 469.
 - 사회적 총생산물의 분배 105, 435, 449, 450, 451,
 - 잉여가치의 분배 19, 240, 366, 382, 409, 412, 465, 466, 502.

불균형 Disproportionen

- 단순재생산에 의한 불균형 435, 449, 501, 502, 515~519, 558, 559.
- 확대재생산에 의한 불균형 559, 560, 575, 579.

비생산적 비용 faux frais 137, 141, 143, 156, 379.

비용 Kosten

- 생산적 비용 150.
- 비생산적 비용 150~154, 160, 161.
- 고정자본의 보존비용 191, 192, 196.

人

사용가치 Gebrauchswert

- 와 상품의 회전기간 141.
- 와 자본주의적 생산 75, 76, 77.

사적 경영 Privatwirtschaft 270, 271.

사치품 Luxusmittel 371~374, 444~453.

사치품 생산 Luxusproduktion 447, 449, 452, 453.

사회구성체 Gesellschaftsformation

-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보라.

사회적 부 Gesellschaftlicher Reichtum

- 그 형태 150, 151, 155, 156, 163, 234, 280, 544.
- 자본주의적 부의 증가 150, 280, 379, 544, 545.
- 와 유통비 150, 151, 159, 163.
- 부에 대한 스미드(의 견해) 231.

사회적 생산기금 Gesellschaftlicher Produktionsfonds 163.

산업예비군 Industrielle

Reservearmee 347, 348, 452, 555, 570.

산업의 순환 Industrieller Zyklus 205.

삼포농법 Dreifelderwirtschaft 269, 274.

상대적 과잉인구 Relative

Übervölkerung 347, 348, 452, 555, 570.

- 잠재적 과잉인구 347.

상업 Handel

-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 41.
- 소상공업 68.
- 소상공업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404, 405.
- 세계상업 44.
- 또한 해외무역, 세계시장을 보라.

상업비 Handelskosten 145~148.

상업자본 Handelskapital 217, 465.

상품 Ware

- 의 이중적 성격 141, 426.
- 의 가치 48, 73~75, 407, 409, 413, 414, 423, 425, 426.

- 이 상품자본으로 전화되는 조건
47, 48, 106~109.
- 의 사멸 141, 153.

상품거래자본

Warenhandlungskapital 124.

상품자본 Warenkapital 47~54, 77,
78, 99, 124, 140, 141, 152, 153,
224, 225, 227~233, 387.

- 산업자본의 형태로서의 상품자본
59~61, 63, 89, 90, 185, 186.
- 의 기능 53, 57, 72.
- 생산자본에 대한 상품자본과 화폐
자본의 대립 185, 186, 215, 222,
227.
- 잠재적 상품자본 282.
- 또한 자본의 순환을 보라.

상품저장 Warenvorrat 151~164,
318~321.

상품형태 Warenform 47, 141, 143,
158~162, 229.

상인 Kaufmann 124, 465, 503.

- 그의 기능 145, 503.

상인자본 Kaufmannskapital 124,
145. .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제 124.
- 에 관한 시스몽디(의 견해)
124~126.
-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213~217.

새로운 가치 Neuwert 417, 420, 471,
472, 475.

생산 Produktion

- 사회적 생산 394.
- 의 연속성 115~118, 156~158,
208, 277~288.

노동생산력으로서의 생산의 연속
성 310.

—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 406, 407,
436.

I 부류 402, 405, 407, 436,
466~469, 519.

II 부류 402~407, 436, 444.

— 생산확대 형태 86, 87, 196, 352,
353, 546.

생산의 외연적 확대와 집약적 확
대 190, 191, 352.

— 과 소비 83, 84, 348, 451~453.

— 자본주의적 생산

그의 전제와 전개조건 41~45,
122, 124, 128, 130, 376, 377,
427.

그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노동력 매
매 37, 389, 424~427.

그의 목적에 대한 속류경제학(적
견해) 75, 77.

그에 있어서 화폐자본의 역할
391, 393, 457, 528, 549, 550,
554, 555.

생산가격 Produktionspreis 240, 372.

생산기간 Produktionszeit 138.

— 회전기간의 일부인 생산기간 139,
171, 174, 256, 257, 277.

— 과 노동시간 135~138, 265~273,
285, 291.

— 과 회전기간 135, 138, 139, 285,
289~294.

— 의 인위적 단축 266.

생산물 Produkt 60, 61, 150, 155,
158, 160, 224, 225, 226, 228, 229,
230.

- 분할될 수 있는 (dskreter) 생산물
과 연속적 생산물 253~256, 282,
285.
- 사회적 총생산물 407, 449~452.
그것은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
비를 포괄한다 433.
그것의 가치 406, 434~439, 444,
469, 473~478.
그것의 자연적 형태 434~436,
474~478.
그것의 가치량과 사용가치량간의
관계 435, 436.
그것의 분배 105, 435, 449, 450.
그것의 증가율 569, 570, 576.
- 생산물가치 *Produktenwert* 46, 176,
177, 356, 434, 435, 437, 473~481.
- 생산물교환 *Produktenaustausch*
164, 165, 456, 496.
- 생산성 (— 력)
Produktivität (Produktivkraft) 81,
110, 155~158, 310, 352, 392, 552.
- 생산수단 *Produktionsmittel*
175~180, 205.
— 생산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의 생
산수단 39, 41, 45, 46, 218~220,
233.
— 고정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 177,
178.
— 고정자본의 재료적 현존형태
(*Existenzformen*) 45, 156.
— 의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에서의 역
할 175~181, 224~227, 249, 250.
— 의 가치형성과정상의 역할
135~137, 175~179.
— 의 가치 81, 426.

- 의 물리적·도덕적 마멸 205.
- 에 대한 수요 130, 132.
- 의 생산 (사회적 생산의 I 부류)
402, 405, 406, 436, 466~469,
518.
- 노동생산력 발전의 전제로서 그의
지속적 증가 155, 157.
- 과 노동자 41, 45.
- 과 노동력 34, 35, 38~43, 45,
425.
- 생산양 (방) 식 *Produktionsweise*
— 과 교역방식 129.
—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 123, 124,
155, 156.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의 모순 83, 84, 347, 348, 451,
452, 453, 516.
그와 일반적 상품생산 122, 123,
129, 130.
그에 대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
(의 견해) 477.
— 또한 노예제, 공산주의를 보라.
- 생산요소 *Produktionselemente* 34,
35, 38~41, 45, 81, 246, 428.
— 의 결합기술 및 결합방법 38, 41,
45.
- 생산의 형태 *Produktionsformen*
— 사회적 생산의 형태 45, 129.
— 전자본주의적 생산의 형태 45.
- 생산중심지 *Produktionszentren* 278,
279.
- 생활수단 *Lebensmittel*
— 필요생활수단 44, 131, 183,
372~374, 421, 443~450, 452.
— 노동자의 생활수단에 관한 스미드

(의 견해) 236~238.

세계시장 Weltmarkt 123, 280.

소비 Konsumtion

- 생산적 소비 33, 43, 51, 65, 66, 82~85, 91, 108, 109, 232, 388, 434, 480.
- 개인적 소비 77, 83, 84, 105, 108, 109, 177, 232, 388, 433, 453, 480.
- 노동자와 노동자계급의 소비 43, 44, 65, 66, 83, 105, 388, 445, 453.
- 자본을 통한 노동력의 소비 66, 183.
- 자본가의 소비 66, 68, 72, 73, 77, 83, 84, 388, 445, 454.
- 자본주의하에서 생산과 소비의 모순 83, 84, 348, 452, 453.
- 순환의 필연적 계기로서의 소비와 자본의 재생산과정 65, 66, 77, 78, 82~85, 433, 434.
- 와 단순재생산 454.
- 와 축적 558, 559.
- 와 신용 208.

소비фон드(기금) Konsumtionsfonds

- 162, 406, 433, 560.
- 과 축적фон드 566~571.
- 개별적 소비фон드 105, 154, 155, 402, 479.
- 사회적 소비фон드 162, 402, 404, 414.

소비수단 Konsumtionsmittel 177, 572.

- 의 생산(사회적 생산의 II 부류) 402~407, 436, 444.

- 의 생산은 필요한 소비수단생산과 사치스런 소비수단생산으로 세분됨 445~452, 454, 455, 490, 496.
- 또한 생활수단, 사치품을 보라.

소유 Eigentum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40, 41, 424, 465.
-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 42.
- 토지소유 27, 392.

속류경제학 Vulgärökonomie 23, 27, 76~78, 410, 429~431.

- 데스튀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이론 530~540.

수공업 Handwerk 115, 149.

수에즈 운하 Suezkanal 280.

수요 Nachfrage

- 노동력에 대한 수요 130.
-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 130, 131.

수입 Revenue

- 으로서의 잉여가치 339, 414, 422, 423, 427, 462.
- 노동자와 노동자계급의 수입 402, 408~413, 415, 416~423, 427, 483~486, 490, 493, 495.
- 자본가와 자본가계급의 수입 74~78, 410, 413, 417, 422, 423, 427.
- 에 관한 데스튀트 드 트라시(의 견해) 530~540.
-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429.
-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399~412, 419~422, 424, 427, 428.

수형 Wechsel 93, 281, 321.

스코틀랜드 Schottland 128, 399.

시장 Markt

- 판매시장 142, 278~280, 283, 348, 349, 529.
- 의 공급과잉 286.
- 또한 노동시장, 화폐시장, 상품시장, 세계시장을 보라.

신용 Kredit 133, 575.

- 과 자본주의적 생산 76, 200, 209, 258~260, 352, 353, 379, 554, 555.
- 과 해외무역 280, 281, 349.
- 과 소비 209.
- 과 금융의 유통 379, 527, 555.
- 과 저장형성 157.
-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신용관계 80, 208, 241, 493.

신용경제 kreditwirtschaft 128, 129.

○

아프리카 Afrika 529.

아테네 Athen 528.

야간작업 Nachtarbeit 136, 265.

양모시장 Wollmarkt 283, 284.

양조업 Brauerei 142, 279.

역축 Arbeitsvieh 178, 179, 223, 224, 226, 227, 411.

영국 England

- 은행업 281.
- 건축업 75, 258, 259.
- 농경 260~263.

예농제도 Hörigkeitssystem 528.

예비fonds(기금) Reservefonds 93, 94, 190, 191, 284, 291, 361, 378.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en 156.

운수비 Transportkosten 164~167.

-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165, 166.
- 에 관한 세이(의 견해) 166.

운수수단 Transportmittel 177.

- 자본주의하에서 그의 발전 141, 167, 278~280.
- 과 저장형성 157~159.
- 과 유통기간 278~280.

운수업 Transportindustrie 320, 321.

- 의 생산과정상의 특수성 61, 62, 167.
- 자본순환의 공식 62.
- 과 상품유통 163, 164, 165.
- 과 가치형성 164~167.

원재료 Rohmaterial 156, 177~183, 218, 219, 224, 233, 256.

유가증권 Wertpapiere 93.

유통기간 Umlaufszeit 135, 274~284.

- 회전기간의 일부로서의 유통기간 139, 171, 174, 250, 256, 257, 277.
- 과 생산기간 135, 138, 139, 285, 286, 289~294.
- 의 일부로서의 판매기간 139~148, 277~282.
- 의 일부로서의 구매기간 281~284.
- 자본회전과 자본선대에 미치는 영향 285~294, 307, 312, 316~321.

윤작 Fruchtfolge 269, 270, 274.

은행 Banken 93, 133, 280~281, 349, 378, 382, 455, 547.

- 그의 기능 150.

은행권 Banknoten 520, 527.

이윤 Profit 139, 372, 373.

— 잉여가치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이윤 16~19, 409, 413.

— 평균이윤 28.

— 에 관한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견해) 530, 531, 535~540.

—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19, 27, 28, 248.

— 에 관한 로드베르투스(의 견해) 15, 16, 18.

—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17, 18, 216, 220, 221, 223~225, 396~402, 407~412.

이윤율 Profitrate 131, 132, 251, 374, 579.

— 일반 이윤율의 평균(화) 240.

이자 Zins 20, 21.

인구중심지 Bevölkerungszentren 278~280.

인도 Indien

— 고대 인도공동체에서의 부기 148.

— 기근 155, 156, 261, 262.

— 저장형성 155.

— 영국-인도식의 어음지급기한 281.

임금

— 노임 Arbeitslohn을 보라.

임금노동 Lohnarbeit 44, 130, 136, 375.

임금노동제도 Lohnarbeitsystem 528.

잉여가치 Mehrwert 16, 17, 18, 24, 25, 46, 413, 424, 425, 460.

— 상품가치에 대한 초과분 427.

—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25, 424.

— 잉여가치율 327~334, 336, 337~339, 346.

잉여가치의 연율 325~339, 346, 351.

— 잉여가치량 327~331, 333~339, 346.

— 잉여가치의 법칙 19, 329~332, 334.

— 와 노임 413~415.

— 수입으로서의 잉여가치 339, 415, 422, 423, 427, 462.

— 자본에 있어서 잉여가치의 변동 85~89, 351~352, 357, 543, 556~559.

— 의 실현 50, 51, 72, 73, 138, 140, 141, 353, 357, 372, 377, 382, 462~465.

— 의 유통 388.

— 의 분배 19, 382, 391, 409, 413, 465, 466, 502.

잉여가치의 여러 가지 생산부문들
로의 분배 240.

잉여가치론 Mehrwerttheorie

— 맑스의 잉여가치론 10, 16, 19, 22~26.

— 중상주의자들의 잉여가치론 16.

— 중농주의자들의 잉여가치론 243.

— 리카아도의 잉여가치론 19~22, 241, 242, 243, 248.

— 로드베르투스의 잉여가치론 15~22, 26.

— 스미드의 잉여가치론 16~20, 221, 222.

잉여노동 Mehrarbeit 17, 18, 20, 34, 38, 46, 423, 425, 469, 470, 551.

- 상업상의 잉여노동 146.
- 운수업의 잉여노동 62, 63.
- 잉여생산물 Mehrprodukt 19, 361, 362, 523, 544~548.
- 확대재생산의 실제적 기초인 사회적 생산의 I 부류에서의 잉여생산물 549~553, 561, 562.
- 잉카국 Inkastaat 129, 164.

ㅈ

- 자본 Kapital 48, 49, 87, 90, 119.
- 은 계급적 제관계를 포괄한다 119.
- 고정자본 175~181, 220, 221, 234, 244~246, 250, 437.
- 유동자본과의 구별 176, 180~187, 203, 212, 215, 222, 245, 250, 251, 255, 261, 307, 308, 325, 326.
- 의 회전 132, 180~187, 203~205, 212, 307, 308, 325, 326.
- 의 감가상각 132, 180, 181, 185, 186, 188, 189, 204, 495, 496, 498~501, 504~507.
- 의 물리적 마멸 187~190, 193, 205, 437, 438, 494~499.
- 의 보존과 갱신 189, 203, 204, 437, 438, 494~517, 526, 549.
- 에 관한 켄네(의 견해) 211.
-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239~241, 247~252.
-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211~227, 231~233, 236, 396~398, 402, 403.

- 사회적 자본 117, 387~390, 434~436.
- 과 개별적 자본 108, 109, 387~390, 434, 435.
- 의 회전 297, 298.
- 의 II 부류 436.
- 개별적 자본 117, 118, 435.
- 과 사회적 자본 108, 109, 387~390, 434, 435.
- 산업자본 60, 62, 67, 69~71, 93, 95, 114~119, 123, 124.
- 의 여러 가지 형태 59~61, 62, 89, 90, 123, 124, 184, 185, 214.
- 과 계급대립 62.
- 불변자본 60, 135, 175, 182, 437.
- 의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의 분리 175, 176, 437.
- 사회적 기준척도로서 그의 재생산 439~443, 466~469, 473~477, 483.
-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239~241.
- 생산적 자본 36, 37, 42, 60, 71, 103, 179~201, 215, 217~222, 226, 227, 387.
- 산업자본의 형태로서의 생산적 자본 59~60, 89, 90, 185, 186, 215.
- 의 기능 43~46, 51, 57.
- 의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의 분리 185, 186, 231~233, 236, 237, 246.
- 의 구성요소 39, 41, 45, 46, 89, 90, 152, 181~186, 215~222, 224, 225.

- 의 구성요소의 가치변동 112, 315.
 의 회전 181~186, 203.
 저장으로서의 생산적 자본 136.
 잠재적(latent) 생산자본 136, 137, 156, 157, 282.
 잠재적(potentielle) 생산자본 271~274, 282.
 에 관한 중농주의자(들의 견해) 211~214, 235.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211~217.
 - 가변자본 68, 139, 182~184, 241~244, 248, 409, 437, 484.
 과 노임 409, 419~422, 427, 437, 441, 481~494.
 의 출현형태 68, 409, 416~419, 421, 439, 440, 445, 449, 455~457, 528.
 잠재적 가변자본 484, 487, 490, 491.
 의 회전 325~350.
 의 재생산 440, 441, 443~445, 469~474, 481~494.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239~241.
 - 유동자본 192, 437.
 과 고정자본의 구분 176, 179~187, 203, 212, 215, 222, 246, 250~252, 255, 307, 308, 325, 326.
 의 회전 132, 183~187, 203, 204, 207, 208, 209, 212, 256, 286, 287, 307~309, 325.
 에 관한 케네(의 견해) 211.
 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 239~241, 247~252.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211~227, 230, 232.
 - 유동자본 185, 213~216, 219, 222, 227, 233, 236.
 또한 화폐자본, 상품자본을 보라.
 - 의 구성
 유통과정의 입장에서 본 자본의 구성 239, 240.
 유기적 구성 91, 131, 132, 240, 241, 565~572.
 자본구성의 가치구성의 바뀔 91.
 - 또한 자본의 축적, 상인자본, 자본의 집적, 자본의 집중을 보라.
자본가 Kapitalist
 - 인격화된 자본으로서의 자본가 130, 131, 143.
 - 산업자본가 118, 120, 124, 129, 215, 408, 410, 457, 464~466, 502, 503, 528; 다른 모든 자본가들의 대표자로서의 산업자본가 464.
 - 자본가의 주된 기능인 매매 133, 또한 상인을 보라.
 - 화폐자본가 455, 465.
자본가계급 Kapitalistenklasse 380, 381.
 - 이 현존(Existenz)하는 주된 조건 420.
「자본론」
 - 의 완성사 9~13.
 - 2부 출판을 위한 엥겔스의 작업 9, 10, 12, 13, 29.
 - 3부 출판을 위한 엥겔스의 작업 13, 29.

자본전대 337, 338.

- 여러 가지 형태 291, 292, 370.
- 자본전대의 양에 대한 회전기간의 영향 285~323.
- 1년간의 전대와 1년 이상의 선대 211.
- 전대에 관한 중농주의자들(의 견해) 110, 211, 212, 236, 243, 244, 417, 418, 550.

자본의 순환 Kreislauf des Kapitals

-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로서의 자본순환 65, 113, 116, 387.
- 의 세 가지 상이한 형태 59, 63, 171, 172, 387, 389.
- 의 연속성 114~119.
- 의 정지 59, 77, 116.
- 과 일반적 상품유통 65, 66, 78, 122~129, 388, 390.
- 과 자본의 회전 172, 173, 174, 387.
- 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78, 94, 172, 284.
- 화폐자본의 순환 33~53, 54, 55~66, 67, 68~72, 77~83, 87~90, 97, 98, 103, 105, 171, 182, 183.
- 의 공식 33, 42, 50, 58, 59, 64, 65, 68, 69.
- 의 제1단계 34~42, 47, 50, 56, 67, 82.
- 의 제2단계 43~46, 66.
- 의 제3단계 47~58.
- 산업자본순환이 특수한 형태로서의 화폐자본순환 67, 69.
- 과 일반적 상품유통 63, 64.

— 생산적 자본의 순환 72, 81, 82, 97~111, 152, 172.

의 공식 72, 97, 104, 107.

— 상품자본의 순환 72, 81, 82, 97~111, 152, 172.

의 공식 72, 82, 104, 107.

과 다른 형태의 순환간의 구분 82, 83, 103~111.

사회적 자본의 운동형태로서의 상품자본순환 107~110.

은 생산적 소비 및 개별적 소비를 포괄한다 433, 434.

과 사회적 총생산물의 분배 105.

자본의 집적 Konzentration des Kapitals 257~260, 279, 547.

자본의 집중 Zentralisation des Kapitals 392.

자본의 축적 Akkumulation des Kapitals 86~88, 190, 351~353, 356, 543.

— 의 필연성 133, 578.

— 의 실제적 요인으로서의 단순재생산 436.

— 확대재생산으로서의 자본축적 377.

— 사회적 생산의 II부류내에서의 자본축적 556~579.

— 과 노동생산력 392, 552, 570.

— 과 소비 558, 559.

— 과 퇴장형성 87, 92, 133, 543~546, 551, 552, 554, 580, 581.

— 또한 재생산을 보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부정부성

Anarchie der kapitalististischen

Produktion 190, 517.

또한 불균형, 공황을 보라.

자연 Natur

— 자본을 통한 자연재료 및 자연력의 착취 391, 392.

—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에 대한 영향 266.

— 과 고정자본의 마멸 187, 188.

자연경제 Naturwirtschaft 128, 528.

자유무역학파 Freihandelschule 548.

재생산 Reproduktion 387.

— 각 사회의 존재 (Existenz) 조건 339.

— 자연적 재생산 189, 191, 395.

—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목적 171, 453.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 41, 42, 433, 460.

— 노동력 및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27, 41, 42~45, 130, 182, 183, 231, 242, 340, 417~422, 427, 451, 452, 457, 460, 490, 491, 496, 533.

— 개별적 자본의 재생산 71~73, 113, 118, 119, 434, 543.

—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113, 118, 387~390, 434~436, 543.

은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를 포괄한다 434, 435.

— 고정자본의 재생산 189, 203, 204, 437, 438, 494~517, 526, 549.

— 불변자본의 재생산 439~443, 466~469, 473~478, 483.

— 가변자본의 재생산 439, 440, 442~445, 469~473, 481~494.

— 화폐재료의 재생산 518~529.

— 과 해외무역 514, 516~519.

— 과 화폐유통 439~444, 454~466, 483~497, 503, 525~528.

— 과 소비 454.

— 과 공황 452~454, 515~517, 550, 578, 579.

— 과 퇴장형성 496, 521, 522.

또한 자본의 축적을 보라.

— 과 상품저장 162, 560, 561.

— 단순재생산 356, 357, 407.

— 확대재생산 110, 543~546.

— 재생산이론에 관한 테스트트 드 트라시 (의 견해) 530, 540.

— 재생산이론에 관한 중농주의들 (의 견해) 221, 395, 396, 407.

— 재생산이론에 관한 스미드 (의 견해) 396~400, 407, 450.

— 부르조아 이론 비판 478~485, 524, 526.

저금 Despositen 93, 252, 321, 378, 382.

저당권 Hypotheken 259.

저장 (저장형성) Vorrat (Vorratbildung) 152~158.

—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저장 (저장형성) 155.

— 의 여러가지 형태 154, 155. 의 형태변동 155~160.

— 생산적 저장 122, 135, 136, 154~158, 162, 208, 271, 282, 284, 291, 292, 310, 311, 317~321, 495.

— 에 관한 스미드 (의 견해) 154, 155.

- 또한 상품저장을 보라.
- 정치경제학 politische Ökonomie
- 의 역사 16~26.
-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사회적 특성 139, 221, 222, 362.
- 고전 경제학 16, 19, 24, 27, 95, 103.
- 의 속류화 23, 27.
-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의 혁명을 이룩함 10, 19, 24, 26.
- 변태철학적(scholastische) 경제학 46.
- 또한 중상주의, 중금주의, 중농주의, 속류경제학을 보라.

제도업(製陶業) Töpferei 265.

조림 Holzzucht

- 공동생산에 의한 조림 270.
- 자본주의하의 삼림파괴 271.
- 조림업의 생산기간과 노동시간 265.

조직 Organisation

- 노동과정의 조직 45, 63.
- 사회적 노동의 조직 392.

주식 Aktien 181, 321, 382.

주식자본 Aktienkapital 109, 477.

주식회사 Aktiengesellschaft 258, 393, 478, 526.

중개인 Vermittler 503.

중국 China 280.

중금주의 Monetarsystem 68.

중농주의 Physiokraten 110, 221, 247~249, 396, 397, 398, 417, 418, 430, 434.

- 생산적 자본에 관한(견해) 211~213, 236.

—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관한(견해) 211.

— 잉여가치의 생성에 관한(견해) 243, 249.

— 화폐유통에 관한(견해) 375.

— 재생산에 관한(견해) 221, 395, 396, 407.

중상주의 Merkantilismus 16, 66, 68, 111.

중세 Mittelalter 144, 148.

지대 Rente

— 지대(Grundrente) 465, 502, 538.
잉여가치의 변형된 형태인 지대 16~19, 409, 414.

— 에 관한 스미드와 리카아도(의 견해) 16~19, 397~401, 407~412.

— 에 관한 로드베르투스(의 견해) 15~18, 21, 26, 27.

지불기한 Zahlungstermin 207, 208, 281, 282.

질·양 Qualität·Quantität 34, 35, 54, 203, 204, 450~452, 561.

天

차액 Bilanzen 126.

차입 Anleihen 347.

차지농업가 Pächter 211, 212, 239, 359~398, 409, 411.

채권(債權) Schuldforderungen 87, 93, 380, 382.

철도 Eisenbahn 166, 187~191, 195~199, 259.

축산업 Viehzucht 260~262, 271, 272.

축적펀드(기금)

Akkumulationsfonds 93, 94, 121.

— 과 소비기금 566~571.

축적율 Akkumulationsrate 559, 562,

565~571, 574~579.

취인소 Börse 373, 376.

E

토지개량 Bodenmelioration 177, 178.

토지소유 Grundeigentum 27, 392.

토지소유자 Grundeigentümer 16,

17, 42, 392, 409~413, 465, 502.

투기 Spekulation 119, 160, 258, 259,

283, 284, 347, 352, 373.

투하 Kapitananlage 213, 348.

— 의 표준적 최저 286.

—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213, 217.

퇴장형성 Schatzbildung 85, 200, 353.

— 단순상품생산에 의한 퇴장형성 92, 546, 547.

— 과 자본주의적 생산 376, 377, 382, 522, 546, 547.

— 과 자본주의적 재생산 86, 92, 133, 543~546, 551, 552, 580, 581.

— 과 자본의 축적 496, 521, 522.

II

판매기간 Verkaufszeit 139~150, 277~282.

표백업 Bleicherei 265, 266.

ㅎ

합리주의 Rationalismus 104.

해외무역 Außenhandel

— 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모순 347, 517.

— 과 자본주의적 재생산 514, 517~519.

— 귀금속의 해외무역 87, 349, 350, 353, 357.

— 과 신용 280, 281, 349.

현물임금제도 Trucksystem 564, 573.

협업 Kooperation 156, 259, 260.

화폐 Geld

— 일반적 등가물 38, 53, 55, 426.

— 의 기능 84, 85.

가치척도로서의 기능 419.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37, 73, 150, 200, 357, 378, 379, 457, 552, 556;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 36, 85, 126, 365, 378, 515.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 35, 40, 85, 86, 126, 150, 297, 358, 361, 365, 378, 511, 527, 555.

퇴장으로로서의 기능 73, 85, 86, 92, 200, 353, 358, 361, 521, 522, 552.

세계화폐로서의 기능 123, 393.

— 신용화폐 125.

또한 신용을 보라.

— 금속화폐 125, 357, 527.

— 계산화폐 67, 68, 71, 148, 171,

172, 204.
 — 의 마멸과 재생산 150, 357, 360, 393, 518~529.
화폐경제 Geldwirtschaft 37, 38, 128, 244.
화폐시장 Geldmarkt 121, 311~313, 315, 321, 322, 346, 347, 349, 350, 353, 394.
화폐자본 Geldkapital 36, 37~41, 51~56, 57, 58, 78, 346, 347, 389~394, 465.
 — 사회적 총자본의 구성요소로서의 화폐자본 390, 391.
 — 산업자본의 형태로서의 화폐자본 58~60, 63, 89, 90, 185.
 — 의 기능 55, 57, 85.
 — 생산자본에 대한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의 대립 185, 186, 214, 222, 227.
 — 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 36~39, 42, 43, 59, 82, 282~284, 392, 457, 546.
 — 과 자본주의적 생산 390, 392, 457, 528, 549, 554, 555.
 — 과 화폐유통 71, 73, 80, 457.
 — 잠재적(잠재적) 화폐자본 85, 86, 92~94, 292, 310, 311, 353, 354, 380~383, 392, 544~547.
 — 추가적 화폐자본 377, 378, 552~553.
 — 의 구속과 해방 120~123.
 — 에 관한 부르쾰아 경제학자들(의 견해) 284~294.
 — 또한 화폐자본의 순환을 보라.
화폐예비фон드(기금)

Geldreservefonds 182, 190, 191, 195, 380, 381.
화폐유통 Geldumlauf(—zirkulation) 314, 315, 357, 365, 366, 371~378, 518~522, 554, 556.
 — 의 법칙 113, 126, 127, 357, 360, 364, 374.
 — 과 재생산과정 439~444, 454~466, 483~496, 503, 526~528.
 — 금속의 유통 125, 379, 527, 555.
 — 에 관한 중농주의자(의 견해) 375.
 — 에 관한 스미드(의 견해) 524, 525.
화폐저장 Geldvorrat 94, 291, 292, 441.
화폐축적 Geldakkumulation 91~93, 353, 377~383.
화폐축적фон드(기금)
Geldakkumulationsfonds 93, 94, 121.
화폐형태 Geldform 36, 37~41, 51~56, 57, 58, 78, 79, 345, 347, 389~394, 465.
화학 Chemie 23, 24, 26.
 — 서로 구별이 안되는 원재료와 보조재료 177.
 — 화학적 과정이 생산기간에 끼치는 영향 373, 374.
회전기간 Umschlagszeit 138, 171~174, 204, 205.
 —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합(합) 171, 174, 365, 366, 387.
 — 고정자본의 회전기간 204, 205.

212, 268.

— 유동자본의 회전기간 212, 267,

268, 350.

회전수 Umschlagszahl 132, 171,

174, 204, 205, 293, 298, 335,

회전주기 Umschlagszyklus 204, 206,
274, 326.

— 과 공황주기 205, 206.

— 농촌경제에 있어서의 회전주기
274.

자본론 제Ⅱ권(2)

백의신서 13

인쇄일 : 1989년 5월 30일

발행일 : 1989년 6월 10일

펴낸이 : 이 상 돈

펴낸곳 : 도서출판 白衣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1-12

전화 : 편집부 960-5031, 영업부 965-7187

등록 : 서울 제5-145호 (88. 6. 25.)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2,800 원